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A study on the reentry of juvenile offenders from the
training schools in South Korea (I)

Focused o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강태경 · 김한균 · 김경찬 · 서선영
김동현 · 김두나 · 김재왕 · 류민희
박한희 · 조혜인 · 최현정 · 한가람
구정우 · 김두년 · 정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65-01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한국인권학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태경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한균 연구위원 김경찬 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선영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두나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한가람 변호사
	한국인권학회	구정우 교수 (성균관대)	김두년 교수(중원대) 정진원 연구교수(고려대)

머리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동시에 국민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이 상징적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시민 생활의 규범으로서 그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인권 의식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검찰·경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우리 연구진은 검찰·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학술적·정책적 논의들을 망라하여 검토하였고, 최근 10년간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중 검찰·경찰 관련 결정례를 취합하여 쟁점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인권영향평가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입 예정인 검찰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검찰·경찰 개혁 및 역할 조정 작업이 여전히 치열한 논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평가에 관한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를 바라고, 부디 눈 밝은 독자들이 이 글을 통해서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발간사를 빌어 그동안 함께 고생한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부연구위원 강 태 경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서 론 · 강태경	7
-----------------------	---

제1절 연구의 목적	9
------------------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4
-----------------------	----

| 제2장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논의 동향

분석 · 강태경	17
----------------	----

제1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19
------------------------------------	----

1. 검찰·경찰 개혁 이슈	22
----------------------	----

가.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비판	22
---------------------------	----

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경찰 관계 재설정	23
--------------------------------	----

2.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경찰의 이미지 개선 요청	25
--	----

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이미지 개선	25
----------------------------------	----

나.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이미지 개선	26
----------------------------------	----

3. 검찰·경찰의 인권규범 위반 관행	29
----------------------------	----

가. 집회·시위 과잉 진압 및 부적절한 채증	29
--------------------------------	----

나. 강압수사	32
---------------	----

다. 과도한 장구 사용	34
--------------------	----

4.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34
------------------------	----

5. 수사기관 구성원의 인권 문제	36
--------------------------	----

제2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37
---	----

1. 검찰·경찰 권한 분배	38
----------------------	----

가. 기소편의주의 견제	39
--------------------	----

나. 수사권조정	40
----------------	----

다. 영장청구권	44
2. 수사 단계별 개선 사항	47
가. 범죄발견 활동 관련 쟁점	48
나. 수사진행 관련 쟁점	50
다. 개인정보보호	57
라. 수사 외 경찰활동과 인권 보호	59
3.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 방식	61
가. 범죄피해자	61
나. 사회적 약자	65
4. 경찰 조직 문화	67
5. 인권교육	70
6. 기타	71
제3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개혁 권고 분석	73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검토	73
2.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검토	75
제4절 소결	78

Ⅱ 제3장 | 국가인권정책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 김한균 81

제1절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강화 정책	84
1. 정책 내용 분석	85
가.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의미	85
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 관련 정책	87
다.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검찰 관련 정책	87
2. 정책 내용 평가	87
가. 경찰의 정책이행 평가	88
나. 검찰의 정책 이행 평가	91
제2절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강화 정책	93
1. 정책 내용 분석	95

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의미	96
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 관련 정책	97
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검찰 관련 정책	97
2. 정책 내용 평가	98
가. 경찰의 정책이행 평가	99
나. 검찰의 정책이행 평가	100
제3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강화 정책	102
1. 정책 내용 분석	103
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특징	104
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 관련 정책 분석	106
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검찰 관련 정책 분석	107
2. 정책 내용에 따른 과제 전망	109
제4절 소결	110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하에서 수사기관 인권 보장 역량 강화 정책의 성과 ...	111
가.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 폭 확대	111
나.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	112
다. 성과발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상 시사점	112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하에서 수사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의 한계 ...	113
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	113
나. 한계극복과 개선을 위한 수사기관 인권 보장 개선보완정책상 시사점 ...	114

| 제4장 |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분석

· 김경찬·서선영·김동현·김두나·김재왕·류민희·

박한희·조혜인·최현정·한가람 117

제1절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유형 분석 개관	119
1. 분석 대상 사례의 유형 및 범위	119
가. 경찰 관련 사례 유형 및 범위	119
나. 검찰 관련 사례 유형 및 범위	122
2.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방법	123

가. 분석의 필요성	123
나. 분석 방법	126
제2절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안전 영역	130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130
가. 부당한 임의동행·강제연행	130
나. 과도한 불심검문	134
다. 체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134
마. 구속사실 미통지에 따른 인권 침해	143
바. 진술거부권 미고지 조사 인권 침해	145
사. 압수 관련 인권 침해	146
아. 신체수색 관련 인권 침해	147
자.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인권 침해	150
차. 부당한 보호조치 인권 침해	150
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및 경찰장구 사용 등	153
타. 폭행행위 등 인권 침해	162
파. 피해자 관련 인권 침해	169
하. 전투경찰 순경의 의료조치 미흡 인권 침해	172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173
가. 외국인 피의자의 접견·통신권 미보장 인권 침해	173
나. 부당한 강제소환 인권 침해	173
다. 형집행장 절차 위반 인권 침해	174
라. 검찰조사 계구 사용 인권 침해	175
마. 전자충격기 과잉 사용 인권 침해	176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177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177
가. 언론 보도 관련 인권 침해	177
나. 부당한 피의사실 고지 인권 침해	181
다. 기소 중지자 탐문수사 인권 침해	182
라. 전과사실 누설 인권 침해	182
마. 부당한 전과조회 및 개인정보유출 인권 침해	183
바. 경찰의 조사과정 중 사생활 침해	183
사. 북한이탈주민 신분노출 인권 침해	184
아. 야간 자택 방문조사 인권 침해	185

자. 미성년자를 통한 부모의 개인정보 취득과 진상보고서 공개	185
차. 지위를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누설	187
카. 미동의 촬영 증거수집 행위 인권 침해	188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188
가.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 침해	188
나. 대질조사시 전과 관련 질문 인권 침해	189
다. 범죄사실 및 디엔에이 채취대상자 정보유출 인권 침해	190
3. 경찰 및 검찰 공통 사례 분석	191
가. 참고인 조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91
나. 전과사실 포함 체포·구속 통지 인권 침해	191
제4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영역	193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193
가. 경찰의 부적절 지명통보 인권 침해	193
나. 검거경위 허위보고에 의한 인권 침해	194
다. 경찰의 욕설·폭언 등 인권 침해	195
라.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 침해	198
마. 과도한 수갑 사용·수갑 노출 인권 침해	199
바. 심야조사 인권 침해	200
사. 탈복자 사실공개 및 부정적 발언 인권 침해	204
아. 교육대상자 모자 등 착용제한 인권 침해	205
자. 속옷탈의 인권 침해	206
차.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노출 인권 침해	206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208
가. 비하발언	208
나. 서명날인강요 인권 침해	209
다. 부당한 교도소유치 인권 침해	209
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시 인권 침해	210
마. 검찰청 구치감 화장실 차폐시설 미비 인권 침해	211
제5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보호영역	212
1. 성소수자 관련 사례 분석	212
가. 성소수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213
나. 피의사실과 무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누설	216
다. 동성애자 대상 숙박업소에 대한 표적수사	217

라. 트랜스젠더 피의자의 유치장 수용	218
마.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침해	219
2. 장애인 관련 사례 분석	220
가.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미흡	220
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진술거부권 고지	222
다. 신뢰관계인 동석 없는 지적장애인 피의자신문	224
라. 신뢰관계인 없는 상태에서의 지적장애인 피해자 조사 사례	226
마. 시각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	228
바. 경찰의 염전노예 피해자 신고 무시	229
사. 장애인 복지시설의 학대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들	232
아. 노예노동 피해자에 대한 수사미진	233
3. 여성 관련 사례 분석	235
가. 여성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	235
나. 유치장 임신부 및 산모 보호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 침해	236
다. 브래지어 탈의 요구에 의한 인권 침해	238
라.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 인권 침해	239
4.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및 노인 관련 사례 분석	240
가. 미성년자 피의사건 조사에서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사례	240
나.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부당한 조사	242
다. 미성년자 불법구금 등 부적절한 조사로 인한 인권 침해	244
라. 미성년자 탐문수사 관련 인권 침해	245
마. 노인복지시설 강제노동 및 금전착취 인권 침해	246
5. 외국인 관련 사례 분석	247
가. 인종차별적 조사와 발언	247
나. 외국인 강제연행에 의한 인권 침해	248
다. 외국인 보호소 직원의 외국인 폭행 인권 침해	249
6. 응급구호 미흡 관련 사례	250
제6절 집회·시위 경비업무 관련 영역	252
1. 집회 방해	252
가. 1인 시위 방해로 인한 인권 침해	252
나.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로 집회 방해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별첨 2]	253
2. 통행 방해, 제지 등 관련	254
가.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통행방해에 의한 인권 침해	254

나. 집회 참가자들의 인도통행봉쇄, 해산명령 및 최루액 발사에 의한 인권 침해	255
다. 집회를 마친 후 다음 집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의 통행을 제한한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256
라. 과도한 통행제한에 의한 인권 침해	257
3. 차량 차단 및 천막철거 등으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	259
가. 방송차량 진입차단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259
나. 집회 차량을 견인하여 집회 개최 무산시킨 집회의 자유 침해	259
다. 집회천막에 대한 위법한 강제철거	260
라. 집회 방한용품 탈취행위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261
4. 금지통고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장소경합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한 인권 침해	262
5. 과잉진압과 폭행 등 공격행위	263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263
나. 지켜보는 사람,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264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264
라.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265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266
바. 의료진에 대한 공격	267
6. 물리력 남용과 공격적 경찰 장구 사용	267
가. 경찰봉의 위법한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267
나. 위법한 살수차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269
다. 색소물포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269
라. 경찰들이 집회 시위 진압 중 방패로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한 인권 침해	270
7. 집회 시위 진압경찰의 식별표시 미부착 내지 은폐에 의한 인권 침해	271
8. 채증	272
가. 대화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위법한 채증에 의한 인권 침해	272
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채증에 의한 인권 침해	273
9. 변호인 조력권 침해	274
10. 노동쟁의·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OO자동차 농성 및 진압 과정 중 인권 침해	275
가. 회사측 용역경비 등의 폭행 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방조행위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275
나. 식수 공급 중단과 의약품 반입 및 의료진 출입 차단에 대한 경찰의	

목인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한 인권 침해	276
다. 경찰장비(최루액,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	278
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의 방패, 경찰봉, 개인소화기 등에 의한 폭행	280
11. 행정대집행, 농성에서의 경찰 경비	282
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통행로 봉쇄 및 이른바 ‘고착’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282
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진압을 한 경찰의 식별표시 미부착 및 경찰복 미착용에 의한 인권 침해	283
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욕설에 의한 인권 침해	284
라.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인권 침해(용산 참사)	285
12. 소수자 영역	286
가. 성소수자	286
나. 장애인	287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본 검찰·경찰 인권옹호 기능 진단 ...	292
1. 경찰 인권교육 권고 영역	292
가. 범죄발견 단계	292
나. 수사진행 단계	294
다. 개인정보보호	302
라. 사회적 약자 보호	307
마. 물리력 및 경찰장구 사용	310
바. 기타 인권 침해 및 불법행위	314
사.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316
아. 전투경찰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317
2. 검찰 인권교육 권고 영역	317
가. 범죄발견 단계	317
나. 수사진행 단계	319
다. 사회적 약자 보호	321
라. 개인정보보호	324
마. 기타 인권 침해 및 불법행위	326
제8절 소결	327

| 제5장 |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 평가

• 구정우·김두년·정진원	335
---------------------	-----

제1절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337

1.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337
가.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337
나.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활용	338
다. 인권영향평가 운영 현황	339
라. 우리나라 인권영향평가의 개선점	341
2.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해외 사례 분석	342
가. 영국 경찰 인권 안내서	342
나.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10가지 지침	347
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 법 집행에 관한 인권 지침서	350
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경찰에 대한 인권 훈련 안내서	353
마. 스코틀랜드 평등·인권영향평가 기본 운영 지침	357
바. 스코틀랜드 공공기관 평등영향평가	362
사. 영국 학교 내 평등 영향평가 지침서	365
아. 태국 FTA 인권영향평가	369
자. 소결	371

제2절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372

1.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논의 경과 및 선행연구	372
가.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경과	372
나.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 관련 선행연구 동향	374
2.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분석	377
가. 경찰 인권영향평가지표 체계 및 항목 분석 - 기존 연구의 한계	377
나. 경찰 인권수사매뉴얼: 인권수사 체크리스트 및 보완점	379
다. 경찰 인권영향평가: 수사과정 및 절차를 중심으로	382
3.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용 방향	418
가. 경찰 인권영향평가 추진 체계	418
나. 경찰 인권영향평가 주체	422
다. 경찰 인권영향평가 방법	424
4. 소결	426

제3절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428
1. 영향평가 관련 법제의 개관	428
2.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	430
가. 검찰의 인권관련 업무 개관	430
나. 인권영향평가의 조직구성	431
다.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절차	434
라. 검찰의 인권영향평가 보완사항	436
마.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기초자료 및 체크리스트 작성	437
3. 소결	445

제6장 결 론 · 강태경	447
-----------------------	-----

참고문헌	457
------------	-----

Abstract	473
----------------	-----

별첨자료	475
------------	-----

[별첨 1] 쿼어퍼레이드 금지통고 사건	475
[별첨 2] 대한문 화단 앞 집회 방해 사건	479
[별첨 3] 용산 화재 참사 철거민 검거 과정에서의 경찰 폭행	483
[별첨 4] 용산 참사 철거민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대기	486
[별첨 5] 용산 철거민등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진압	491
[별첨 6] 기자회견 참여자 체포과정 중 폭행	495
[별첨 7] 속옷탈의 및 실명공개에 의한 인권 침해	497
[별첨 8] 지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는 진술거부권 고지	499

표 차례

〈표 1-1〉 국가인권위원회 기관별 인권 침해 진정사건 접수현황	11
〈표 2-1〉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동향	20
〈표 2-2〉 최근 5년(2014-2018년) 학술 동향	37
〈표 2-3〉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중 검찰 인권 보호 기능 강화 관련 내용	74
〈표 2-4〉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중 경찰 인권 보호 기능 강화 관련 내용	76
〈표 5-1〉 1998 인권법에 명시된 인권법 조항	342
〈표 5-2〉 경찰에 적용되는 인권법 주요 내용	343
〈표 5-3〉 경찰의 업무 평가 영역	346
〈표 5-4〉 유엔인권사무소 법 집행에 관한 인권 지침서 전체 내용 개관	350
〈표 5-5〉 경찰 수사 및 인권 보호와 관련된 5가지 주제와 그 주요 내용	354
〈표 5-6〉 경찰청 인권 보호규칙 총칙 및 인권영향평가 조항	373
〈표 5-7〉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도 개요	375
〈표 5-8〉 2017년 인권수사 매뉴얼	380
〈표 5-9〉 스탬포드 공통 이해 (Stamford Common Understanding): 원칙과 합의	383
〈표 5-10〉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	396
〈표 5-11〉 경찰 내사 처리규칙	401
〈표 5-1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내사단계	402
〈표 5-13〉 불심검문 관련 규정	403
〈표 5-14〉 불심검문 체크리스트	405
〈표 5-15〉 긴급체포 관련 규정	407
〈표 5-16〉 현행범 체포 관련 규정	408
〈표 5-17〉 체포·구속시 체크리스트	409
〈표 5-18〉 진술거부권 관련 규정	410
〈표 5-19〉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규정	411
〈표 5-20〉 변호인 조력권 관련 규정	413
〈표 5-2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조사(신문)단계	416
〈표 5-22〉 수사종결단계 체크리스트	418
〈표 5-23〉 경찰인권영향평가(안)의 개요	419
〈표 5-24〉 개별법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428
〈표 5-25〉 소관법률 내에 장(章) 또는 조문(條文)을 신설하는 경우	429
〈표 5-26〉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430

〈표 5-27〉 현행 검찰의 인권업무 운영체계 개관	434
〈표 5-28〉 인권 보호관에게 인권영향평가 요청 시 함께 제출할 자료	435
〈표 5-29〉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438
〈표 5-30〉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인권 보호 수사총칙	439
〈표 5-3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수사착수단계	439
〈표 5-3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체포·구속 단계	440
〈표 5-3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압수·수색·검증 단계	441
〈표 5-34〉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피의자 신문단계	442
〈표 5-35〉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의 보호	443
〈표 5-36〉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소년·장애인·외국인에 대한 보호	444
〈표 5-37〉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사건의 처분 및 공판단계	444
〈표 5-38〉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수사상황의 비공개	445

그림 차례

[그림 5-1] 스코틀랜드 평등·인권영향평가 공정한 접근법	359
[그림 5-2] 평등영향평가 절차	363
[그림 5-3]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행단계	420
[그림 5-4] 현행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단계	421
[그림 5-5]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단계	425
[그림 5-6]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흐름도	436

국문요약

1. 본 연구의 목적은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정책 및 인권규범의 관점에서 검찰·경찰의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인권규범 위반 사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첫째,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논의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학술논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의 내용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해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중 미흡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둘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 과제의 성과 및 의의를 평가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중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한다. 넷째,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지표 체계 및 항목, 경찰 인권수사매뉴얼, 경찰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도입 예정인 검찰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논의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최근 10년간 언론은 검찰 권력 비대화 및 수사권 관련 검찰·경찰 관계에 대한 비판과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경찰의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에 집중하였다. 또한 언론은 수사기관의 인권규범 위반 관행에 대한 고발 기사를 통해 해당 문제가 적법절차 무시보다는 적정성 상실 및 법집행 공무원의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하였다.

둘째,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적 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최근 5년 간 학계는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경찰 권한 분배 문제를 「헌법」적 차원과 형사사법제도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다루고, 수사와 관련된 쟁점들을 범죄발견 활동(내사, 불심검문), 수사진행(체포,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이라는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법학적 논의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인권의식 및 조직문화 개선보다는

2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1)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셋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두 개혁위원회는 검찰·경찰 개혁의 진정한 목적을 검찰·경찰 권한 분배 자체에 두기 보다는 검찰·경찰의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두고 수사기관의 인권보호기능 강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균형 있게 담아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정책 과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년) 검토 결과를 살펴보자.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인권 인프라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외국인·여성·아동·청소년·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미흡하였다.

둘째,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년) 검토 결과를 살펴보자.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형사사법절차상 피의자·피고인 권익 증진과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를 형사정책분야 중요과제로 제시하였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수집·이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검토 결과를 살펴보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와 한국 사회의 인권 환경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화가 강조되었다.

4. 최근 10년(2008~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신체 보호 및 안전 영역을 살펴보자. 과도한 불심검문, 부당한 강제연행, 불법적 체포, 구속영장 미제시 및 고지필요사항 미고지, 물리력 및 수갑·경찰장구 등의 과도한 사용, 부당한 압수·수색, 부당한 보호조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의료조치 미흡, 외국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미보장, 부당한

강제소환, 형집행절차 위반, 검찰조사 단계에서 과도한 계구 사용 등이 생명·신체 보호 및 안전 영역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나타났다.

둘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을 살펴보자. 잘못된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부당한 피의사실 고지, 기소 중지자 탐문수사, 북한이탈주민 신분 노출, 야간 방문조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전과 사실이 포함된 체포·구속 통지, 대질조사 시 전과 관련 질의, 범죄사실 및 디엔에이 채취대상자 정보유출 등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나타났다.

셋째, 인간의 존엄·가치 및 행동의 자유 영역을 살펴보자. 부적절한 지명통보, 체포 시 욕설·폭언, 화장실 차폐시설 미흡, 과도한 수갑 사용 및 수갑 노출, 심야조사, 북한이탈 사실 공개 및 부정적 발언, 교육 시 모자 착용 등 자유 제한, 속옷 탈의, 서명날인 강요, 부당한 교도소 유치, 성폭력 사건 조사 시 피해자 배려 부족 등이 인간의 존엄·가치 및 행동의 자유 영역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나타났다.

넷째, 집회·시위 영역을 살펴보자. 집회 방해 및 과잉진압, 집회·시위 참가자 등(여성·아동, 의료진, 사진촬영자,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후퇴하는 사람 등)에 대한 공격,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기소 및 형사처벌, 부당한 불심검문, 통행방해 및 최루액 발사, 방한 용품 탈취, 경찰봉·방패 등 경찰장구의 과도하고 위법한 사용, 살수차의 과도하고 위법한 사용, 위법한 채증,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이 집회·시위 영역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영역을 살펴보자. 성소수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및 범죄피해사실 무시, 피의사실 무관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누설, 동성애자 표적수사, 성전환 피의자 유치 문제,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 미흡, 지적 장애인 진술거부권 불충분한 설명, 신뢰관계인 동석 없는 장애인 피의자 신문과 피해자 조사, 시각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 염전노예 피해자 신고 무시 및 수사 미진, 여성 피의자에 대한 성희롱, 임산부 및 산모에 대한 유치장 내 보호조치 미흡, 속옷 탈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미성년 피의자 보호조치 미흡, 미성년 피의자 불법구금, 부적절한 미성년자 탐문수사,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및 모욕적 발언, 외국인 강제연행, 외국인 보호소 내 폭행 등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영역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나타났다.

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1)

이를 종합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① 범죄 수사 및 조사 과정,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의 「헌법」 및 법률 등 미준수·위반, ② 검찰·경찰 업무 수행의 적절성 부족, ③ 외부 압력이나 영향력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의 검찰·경찰 업무 수행, ④ 수사기관과 다른 인권보호기관 및 인권침해 방지기구와의 연대 부족.

5. 현행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제도 및 인권수사 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경찰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법 중심적 접근방식을 견지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 목적과 효과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에 수사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 인권수사 매뉴얼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항목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수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① 사법경찰관리 지도·감독 및 사법경찰관리 신청 체포·구속영장 등 심사 강화를 통해 인신구속의 적정성·신중성을 제고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보장 및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보호 등 형사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② 검찰청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브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널리 홍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③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효율성 제고보다는 전문성 강화에 목표를 둔 검찰·경찰 업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검찰·경찰 공동의 실질적인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사과정은 피해자·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이라는 한계 내에서 실제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삼는 절차이기에 검찰과 경찰의 활동이 분절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수사기관의 구조적·문화적 특성과 여타 기관과의 관계에 적합한 검찰·경찰 공동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 사례 교육 및 전파, 법교육과 관련 직무교육, 피의자 등에 대한 태도 개선 훈련, 검찰·경찰 구성원 선발 및 인사평가에 인권보장역량 관련 사항 반영, 검찰직원·경찰직원·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검찰·경찰 조직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①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대원칙으로 ‘참여’, ‘책임성’, ‘비차별’, ‘권한강화’, ‘인권 기준과의 연계’를 제시하고, ② 이를 현행 경찰 인권영향평가 4대 기본원칙,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역량의 세 가지 차원과 함께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그리고 ③ 경찰의 수사과정에 초점을 맞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내사단계와 수사단계의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 ④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경찰 인권영향평가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수사과정에 중점을 둔 인권영향평가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아울러 검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⑤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방안(수사검사의 인권영향평가 요청, 인권보호담당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사항) 및 검찰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체크리스트(수사검사용)를 제안한다.

넷째,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인권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헌법」재판소·법원·검찰·경찰·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인권보호와 관련한 발전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기관들이나 국제인권기구들과 인권실태에 대한 공동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 1 장

서 론

강 태 경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인권은 흔히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이해되거나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¹⁾로 이해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한다. 그리고 동 규정은 ‘인권 침해’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기본권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다.

1) 해양경찰청, 인권수사매뉴얼(2004). 2면. 인권 개념의 형성사와 그 의미의 변천에 관한 심층적 논의에 관해서는 벤델 필즈,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박동천 역(모티브북, 2013)을 참고하기 바람.

국민의 인권의식은 나날이 높아가고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은 그 국가의 국내 문제에 만 머물기보다는 국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환경 조성을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가 국정과제로 설정되고,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이 실천 목표로 제시되었다.²⁾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으로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상세한 조치가 설정되었다.³⁾

이에 경찰·검찰·법무부 및 형사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장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이나 조직기구 개편의 수준을 넘어 각 형사사법기관의 인권 보장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호협조 및 견제 관계에 있는 검찰과 경찰을 둘러싼 인권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각 기관이 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데 목적을 둔다.

형사절차의 양대 지도이념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준수’는 실제의 형사절차의 운용에 있어서 종종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두 이념의 조화가 필요하다.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두 이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거나 어느 한 이념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이념을 실현시키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임무나 적정절차를 준수하는 의무는 모두 형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2) 윤지영 외,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11면.

3) 윤지영 외, 위의 책(주 2), 111면.

4) 조균석, 검찰업무와 인권(법무연수원 용역과제, 2012), 1면. 형사절차의 양대 지도이념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절차의 준수’로 규정하는 것은 통설이다(이재상, 형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2, §4/1). 판례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궁극적 목적을 둔다. 따라서 두 이념 간의 조화점은 정의 관념에 찾을 수밖에 없기에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진정사건은 매년 8천 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으며 200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후 2016년까지 인권 침해 누적건수는 8만 4천여 건에 이른다. 2016년도 기관별 인권 침해 접수현황으로는 총 8,167건에 검찰 134건, 경찰 1,437건, 구금시설 1,649건, 국정원 9건, 군대 198건, 기타국가기관 306건, 보호시설 3,033건, 사법기관 77건, 입법기관 2건, 지방자치단체 303건, 출입국관리소 등 59건, 각급 학교 576건, 공직유관단체 221건, 기타 163건이 발생하였다. 검찰, 경찰의 2016년도 인권 침해 진정접수 사건의 합계가 1,571건으로 전체 인권 침해 접수사건 8,167건 중 19.2%에 달한다.

〈표 1-1〉 국가인권위원회 기관별 인권 침해 진정사건 접수현황

(단위: 건)

구분	2016년 진정사건 접수건수	2015년 진정사건 접수건수	2014년 진정사건 접수건수
검찰	134	145	190
경찰	1,437	1,363	1,539
구금	1,649	1,715	1,631
국정	9	3	11
군대	198	153	182
국가(기타사항)	306	259	392
보호	3,033	3,473	3,464
사법	77	61	83
입법	2	6	3
지방자치	303	445	387
출입국	59	81	18
학교	576	551	497
공직유관	221	190	230
기타	163	55	81
합계	8,167	8,500	8,708

출처: 2016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7, 96면.

5) 조균석, 검찰업무와 인권(법무연수원 용역과제, 2012), 1면.

예를 들어, 2015년 5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참고인이 그 다음 날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그 원인의 분석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피조사자의 자살 사고 원인 분석과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하였다.⁶⁾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 및 유치인에 관해서 유치장 화장실 이용 시 CCTV상 신체노출 문제, 여성 유치인 위생문제, 입감 과정에서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정밀검사,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상시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문제, 전염성 질환을 보유한 유치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의료적 대처가 부족한 점과 관련하여 보완 및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⁷⁾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2008년과 2012년에 살수차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그 사용 기준을 부령 이상에서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다.⁸⁾ 그러나 경찰청장은 이를 불수용하였고, 이는 2015년도 시위 농민의 사망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로서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가 시행된 바 있으며, 인권상황의 평가가 제3의 독립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성,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민-경 협력체계 문제, 경찰 교육훈련 문제, 경찰윤리 문제, 경찰 조직 문제 등이 추가적인 과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⁹⁾ 또한 경찰은 2005년 7월부터 경찰 인권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홈페이지의 경우 단순한 홍보용으로 구체적인 인권 보호와 관련한 활동이나 자료 및 관련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경찰은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이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 보호 규칙」으로 개정하고 2018년 5월 14일부로 발령하는 등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침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찰행정의 전반을

6) 2016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7. 51면.

7) 2016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7. 44면.

8) 2016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7. 51면.

9)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7. 349면.

10) 심동준, "12년간 운영됐는데 국민들은 모르는 '경찰인권센터'", <뉴스시스> 2017. 7. 2.자 기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30_0000027980, 최종접속일 2018.6.25.).

재설계하고 제도화 하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¹¹⁾ 이와 관련한 보완점과 문제점 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인권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2005년 인권 침해센터를 설치·운영한 바 있으며,¹²⁾¹³⁾ 법무부는 2007년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하였다.¹⁴⁾ 2013년 검찰 인권지수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검찰 인권지수 측정의 정례화, 평가의 공정성과 합당성에 대한 보완, 검찰 인권지수 전담인력의 확충 등이 미비점 내지는 보완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¹⁵⁾

경찰과 검찰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사건과 인권 침해 진정사건의 접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와 대안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검찰·경찰개혁 문제는 근본적으로 두 기관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와 연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권 보장은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범죄통제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 요구 사이의 긴장과 갈등관계에 놓이므로 인권 보장 강화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성과 개혁 방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정치적 수사가 형사사법개혁을 왜곡할 경우 인권에 적대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개혁은 인권원칙을 기준으로 방향과 내용이 설정되고 검증받아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각각 발표한 권고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법무·검찰개혁위원

11) "경찰, 인권행정 속도 낸다! 경찰청 인권규칙 전면 개정"(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Id=20289&bbsId=B0000161&searchCnd=&searchWrd=§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911&viewType=&delCode=0&option1=&option2=&option4=&option5=&deptId=&larCdOld=&midCdOld=&smCdOld=&orderType=&pageUnit=10&pageIndex=1&, 최종접속일 2018.6.25.).

12) 검찰청 인권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spo.go.kr/incheon/notice/photo/photo.jsp?mode=view&board_no=162&article_no=11752, 최종접속일 2018.6.25.).

13) 현재 검찰 온라인민원실에서 인권 침해 신고 항목이 있으나 임시폐쇄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http://www.spo.go.kr/minwon/index.jsp, 최종접속일 2018.6.25.).

14) KTV 국정와이드, "법무부,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발족'", KTV 2007. 8. 6.wk 방송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2995, 최종접속일 2018.6.25.).

15) 노명선, 『검찰 인권지수 개발』(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3), 99-101면.

회는 총 14차에 걸쳐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총 10개의 권고안이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을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개혁위원회도 인권 보호 분과를 따로 설치하여 해당 분과에서는 총 15차에 걸쳐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또 다른 분과인 수사개혁 분과에서 발표한 권고안에도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및 인권 보호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그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해, 검찰·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은 국가인권정책 및 인권규범의 관점에서 검찰·경찰의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인권규범 위반 사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관해서는 절을 바꿔 설명하기로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검찰과 경찰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제2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논의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학술논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의 내용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해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중 미흡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언론보도(2009~2018년)를 분석함으로써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추적한다.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경찰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들(2014~2018년)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검찰·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인지 이론적 측면에서 확인한다. 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제도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검찰·경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검찰·경찰의 권한 나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있음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 과제의 성과 및 의의를 평가한다. 제1차부터 현 시점 제3차까지 각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강화 정책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정책 이행에 대해 평가한다. 분석과 평가의 목적은 성과와 한계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경찰과 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입안과 실행, 평가 단계 전반에 걸쳐 국가인권정책 기본 틀 안에서의 체계성과 일관성, 합리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제4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중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한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검찰·경찰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검토함으로써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를 찾아본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8~2017년) 중에서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중 미흡한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구체적인 사례 검토를 통해서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지표 체계 및 항목, 경찰 인권수사매뉴얼, 경찰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모색한다. 경찰이 인권 침해적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도입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사기관의 인권영향평가제도

16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1)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영국, 스코틀랜드, 국제사면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부, 유엔인권사무소 등 다양한 층위의 사례를 포괄하였다. 다음으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개관하였다.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논의 경과 및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도입된 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찰 인권영향평가지표 체계 및 항목, 경찰 인권수사매뉴얼, 그리고 경찰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 초점을 맞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아울러 검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위한 사전평가 체크리스트(수사검사용)도 제안한다.

제 2 장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논의 동향 분석

강 태 경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논의 동향 분석

이 장에서는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중 미흡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위해서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주요 일간지 보도 내용, 학술적 논의,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이 절에서는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언론보도(2009~2018년)를 분석함으로써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추적하고자 한다.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경찰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0년(2009~2018년) 5대 주요 일간지 기사 중에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경찰과 검찰의 역할에 대한 기사 78건을 분석하였다.¹⁾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 '경찰', '검찰', '검사', '인권'이 제목으로 사용된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총 86건의 기사가 선정되었고, 이 중 동일한 언론사의 중복되는 동일한 기사는 종합 기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최종적으로 78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2-1〉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동향

대주제	소주제	기사수	소계 (건)	게재시기(년)
인권규범 위반 관행	집회·시위	14	28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강압수사	8		2010, 2011, 2015, 2017
	장구	3		2010, 2013, 2014
	정보인권	1		2016
	강제집행	1		2018
	공판	1		2017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경 이미지	과거사	9	22	2012, 2015, 2017
	인권 경찰	9		2013, 2014, 2017, 2018
	인권교육	2		2010, 2015
	인권위	2		2010, 2011
검경 개혁	개혁	7	14	2010, 2016-2018
	수사권조정	7		2010, 2011, 2017, 2018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소수자 등	4	7	2013, 2014, 2016
	범죄피해자	3		2011, 2018
기 타	내부	3	8	2016, 2017
	공안검사	3		2016
	세월호	1		2014
	경찰실적주의	1		2010
총 계			78	

첫째, 검찰 및 경찰의 활동 중에서 인권규범 위반 사례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기사가 총 28건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고르게 분포하였다. 다음으로 검찰과 경찰에 의한 강압수사에 관한 비판적 기사가 8건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 심야조사 등과 같은 행태가 강압수사의 예로 지적되었다. 또한 경찰봉, 수갑 등과 같은 장구의 부당한 사용이나 과도한 사용을 지적하는 기사도 3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개인의 통신정보 보호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검사의 모욕적 언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과 경찰의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검찰과 경찰의 노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다룬 기사가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우선 검찰과 경찰에 의한 과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다룬 기사가 9건으로 주로 2017년에 집중되어 보도되었다. 다음으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 및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다룬 기사도 9건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인권 경찰’이라는 정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사가 늘었다. 이외에도 인권교육 실질화 및 강화 필요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한 기사도 있었다.

셋째, 검찰과 경찰의 개혁과 관련된 기사가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라는 가치의 관련성에 관한 기사는 7건이었다. 또한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기소권 문제에 관한 기사도 7건이었다.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개혁 이슈와 함께 다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기사도 눈에 띈다.

넷째,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에 관한 기사가 7건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적 기사는 4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인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적 기사도 3건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검찰과 경찰의 각 조직 내부의 문제 중에서 인권과의 관련성이 있는 기사가 7건으로 나타났다. 우선 검찰과 경찰 조직 내부에서 여성이나 하급자에 대한 관행적인 차별이 있다는 비판적 기사가 3건이었다. 그리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 내정 문제에서 경찰의 실적주의 문화가 경찰의 인권옹호기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공안검사 출신 대학교수가 인권 보호관에 임명되었던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 기사도 있었다.²⁾

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황교안 총리는 ‘대테러 인권 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교수를 위촉했다. 대테러 인권 보호관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공안과 통일법제 분야를 담당했던 해당 교수의 이력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김재중, “대테러 인권 보호관에 공안 검사 출신 임명”, <경향신문> 2016. 7. 21.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12334005&code=910100),

1. 검찰·경찰 개혁 이슈

검찰과 경찰의 개혁과 관련된 기사들은 수사 및 기소에 관한 권한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등의 조정 요청을 주로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수사권 조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가.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비판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0년에는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가속화하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법무부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뒤 불과 3년여 만에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형소법·「형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뇌물 등 권력형·조직형 범죄에 대한 법원의 증거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사법협조자 형벌 면책·감면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수사권 남용에 대한 제재와 사법방해죄 등과 같은 일부 내용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³⁾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에 힘입어 수사에 관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인권옹호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들에 대한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도 종종 소개되고 있다. 검찰 권한 축소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권력 집중이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⁴⁾ 또한 민주주의 원칙과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최종접속일 2018. 11. 5.) 등.

3) 김남일, “검찰 수사권 강화 법개정 ‘가속’ 수사효율-인권 침해 논쟁 증폭”, 〈한겨레〉 2010. 10. 6.자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2422.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4) 오창익, “권력 쪼개기, 검찰개혁의 핵심”, 〈경향신문〉 2016. 7. 20.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02223015&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만으로는 검찰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⁵⁾ 더욱이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태도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⁶⁾

한편으로는 검찰 권력 축소 및 통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경찰의 인권옹호기능 강화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 권한의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만큼 경찰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 이에 경찰은 과거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영상녹화 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⁸⁾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방침이 현실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원정화 간첩사건’, ‘지피에스(GPS) 간첩사건’, ‘김련희 사건’ 등 무리한 간첩 수사로 최근까지도 비판 받는 대공분실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방경찰청은 대규모 통합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⁹⁾

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경찰 관계 재설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11년

5) 오창익, “검찰개혁, 벌써부터 포기하는 건가”, 〈경향신문〉 2018. 1. 18.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82111015&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6) 오창익, “검사들만 받는 아주 특별한 대우”, 〈경향신문〉 2018. 5. 1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72106005&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7) 경향사설, “경찰 인권 침해 과거사 조사, 경찰개혁의 출발점 되기를”, 〈경향신문〉 2017. 7. 1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2128005&code=990101, 최종접속일 2018. 11. 4).

8) 정희완, “경찰, ‘인권 침해’ 도려내 수사권 조정서 우위 ‘포석’”, 〈경향신문〉 2017. 7. 1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1704001&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9) 김미향 “‘인권탄압’ 대공분실 없애랬더니…대규모 통합청사 짓는 경찰”, 〈한겨레〉 2018. 5. 14.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439.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경찰과 검찰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벌인 토론에서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과 “검사가 피의자가 되면 일반인보다 비난 받을 소지가 높아 인권 침해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 충돌하였다.¹⁰⁾ 그러나 “수사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 싸울 게 아니라 국민 인권을 위한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의 지적처럼 수사권 조정의 방향은 인권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¹¹⁾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정부의 조정안 등으로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합의안에 대하여 검찰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여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서면으로 적시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¹²⁾ 또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검찰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1차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¹³⁾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 경찰의 ‘보안 공룡화’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안보인권 감사관에 의한 견제 방안과 ‘국가경찰’에 수사·정보·보안 업무를, ‘자치경찰’에 치안·교통·경비 업무를 맡기는 방안이 제시되었다.¹⁴⁾

반면에 경찰의 권한 강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공정성과

10) 신광영·주애진, “**“벤츠검사, 경찰이 수사해야”… 檢 “검사 인권 침해 소지”**”, 〈동아일보〉 2011. 11. 30.자 기사 (<http://news.donga.com/Issue/List/03060000010005/3/03060000010005/20111130/42242508/1>, 최종접속일 2018. 11. 5).

11) 이문영·송재경화·이승준·박태우, “**“검찰권력 분산이 인권 측면 선 옳다”**”, 〈한겨레〉 2011. 6. 30.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5273.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12) 김윤수·조동주, “**검찰 “인권 보호 위해 檢 수사지휘 필요”, 경찰 “서면. 수사지휘 확대로 책임 강화”**”, 〈동아일보〉 2018. 6. 25.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80625/90739579/1>, 최종접속일 2018. 11. 04).

13) 김지혜, “**“영장청구권 독점, 검찰 비대화” “인권 등 기본권 보호 위해 필요”**”, 〈경향신문〉 2018. 2. 20.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0222101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4).

14) 이정하·김미향, “**“인권감사관제·자치경찰제 등 보안경찰 다양한 견제방안 떠올라”**”, 〈한겨레〉 2018. 6. 5.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769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04).

인권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떼어주는 식으로 개혁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경찰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이미 초과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수사권 강화보다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직접 통제 강화를 통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¹⁵⁾

2.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경찰의 이미지 개선 요청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33.2%)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분야’(21.2%)를 꼽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으로는 경찰(16.9%),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을 지목하였다.¹⁶⁾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권의식 조사에서는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으로 정치인(15.1%), 검찰(12.6%), 군대 상급자(11.6%), 직장상사(9.6%), 경찰(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⁷⁾ 이렇듯 경찰과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아래서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과 경찰의 이미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보도 내용을 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이미지 개선

최근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과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검찰청 공안부는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받아 온 시국사건 6건의 재심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자발적인 반성을 시작하였

15) 오경식, “검찰개혁의 본질은 공정성과 인권 보장이다”, <경향신문> 2017. 4. 1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72042035&code=990304, 최종접속일 2018. 11. 5).

16) 정희완, “누가 인권 침해 가장 많이 하나… “경찰·검찰””, <경향신문> 2011. 12. 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7214852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17) 국가인권위원회, <2016 국민인권의식조사>(2016), 84면.

다.¹⁸⁾ 그리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할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잘못된 검찰권 행사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제기된 사건 등을 재조사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한 '검찰 과거사 청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⁹⁾ 권고안에 따르면, 조사 위원회는 1년 간 최대 9명의 민간위원이 활동하며 법무부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서의 기능을 보장받는다.

나.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이미지 개선

검찰에 비해서 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언론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다루어졌다. 경찰관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신고 건수는 모두 6,946건으로, '폭행, 가혹행위 및 과도한 장구 사용'으로 인한 신고가 1,869건(27%)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과 욕설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는 1,345건(19%),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편파부당수사'가 1,031건(15%)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²⁰⁾ 이처럼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잇따라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근절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²¹⁾ 경찰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지급한 배상금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6억 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법을 무리하게 집행한 데 따른 배상책임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²²⁾

18) 구교형, "달라진 검찰...인권 침해 사건 직접 재심 청구해 '무죄 구형'", <경향신문> 2017. 9. 1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7221900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4).

19) 홍석재, "법무·검찰개혁위 "인권 침해 조사할 검찰 과거사위 설치하라"", <경향신문> 2017. 9. 29.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3147.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20) 박홍두, "경찰관 인권 침해 신고 건수, 5년간 7000건 육박", <경향신문> 2013. 9. 22.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9220600005, 최종접속일 2018. 11. 5).

21) 홍석재·황춘화·손준현, "인권 침해 개선권고 무시 '인권 위에 경찰'", <한겨레> 2010. 6. 29.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08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과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과거 공권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20명 규모의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재조사 한다. 사건 진상, 인권 침해 내용, 원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사하며 향후 조사 결과를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 ‘밀양 송전탑 건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참사’ 사건 등이 1차 조사 대상이다.²³⁾

이와 같은 진상조사 외에도 경찰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상징적 행사들도 개최하였다. 2012년 경찰청은 서울 남영동 인권센터에서 제1회 경찰 인권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 폭력의 장소였던 남영동 분실에서 영화를 매개로 과거를 반성하고, 인권 보호 의지를 다졌다.²⁴⁾ 또한 2017년 말에 경찰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을 보호하고 신군부의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다가 도경국장에서 강제로 쫓겨난 고 안병하 경무관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여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²⁵⁾

현 정부 출범 후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포함하면서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기로 하고 경찰 내 인권 향상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²⁶⁾

22) 서영지, “경찰이 인권 침해·과실…6년간 국가배상 36억”, 〈한겨레〉 2014. 8. 10.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8972.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23) 정희완, “경찰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건’ 파헤친다”, 〈경향신문〉 2017. 8. 25.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215400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4).

24) 류인하, “경찰청, 인권유린 현장에서 ‘인권영화제’”, 〈경향신문〉 2012. 8. 2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9215530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25) 안관욱, “‘인권 경찰’ 표상 고 안병하 경무관 흉상 제막”, 〈한겨레〉 2017. 11. 22.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0196.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26) 유근형, “靑 “경찰, 수사권 조정 원하면, 인권 보호부터”, 〈동아일보〉 2017. 5. 26.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70526/84571995/1>, 최종접속일 2018. 11. 5).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92.3%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89.7%로 떨어졌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를 주문한 뒤 인권·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인권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²⁷⁾ 또한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도 2017년 6월 ‘경찰 인권 과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초이자 필수”라며 “국가폭력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²⁸⁾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²⁹⁾ 실제로 인권 교육을 받은 경찰관과 그렇지 않은 경찰관은 동일한 연행 장면 영상을 보면서 해당 상황에서 어떤 점이 인권적 쟁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서로 다른 이해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실효성이 있다.³⁰⁾ 물론 이전에도 인권교육이 있었지만 인권과 안보의 관계에 관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2014년 경찰청에서 마련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아카데미’ 행사에서는 ‘군사안보를 넘어 포괄적 인간안보’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 안보와 인권에 있어 경찰 역할의 중요성이 설명되었다.³¹⁾ 반면에 2017년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에 중점을 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입 경찰관들은 “인권 수호자로서 공정하고 따뜻한 경찰을 향한 포부와 결의를 담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인권 경찰이 되겠다.”는 ‘인권 경찰 다짐’을 낭독하고 이 결의문을 경찰인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³²⁾

27) 정희완·허진무, “‘과거사 철저히 반성한 ‘인권 경찰’ 원한다””, 〈경향신문〉 2017. 6. 1.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1215200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28) 박수지, ““‘인권 경찰’ 되려거든 사과부터 하라””, 〈한겨레〉 2017. 6. 1.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96866.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29) 참고로 피의자 고문으로 경찰관 5명이 구속된 서울 양천경찰서가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인권교육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외부 강사에게 아유를 보내 한때 강의가 중단됐다(경향사설, “인권 강연 아유하는 경찰 아직 정신 못차렸다”, 〈경향신문〉 2010. 7. 15.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52305195&code=990101, 최종접속일 2018. 11. 5).]

30) 최우리, ““악성 민원인에게도 인권이 있냐”던 경찰관들 “총경 이상 간부들이 인권교육 받아야””, 〈한겨레〉 2015. 10. 9.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12219.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31) 송호균, “‘재난과 인권’ 공부하는 경찰”, 〈한겨레〉 2014. 6. 24.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392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32) 선명수, “경찰 간부 임용식서 ‘인권 경찰’ 첫 다짐”, 〈경향신문〉 2018. 3. 13.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3230201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3. 검찰·경찰의 인권규범 위반 관행

지난 10년 간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및 부적절한 채증, 검찰과 경찰에 의한 강압수사, 장구의 과도한 사용, 개인의 통신정보 보호 미흡,³³⁾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³⁴⁾ 공판검사의 언행³⁵⁾ 등이 검찰 및 경찰의 활동 중에서 인권규범 위반 사례들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다. 아래에서는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검찰과 경찰의 강압수사 관행, 과도한 장구 사용 관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 집회·시위 과잉 진압 및 부적절한 채증

경찰청은 2010~2012년 미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인권보고서의 회신 자료에서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 주장이나 고소·고발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2010~2012년 16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주장이나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³⁶⁾ 그러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과정에 있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논란은 비일비재하다.

33) 국정원과 경찰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간부, 공익변호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통사에 마음대로 요청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조회 요청 시 법원 영장을 받게 하고, 자료 제공 시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김형규, “‘국민사찰법’ 공포! 환경단체 대표·민주노총 간부·인권재단 변호사…국정원·경찰 등 수사기관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 <경향신문> 2016. 3. 4.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4225933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34) 2016년 재건축 대상 건물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용역 인력이 주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데도 현장에 있던 경찰과 법원 집행관들이 수수방관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전 서울 노원경찰서 서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경찰의 강제집행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선명수, “강제철거 용역 폭력 방관한 경찰에 인권위 ‘주민 인권 침해…지침 마련을’”, <경향신문> 2018. 3. 2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9215400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35) 유명 연예인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재판에서 기소된 송씨를 향해 검사가 모욕적이고 편견적인 언어 사용으로 방청석에서 실소,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현소은, “피고인 인권 외면.한, 편견 가득한 검찰의 ‘입’”, <한겨레> 2017. 7. 5.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1647.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36) 김진우, “경찰청 ‘한국엔 과잉진압 없다’… 미 인권 질의에 3년간 거짓답변”, <한겨레> 2013. 10. 31.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2247295&code=940202, 최종접속일 2018. 11. 5).

대표적인 예로는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공사 반대 시위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인권 침해 조사단은 송전탑 건설을 항의하던 노인들이 실신했음에도 한국전력과 경찰이 각각 구급차 진입을 돕지 않고 대책위 관계자를 연행해 경찰에 넘기는가 하면 CCTV를 통해 주민들을 감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³⁷⁾ 또한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대포나 유해물질 살포와 같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사전 집회 금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고, 갑호비상령이 발령되어 차벽이 설치되고 물대포,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이 사용되었고, 시위가 범죄화 되었다.³⁸⁾ 시민감시단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2017년 6월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회견회에서 살수차의 이름을 ‘참수리차’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산살수만으로도 경고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증명된 직사살수를 지속적으로 감행하였다.³⁹⁾

집회·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에 의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집회·시위를 방해함으로써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판결 다음 날 「헌법」재판관의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경찰의 경력 배치에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고, “경찰이 무력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⁴⁰⁾ 이 진정은 2016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오래 전부터 있었다. 1999년 대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촬영(채증)을 허용하고 있다.⁴¹⁾ 운전면허증 전산시스템을 「집시법」 위반자 검거에 활용하는 것도

37) 최슬기, “경찰, 청도송전탑 대치 현장 ‘인권 침해’ 심각”, 〈경향신문〉 2014. 8. 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72137065&code=940202, 최종접속일 2018. 11. 5).

38) 박수지, “민중총궐기 때 경찰 ‘기습전 인권 침해’”, 〈한겨레〉 2015. 11. 20.자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718418.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39) 허재현, “물대포 이름만 바꾼다고 ‘인권 경찰’ 되나”, 〈한겨레〉 2017. 6. 6.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723.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40) 박태우, “인권위 ‘기자회견 방해한 경찰, 인권 침해’”, 〈한겨레〉 2016. 1. 26.자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870.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4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탈법의 소지가 있으며, ‘마구잡이식’ 사진촬영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⁴²⁾ 더욱 걱정스러운 사건으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채증 사진 전시회를 열고 정기적으로 ‘베스트 포토그래퍼’ 시상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해당 지방경찰청은 전시회와 시상식의 목적을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인권단체는 “절박한 이유로 집회에 나온 시민을 콘테스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인데다, 수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채증 사진을 외부기관 전문가에게 회람하게 해 평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⁴³⁾ 최근 경찰은 청와대의 ‘인권 경찰’ 주문에 따라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사진기·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모호한 기준으로 채증하여 인권단체로부터 ‘마구잡이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채증의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⁴⁴⁾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인 ‘인권침해감시단’이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막고 반인권적 상황을 예방하고 감시하기도 하였다.⁴⁵⁾ 또한 국제인권감시단은 2015년 11월 14일에 개최된,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1차 민중총궐기투쟁대회 당시 이루어진 과잉진압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를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⁴⁶⁾

경찰이 집회·시위 참여자들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국불안정보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은 경찰이 인권 경찰이 되고자 한다면 집회가 왜 민주주의의 보루인지 이해해야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많은

42) 한겨레사설, “인권 침해 소지 높은 경찰의 마구잡이 영상 채증”, 〈한겨레〉 2011. 7. 19.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88077.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43) 박태우, “‘인권 논란’ 채증사진, 경찰 눈엔 예술?”, 〈한겨레〉 2011. 9. 2.자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680.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44) 정희완, “청 ‘인권 경찰’ 주문에…경찰, 집회·시위 현장 ‘채증 기준’ 개정 검토”, 〈경향신문〉 2017. 5. 30.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30060002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45) 김미향, “국내외 인권단체들, 경찰·시위대 폭력 감시”, 〈한겨레〉 2015. 12. 4.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466.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46) 김지원, “국제감시단 “한국 경찰, 민중대회 물대포·차벽은 인권 침해””, 〈경향신문〉 2015. 12. 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9220053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목소리를 내게 하는 데 자신의 역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일반 참여자들에 대한 교통방해죄 적용을 멈추고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⁷⁾ 또한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평택 쌍용차 파업 농성을 주도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 지부 등을 상대로 경찰이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과 노조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소 취하를 권고했다.⁴⁸⁾

인권정책연구소 문경란 이사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역할이지만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남아있어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는 개념이 희박하나, 이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문을 받아들인 경찰이 인권 경찰로 재탄생하고, 국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권자로 거듭나기를 주문하였다.⁴⁹⁾

나. 강압수사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받은 일선 경찰의 강압적 조사 사례를 모아 공개했다. 욕설이나 밤샘조사, 얼굴에 물 끼얹기 등 모욕적인 조사 행태가 있으며, 특히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해 무고한 시민을 72일이나 구금한 사례는 실적주의에 목매는 경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다.⁵⁰⁾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시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과정에서 연행된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⁵¹⁾

그런데 경찰의 강압수사 관행에 관해서 한 현직 경찰서장이, 경찰 지휘부가 과도하게 실적 경쟁을 몰아붙인 탓에 양천경찰서 고문·가혹행위 사건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를 일선 경찰관 개인들의 일탈로 여기기보다는 실적경쟁주의 문화를

47) 김혜진, “선언 말고 진짜 ‘인권 경찰’”, 〈한겨레〉 2017. 7. 13.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732.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48) 김수경, “법원 판결까지 뒤엎으라는 경찰 인권조사위”, 〈조선일보〉 2018. 8. 29.자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012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최종접속일 2018. 11. 4).

49) 문경란, “평화시위의 동반자, 인권 경찰”, 〈경향신문〉 2017. 9. 1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22056035&code=990308, 최종접속일 2018. 11. 4).

50) 손준현, “부당구금·욕설·물세례…인권 잊은 경찰”, 〈한겨레〉 2010. 7. 4.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28797.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51) 류인하, “‘반값 등록금 시위’ 연행 대학생…경찰, 강압수사·인권 침해 논란”, 〈경향신문〉 2011. 6. 14.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142147085&code=940401, 최종접속일 2018. 11. 5).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⁵²⁾ 실제로 독직폭행 사건이 있었던 특정 경찰서에서는 유사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참여자 일부는 경찰의 자정 노력과 교육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적주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고 보도되었다.⁵³⁾

강압수사에 관해서는 특히 검찰 조사 후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였다.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인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버려야 할 구악(舊惡)으로 손꼽힌다. 물론 검찰도 피의자 등의 자살과 강압적 수사의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2011년 대검 감찰본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을 당한 피의자가 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폭행이 벌어졌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담당 검사 징계를 건의했다.⁵⁴⁾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 수사 중 자살하는 피의자 수가 크게 늘었다. 2005~2007년 1~3명이던 자살자 수는 2015년 상반기에만 15명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피의자를 버려 끝까지 몰고 가는 검찰의 수사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⁵⁵⁾ 더욱이 2015년에는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여성이 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참고인에게 피의자 전환 가능성과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려주는 절차 없이 조사를 하였고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배제했고 재산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겁주는 등의 인권 침해 의혹이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부정했다.⁵⁶⁾

최근 검찰은 수사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려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밤 11시 이후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하는 심야조사 금지 방안을 추진하

52) 한겨레사설, “‘인권경시 실적주의’가 경찰 일탈 불렀다”, 〈한겨레〉 2010. 6. 29.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28107.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53) 류인하, “양천서 인권강연’에 고개 떨군 경찰”, 〈경향신문〉 2010. 7. 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7181004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54) 동아사설, “‘버려야 할 구악(舊惡)’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동아일보〉 2011. 5. 28.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10528/37599026/1>, 최종접속일 2018. 11. 5).

55) 김경학, “[언론자유·인권 옥죄는 박근혜 정부] 피의자 자살도 급증…‘검찰의 무리한 수사 탓’”, 〈한겨레〉 2015. 9. 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7000000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5).

56) 광희양, “참고인 조사 후 40대 여성 자살…변협 “인권 침해 의심” 검찰 “사실 왜곡””, 〈경향신문〉 2015. 9. 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82224395&code=9403011, 최종접속일 2018. 11. 5).

고,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간주하고 수사에 착수하던 관행을 바꿔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고소인과 대등한 지위로 대우하는 방침을 내놓았다.⁵⁷⁾

다. 과도한 장구 사용

경찰의 과도한 장구 사용으로 시민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험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갑부터 채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해묵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장구 사용과 관련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⁵⁸⁾ 그러나 경찰의 장구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인권 침해 소지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비판 받는다. 우선 2013년 경찰은 수갑·경찰봉 등 장구 사용 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용 보고서 의무 폐지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무분별한 경찰 장구 사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로 도입된 이 의무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경찰력 행사는 쉬워지고 인권 침해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⁵⁹⁾ 또한 2014년에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호송할 때 피의자의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이른바 ‘뒷수갑’ 방식을 새 수갑 사용 규정의 원칙으로 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갑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뒷수갑’ 방식을 채용한 데 대해 논란이 일었다.⁶⁰⁾

4.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57) 현일훈·박사라, “‘심야조사는 인권 침해 … 검찰 조사 밤 11시 이후 금지’”, 《중앙일보》 2017. 12. 27.자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2182661>, 최종접속일 2018. 11. 4).

58) 손준현, “특하면, 수갑채우는 경찰…인권위서 제동”, 《한겨레》 2010. 6. 13.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2544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59) 박유리, “경찰 ‘수갑·경찰봉 적극 사용’ 지시…민변 ‘인권 침해 소지’ 반발”, 《한겨레》 2013. 11. 10.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0550.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60) 박은하, “경찰, 다시 피의자 수갑 뒤로 채우기… ‘인권 뒷걸음질’”, 《경향신문》 2014. 6. 1.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12154225&code=940202, 최종접속일 2018. 11. 5).

범죄피해자에 대해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노출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선정해 발표할 정도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검찰의 반인권적인 태도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⁶¹⁾ 예를 들어, 성폭행 피해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온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경찰관이 소장 샘플로 8년 전 실제로 접수된 성폭력 피해 고소장을 견본으로 주는 일이 발생하였다.⁶²⁾ 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성폭력을 당한 경위와 장소 등도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었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경찰은 뉴스 촬영을 위해 피해 여성을 불러 피의자 2명과 함께 촬영에 응하도록 하기도 하였다.⁶³⁾ 이외에도 검사가 지적장에 여중생이 성폭행 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해자 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하고 피해 여중생을 무고로 기소하고, 판사가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실무수습 과정 로스쿨 학생들의 방청을 허가해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는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경위가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건 등도 있었다.⁶⁴⁾

최근 종종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16년 발생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행정입원’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나 인권단체들은 이 발언에 대해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⁶⁵⁾ 이와 같은 우려는 현실로

61) 장수경, “‘허리 비틀면, 성관계 못 피하나’ 어떤 검사는 인권 걸림돌”, 〈한겨레〉 2018. 1. 22.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886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62) 김기성, “실제 성폭행 고소장을 견본으로…인권 뺑개친 경찰”, 〈한겨레〉 2011. 2. 16.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3621.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63) 신민기, “‘이 여자가 성폭행당할 뻔한 여성’ 서울경찰청의 ‘인권불감증’”, 〈동아일보〉 2011. 2. 22.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10222/35040348/1>, 최종접속일 2018. 11. 5).

64) 이정국, “‘2013년 여성인권 걸림돌’ 판검사·경찰 8명”, 〈한겨레〉 2014. 1. 16.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20150.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65) 이승준, “경찰‘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적극 조치’…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낙인, 인권 침해””, 〈한겨레〉 2016. 5. 23.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5084.html,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신질환과 범죄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명단을 수집하였다.⁶⁶⁾

성소수자에 대한 경찰의 그릇된 배려로 도리어 원하지 않게 성적체성 또는 성지향성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경찰 인권정책 실무자 인권심화 직무연수’에서 방송인 홍석천 씨가 ‘소수자 인권과 차별: 경찰이 동성애자를 대하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경찰의 잘못된 배려로 원치 않은 아웃팅을 당한다.”며 “불편한 배려보다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⁶⁷⁾

5. 수사기관 구성원의 인권 문제

앞서 살펴본 언론 보도들은 검찰·경찰이 시민들의 인권 보호에 미흡했던 점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검찰·경찰 조직 구성원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도 있었다.

우선 정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경찰청에서 시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허울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가 있었다.⁶⁸⁾ 이 기사에서는 무기계약직원들이 쉬어가고 조건 아래서 초과 근로수당, 성과급, 수당의 기본 권리도 없이 정원 외의 취급을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경찰 조직 내에 존재하는 성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다.⁶⁹⁾ 이 기사는 경찰이 여전히 남성만의 조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여성 경찰관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73조에 보장된 생리휴가 대신 병가를 내도록 하는 조직 내부 관행을 전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내 구성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직급에 따라 감찰의 빈도가 달라지는 것은 엄연한

최종접속일 2018. 11. 5).

66) 한겨레사설, “정신질환자 인권 무시하는 경찰과 복지부”, 〈한겨레〉 2016. 6. 27.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49910.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67) 박순봉, “‘성소수자들 사회적 고통 여전’ 홍석천, 경찰관들에 인권 강의”, 〈경향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02101395&code=10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68) 오창익, “허울뿐인 경찰청 정규직”, 〈경향신문〉 2016. 2. 3.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32109415&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69) 오창익, “생리휴가도 쓰지 못하는 경찰관”, 〈경향신문〉 2017. 7. 2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71033001&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⁷⁰⁾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감찰은 낮은 계급의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쏠려있다. 감찰권 자체를 행정안전부 등 외부에 넘기는 등의 개혁을 하거나, 최소한의 수사절차에 준해서 감찰 당하는 사람들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이 절에서는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2014~2018년)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검찰·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인지를 이론적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제도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67편의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최근 5년(2014~2018년) 학술 동향

대주제	소주제		논문수	소계(건)
검찰·경찰 개혁 이슈	기소편의주의 견제		3	21
	수사권조정		9	
	영장청구권		9	
수사단계별 쟁점	범죄발견단계	내사	1	19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3	
	수사진행단계	경찰수사 사무환경	1	
		체포(긴급체포, 준현행범체포)	3	
		압수수색	3	
		영상녹화	2	
		피의자신문	1	
		개인정보보호	수사자료표	
	피의사실공표죄		1	
	형사절차전자화법		1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및 불법행위		2	

70) 오창익, “여경 죽음 내몬 경찰의 감찰”, <경향신문> 2017. 11. 23.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1232044005, 최종접속일 2018. 11. 4).

대주제	소주제	논문수	소계(건)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피해자	9	13
	장애관	1	
	외국인 노동자	1	
	소년보호	2	
수사 외 경찰활동과 인권	경찰활동	2	3
	집회 해산	1	
경찰 조직 내 문제	여성경찰관	1	5
	의무경찰 인권 ⁷¹⁾	1	
	경찰조직문화	3	
경찰인권교육 실질화	인권교육	3	3
기 타	유엔정례인권검토제도 활용 방안	1	3
	검사 인사시스템 개선	1	
	형사조정제도 개선	1	
총 계			67

최근 5년 간 학계는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경찰 권한 분배 문제를 「헌법」적 차원과 형사사법제도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다루고, 수사와 관련된 쟁점들을 범죄발견 활동(내사, 불심검문), 수사진행(체포,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이라는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검찰과 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학술적 논의는 법학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 초점이 인권의식 및 조직문화 개선보다는 법제도의 개선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1. 검찰·경찰 권한 분배

최근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71) 조성제, “의무경찰 징계영창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을 중심으로 -”, 「法學研究」 25(1) (2017), 103-125면.은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에 근거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징계영창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비례원칙을 충족하였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반대이견에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구금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영창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상 인신구속 과정에서 적법절차원리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상 구속적부심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상 인신구속에 있어도 법원에 의한 구속의 적부를 심사해야 한다. 의무경찰제도는 2023년 폐지될 예정 이기에(이가영, “의경 2023년 완전 폐지…경찰관 더 뽑는다”, 「중앙일보」, 2017.5.30.자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1619465>, 최종접속일 2018.4.5.)) 경찰 조직 내부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제외한다.

관한 학술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 기소편의주의의 견제

우선 우리나라 기소제도에 대한 비판과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검사의 기소편의주의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한 및 개선 방안은 기소법정주의 채택, 검찰시민위원회의 역할 강화, 경찰의 경미사건 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으로 다양했다.

우선 검찰에게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현행 기소제도의 문제점을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견해를 살펴보자.⁷²⁾ 이 견해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검찰에게 많은 전권이 부여되는 제도적 측면에 기인”한다.⁷³⁾ 이는 외부의 간섭과 검사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없는 기소편의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⁷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두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⁷⁵⁾ 달리 우리 현행법상 기소유예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검사에 대한 무제한적 기소재량, 수사재량이 부여되어 있다.⁷⁶⁾ 그러므로 검찰의 무제한적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소독점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상설특검제와 기소재량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기소법정주의가 제안되었다.⁷⁷⁾ 아울러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되는 현행 기소제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론과 입법론이 제안되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원칙적으로 혐의가 있는 한 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⁷⁸⁾ 둘째, 기소제도의 기본원칙이 기소법정주의임을 입법을 통해 밝히고, 독일 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소유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⁷⁹⁾

다음으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72) 김하중, “우리나라 기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人權과正義: 大韓辯護士協會誌」 443) (2014), 49-71면.

73) 김하중, 위의 글(주 72), 50면.

74) 김하중, 위의 글(주 72), 52면.

75) 김하중, 위의 글(주 72), 52-53면.

76) 김하중, 위의 글(주 72), 53-54면.

77) 김하중, 위의 글(주 72), 60면.

78) 김하중, 위의 글(주 72), 67면.

79) 김하중, 위의 글(주 72), 69-70면.

시민들이 참여하여 검찰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견해도 있었다.⁸⁰⁾ 이 견해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검찰소속 위원회 중의 하나로 검찰예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⁸¹⁾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의 변경이 요구되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속력도 부여해야 하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약자들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⁸²⁾

한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재량권을 경찰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⁸³⁾ 경찰은 수사단계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 등으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⁸⁴⁾ “그러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큰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⁸⁵⁾ 이에 위원회가 행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 경미범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경찰단계에서 신속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⁸⁶⁾

나. 수사권조정

검찰·경찰의 권한 분배 문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귀결된다. 2018년 11월 현재까지도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80) 박호현·김종호·백일홍, “형사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검찰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0(2) (2016), 119-152면.

81) 박호현·김종호·백일홍, 위의 글(주 80), 139면.

82) 박호현·김종호·백일홍, 위의 글(주 80), 141-144면.

83) 김현수·김학범,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6(4) (2017), 3-24면.

84) 김현수·김학범, 위의 글(주 83), 3면.

85) 김현수·김학범, 위의 글(주 83), 19면.

86) 김현수·김학범, 위의 글(주 83), 19-20면.

우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우선 반대 입장으로는 OECD 35개 회원국의 수사·기소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들 수 있다.⁸⁷⁾ 이 연구에서는 OECD 35개 회원국의 제도 비교 결과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5개국의 사례만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한다.⁸⁸⁾ 이에 해당 연구는 수사·기소 분리론이 영장신청권자를 검사 2,000명에서 사법경찰 160,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속 등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폭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⁸⁹⁾

또한 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⁹⁰⁾ 이 지적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사법경찰의 수사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토록 하여 검사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근본 취지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수사과정의 사법적 감독과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조화하는 데 있다.”⁹¹⁾ “수사종결권은 소추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기소권에 내재되는 권한이므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결여되어 인권 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⁹²⁾

반면에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국민인권 보장을 제고하자는 주장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5개국의 수사·기소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검찰·경찰 간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균형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⁹³⁾ 해당 연구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따른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행 경찰조직 내 인권

87) 신태훈,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형사법의 신동향』 57 (2017), 33-128면.

88) 신태훈, 위의 글(주 87), 36-116면.

89) 신태훈, 위의 글(주 87), 34면.

90) 정웅석, “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 부여시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59 (2018), 1-85면.

91) 정웅석, 위의 글(주 90), 1면.

92) 정웅석, 위의 글(주 90), 1면.

93) 조만형, “수사기관간 수사권의 합리적 균형관계 모색”, 『법학연구』 67 (2017), 289-323면.

보호기구 및 현행 경찰음부즈만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루고 있다.⁹⁴⁾ 전찬희·이병근은 수사권 구조조정을 통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해야 하는 것은 “검찰 제도의 합리적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의에 부응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편의도모를 핵심으로 하는 수사 및 기소권 독점구조의 개선책은 경찰과 검찰의 협업 관점에서의 형사절차여야” 하며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부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제 강화” 등 경찰권 비대화 예방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⁹⁵⁾

또한 최용석은 수사개시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형집행권 등 수사 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검찰에 대한 불신, 수사권 배분에 대한 검찰·경찰 갈등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절차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바꿔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부여하여 양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⁹⁶⁾ 최호진도 권력의 분립과 효율성의 원리를 통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⁹⁷⁾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경찰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수사 인력의 전문화, 인권 보호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⁹⁸⁾

수사·기소 분리 목적이 검찰권 통제와 시민의 인권 보장 수준 제고라는 점에서⁹⁹⁾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이 부여된 후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이 몰각될 수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¹⁰⁰⁾ 수사·기소 분리 방안으로는 ①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찰 수사와 검찰의 예외적 직접 수사(직접수사안), ② 경찰 수사 후 검찰의 보충적 수사(보충수사안), ③ 경찰 수사 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및 경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보완수사요구안)이 제시되고 있고,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 조직

94) 조만형, 위의 글(주 93), 314-318면.

95) 전찬희·이병근, “수사·기소 시스템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 「법률실무연구」 6(2) (2018), 56면.

96) 최용석,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검찰·경찰 수사권한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8(2) (2015), 122-154면.

97) 최호진,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 「비교형사법연구」 19(1) (2017), 212-220면.

98) 최호진, 위의 글(주 97), 220-225면.

99) 윤동호, “대전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9(4) (2018), 169면.

100) 윤동호, 위의 글(주 99), 170면.

의 구성 방안으로는 ① 수사를 전담할 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안과 ② 경찰청 안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안이 제안되고 있다.¹⁰¹⁾ 이에 윤동호는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검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책임 수사가 가능하도록 송치편의주의 또는 송치유예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수사조직은 3원화하여 수사권을 자치경찰, 국가경찰, 공수처 3개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인권 보장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한다.¹⁰²⁾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원한다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연구도 눈에 띈다. 김무형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되어 있는 독일의 경찰과 검찰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착안점과 시사점을 얻고자하였다.¹⁰³⁾ 이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찰의 정치적 독립’, ‘별도의 수사경찰 선발 제도 도입’,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사후 검증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고, 수사경찰의 책임자는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선임되어야 하며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고, ② “수사경찰은 별도의 선발절차에 의해서 법집행을 엄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경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③ “법원이나 검찰에 의해서 수사과정에 대한 사후 적법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운영하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⁴⁾

더 나아가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보장을 통해 인권 보장 중심의 수사 체계 정립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신주호는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밀행성·강제성·기동성·탄력성 등이 강조되어 옴에 따라 경찰수사단계에서 임의동행, 긴급체포제도, 별건 체포·수사의 오남용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¹⁰⁵⁾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인지된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경찰의 수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수사업

101) 윤동호, 위의 글(주 99), 171-176면.

102) 윤동호, 위의 글(주 99), 186면.

103) 김무형, “독일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12(1) (2018), 129면.

104) 김무형, 위의 글(주 103), 146면.

105) 신주호, “인권 보장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재정립 방안”, 『홍익법학』 18(3) (2017), 151-190면.

무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사의 기소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현행 경찰의 독자적 수사관행을 현실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⁶⁾ 또한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인권 교육의 강화, 감시기관 운영 등을 통하여 인권 존중의 경찰수사관행을 확립시키는 것도 필요하다.¹⁰⁷⁾

다. 영장청구권

검찰·경찰 권한 조정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 외에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영장청구의 주체 문제도 수사·기소 분리와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관련 논의의 지형은 「헌법」상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와 국민의 인권 보호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그려질 수 있다.

우선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부여된 취지는 영장청구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전제로 한다.¹⁰⁸⁾ 김상겸은 헌정사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도입된 의미나 배경, 즉 영장청구의 오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라는 취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영장청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¹⁰⁹⁾ 이경렬도 “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함의는 인권 보장에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¹¹⁰⁾이라고 평가하고, “「헌법」조항에서 ‘검사의 신청’이라는 요건이 삭제되는 개정 이후에 예상되는 수사실무의 변화는 영장제도의 운용 실체에 관한 우려”¹¹¹⁾가 있으므로 “현재의 이익으로, 현상유지의 원칙”¹¹²⁾을 적용하여 현행 영장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웅석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장청구의 ‘검사경유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106) 신주호, 위의 글(주 105), 185면.

107) 신주호, 위의 글(주 105), 185-186면.

108) 김상겸, “검사의 영장청구에 관한 「헌법」적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7 (2017), 1-32면.

109) 김상겸, 위의 글(주 108), 12면.

110) 이경렬, “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함의”, 『형사법의 신동향』 56 (2017), 1면.

111) 이경렬, 위의 글(주 110), 2면.

112) 이경렬, 위의 글(주 110), 34면.

주장한다.¹¹³⁾ 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영장주의의 본질이 아니라거나 판사에 의한 영장 발부로 충분하다는 등의 주장”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인 것은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사법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게 해주자는 주장은 (사법)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하여 지금보다 통제를 적게 하고, 국민을 쉽게 구속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는 의견과 같”기 때문이라고 본다.¹¹⁴⁾

반면에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 다양한 논거를 토대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성문규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의 주체가 검사인 것은 연혁적으로 인권 보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¹¹⁵⁾ 그에 따르면, “「헌법」상 영장신청권이 표면적으로는 인권 옹호를 언급하고 있으나, 영장 관련 입법 경위들의 추이와 당시 실무례를 살펴보면, 사실은 수사지휘권의 확립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의 근거가 되어” 인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¹¹⁶⁾ 따라서 그는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를 요청한다.¹¹⁷⁾

한편 세계 주요국 「헌법」의 실증적 비교를 통해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제도를 비판하는 연구도 있었다.¹¹⁸⁾ 민형동은 각국 「헌법」에 규정된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하여 ① “형사사법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인권, 형사사법 원리 및 제도, 죄「형법」정주의 등은 영미법, 대륙법계 구분 없이 각국 「헌법」상에서 인류의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본이념, 원리로 자리 잡고” 있었고, ② “각국 「헌법」상의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관한 규정의 산술적인 조항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③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사법 관련기관의 의사소통과 쟁의, 대립 등을

113) 정용석,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2) (2017), 22-31면.

114) 정용석, 위의 글(주 113), 4면.

115) 성문규, “「헌법」상 영장신청권과 인권과의 무관계성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162 (2017), 5-30면.

116) 성문규, 위의 글(주 115), 5면.

117) 성문규, 위의 글(주 115), 26면.

118) 민형동, “형사법 규정에 관한 「헌법」개정 방향: 세계 주요국 「헌법」의 실증적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66 (2017), 3-35면.

해결하기 위해 사법 관련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합의체 기구를 「헌법」상으로 명문화하고” 있었고, ④ “다수의 국가들이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배심제, 참심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경향을 찾았다.¹¹⁹⁾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 「헌법」처럼 영장주의 규정에 ‘법관이 발부한’ 규정 이외에 ‘검찰의 신청’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다.¹²⁰⁾ 이에 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영장주의의 본질에 맞게 영장주의 규정에서 ‘검사의 신청’이라는 부분을 제외하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²¹⁾

영장청구권의 독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중에는 개헌론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다. 김명대·박호현은 「헌법」이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경찰수사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인권 침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¹²²⁾ 이들은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직접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거나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한다.¹²³⁾ 이러한 개정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거나 영장청구에 대한 항고주의를 도입하는 것도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¹²⁴⁾

한편 경찰의 영장청구권 독립론에서 더 나아가 경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론이 주장되기도 한다.¹²⁵⁾ 이 연구에서는 군부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기에 시민의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로 얻는 이익보다 검사의 기소 및 기소유지 업무의 충실화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된다.¹²⁶⁾ 또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적 요소

119) 민형동, 위의 글(주 118), 3-4면.

120) 민형동, 위의 글(주 118), 3-4면.

121) 민형동, 위의 글(주 118), 4면.

122) 김명대·박호현, “경찰의 영장청구권 효율화 방안-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9(1) (2018), 361-362면.

123) 김명대·박호현, 위의 글(주 122), 378면.

124) 김명대·박호현, 위의 글(주 122), 378면.

125) 윤동호,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에서 영장청구권 독점론으로”, 「法學論叢」 23(3) (2016), 93-113면.

126) 윤동호, 위의 글(주 125), 93면.

가 아니라 수사지휘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적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¹²⁷⁾ 검사에게만 영장신청권을 주는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2문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¹²⁸⁾ 연구자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가 기소를 전담하는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은 경찰의 영장청구권 독립론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⁹⁾

2. 수사 단계별 개선 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경찰 권한 분배 문제는 「헌법」적 차원과 형사사법제도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다루어진다. 반면에 수사 단계별 쟁점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내사·불심검문·고소 고발 사건 접수 등 수사관의 범죄발견 활동, 수사의 필요성·수사의 상당성·수사 등 실행과 관련된 수사의 조건, 영장 없는 압수수사·체포 등 강제수사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¹³⁰⁾ ① 수사 실무에서 임의동행은 혐의 확인의 수단으로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임의동행으로 신병을 확보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석방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의 신청과 발부의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에서 피동행인은 임의동행 시부터 구속영장집행 시까지는 불법구금 상태(영장주의 위반)에 있게 된다.¹³¹⁾ ② 수사 실무에서 긴급체포제도도 초동수사 단계의 인신구속제도로 활용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가 실질적으로 무시된 채 이른바 ‘사후영장 관행’이 팽배하다.¹³²⁾ ③ 별건체포·구속으로 편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별건체포·구속은 본건과 관계없는 경미한 범죄로 영장을 발부 받아 우선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건의 체포·구속사유가 없는 경우 자백의 강요 내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체포·구속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하다.¹³³⁾

127) 윤동호, 위의 글(주 125), 101면.

128) 윤동호, 위의 글(주 125), 100면.

129) 윤동호, 위의 글(주 125), 93면.

130) 김영중, “형사절차와 인권 보장: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2(2) (2014), 88면.

131) 신주호, “인권 보장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재정립 방안”, 「홍익법학」 18(3) (2017), 154면.

132) 신주호, 위의 글(주 131), 157면.

최근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쟁점에 덧붙여 인터넷감청, 영상녹화, 수사자료표, 피의자신문, 신속처리절차, 재정신청, 즉결심판, 피의사실공표죄, 형사절차전자화법, 독직 폭행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범죄발견 활동, 수사진행 및 수사종결에 따른 쟁점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전(全) 수사과정에서 문제 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 침해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범죄발견 활동 관련 쟁점

1) 내사

내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을 경우 그 진상을 확인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¹³³⁾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881호)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내사는 수사 개시 전의 과정으로서 수사기관이 조사 상대방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다.

그러나 경찰내사규칙은 피내사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이 한계이다.¹³⁴⁾ 이에 명도현·박호현은 내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내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과¹³⁵⁾ 내사 단계에서 수집된 기록에 대한 전산화 관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¹³⁶⁾ 또한 내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는 검찰과 경찰의 상하관계에 기초한 검찰의 수사지휘로는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¹³⁷⁾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 관계에 기반을 둔 수사지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³⁸⁾

133) 신주호, 위의 글(주 131), 158면.

134) 명도현·박호현, “수사기관의 내사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8(2) (2014), 113면.

135) 명도현·박호현, 위의 글(주 134), 115면.

136) 명도현·박호현, 위의 글(주 134), 118면.

137) 명도현·박호현, 위의 글(주 134), 117면.

138) 명도현·박호현, 위의 글(주 134), 120면.

2)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불심검문에 관한 근거 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찰관이 봤을 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이 불심검문의 주된 대상이 된다. 이에 규정상 그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불심검문의 요건에 대한 비판 외에도 불심검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적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영우 등은 최근 정북경찰관이 신분증을 미제시하는 경우와 정지 불응 시 유형력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¹³⁹⁾ ① “모든 경찰관은 정북을 입은 것과는 관계없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② “정지 불응 시 유형력 행사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 중 피검문자가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③ “기타 방안으로 불심검문 후 문제가 없을 시 경찰관은 그 즉시 사과를 하게 하거나, 경찰관과 피검문자가 녹취를 하게 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사후적으로 통제”한다.¹⁴⁰⁾

정신교도 불심검문의 임의적 성격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불심검문이 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다양한 경찰 영역에 대한 대응력도 떨어져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¹⁴¹⁾ 불심검문의 범위를 신원확인으로 제한하고 불심검문의 적법성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¹⁴²⁾ 또한 여러 법령에 산재한 불심검문 규정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자동차 등에 대한 정지명령권 및 수색

139) 이영우·박종렬·견승엽, “인권 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62 (2016), 35면.

140) 이영우·박종렬·견승엽, 위의 글(주 139), 24면.

141) 정신교, “불심검문과 인권 보호의 상관성”, 「한국치안행정논집」 12(1) (2015), 102-103면.

142) 정신교, 위의 글(주 141), 111면.

권' 및 '위험예방을 위한 불심검문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불심검문이 범죄예방이라는 근본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¹⁴³⁾ 제도 개선과 더불어 경찰 조직이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을 주권자로서 바라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고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¹⁴⁴⁾

범죄발견 활동 중 임의동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문성원은 “부당한 임의동행에 대한 진정 사건이 계속된다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이 관련 규정과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권위와 인권단체의 범죄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요청이 경찰의 직무 현실과 괴리되어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라고 진단한다.¹⁴⁵⁾ 연구자는 부당한 임의동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보다도 경찰관들의 인권의식 함양이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경찰서의 관리자 계급이 인권 보호 절차 준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강조”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경찰관 개인이 법 규정과 절차에 대한 숙지도”를 높임으로써 경찰관들이 실무에서 적정절차를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¹⁴⁶⁾ 특히 일선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대두되는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나 경찰의 절차 미준수에 대한 법원 등의 유권해석을 경찰의 현실과 괴리된 비현실적인 요청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경찰서의 상급자들이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파하고 교육하는 데 노력할 필요하다.¹⁴⁷⁾

나. 수사진행 관련 쟁점

1) 긴급체포 및 준헌행범체포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체포는 그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실무적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법경찰리가 이를 담당하고 있어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3) 정신교, 위의 글(주 141), 112-114면.

144) 정신교, 위의 글(주 141), 110면.

145) 문성원, “경찰의 범죄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절차준수 제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6. 05. 04.자 15진정0892900 결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6 (2016), 289면.

146) 문성원, 위의 글(주 145), 290면.

147) 문성원, 위의 글(주 145), 290면.

이에 긴급체포 규정을 개정하여 그 남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요건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대상범죄의 중대성 강화 및 사법경찰리의 긴급체포권 인정’, ‘사후 체포영장제도 도입’, ‘피의자 보석의 허용’, ‘긴급체포심사위원회 설치 및 피해배상’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긴급체포와 관련된 48시간 동안 무영장 체포, 자진출석자에 대한 문제, 압수·수색·검증과의 연계, 보석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¹⁴⁸⁾

영장 없는 체포와 관련해서 준현행범인체포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지적도 있다.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과 「형사소송법」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 이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하여 영장 없이 체포하더라도 위헌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황순평은 준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이 일반적인 요건 없이 개별적 요건만을 열거하고 있어 현행범인과의 동일성 판단이 힘들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그러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현행범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비판한다.¹⁴⁹⁾ 이에 학설과 실무도 준현행범인의 인정과 체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위헌론이나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⁵⁰⁾ 그러나 연구자는 “준현행범인의 폐지는 필연적으로 현행범인의 인정범위의 확대라는 문제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막연한 비판에 앞서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립·운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론적·입법론적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¹⁵¹⁾ 따라서 당분간은 해석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범죄·범인의 명백성’과 ‘시간적·장소적 접촉성’이란 일반적인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준현행범인 규정을 개선·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⁵²⁾

한편 긴급체포의 요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보인다. 김미라는 “최근 판례의 흐름을 보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체포영장에 의한 인신의 체포를 원칙화하고 무영장체포를 되도록 배제하려는 의식과 맞물려 적정절차

148) 김재덕,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法學論集』 20(1) (2015), 163-169면.

149) 황순평, “준현행범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적 검토”, 『치안정책연구』 30(2) (2016), 184-185면.

150) 황순평, 위의 글(주 149), 184면.

151) 황순평, 위의 글(주 149), 209면.

152) 황순평, 위의 글(주 149), 207-208면.

와 인권 보장이라는 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과 수사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우려 또한 제기될 수 있다.”¹⁵³⁾라고 논평한다. 연구자는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긴급체포제도에서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많음을 직시하고 좀 더 엄격히 요건을 해석하고자 하려는 의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범죄의 특성과 수사현실, 수사기관의 적정한 재량권 행사 역시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만을 부각시켜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경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고 입장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론으로 흐르는 최근 판례 경향을 비판한다.¹⁵⁴⁾

2)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증거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에 비해서 압수·수색은 법관의 재량에 더 많이 의존하고 형사소송법상 사전 영장제시 의무가 불분명하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에 대해서는 자세히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압수·수색 등의 경우에는 …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인권 보장과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압수수색의 엄격성이라는 당위성이 영장발부시에는 확보되지 못하고 발부된 이후의 절차에 대한 엄격성만 강조되고 있다. … 사전 영장제시가 항상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¹⁵⁵⁾

오경식은 “현재 일반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에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사절차에서의 참여로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¹⁵⁶⁾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책임자 및 당사자가 참여하는 입회인 제도를 제안하고, 인권 보장을 위해서 입법이나 대법원규칙을 통해서 ‘별건압수수색의 금지’¹⁵⁷⁾ 및 ‘야간영장집행

153) 김미라, “긴급체포요건에 관한 검토”, 『東亞法學』 75 (2017), 94면.

154) 김미라, 위의 글(주 153), 111면.

155) 오경식,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제도에서의 인권 보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0 (2016), 3-4면.

156) 오경식, 위의 글(주 155), 12면.

157) 오경식, 위의 글(주 155), 14-15면.

의 제한'¹⁵⁸⁾도 제안한다. 또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영장 집행 후의 조치로서 '압수조서 및 목록의 작성'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수색증명서 및 압수목록의 교부'¹⁵⁹⁾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근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권양섭은 "협 의사 실과 관련된 증거만을 현장에서 압수·수색하는 방식을 통해 피압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수사실무는 디지털 기기 자체를 압수 현장에서 반출하여, 지방경찰청으로 옮겨 탐색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탐색과 분석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압수자에게 반환되기까지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디지털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보관함으로써 이를 남용할 우려도 존재한다."¹⁶⁰⁾라고 지적한다. 이에 연구자는 압수 현장에서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현장 지원 조직을 신설·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¹⁶¹⁾

또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허용되는 인터넷 패킷감청과 관련하여 그 법적 성격 및 위헌성에 대한 논의도 있다. 민만기는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성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란 점에서 강제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영장주의 위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¹⁶²⁾ 인터넷 패킷감청이 위헌이라는 입장은 감청대상자 특징이 어려운 패킷감청의 특성상 포괄영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고, 합헌이라는 입장은 영장 청구시 정확히 대상을 특정하기 힘든 것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¹⁶³⁾ 연구자는 인터넷패킷 감청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고,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합헌이라고 결론짓는데, 다만 인터넷패킷 감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뤄지거나 감청으로 취득한 정보를 범죄수사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¹⁶⁴⁾

158) 오경식, 위의 글(주 155), 15-20면.

159) 오경식, 위의 글(주 155), 21면.

160) 권양섭,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원광법학」 34(2) (2018), 60면.

161) 권양섭, 위의 글(주 160), 65면.

162) 민만기,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및 허용 가능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53 (2016), 225면.

163) 민만기, 위의 글(주 162), 242-257면.

164) 민만기, 위의 글(주 162), 234-237면.

3) 피의자신문 및 영상녹화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현 정부 출범 이전 연구에서 이영돈은 먼저 수사단계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률이 저조하고, 변호인의 참여 범위와 역할이 불명확하며, 피의자신문이 진행되는 오랜 시간을 참여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더욱이 형사소송법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들은 실무적으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후 10~30분 정도 의견을 진술하고 있어서 변호인들조차도 그 실효성을 의심한다고 지적한다.¹⁶⁵⁾ 그리고 그는 현행법상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은 상담과 조언, 의견진술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이 권리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¹⁶⁶⁾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는 피의자신문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다. 권순민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차별을 두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당해 피의자는 물론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게까지 이러한 차등을 연계하여 인정하는 대법원의 해석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한다.¹⁶⁷⁾ 그리고 그는 “영상녹화제도와 조사자 증언제도의 등장은 기존의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법체계 및 대법원 해석과 곳곳에서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의 입장은 이 두 제도에 대해 현행법상 명문의 법제도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들 제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형사사법이 수사편의적 사고에 매몰되거나 적법 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¹⁶⁸⁾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영상녹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녹화에 대한 경찰

165) 이영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법학논고』 47 (2014), 266-267면.

166) 이영돈, 위의 글(주 165), 268-278면.

167) 권순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법정칙과 대법원의 해석 방향에 대한 검토”, 『法學論叢』 25(1) (2018), 205면.

168) 권순민, 위의 글(주 167), 225면.

과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경험적 연구도 있다. 최대현은 범죄수사를 위한 진술의 영상녹화과정에 경찰관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상녹화의 필요성, 효과성, 방해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경찰관이나 시민 모두 영상녹화가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다.¹⁶⁹⁾ 인식조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효과성 영역에서는 진술과정의 영상녹화를 경험한 시민들은 공정성 확보와 사실의 발견에 영상녹화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하게 보였고, 경찰관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다.¹⁷⁰⁾ 방해성에 관하여는, 진술과정의 영상녹화를 경험한 시민들은 감시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방해되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¹⁷¹⁾ 조사대상 경찰관 중 28.9%도 감시의 부담감을 느껴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²⁾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는 부적절한 조사방법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며 동시에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법원의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석한다.¹⁷³⁾

4) 경찰수사 사무환경

수사진행 단계의 각 절차 못지않게 수사가 진행되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지적한 흥미로운 연구도 있다. 최대현은 실증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사 사무환경이 시민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¹⁷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혼재로 소음이 심하고 종종 체포된 피의자의 소란행위

169) 최대현, “범죄수사를 위한 진술과정의 영상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연구”, 「경찰법연구」 14(1) (2016), 119-120면.

170) 최대현, 위의 글(주 169), 130-131면.

171) 최대현, 위의 글(주 169), 131면.

172) 최대현, 위의 글(주 169), 132면.

173) 최대현, 위의 글(주 169), 132면.

174) 최대현, “수사사무환경이 시민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치안정책연구」 30(2) (2016), 1-38면.

등이 있을 때 소음과 소란이 조사과정에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별도의 조사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참여하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는 등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주취자나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일반 경미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과 같은 공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지막으로 현재의 개방형 조사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 중 편의시설, 소음, 소란, 안전에 대한 우려 등 세 가지 요인은 시민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⁵⁾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수사사무환경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① 신문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집중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②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을 일반조사공간과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위해 방지나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도주방지를 도모하고, ③ 독립된 조사공간에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시설을 설치하여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과정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다.¹⁷⁶⁾

5) 강압·부적절 수사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함에도 많은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김현진·박종렬은 경찰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이 매년 400-5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포·구속·감금 및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부당수사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다.¹⁷⁷⁾ 연구자들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그 침해가 최소한이어야 하고 적법절차원칙에

175) 최대현, 위의 글(주 174), 28-29면.

176) 최대현, 위의 글(주 174), 31-32면.

177) 김현진·박종렬,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연구”, 『법률실무연구』 6(1) (2018), 269면.

따라야 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활동은 법에 의한 공정한 경찰활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한다.¹⁷⁸⁾

독직폭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살펴보면, 최선우는 통계적으로 최근 5년간 독직폭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소율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한다.¹⁷⁹⁾ 연구자는 독직폭행과 정당한 공무집행 간에 구분 또는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양자를 모두 고려한 정책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독직폭행이 경찰의 관점에서 성과주의와 같은 경찰조직적인 문제인지, 왜곡된 ‘정의감’이나 ‘사명감’ 같은 경찰관 개인의 문제인지, 또는 시민의 행태(공격성, 위법성, 무례함 등)에 따른 경찰과 시민의 상호작용 문제인지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 검찰·경찰 간 수사권조정 등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¹⁸⁰⁾

다. 개인정보보호

수사과정에서 수집되는 피의자·피해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는 수사 전(全)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형사사법업무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해석론, 수사자료표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 수사 브리핑과 피의사실공표죄의 관계 등이 최근 수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쟁점이다.

우선 형사절차전자화법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자. 박민우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의 해석과 형사사법업무 처리 목적 외 사용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집된 형사사법정보의 열람 제한을 위해 법해석론을 제시한다.¹⁸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은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이 형사사법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형사사법업무

178) 김현진·박종렬, 위의 글(주 177), 280면.

179) 최선우, “경찰공무원의 독직폭행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6(4) (2017), 331면.

180) 최선우, 위의 글(주 179), 355-356면.

181) 박민우,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의 해석과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저스티스」 161 (2017), 200-229면.

처리 목적 외의 형사사법정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조항은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14조이기에 수사기관이 정보공개, 감사, 인권조사, 국정조사 등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제출 요구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¹⁸²⁾

형사사법정보의 사용 가부는 부당한 목적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 근거 법령의 존재,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조화 등이 판단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감사목적 형사사법정보 열람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 국가소송 수행을 위한 열람도 마찬가지다. … 범죄예방 목적의 경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부당한 목적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¹⁸³⁾

다음으로 수사자료표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정연균·박용수는 수사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자료표 운영 방식의 개선을 제안한다.¹⁸⁴⁾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문, 인적사항, 범죄경력 등을 작성한 자료를 의미하는데, 수사, 재판 등에서 활용되고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수사자료표가 신속한 범죄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무죄인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범죄경력자료가 회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문제된다.¹⁸⁵⁾

따라서 수사자료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해야 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지문을 복사 및 첨부할 것,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의 폐지,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명확한 근거규정 신설, 수사자료표 작성대상에서 고소·고발사건과 인지사건의 구분 없이 작성 제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범죄·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와 관련해서는 ① 일정한 보존기간 후 삭제, ② 소년부

182) 박민우, 위의 글(주 181), 200면.

183) 박민우, 위의 글(주 181), 223-225면.

184) 정연균·박용수, “수사자료표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65(2017), 197-218면.

185) 정연균·박용수, 위의 글(주 184), 198-199면.

송치 및 보호처분의 경우 3년 후에는 회보 불가 조치, ③ 처분, 결정, 판결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자료운영계로 이첩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¹⁸⁶⁾

마지막으로 수사 브리핑과 피의사실공표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자. 수사기관의 브리핑으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문재완은 이와 같은 수사 브리핑이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하지 않고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다.¹⁸⁷⁾ 그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의 브리핑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죄가 실제로 적용된 예가 없고,¹⁸⁸⁾ 무죄추정원칙은 체포 구속이나 피의사실 공개 제한의 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고,¹⁸⁹⁾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은 피의자의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브리핑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¹⁹⁰⁾

라. 수사 외 경찰활동과 인권 보호

수사 외 경찰활동과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에는 경찰행정조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와 집회·시위 관련 경비활동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우선 경찰행정조사 관련 연구를 살펴보자. 박현준은 경찰행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행정조사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¹⁹¹⁾ 경찰행정조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수사를 능가하는 강제력이 수반된 권력적 조사로서 피조사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등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¹⁹²⁾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인 「헌법」 제12조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통설에 의하면 행정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범죄수사와 구별이 힘들거나 행정기관의 조사라는 이유로 적법절차원칙이

186) 정연균·박용수, 위의 글(주 184), 215면.

187) 문재완,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0(3) (2014), 2-3면., 1-27면.

188) 문재완, 위의 글(주 187), 17면.

189) 문재완, 위의 글(주 187), 22면.

190) 문재완, 위의 글(주 187), 22-23면.

191) 박현준, “경찰행정조사에서의 인권 보장”, 『법학연구』 65 (2017), 227-244면.

192) 박현준, 위의 글(주 191), 227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¹⁹³⁾ 이에 연구자는 경찰행정조사가 행정조사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면서도 범죄수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행정조사에 적법절차원칙을 적용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조사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과 「형사소송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가칭 「경찰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⁴⁾

다음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자. 김구열 등은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경찰법제에서는 채증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는 특별수권 법률 조항이 없으며, 일반수권 조항에 의해서 이를 허용하는 것 또한 타당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법률의 근거가 없어 그 요건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집회 채증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¹⁹⁵⁾ 이에 채증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 놓는 것보다 객관적 규범력과 강제력을 갖는 법률의 형식으로 채증의 근거와 요건 및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다.¹⁹⁶⁾ 한편 연구자들은 형식적인 법률 제정만큼이나 “개별 현장에서 집회를 대하는 경찰공무원들의 태도 및 관련된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태도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¹⁹⁷⁾

집회·시위 해산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이 깊다. 이에 황규진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집회·시위 해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집회·시위 해산에 관한 요건을 개선하고 요건 판단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¹⁹⁸⁾ 현재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기계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법·합법 대립구도를 전제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국제법 규범은 평화·비평화 대립구도와

193) 박현준, 위의 글(주 191), 234면.

194) 박현준, 위의 글(주 191), 240면.

195) 김구열·김민후·이승훈·이종훈,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제기 -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 실태 보고”, 「공익과 인권」 15 (2015), 155면.

196) 김구열·김민후·이승훈·이종훈, 위의 글(주 195), 161면.

197) 김구열·김민후·이승훈·이종훈, 위의 글(주 195), 162면.

198) 황규진, “집회·시위 해산 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 경찰업무기준론의 관점에서 -”, 「경찰학논총」 11(3) (2016), 261-289면.

‘집회의 평화성(peacefulness)’을 주로 언급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¹⁹⁹⁾ 이에 집회·시위 관리의 원칙으로 합법성, 비례성, 필요성, 책임성을 도입하여 집회·시위 해산 요건을 구체화하고 완화되 이 원칙을 훈령이나 규칙으로 제정할 때에는 시민 참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²⁰⁰⁾ 구체적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위원회’에 위험 판단 및 자문 기능을 부여하거나 훈령, 규칙 제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²⁰¹⁾

3.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 방식

가. 범죄피해자

우리 법체계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과 권리에 비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도가 약하다. 이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김길영·김효진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²⁰²⁾ 범죄 피해자의 보호는 피해자의 인권 및 향후 재해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범죄피해자는 ‘주변적인 인물’로 취급되고 있다.²⁰³⁾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보다는 물적 피해에 대한 구제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제도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²⁰⁴⁾ 이에 연구자들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진행과정별로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수사기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²⁰⁵⁾

김동률·박노섭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중앙적 제도에서 벗어나 지역적·분산적 제도로 만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²⁰⁶⁾ “경찰은 일련의 처리절차 등 일정 시간

199) 황규진, 위의 글(주 198), 273면.

200) 황규진, 위의 글(주 198), 277면.

201) 황규진, 위의 글(주 198), 285면.

202) 김길영·김효진,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16(2) (2017), 3-28면.

203) 김길영·김효진, 위의 글(주 202), 4면.

204) 김길영·김효진, 위의 글(주 202), 6면.

205) 김길영·김효진, 위의 글(주 202), 21-22면.

206) 김동률·박노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입법·제도적 준비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 (2018), 231-260면.

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가 접하게 되는 검찰이나 법원단계에 비해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피해의 초동단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권한이 대부분 법무부에 집중되어 있기에 범죄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에 경찰이 체계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²⁰⁷⁾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있어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방향으로 ① 신속한 접근의 원칙, ② 수요자 중심의 원칙, ③ 지역 우선의 원칙, ④ 다자간 협력의 원칙의 4가지 대원칙이 제시된다.²⁰⁸⁾

김순석은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를 「헌법」-형사소송법-범죄피해자보호법-자치법규 단계별로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²⁰⁹⁾ 현재 우리나라 「헌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⁰⁾ 그러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에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위증에 대한 부담이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은 피해자 법정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에 미흡하다.²¹¹⁾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59조의2, 제294조의2의 제2항 등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들은 그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요구된다.²¹²⁾ 특히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할 책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대체로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다시 기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미흡하다.²¹³⁾ 따라서 상위 법령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²¹⁴⁾

207) 김동률·박노섭, 위의 글(주 206), 239-240면.

208) 김동률·박노섭, 위의 글(주 206), 255면.

209) 김순석,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67 (2017), 33-64면.

210) 김순석, 위의 글(주 209), 35면.

211) 김순석, 위의 글(주 209), 51면.

212) 김순석, 위의 글(주 209), 53-55면.

213) 김순석, 위의 글(주 209), 57면.

214) 김순석, 위의 글(주 209), 58-59면.

김창윤은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²¹⁵⁾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권리고지 제도, 유형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문 제작 배부, 그리고 정보제공의 강화 등은 경찰서별, 즉 지역별 편차가 크고 체계적이지 못하다.²¹⁶⁾ 특히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복범죄 발생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범죄피해자 중심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범죄피해자 긴급지원센터, 피해자 서포트 제도,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등과 같이 피해자의 단순 격리나 보호 등과 같은 구체성이 미흡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²¹⁷⁾ 이에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의 일관성·체계성 제고 방안으로 「경찰법」상 ‘피해자보호 임무 규정’ 신설,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통합피해자지원시스템’ 도입, 범죄피해자의 평온 및 신변보호를 위한 ‘피해자보호국’의 신설이 제안된다.²¹⁸⁾

박호현 등은 가해자 중심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복지경찰제도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한다.²¹⁹⁾ 이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해주는 복지경찰의 의미에서 모색하고자 한다.²²⁰⁾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대를 증진시키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²²¹⁾ 이들은 이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 인력을 증대해야 하고, 범죄피해자의 사후관리에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협력이 필요하며 범죄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경찰관 변호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²⁾

이주일은 범죄자를 처벌과 억압이 아닌 치료와 회복을 달성하여 재사회화와 교화하

215) 김창윤,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0(1) (2014), 103-121면.

216) 김창윤, 위의 글(주 215), 112면.

217) 김창윤, 위의 글(주 215), 115면.

218) 김창윤, 위의 글(주 215), 115-117면.

219) 박호현·김명대·김종호, “복지경찰에 관한 논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4) (2017), 73-94면.

220) 박호현·김명대·김종호, 위의 글(주 219), 75면.

221) 박호현·김명대·김종호, 위의 글(주 219), 77-84면.

222) 박호현·김명대·김종호, 위의 글(주 219), 92면.

고자 하는 ‘치료적 사법’ 접근법을 범죄피해자 보호에 접목하여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²²³⁾ 그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수사규칙」,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한다.²²⁴⁾ 그리고 이 연구자는 범죄자의 치료와 회복에 맞춰진 치료적 사법의 초점을 범죄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으로 옮겨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와 융합한다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범죄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²²⁵⁾

범죄피해자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도 눈에 띈다. 우선 신은식·신애리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²²⁶⁾ 조사장소가 개방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원하는 조사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보충적 조사 방법이 미흡하다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²²⁷⁾ “수사담당자는 성폭력수사사건 수사의 우선적 목적이 피해자의 신체 및 명예의 보호와 사회의 안전보장에 있음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수사해야” 하고, “가능한 한 피해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즉시 피해자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기타 현장 상황을 토대로 기타 증거의 수집 가능성을 검토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²²⁸⁾ 연구자들은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항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사단계 또는 공판기일 전에 확보된 피해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²²⁹⁾

정육상·조성제는 중독범죄 피해자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223) 이주일, “범죄피해자 인권과 치료적 사법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9(3) (2018), 757-769면.

224) 이주일, 위의 글(주 223), 758면.

225) 이주일, 위의 글(주 223), 767-768면.

226) 신은식·신애리,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4(4) (2015), 183-212면.

227) 신은식·신애리, 위의 글(주 226), 194-198면.

228) 신은식·신애리, 위의 글(주 226), 198면.

229) 신은식·신애리, 위의 글(주 226), 199-200면.

의 인권 보호 개선방안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제안한다.²³⁰⁾ 왜냐하면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사건과 무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강요받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³¹⁾ 또한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부서의 개편과 지원의 활성화’도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개선방안으로 제시된다.²³²⁾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개선 외에도 수사 관련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김재민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서서 해당 제도는 인권의식 함양을 전제로 했을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의식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²³³⁾ 경찰관과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의식의 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이 2013년보다 높아졌다고 판단되지만 그 인권의식의 구체적 실현은 아직 미진한 수준에 놓여 있고, 인권 보호 수준에 관하여 일반인(대학생)들과 경찰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현직 경찰관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격존중과 같은 본질적 사항보다는 제도 개선과 같은 외형적 조건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²³⁴⁾ 이에 경찰관의 공감능력을 증진시켜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체(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적절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통해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보호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²³⁵⁾

나. 사회적 약자

안은자·조원일은 장애인 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법원 및 검찰의 인식,

230) 정육상·조성제,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개선방안 - 중독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대회」 2014(12) (2014), 1-15면.

231) 정육상·조성제, 위의 글(주 230), 2면.

232) 정육상·조성제, 위의 글(주 230), 14-15면.

233) 김재민,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의식에 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31(2) (2017), 29-62면.

234) 김재민, 위의 글(주 233), 56면.

235) 김재민, 위의 글(주 233), 51-56면.

즉 장애인관을 분석하고 문제점 진단 및 개선책을 제시한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였다.²³⁶⁾ 이들은 검찰의 장애인관을 장애인은 손상된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개별적 유물론이라고 평가하고,²³⁷⁾ 법원의 장애인관은 ‘개별적 유물론’과 ‘개별적 관념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생산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유물론 관점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²³⁸⁾ 연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원과 검찰의 장애인관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정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²³⁹⁾

노호래는 수산 및 해양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해양경찰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한다.²⁴⁰⁾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어업 이주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 및 해양 관련 노동 현장에서 고용주들이 외국인 피고용인의 신분증을 압수하거나 내국인 피고용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²⁴¹⁾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기관에 연근해 어선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고, 해양경찰청은 각 해양경찰서에 외국인 인권자문단구성, 민간통역요원 위촉, 인권 보호 간담회, 고용자에 대한 인권의식 제도, 선원인권 보호센터의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왔지만, 2014년 해양경비안전 본부로 격하되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²⁴²⁾ 이에 연구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증진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다문화와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다문화 현상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동남아 언어전공자 및 귀화자를 해양경찰에 적극 채용하고, 각 해양경찰서에 외국인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해양경찰관의 역량을

236) 안은자·조원일, “장애인학대사건을 통해 본 법원 및 검찰의 장애인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9(3) (2017), 433-453면.

237) 안은자·조원일, 위의 글(주 236), 443-444면.

238) 안은자·조원일, 위의 글(주 236), 446-448면.

239) 안은자·조원일, 위의 글(주 236), 450-451면.

240) 노호래, “수산 및 해양 분야 외국인 노동자 현황 분석과 해양경찰의 정책방안”, 『한국경찰학회보』 67 (2017), 85-112면.

241) 노호래, 위의 글(주 240), 98면.

242) 노호래, 위의 글(주 240), 104면.

제고시키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²⁴³⁾

최영승은 현행 법제에서는 소년보호사건에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음을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에 형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의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⁴⁾ 경찰관은 우범소년, 즉 ‘긴급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벌 법령 저촉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소년’을 발견하거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일시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소년업무 처리규칙」 제44조), 일시보호 조치는 “사실상 일시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²⁴⁵⁾ 이에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인권 침해 소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리 규정을 두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이 절차의 근거를 소년법에 규정하여 적법절차를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²⁴⁶⁾

소년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박영규도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현행 「소년법」이 소년 보호라는 근본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²⁴⁷⁾ 구체적인 개정안으로는 ① 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 관한 특례를 「소년법」에 신설하고, ② 법원과 검찰 단계에서 소년에 대한 현행 임의적 조사제도를 필요적 조사제도로 개정하고, ③ 만18세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경우 부정기형을 인정하고, 수사경력자료 삭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제안된다.²⁴⁸⁾

4. 경찰 조직 문화

경찰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우선 이재호는 경찰 조직이 후견주의에 타당을 둔 권위주의적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옹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탈피하여 분권화·민주화에 발맞춰 ‘어

243) 노호래, 위의 글(주 240), 104-107면.

244) 최영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少年保護研究』 24 (2014), 331-360면.

245) 최영승, 위의 글(주 244), 342면.

246) 최영승, 위의 글(주 244), 344면.

247) 박영규, “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8(2) (2014), 163-188면.

248) 박영규, 위의 글(주 247), 180-184면.

올림'의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²⁴⁹⁾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경찰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매우 막강한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경찰의 공정한 권한 행사를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 문화는 후견주의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적이고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성향을 띄고 있어 집단의 의사에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 배타성을 띤다.²⁵⁰⁾

황문규는 중앙집권적인 지휘명령체계에 기반을 둔 경찰 조직의 비민주적 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해 경찰 조직 개혁을 주문한다.²⁵¹⁾ 우선 경찰 조직의 운영 행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① 현재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휘명령체계에 따르기 때문에 비민주적 운영 행태가 발생하며 승진을 위한 충성 경쟁이 발생하고, ② 행정경찰과 사법(수사)경찰이 혼재하면서 수사업무나 행정업무 경협이 충분하지 못한 데 따른 기본권 침해적 경찰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③ 일부 경찰관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으로 인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적법절차 미준수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²⁾ 이에 연구자는 시민 중심의 민주적 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경찰권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통제 수단으로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및 자치경찰서장(자치경찰제 도입 시)에 대한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경찰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직장협의회 도입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²⁵³⁾

한편 경찰 조직의 문제로 여성 경찰관이 경험하는 성차별이 지적된다. 강지현은 기존 선행연구가 거시적 관점에서 여성 경찰의 문제에 주목했던 것과는 달리 성차별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접근한다.²⁵⁴⁾ 경찰 조직 내에서 여성 경찰관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여성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은 남성 위주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²⁵⁵⁾

249) 이재호, "경찰문화와 인권 보호의 상관성", 「치안정책연구」 28(1) (2014), 281-319면.

250) 이재호, 위의 글(주 249), 294-298면.

251) 황문규,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法學論叢」 39 (2017), 293-324면.

252) 황문규, 위의 글(주 251), 295-303면.

253) 황문규, 위의 글(주 251), 319-320면.

254) 강지현, "여성경찰관의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유형과 영향요인", 「한국경찰연구」 16(3) (2017), 3-28면.

경찰 조직을 포함한 공무원 조직에서의 여성 차별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동등한 조건과 자격으로 채용된 여성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성차별을 인식 혹은 경험하게 되는 경우, 사기저하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가 어려우며 이는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²⁵⁵⁾

이에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경찰 조직 내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인사 관리가 여성 경찰관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60%에 달했고, ② 경찰 조직 내에서 여성 경찰관이 경험하는 성차별 문제는 일률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기보다는 경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유형화되어야 사태의 본질이 파악될 수 있고, ③ 여성 경찰관들은 주로 승진과 부서배치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④ 여성 경찰관의 성차별 경험은 개인적 특성 외에도 가정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⑤ 경찰 조직의 여성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성차별을 경험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²⁵⁷⁾ 연구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조직 내부에서 여성 경찰관에 대한 성차별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유연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²⁵⁸⁾

경찰공무원 개인의 직무만족도 향상이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찰공무원의 일반적 인권의식이 더 높고 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의식도 더 높으며 경찰장비 사용과정에서의 인권의식 및 인권 침해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나타났다.²⁵⁹⁾ 이처럼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은 인권보장역량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권 침해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 인권 침해문제를 줄이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법집행과정에 적용하는 인권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²⁶⁰⁾

255) 강지현, 위의 글(주 254), 4면.

256) 강지현, 위의 글(주 254), 4면.

257) 강지현, 위의 글(주 254), 20-21면.

258) 강지현, 위의 글(주 254), 21면.

259) 정우성·차훈진,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인권의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4) (2017), 191-193면.

5. 인권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우선 김영중은 “내사·불심검문·고소 고발사건 접수 등의 수사관의 범죄발견 활동, 수사의 필요성·수사의 상당성·수사 등의 실행과 관련된 수사의 조건, 영장 없는 압수수사·체포 등 강제수사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²⁶¹⁾ 이에 대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인권 침해 사례를 설명하는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권의식 함양에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한다.²⁶²⁾ 경찰 인권교육 실질화 방안으로 ‘경찰 인권 전문강사 양성’,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자발적, 협동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방식 교육 확대’, ‘다양한 보조교재 활용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제안된다.²⁶³⁾

남재성도 그동안 경찰이 적법절차 준수에만 천착한 나머지 인권 보호에 대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같은 포괄적인 인권 보호 임무가 강조됨에 따라 경찰활동과 인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²⁶⁴⁾ 이에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외부 전문가 활용’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기자재의 개발’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²⁶⁵⁾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임무와 관련해서 장일식은 경찰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개선안을 제시한다.²⁶⁶⁾ 분석 결과, 경찰교육훈련은 2016년 대비 교육기관 및 교육센터의 교육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사이버 교육으로 보완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인원과 과정·횟수는 증가하였다.²⁶⁷⁾ 그러나 ‘사회적

260) 정우성·차훈진, 위의 글(주 259), 204-205면.

261) 김영중, “형사절차와 인권 보장: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2(2) (2014), 88면.

262) 김영중, 위의 글(주 261), 97면.

263) 김영중, 위의 글(주 261), 98-103면.

264) 남재성, “경찰공무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경찰 인권교육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3(2) (2014), 59면.

265) 남재성, 위의 글(주 264), 68면.

266) 장일식,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를 위한 경찰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1 (2018), 109-134면.

약자 과목 교과목 편성 시간 부족,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만족도,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커리큘럼의 부재, 사회적 약자 보호 편성 시간 부족, 경찰수사 전문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보호 교육과정 부재'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²⁶⁸⁾ 이에 개선방안으로 ① 전(全)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해에 대한 수업 시간 증대, ② 직무만족도 조사 시 교육 분야에 대한 더 세밀한 자료 분석, ③ 교육봉사활동 실천, ④ 현직 경찰관이 재직 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신설 및 확대가 제안된다.²⁶⁹⁾

6. 기타

기타 주제로는 형사사법체계의 인권 보장 기능 증진 정책의 체계화 방안, 검사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 형사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 이익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선 형사사법체계의 인권 보장 기능 증진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살펴보자. 김한균은 유엔 정례인권검토제도를 형사사법체계의 인권 보장 기능 증진을 위한 개혁 정책을 체계화하는 데 다음과 같은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²⁷⁰⁾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도에 따라 각국은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작성·제출을 위한 인권상황점검 과정과 국제사회 차원의 검토·권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의결과 권고안에 따라 다음 정례검토 시기까지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권상황 개선노력이 추진된다. 이를 특히 형사사법개혁을 보편적 인권규범 원칙에 입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규범적·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²⁷¹⁾

다음으로 검사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전윤경은 프랑스

267) 장일식, 위의 글(주 266), 118면.

268) 장일식, 위의 글(주 266), 121-125면.

269) 장일식, 위의 글(주 266), 130면.

270) 김한균, "유엔 정례인권검토제도(UPR)와 형사사법개혁의 인권지향적 체계화", 「형사법의 신동향」 56 (2017), 203-234면.

271) 김한균, 위의 글(주 270), 205면.

사법관의 인사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²⁷²⁾ 검사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되는 검사 인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인사기구 설치, 직급별 검사회회의의 실질화 및 직급별 대표의 인사 절차에의 참여 보장, 인사안 공개 및 의견 수렴 등이 제시된다.²⁷³⁾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 이익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주재웅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비해서 범죄피해자의 이익은 등한시된다고 지적하고,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자율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자 실질적으로 범죄피해회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평가한다.²⁷⁴⁾ 연구자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무죄추정의 원칙 명시, 책임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 초래 예상 시 조정회부금지조항 명시)이 필요하고, 형사조정제도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의 충돌,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형사사건의 민사사건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 관찰·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⁷⁵⁾

272) 전윤경,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과 그 시사점(1) -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0 (2018), 101면.

273) 전윤경, 위의 글(주 272), 133-137면.

274) 주재웅,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실태 및 효과성 분석”, 『법률실무연구』 2(2) (2014), 216-218면.

275) 주재웅, 위의 글(주 274), 275면.

제3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개혁 권고 분석

이 절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검찰·경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검찰·경찰의 권한 나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검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총 14차에 걸쳐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총 10개의 권고안이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을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에 관한 내용은 <표 2-3>과 같다.

첫째,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부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 즉 전문성 강화와 연계된다. 개혁위원회는 인권 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인권 관련 직책을 일반직 공무원 및 비검사출신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도록 권고하였다. 둘째, 개혁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인권 침해의 과오를 시정함으로써 인권검찰로 거듭나기를 주문하였다. 공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시정조치 없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과거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개혁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개혁위원회는 범죄피해자, 여성 등과 같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섯째, 개혁위원회는 검찰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다. 검찰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검찰이 인권검찰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7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1)

〈표 2-3〉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중 검찰 인권 보호 기능 강화 관련 내용

권고안	발표일	안 건	주요 내용
1차	170824	법무부의 탈검찰화	• 인권국 소속 공무원 탈검찰화
3차	170929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 과거 인권 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4차	170929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권 침해 시정해야 함 강조
5차	171207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 등	•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개정되었으나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 개선에는 미흡
6차	171207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	•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적 조치 요구
7차	180131	검찰 내 성폭력 관련 권고	• 조직문화 점검 및 문제점 시정 요구 •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 •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권고
8차	180208	검·경 수사권 조정안	• 인권옹호와 적법절차 실현 강조 •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적절한 견제·감독 기능 강조 •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 및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검사의 일반적 지시 및 수사요구권 도입 • 경찰 수사권에 대한 외부 견제 •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통제 필요성 강조
			• 검사의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강조(①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사건관련자가 경찰의 편파수사, 과잉수사, 장기간연수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기록 등의 송부 요구, 시정 조치 요구 또는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10차	180502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	• 성별 균형 인사 실현 • 일·생활 균형 실현 • 실효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
12차	180621	공안 기능의 재조정	• 공안의 개념을 축소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에서 분리 • 공안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과거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14차	180621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겪고 있음 지적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뉴스(<http://www.moj.go.kr/moj/221/subview.do>)에 게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필자가 정리

2.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검토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보호분과를 따로 설치하여 해당 분과에서는 총 15차에 걸쳐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표 2-4) 참고). 또한 경찰개혁위원회의 또 다른 분과인 수사개혁분과에서 발표한 권고안에도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및 인권 보호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정보경찰개혁 소위에서도 치안정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제한하여 민간 대상의 동향파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중 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집중한 복수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의 경우 검찰과 달리 수사 외에 시민을 대면하는 상황이 일상적이다. 특히, 집회·시위 상황에서 경찰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대 보장과 안전·질서유지라는 대립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점에서 인권보호분과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인식 관점을 ‘관리’에서 ‘보장’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적 경찰권 행사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 경찰 제도화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인권정책관 신설과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요청하였다. 특히,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경찰권 행사에 따른 인권 침해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셋째,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절차의 개선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도록 권고하였다. 예를 들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넷째,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섯째,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공간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여섯째, 경찰개혁위원회는 의무경찰을 포함하여 경찰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2-4〉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중 경찰 인권 보호 기능 강화 관련 내용

권고안	발표일	안 건	주요 내용
인권 보호분과 1차	170714	경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등
인권 보호분과 2차	170728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 백서 발간	• 경찰권 남용 사례 파악
인권 보호분과 3차	170901	집회사회자유 보장방안	• 패러다임 전환('관리'→ '보장') • 신고절차개선 • 금지통고최소화 • 대응·해산절차 개선 • 기타(1인시위 및 기자회견 보장, 일반교통방 해죄 미적용,무전통신내용녹음, 참가자 수 사시 DNA 미채취 등)
인권 보호분과 4차	171011	인권 경찰의 제도화	• 인권위 결정 수용 • 인권정책관 신설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 인권교육 강화
인권 보호분과 5차	171011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 직장협의회 설치 • 노조설립을 위한 제도 마련
인권 보호분과 6차	171011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 남녀 통합모집 등 • 승진 등 인사관리 • 기타(성평등 조직 문화,일가정양립지원, 조 직 내 성희롱 등 근절 대책 마련 등)
인권 보호분과 7차	171016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 수사절차 개선(전화조사 지양, 최종의견진 술기한 통지, 송치 등 통지 원칙, 먼지털이식 수사로 자백 유도 금지 등) • 자기변호노트(신문내용기록보장) • 기타(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 피 의자 특수성 고려)
인권 보호분과 8차	171016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 경찰 단계 위기개입(피해자전담경찰 활용) • 2차 피해 예방(부적절 조사 관행근절,범죄피 해 평가제도 보완) • 유관부처협의 • 기타(피해자 신체 안전·사생활보호, 신속한 일상복귀 지원)
인권 보호분과 9차	171019	감찰 활동 개혁 방안	• 감찰권 남용 방지 • 징계 양정 형평성 및 징계절차 공정성 제고 • 기타(비인권적 감찰 관행 폐지, 직무중심의 감찰 활동 패러다임)
인권 보호분과 10차	180202	의무경찰 인권 보호 강화	• 인권 보호 정책(인권진단,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 건강 및 복무여건 관리 • 기타(치안업무 보조임무 명확화)

권고안	발표일	안 건	주요 내용
인권 보호분과 11차	180309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 성평등 조직 문화 • 현장 대응 개선 • 정책추진 기반조성 등
인권 보호분과 12차	180309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방안	• 패러다임 전환(단속→수요차단) • 성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 • 단속·수사전문성 강화
인권 보호분과 13차	180608	보안경찰활동 개혁 방안	• 보안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 내사일몰제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업무 이관
인권 보호분과 14차	180608	경찰 수사공보 제도 개선	•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 원칙 • 공보책임자 전담 • 공적 기술서에 언론보도 실적 기재금지 등
수사 개혁분과 1차	170714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 인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이의 진술, 휴식권 보장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조속한 도입
수사 개혁분과 2차	170714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 수사과정 투명성 높여 인권 침해 방지
수사 개혁분과 5차	170908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 기구 신설	• 인권 침해 및 직무상 비위 근절 • 옴부즈만 등 설립
수사 개혁분과 6차	170908	국제기준에 맞는 경찰 체포·구속 최소화	• 긴급체포 사후 체포영장 청구 의무화 등 • 영장전담관신설 • 공소제기 전 구금기간 축소 • 수사기관 구속을 법원 구속으로 변경 등
수사 개혁분과 7차	170922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 보장 강화	• 유치인 처우와 시설 개선 • 유치인 보호와 수사 분리 • 변호인접견교통권 보장 • 외국인, 여성, 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특수성 고려 등
수사 개혁분과 8차	170922	인권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 조사공간과 수사공간 분리, 여성 등 조사실 마련 • 영상녹화실 설치 및 진술녹음시스템 구축 • 변호인접견실설치 • 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 예규 제정
정보경찰 개혁 소위 권고안	180427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 치안정보 개념 폐기(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 • 민간 대상 동향파악 등 인권 침해적 정보활동 중단 • 정보활동 방식 개선

출처: 경찰개혁위원회·경찰청경찰개혁TF,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1년의 발자취-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모음』 (경찰청, 2018)의 내용 중 관련 내용을 취합하여 필자가 정리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학술논문, 법무·검찰개혁 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 방대한 문헌 분석을 토대로 현재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논의를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중 미흡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우선 언론을 통해 알아본 사회적 평가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경찰의 이미지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경찰 개혁이라는 두 가지 단일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인권규범 위반 관행에 대한 고발성 기사가 상당수 있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욕설, 강압적 태도, 밤샘조사 등 그릇된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경찰의 경우 집회·시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과도한 장구 사용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수사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들의 특징은 적법절차를 무시하였다기보다는 적정성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집회·시위 대응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여성과 정신질환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와 수사기관 구성원에 대한 처우 문제는 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감수성이 낮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결과 학술적 논의는 언론보도와 달리 매우 다양한 쟁점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었다.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경찰 권한 분배 문제는 「헌법」적 차원과 형사사법제도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다루어지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에 수사와 관련된 쟁점들은 범죄발견 활동(내사, 불심검문), 수사진행(체포,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이라는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특징이 있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덧붙여 인터넷 패킷감청, 영상녹화, 수사자료표, 신속처리절차, 재정신청, 즉결심판, 피의사실공표죄, 형사절차전자화법, 독직폭행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적 논의가 언론보도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수사기관 구성원의 낮은 인권감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멈추지 않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자는 입장이 많다는 점이다. 법학자들이 논의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로 집중되는 경향은 이해할 수 있는 바이지만 인권보장역량이 단순히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권교육 강화나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주제가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행스럽게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는 앞서 살펴본 언론보도와 학술적 논의에서 다루어진 쟁점들과 의견들이 균형 있게 담겨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권 조정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관해서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이 합의해 나가야 할 쟁점들이 많기는 하지만, 두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검찰·경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검찰·경찰의 권한 나누기에 있다기보다는 검찰·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장

국가인권정책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김 한 균

국가인권정책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현실적으로 인권 보장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국가기관과 시민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전반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인권 실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관련 국가제도들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계획실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보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인권법제를 개선하고,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에 충실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보호강화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사회문화도 조성할 수 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신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¹⁾ 이러한 점은 국가인권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경찰과 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노력의 실천적 의미를 담보해 준다.

본 장에서는 제1차부터 현 시점 제3차까지 각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정책 이행에 대해 평가한다. 분석과 평가의 목적은 성과와 한계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경찰과 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입안과 실행, 평가 단계 전반에 걸쳐 국가인권정책 기본 틀 안에서의 체계성과 일관성, 합리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1)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2002), 11-12면.

제1절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준비·개발 단계에서는 2003년 10월 관련 정부기관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04년 3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마련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효율적 협의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2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년)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강화, 인권교육 강화,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구성되었다.²⁾

이어 2006년 1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관하여 관계부처가 자체 소관부분을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면 법무부가 취합·총괄하여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2006년 12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1차 공청회, 2007년 2월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를 반영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³⁾

2011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결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2007-2011』(2006).

3)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2007), 10-12면.;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2012), 10-13면.

과를 확정하였다.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총 208개 과제 중 65개 과제가 완료되고 128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어, 대부분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⁴⁾

1. 정책 내용 분석

가.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의미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내용 중 각 인권유형별 인권 정책에 따른 형사정책 유관 정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

1) 생명권

첫째, 현행법상 사형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007년 중 사형제도 존치여부 또한 검토한다.

둘째, 생명윤리안전강화를 위하여 생명윤리안전에관한법률을 개정한다.

셋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한다.

2) 신체의 자유

첫째, 2007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을 통한 긴급체포제도 개선, 필요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2007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을 통한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변호인신문참여제도,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 필요 있는 피의자 피고인 보호제도를 검토한다.

셋째, 경찰유치장, 대용감방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한다.

넷째,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한 형「형법」개정을 검토하고, 수용자 과밀수용해결을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다섯째, 과학적 수용자 분류를 통한 사회복귀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한다.

4)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14면.

5) 이하 정책 내용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2011), 814면에서 따옴.

여섯째, 소년법의 연령 및 갱생촉진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일곱째, 외국인보호소 장기보호제도를 점검·개선한다.

여덟째,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을 검토한다.

3)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첫째, 보안관찰제도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CCTV 설치운영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교정시설 내 서신검열제도 개선 및 사전허가제 폐지를 검토한다.

넷째,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또는 명예보호를 강화한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

둘째,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를 검토한다.

5) 범죄피해자

첫째,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상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둘째, 현실적인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제도를 확립한다.

셋째, 법률구조, 의료보건서비스 등 종합적 지원책을 추진한다.

넷째, 민간자원봉사활동 단체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다섯째,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호를 강화한다.

여섯째,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일곱째,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여덟째, 가해자석방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보장 등,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아홉째,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 보장과 정보보호를 강화한다.

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 관련 정책

첫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을 통한 긴급체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유치장 시설 및 운영개선, 대용감방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CCTV 설치운영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시설관리,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으로 CCTV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나, 공공기관의 개인영상정보 관리 미흡, 기술고도화에 따른 보호조치 미흡 문제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개인영상정보관리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 연락체계 형성,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정보 제공,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 보장, 범죄피해자 정보보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검찰 관련 정책

첫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을 통한 필요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도입 및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과 변호인신문참여제도,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피의자 피고인 보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상담체계 구축, 현실적인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제도 확립, 법률구조, 의료보건서비스 등 종합적 지원, 민간자원봉사활동 단체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및 보호,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 연락체계 형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 석방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보장,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정보 제공,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 보장, 범죄피해자 정보보호는 수사기관 공히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2. 정책 내용 평가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총 208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51개 과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87개 과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54개 과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16개 과제가 그것이다. 제1차 기본계획의 과제 중 65개 과제가 완료되고 128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어, 대부분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된 결과 이행을 92.8%로 평가되었다.⁶⁾

제1차 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실천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즉, 형사절차상 인신구속제도의 개선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 그리고 경찰유치장의 시설 운영개선, 수용자 처우향상, 수용자과밀수용 완화,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소년범 갱생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한국사회의 인권 인프라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을 비롯한 법제도 정비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였다.⁷⁾

가. 경찰의 정책이행 평가

1)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첫째, 인권 친화적 유치장 운영 개선 계획(수사과-3421 '11.3.22) 시행과 유치장 관리부서 이관 기본계획(경무과-6639 '11.5.26) 시행을 완료하였다.

인권을 위한 시설보완으로서 유치인 자해 최소화를 위한 유치실 창살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유치실 출입문 개폐시 소음 감소, 심야 쾌적한 취침환경을 조성하였다.

6)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2011), 4면.

	과제 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제2부	18개 과제	28개 과제	-	5개 과제
제3부	33개 과제	53개 과제	-	1개 과제
제4부	14개 과제	38개 과제	-	2개 과제
제5부	-	9개 과제	-	7개 과제
합계	65개 과제	128개 과제	0개 과제	15개 과제

7)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221-227면.;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2011), 5-10면.

유치장이 복층(1,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나 유치인 수 감소로 1층만 사용할 경우 유치장 1층과 2층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보온, 단열효과를 기하였다.⁸⁾

둘째, 유치실 내 조도가 낮아 유치인의 심리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유치실 내 중압감·폐쇄감 감소 효과가 있는 200 lx 수준의 조명 밝기로 조정하였다. 또한 유치인 수면권 보호를 위해 수면용 안대를 비치하고 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⁹⁾

셋째, 일반 국민이 면회 절차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곤란하기에 선제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포·구속 통지¹⁰⁾ 시에 면회절차 안내서 첨부하도록 하였다. 면회방법은 직접대화, 일방향 마이크 시스템 등 방식이 다양하던 것을 1:1 인터폰 대화방식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민원인이 유치장을 쉽게 찾아가도록 동선을 고려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 강화를 위해 면회 신청서 뒷면에 안내도(유치장 찾아가는 길)를 인쇄하였다. 면회실(면회객)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명 밝기 조정, 대화하기 편한 높이의 의자 설치, 청결상태 유지, 벽면도색, 그림 등을 통해서 정서순화 환경을 조성하였다.¹¹⁾

넷째,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변경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였다.

2) 일선 경찰관 인권의식 제고

경찰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경찰교육원 또는 수사연수원에 교육용 유치장 설치를 추진하고, 실질적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신임 경찰관,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교육과정에 유치장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정하였다.¹²⁾

3)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관리와 사생활보호

CCTV가 연쇄 살인사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의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고,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일각에

8)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33-34면.

9)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34면.

10) 「범죄수사규칙」 제97조.

11)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34-35면.

12)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35면.

서는 CCTV 설치 증가가 국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CCTV의 설치·운영에 따른 투명한 관리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법의과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경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CCTV 관리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¹³⁾

4) 집회·시위법의 합리적 운용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 노력차원에서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성화시켜 경찰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익충돌 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집회·시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합법촉진·불법필벌 기초 아래 기계적인 집회금지 관행을 개선,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 유지를 위하여 구체적 금지 기준을 바탕으로 인원·장소·시간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지통고에 보다 신중히 접근하였다. 2011년 10월까지 전체 금지통고는 신고 139,571건 중 325건(0.23%)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고 165,271건 중 900건(0.54%)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금지사유 중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금지한 경우는 전년 411건에서 2011년 76건으로 감소, 자의적인 「집시법」 적용 관행을 개선하였다.¹⁴⁾

둘째,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경찰의 「집시법」 운용 및 집회·시위 관리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불법·폭력시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 준법시위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금지통고·제한통고·이의재결·사례검토 등 사안에서 총 5,037건 개최되었고, 2011년 현재 전국 209개 경찰관서에 1,494명으로 구성 운영 중이다.¹⁵⁾

셋째, 법제도적으로는 종전의 후순위 집회 무조건 금지 등 기계적 금지통고 관행을 개선, 구체적 기준을 바탕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 접근토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즉 ‘공공질서 위협’ 사유의 경우, 폭력집회 전력만으로 금지 지양, 장소와

13)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93면.

14)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147면.

15)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148면.

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교통 소통' 사유의 경우,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통 장애를 고려한다. '장소 경합' 사유의 경우, 선순위 신고만을 이유로 금지 지양, 상호 집회 방해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고 선순위 집회 미개최 시에는 후순위 집회를 허용한다.¹⁶⁾

넷째, 정책관행과 인식개선 차원에서는 경찰의 기계적 금지통고 관행 개선 노력은 물론, 준법집회협정(MOU) 체결을 통한 준법 집회·시위 협력기반 강화에 노력하였다. 일부 단체의 의도적인 MOU 체결 기피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설득과 함께 '합법촉진' 활동을 전개하여, 평화적인 집회 개최와 경찰과의 협력을 상호 약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금지통고 관행을 개선하고, 단체 간 조율을 통해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집회 개최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사회갈등 상황을 두고 준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확산코자 노력하였다.¹⁷⁾

다만, 장소 선점 의도로 신고한 집회(유령집회)의 문제점은 남는다. 즉 특정장소에서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소선점 신고 후 개최하지 않아 타인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사례 빈발, 소위 유령집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¹⁸⁾ 따라서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의무(「집시법」 제6조3항)에 대한 강제조항을 신설, 집회신고 남발을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¹⁹⁾

나. 검찰의 정책 이행 평가

1) 긴급체포제도 개선

첫째, 체포 완료시점에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 관해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였다.

둘째,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

16)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148면.

17)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148면.

18) 집회신고후미개최율: '07년97.21%, '08년97.35%, '09년97.33%, '10년 94.66%, '11년 96.18%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149면.)

19)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149면.

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일시 등을 통지하도록 하였다.²⁰⁾

2) 필요적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도록 하였다.²¹⁾

3)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국선변호인제도가 확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절차,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제도가 적용되었다.²²⁾

4) 변호인의 신문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였다.²³⁾

5)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보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 등에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였다.²⁴⁾

6) 국가보안법 남용방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면서도 신중한 운용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하여는 폐지법안과 일부개정 법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원만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²⁵⁾

법제정비 측면에서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안사범에

20)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28면.

21)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28면.

22)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30면.

23)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30면.

24)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30면.

25)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125면.

관한 각종 자료의 전산처리 및 활용에 관한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상 대상 범죄 축소, 일부 입력 항목 축소 등의 성과가 있었다.²⁶⁾ 실무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여 적용하여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²⁷⁾ 검찰은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는 과제가 있다. 즉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 적법절차 준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한편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하여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²⁸⁾

제2절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2011년 5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앞서, 인권 관련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에 관한 사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계속 추진과제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2011년 9월~11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참여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계속 포함하여 추진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였다. 이어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 협의를 위해서는 2011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인권

26)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126면.

27)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126면.

*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통계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8
입건	64	46	57	97	50
기소유예	9	6	5	12	2

28)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127면.

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은 첫째,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내용을 존중한다. 셋째, 2008년 이후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최대한 고려한다. 넷째, 정부 내 다른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인권 관련 과제는 내용에 반영한다. 다섯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 일반 의견수렴 후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계획을 확정한다. 201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하였다.²⁹⁾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사전 의견수렴은 201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내 협의를 추진하기에 앞서, 인권 관련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 30개 인권단체가 '인권단체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 기자회견 후 자료를 제출하였다. 2012년 1월~3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참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07년 5월 이후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종합 자료, 인권단체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관련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 협의하였다. 국민 일반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는 2012년 3월 14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12년 3월 20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논의내용을 토대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의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2012년 3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안을 작성하고, 2012년 3월 30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³⁰⁾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총 209개 과제로 구성된 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

29)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15면.

30)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17면.

본계획에 새로 추가된 과제는 67개 과제이고, 142개 과제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과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과제다.³¹⁾

제2차로 이어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포함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인권에 관한 종합 계획인 만큼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향유하여야 할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목표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³²⁾

다만 제2차 기본계획은 2013년 5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추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할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3년 7월 각 부처에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약칭 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을 요청하고, 2013년 11월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 사항이 반영된 수정안을 기초하여 2013년 12월 3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2013년 12월 18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하였다.³³⁾

1. 정책 내용 분석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하에서의 형사정책은 형사절차상 인신구속제도의 개선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 그리고 경찰유치장의 시설 운영개선, 수용자 처우향상, 수용자과밀수용 완화,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소년범 갱생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다만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인 법제도 개선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형사정책에서는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과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를 국가적

31)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16-17면.

32)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18면.

33)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수정판(2014), 20-21면.

중요과제로 제시하였다.

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의미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형사정책적 쟁점은 인신매매·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제도 활성화, 선진 외국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절차적 권리의 충실한 보장, 대용감방 폐지 및 폐지 이전까지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교정시설 간 수용 편차 및 과밀 수용 해소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제고,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 재범위험성 평가 및 처우, 소년보호 관련 법률 및 시설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약물치료명령 시행에 따른 인권 침해 최소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보호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다.³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구속제도의 개선과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둘째,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 셋째, 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넷째,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행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의 최소화, 다섯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 폐지를 통한 밀실수사 방지, 전문증거배제법칙 관철 등으로 공판중심주의 강화, 여섯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 제도 도입 시 인권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 일곱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감독)과 신상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의 최소화, 여덟째, 외국인 불법체류자 보호조치에 관하여 형사사법절차상 구금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정 마련을 권고하였다.³⁵⁾

특히 형사정책적으로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조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던 제1차에 이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첫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 범죄피해자지원의 민관협력, 범죄피해자지원의 전문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둘째, 장애인, 아동,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34)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36-37면.

35)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23면. 이하.

범죄피해자인 경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 셋째, 인터넷·언론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권고하였다.³⁶⁾

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 관련 정책

첫째,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 제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³⁷⁾ 이와 관련하여 각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 및 운영 현황 등을 매년 1회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하였고, 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 반영되었다.³⁸⁾

둘째,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민·관의 협력 체제를 활성화시켜 경찰조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법·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³⁹⁾

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검찰 관련 정책

첫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속 사유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 즉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선진 외국에서와 같은 수준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⁴⁰⁾

둘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강화를 위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인권 보장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찰

36)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221-227면.

37)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49면.

38)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52면.

39)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66면.

40)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38면.

청 내 ‘수사지휘 전담검사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양천서 고문 사건과 같은 사법경찰관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서 유치장 감찰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 지적된 바 있다.⁴¹⁾

셋째, 2007년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새로 시행된 제도 운영 상황 점검 차원에서 변호인의 신문 참여,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피고인의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새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형사소송법개정 추진이 필요하다.⁴²⁾

넷째,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부즈만’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부즈만’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청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⁴³⁾

다섯째,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는 여전히 정책 과제다. 국가보안법 해석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례를 철저히 적용하여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기소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⁴⁴⁾

2. 정책 내용 평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하에서 수사기관의 인권 보장 역량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 공통으로 주목할 만한 현안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수집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간 정보 유통 및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누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⁴⁵⁾

첫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012년~2013년 추진)

41)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38면.

42)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38면.

43)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39면.

44)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58면.

45)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50면.

와 관련해서는 내부 업무시스템 접근 권한 제어를 위한 내부자 정보 중 개인정보 속성에 대한 암호화 솔루션 도입, 포털 계정 패스워드 규칙 강화, 형사사법포털 사용자에게 대한 초기화 비밀번호 전송 방식 전환, 내부업무시스템의 사용자 정보 암호화(예산 확보 후 2013년 추진)이 정책에 포함되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 계획 수립,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보안업무 전문 인력 보강과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하였다.⁴⁶⁾

또 하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사기관을 비롯한 법무집행기관 인권보장역량과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는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시설 내 수용자 상대 설문조사·면담을 통해 법집행공무원의 인권 침해 행위 확인 시 엄정 조사·처리하고, 특히 실태조사 시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병행하도록 하였다.⁴⁷⁾

가. 경찰의 정책이행 평가

1) 개인영상정보 및 형사사법정보 보호 강화

2012-2014년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 조사와 함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2년 7월에는 형사사법포털 사용자에게 대한 초기화 비밀번호 전송방식으로 전환하고, 2013년 1월부터는 형사사법포털 계정 패스워드 규칙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형사사법포털(대국민시스템), 공통시스템, 판결문DB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위험요인과 개선방안 도출하였다.⁴⁸⁾

2)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경찰은 「집시법」상 금지·제한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 유지를 목표로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경찰조치의 공정성 제고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균형을 이룰

46)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53면.

47)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78면.

48)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2016), 38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법 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213개 경찰관서에 각각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하였고, 참여 위원은 총 1,399명이었다.⁴⁹⁾

나. 검찰의 정책이행 평가

1) 체포·구속장소 감찰 실시

구속기간 경과 여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등의 감찰사항, 범죄사건 부·긴급체포원부 등 신병 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였다. 검사가 체포·구속장소를 직접 점검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상대로 면담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에 의거하여 체포·구속장소 감찰시 불법구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다. 2012년 체포·구속장소 감찰 3,017회, 2013년 체포·구속장소 감찰 3,199회를 실시하였다.⁵⁰⁾

2) ‘수사지휘전담검사제’ 운영

경력검사 전담체제로 전환, 사법경찰에 대한 인신구속지휘를 획기적으로 강화, 지휘의 적정성 및 신중성을 제고하였다. 객관적 판단을 통해 경찰 수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실적에 치우쳐 과도하게 신청된 영장은 법령에 따라 기각하였다. 사법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자주 오류를 범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사법경찰 교육에 활용하고 체포·구속장소에 대한 감찰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고, 체포·구속장소 감찰시 불법 구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역시 철저히 하였다. 2014년에는 체포·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3,256회 실시한 바, 해당 기간 동안 불법구금 등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송치 전 수사지휘 업무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체포·구속영장 등에 대한 심사를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맡도록 하여 인신구속의 적정성·신중성을 제고하였다. 2014년 11월 전국 수사지휘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사지휘 기간 도과 여부 점검 방안, 송치 후 수사지휘 활성화 시범 실시 결과 등 수사지휘 기법을 공유하였다.⁵¹⁾

49)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51면.

50)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13면.

51)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11면.

3)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결과, 2012년에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실적이 총 2,622건이었고, 2013년에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실적이 총 2,548건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 소환 등 수사절차 단계에서 장애유형별로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결과통보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문의 가능한 주임검사 또는 담당수사관의 업무용 이메일을 안내하는 등 장애의 유형별로 출석 요구·결과통보 하였다.⁵²⁾

4) 인권침해신고센터와 국민소통 활성화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부즈만’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전화 설치 및 민원실 등에 홍보를 위한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고, 검찰청별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상·하반기 2회 점검 실시하였다. 2012년 인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총 14건 접수 및 처리(사건접수 7건, 기타(접수불요 등) 7건), 2013년 총 8건 접수 및 처리(사건접수 6건, 기타(접수불요 등) 2건)에 불과하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옴부즈만은 활동 과정 중에 느꼈던 문제점이나 시정 필요사항 등을 간부(기관장 등)에게 자유롭게 개진하고, 지역 현안 및 범죄 정보 등에 관한 민원을 전달하고, 간부는 청의 운영에 있어 옴부즈만이 개진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국민소통 옴부즈만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는 국민소통 옴부즈만이 총 2,104회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옴부즈만이 개진한 의견 중 125건이 청 운영에 반영되었고, 2013년에는 상담 건수는 총 2,251회였고 옴부즈만이 개진한 96건의 의견이 청 운영에 반영되었다.⁵³⁾

5) 국가보안법 사건처리

국가보안법 사건처리 실적에 따르면 2012년 국가보안법위반 총 위반자 112명중 7명 기소유예 처분(구수 포함 14명), 2013년, 국가보안법위반 총 위반자 129명중

52)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13면.

53)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13면.

1명 기소유예 처분(구수 포함 8명), 2014년, 국가보안법위반 총 위반자 57명중 4명 기소유예 처분(구수 포함 8명)하였다.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 실시(검사 153명, 수사관 24명) 등 국가보안법의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적용으로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 기소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⁵⁴⁾

제3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2007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실시 이래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표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어 왔지만,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인권 기반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국제 인권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의 개선과 정보인권·기업인권 등 확대된 인권영역에서의 인권기준 마련과 인권향상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에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기반으로서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후세대도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이념과 철학이 함축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빈곤과 기아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등 사회발전,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 등 경제발전,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생태계 보호 등 환경보호,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 등 평화체제 구축으로 구성되었다.⁵⁵⁾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인권정책차원에서 핵심추진과제에 반영하도록 하

54)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42면.

55)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2018년 9월 1일 최종검색).

였다.⁵⁶⁾

그리고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부 의지와 국가인권정책 방향의 지속적 표명 필요성에 비추어 제2차 기본계획 종료에 따라 지속적 추진 과제 및 새로운 인권개선 요구를 반영한 신규과제로 제3차 기본계획(2018-2022)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의 모범적 실현 국가로서 위상 제고에 기여할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2017년 11월 UN 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mmission)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3차 주기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내용을 정책적으로 검토·반영하였고,⁵⁷⁾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인권정책 기조 및 인권 관련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도 반영하였다. 즉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데 목표를 둔다.⁵⁸⁾

제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인권 인프라 구축으로 인권의 제도적 보장을 기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와 인권 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를 명시하였다.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인권 보호 수준을 넘는 인권증진이 필요한 분야를 명시하고 인권교육 강화와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에 관하여 기획하였다.⁵⁹⁾

1. 정책 내용 분석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처음으로 인권정책의 기본원칙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첫째, 인권존중의 원칙이다. 시민적·정치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다.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증진은 국가의 의무다. 둘째,

56)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7), 10면.

57) 김한균, “유엔정례인권검토제도와 형사사법개혁의 인권지향적 체계화”, 『형사법의 신동향』 56호, (2017), 참조.

58)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 5면.

59)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0-11면.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이다. 국가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존중·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추진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분야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보장과 증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와 인종간 이해증진 정책의 적절한 추진 또한 국가의 의무다. 셋째, 민주적 참여의 원칙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참여에 바탕을 두며,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이 필요하다.⁶⁰⁾

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특징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부각된 형사정책적 현안은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과제다. 즉 수사 과정에서 통신 관련 정보 확인 시 요건과 절차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전국 검찰청에서 통신 수사 시 법정 요건과 절차,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 보장과 범죄대응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통신비밀보호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여 인권 보장과 범죄대응체계가 조화되고 선진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⁶¹⁾

무엇보다도 제3차 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특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체계화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다.

60)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3-4면.

61)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67면.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 상담 및 구조체계 확립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지원과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응급 위기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의 체계적 운영 및 범죄발생 직후 심리치료전문기관에 대한 연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치료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심리지원 종사자 전문화 교육 등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료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범죄피해심리전문가·스마일센터 등 심리치유 전문기관과 연계, 범죄발생의 초기부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적 진단 및 일원화된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및 피해가정 영·유아, 청소년 보호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원 대상자 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한 보금자리 지원 확대, 강력범죄 피해가정 중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비용 지급 등의 서비스를 추진한다. 범죄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국민인식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제도에 관한 홍보 실시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해제고 및 공감확산 등 피해자에 대한 인식전환에 초점을 맞춘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⁶²⁾

2) 범죄피해구조 및 형사조정제도 개선

배상명령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를 위해서 소송인에게 배상명령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배상과의 차이, 예시, 유의점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 마련 및 배포, 검찰·경찰 및 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안내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형사조정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조정위원 전문교육 실시 등 역량 강화, 형사합의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등 지급범위의 지속적 확대, 구조금 신속지급 방안 마련 등 지급방식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추진한다.⁶³⁾

62)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33-34면.

3)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전문가조력권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및 피해자변호사의 권리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범위 및 양성 확대를 통해 진술조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⁶⁴⁾

4)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안전 강화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형사절차상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차단, 피해자 증인신문 시 신문방식 및 내용의 제한으로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정보공개 금지 및 정보공개 가이드라인·매뉴얼을 제공한다.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피해자 심리안정·신체안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하도록 임시숙소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귀가 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정보를 신속 제공한다.⁶⁵⁾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정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정책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 형사사법기관 실무자의 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시행을 추진하며, 민간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정책추진 기반의 정비 측면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 현황의 파악 및 다양한 자원 확보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한다.⁶⁶⁾

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 관련 정책 분석

집회·시위의 패러다임을 기존 ‘준법 대 불법’에서 ‘평화 대 폭력’ 개념으로 전환,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 보장한다. 신고절차·진행과정에서의 사소한 흠결 발생, ‘일

63)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33-34면.

64)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34-35면.

65)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34-35면.

66)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34-35면.

시적' 생활불편·업무상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명확히 저촉되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시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 신고의 예외,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절차 중심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추진한다.⁶⁷⁾

또한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를 위하여 살수차·차벽 운용요건 강화 및 장비 사용 교육을 강화한다. 살수차의 운용요건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구체적 안전조치를 강화토록 개정(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 금지)한다. 또한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일반 집회·시위에서는 차벽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폭력행위로 인하여 차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제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지속적인 장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안전에 최우선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법집행을 구현토록 노력한다. 아울러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는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되는 경찰에게 개인식별 표지를 부착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집회·시위 현장 경찰 무전을 녹음하고 3개월간 보관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법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부과는 물론 관련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적용기준 및 실무지침」을 마련,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신 판례, 개혁신 권고안 등 토대로 실무지침 마련·시행하고,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사건 보고 체제 구축으로 법집행 통일성을 도모하며, 집회·시위 현장 경찰관 교육자료 제작 및 동작화도 추진한다.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판례집, 사이버 강의 등 제작·배포하고, 유관기능 합동 현장 워크숍·간담회도 추진한다.⁶⁸⁾

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검찰 관련 정책 분석

1) 인신구속제도 개선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감찰과 수사지휘 강화를 통하여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철저한 감찰로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 '수사지휘 전담검사제' 운영으로

67)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61면.

68)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62면.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차단하고, 운영상황의 수시점검을 통해 지휘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엄단하여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인권 침해 구제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현행 구속수사 기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태확인 및 해외사례를 검토한다.⁶⁹⁾

2)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호증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하여 법무부 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실무단을 구성하였다.(2017년 9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관련 주무부서인 법무과,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소관부서인 형사법제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감독부서 및 법률구조법 소관부서인 인권구조과의 각 담당검사 등으로 구성하여 형사공공변호인 관련 입법례를 연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국외 입법례와 국내 현행법의 분석·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참여횟수 보장을 탈피한 구체적 보장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신뢰관계인 보조인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하여 실효성을 증진한다.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와 국민소통옴부즈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실적을 점검한다.⁷⁰⁾

3) 국가보안법 남용방지 및 인권 침해 문제 해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최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사·기소한다. 이를 위해서 사안의 경중,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기소유예 등 적극 검토한다. 남용방지를 위한 수사관계자 교육 및 수사지휘체계 확립하고, 특히 남북관계 변화상황 등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⁷¹⁾ 개정 필요성을

69)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4면.

70)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5면.

71)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검토한다.⁷²⁾

2. 정책 내용에 따른 과제 전망

제3차 기본계획은 그 정책적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⁷³⁾

첫째,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근본인 생명·신체의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소극적 성격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적극적 성격의 사회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 제도 간 연계성과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한다.

셋째,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와 민주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권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한다.

다섯째, 인권실현을 가로막는 제도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권법제를 개선한다.

여섯째,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의 인권 지향성을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내에서 형사정책의 인권지향성, 특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강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증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생명·신체의 보호 및 안전 보장은 인권정책의 근간인만큼 범죄피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피의자와 피고인 권리보장,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인권 제도 간 연계성과 정책적 지속성 확보는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성과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2)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52면.

73)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 4면.

대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민주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또한 인권 보장체계를 강화시켜주는 핵심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국민참여의 실질을 기할 수 있도록, 즉 국민이 형사절차의 단순한 객체나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권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이 비로소 가능하다.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이라는 한국사회 절실한 과제는 경찰과 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을 통해서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권실현을 가로막는 제도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권법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개선은 인권선진문화의 지표가 될 것이다.

여섯째,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의 인권 지향성을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수사기관의 민관협력프로그램과 대국민홍보 전략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소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와 관행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혁뿐만 아니라, 법원과 법집행기관의 효과적 운영을 지도할 기본계획과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형사정책과 인권정책을 결합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단계에서는 정책협의체가 정기적으로 계획 실행을 점검하고, 각 정책집행기관이 계획업무를 이행한다.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언론홍보와 인권교육 역시 주요업무로 추진한다. 이행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는 정책협의체와 시민단체의 점검을 상시적으로 받아야 하며, 점검을 위한 협의와 연계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점검결과는 정책집행기관에 통지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1차부터 제3차에 이르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기간단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각각 연속선상에서 성과는 반영하여 더욱 증진하고, 한계는 반성하여 개선보완책을 찾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본 틀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즉 전기 기본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차기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행되지 않은 전기 기본계획의 내용이 차기 계획에 거의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제2차 기본계획의 발표에서 일부 드러났는데, 구체적인 2차 기본계획 항목마다 제1차 기본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나타난다.⁷⁴⁾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하에서 수사기관 인권 보장 역량 강화 정책의 성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대효과는 첫째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둘째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 폭 확대, 셋째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 넷째 인권 선도국으로의 도약이다.⁷⁵⁾ 그렇다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특히 그 기본 틀 안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 보장역량 강화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 폭 확대

첫째, 검찰은 향후 변호인 신문 참여를 적극 실시하고,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인권침해신고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소통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실현 또한 중요한 추진과제다.⁷⁶⁾

둘째, 수사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⁷⁷⁾ 형사사법정보시스템

74) 하태훈,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2012), 9, 11면.

75)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9-10면.

76)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14면.

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유·노출의 사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및 수준을 제고한다.⁷⁸⁾

나.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

첫째, 검찰은 체포·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통하여 불법 체포·구속 등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수사지휘전담검사제' 운영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수사지휘 우수 청 및 우수 검사 선정), 외국사례 연구,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국 수사지휘 전담 워크숍 개최 등으로 인권 보장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⁷⁹⁾

둘째, 경찰은 편의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통고하지 않고, 법 규정 및 판례에 따라 집회·시위 관리함으로써 금지통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⁸⁰⁾

다. 성과발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상 시사점

첫째, 2014년 검찰이 체포·구속장소에 대하여 감찰을 3,256회 실시하고,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 확립을 위한 연구 성과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전화를 증설하고 민원실 등에 센터 홍보문을 게시하고, 검찰청별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2014년 상·하반기 2회 점검 실시한 점과 더불어, 옴부즈만의 활동 과정 중에 느꼈던 문제점이나 시정 필요사항 등을 옴부즈만이 기관장 등 간부에게 자유롭게 개진하고, 지역 현안 및 범죄 정보 등 관련 민원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기관장 등 간부는 검찰청 운영에 있어 옴부즈만이 개진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⁸¹⁾

둘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누출의 사전예방

77)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37면.

78)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39면.

79)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12면.

80) 금지통고 : '10년 957건, '11년 388건, '12년 277건, '13년 203건, '14년 281건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51면.)

81)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69면.

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인정된다.⁸²⁾

셋째, 국가보안법 해석과 적용을 엄격히 하는 노력도 인정된다.⁸³⁾

넷째, 경찰은 각 경찰서에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두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경찰조치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조치로 준법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던 점에서 경찰이 편의적인 집회·시위 관리 관행에서 탈피하여 집회결사의 자유를 더 강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된다.⁸⁴⁾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하에서 수사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의 한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평가 역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파악된 한계는 마땅히 개선필요성의 근거이자 개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

첫째, CCTV 설치 확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 증대하는 한편, 신규 영상정보처리기기 출현 등에 따른 효과적 대응은 점점 난제가 되고 있다.⁸⁵⁾

둘째, 특정장소에서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소선점 신고 후 개최하지 않아 타인의 집회권이 침해받는 사례 빈발, 계속 증가하고 있다.⁸⁶⁾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사전통지의무(「집시법」 제6조제3항)의 강제조항이 없다. 국회 계류중인 '사전통지의무 강제조항'을 신설하는 「집시법」 개정안 통과시 집회신고 남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⁸⁷⁾

82)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75면.

83)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76면.

84)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78면.

85)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37면.

86) 집회신고 후 미개최율 : '12년 96.20%, '13년 96.22%, '14년 96.72%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51면.)

87)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51면.

나. 한계극복과 개선을 위한 수사기관 인권 보장 개선보완정책상 시사점

첫째, 검찰이 체포·구속장소 감찰시 불법 구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송치 전 수사지휘 업무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체포·구속영장 등에 대한 심사를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수사지휘전담검사를 맡도록 하여 인신구속의 적정성·신증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⁸⁾

둘째,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신문 참여 횟수보다는 실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여 피조사자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선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⁸⁹⁾

셋째,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1심 재판 종결시까지 수용하는 대용감방은 시설미비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 외부 운동이나 종교생활이 불가능하고 일조권, 수면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용감방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⁹⁰⁾

넷째, 인권 보장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 확립을 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인권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인권존중적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 확립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⁹¹⁾

다섯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 확립’에 대한 여론형성과정에 참고가 될 만한 인권관련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인권 보장에서 각 수사기관별 특성과 역할과 수사지휘 체계확립 필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⁹²⁾

여섯째,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도록 변호인신문참여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⁹³⁾

88)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66면.

89)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66면.

90)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66면.

91)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71면.

92)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71면.

93)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71면.

일곱째,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브즈만’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강화와 더불어 제도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⁹⁴⁾

여덟째, 제도운영에 있어서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여타 공익적 가치 충돌문제에 대한 해법모색은 난제다.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⁹⁵⁾

아홉째,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례 내용 및 분석 사례를 수사기관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⁹⁶⁾

열째,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활성화로 경찰서 단위에서의 집회·시위에 관한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자문위원회에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을 참여시켜 집회·시위관련 경찰 정책과 실무현황을 알리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⁹⁷⁾

94)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71면.

95)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76면.

96)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76면.

97)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79면.

제 4 장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분석

김경찬·서선영·김동현·김두나·김재왕
류민희·박한희·조혜인·최현정·한가람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분석

제1절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유형 분석 개관

1. 분석 대상 사례의 유형 및 범위

본 분석은 2008년 3월에서 2017년 4월까지 경찰과 검찰의 인권 침해 사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중에서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안전,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에 관한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쟁점사항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¹⁾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와 관련한 영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쟁점과 겹치는 내용도 소수자 부분을 성소수자 관련 사례, 장애인 관련 사례, 여성 관련 사례, 미성년자 관련 사례, 외국인 관련 사례 등 별도의 목차로 만들어 정리했다.

가. 경찰 관련 사례 유형 및 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관련 사례 중 경찰 관련 사례로 첫째,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안전 영역과 사회적 약자보호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인간의 존엄

1) 본 사례유형 분석은 경찰과 검찰의 인권규범 위반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물론 경찰과 검찰이 제1공화국 이후 제6공화국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 보호 및 인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점과 함께 민주화 운동과 법제개혁 및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권 보호와 인권 보장과 관련한 일정한 성과와 개선이 분명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와 양호한 개선의 결과를 소개하고 집중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와 인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점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의 역량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데 관심과 관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 영역 등으로 크게 나누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 그리고 규범화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 평가해 보았다.

경찰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안전 영역 관련 사례들을 주요 쟁점 사항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부당한 강제연행 및 혐의사실 유포와 부당한 임의동행 등과 관련한 임의동행 및 강제연행 사례, ② 과도한 불심검문 사례, ③ 불법체포와 서류작성 미흡 또는 경미범죄 현행범체포 및 고지사항 미준수 체포 등의 사례, ④ 구속영장 미제시 사례, ⑤ 진술거부권 미고지 조사 사례, ⑥ 과도한 물리력 행사 사례, ⑦ 과도한 수갑 사용 사례, ⑧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사례, ⑨ 부당한 가스분사기 사용 사례, ⑩ 부당한 휴대전화 압수 사례, ⑪ 공개된 장소에서의 과도한 신체수색 및 강압적 신체수색 등의 사례, ⑫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 ⑬ 부당한 보호조치 사례, ⑭ 피의자 호송 중 폭행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의 폭행 등과 같은 사례, ⑮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 ⑯ 전투경찰 순경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다.

경찰의 사회적 약자보호 영역과 관련하여 주요 사례로는 주로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미성년 피해자 조사과정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미성년자 탐문수사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경찰과 검찰 모두 해당하는 사례로 음주운전 구속영장 발부자인 피해자의 응급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과 관련하여 주요사례로는 불필요한 피의사실 공표와 유죄예단 보도자료의 배포 및 잘못된 수사내용의 언론발표, 그리고 피의사실과 무관한 자료의 언론공개 사례, 내부보고 문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보도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부당한 피의사실 고지 인권 침해 관련 사례, 기소 중지자 탐문수사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북한이탈주민 신분노출 인권 침해 관련 사례, 야간 자택 방문조사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례로 참고인 조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인권 침해 관련 사례, 전과사실 포함 체포·구속 통지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등이 있었다.

경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 영역과 관련하여 주요 사례로는 경찰의 부적절 지명통보 인권 침해 관련 사례, 장애인 현행범 체포시 욕설과

불법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의 욕설 및 식당 몸싸움 출동 후 욕설행위 등 경찰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관련 사례,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 침해 관련 사례, 과도한 수갑 사용 및 수갑노출 인권 침해 관련 사례, 심야조사 인권 침해 관련 사례, 탈북자 사실공개 및 부정적 발언 인권 침해 관련 사례, 교육대상자 모자 등 착용제한 인권 침해 관련 사례, 속옷탈의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등이 있었다.

집회에 대한 경찰 경비 업무에서의 인권 침해는 단순히 경찰 경비업무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고 신고단계에서 과도한 정보 요구 및 관료적 간섭에서부터 경찰의 법집행을 명목으로 한 집회 방해와 노골적 폭력, 그리고 무분별한 수사·기소·형사처벌²⁾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집회 참가자에 대해 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무리한 처벌조항의 적용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자체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연구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않고 주로 집회 현장과 집회 전후로 벌어지는 경찰 경비업무에서의 인권 침해를 주로 다루었다. 한편 일반적인 집회 현장 외에 해군기지 건설이나 송전탑 건설 등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나 철거민 농성 진압, 파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농성 진압에서도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이 경우는 반드시 집회 현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찰 경비업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이므로 사례 수집 범위에 포함시켰다.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에는 성소수자 혐오 집단의 집회 방해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등 특수한 쟁점과 현상이 있다. 장애인 집회의 경우 휠체어 등으로 인해 도로 점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 경찰 진압과정에서 이들 보조기구에 대한 경찰의 태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등 특수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소수자 부분은 별도로 목차를 나누어 사례를 정리했다.

수사와 관련한 부분은 수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 외에도 임의동행에서부터 형 집행까지도 일부 다루었다(임의동행과 비슷해 보이는 불심검문은 집회에 대한 경찰경비 업무 부분에 배치했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영역 중 성소수자 관련 사례로는 성별표현이나 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시선과 발언 사례, 범죄피해 사실무시와 부당한 대우 사례, 신분확인

2) 특히 시위는 도로, 광장 등을 행진하는 것을 그 전형적 행위태양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평화적으로 행진한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고 있다.

관련 문제 사례, 피의사실 무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누설사례, 동성애자 대상 숙박업소 표적수사 사례, 트랜스젠더 피의자 유치장 수용 사례 등이 있었다.

장애인 관련 사례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사례, 지적장애인에 대한 불충분한 진술거부권 고지사례, 신뢰관계인 동석없는 지적장애인 피의자 신문사례와 피해자 조사사례, 시각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사례, 염전노예 피해자신고 무시사례,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관련 사례, 노예노동 피해자에 대한 수사미진 사례 등이 있었다.

여성 관련 사례로는 여성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 사례, 유치장 임신부 및 산모 보호조치 미흡사례, 브래지어 탈의요구 사례,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 사례 등이 있었고 미성년자 관련 사례로는 미성년자 피의자 조사에서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미보장 사례,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부당한 조사사례, 미성년자 불법구금 등 부적절한 조사사례, 미성년자 탐문수사 관련 사례 등이 있었다. 외국인 관련 사례로는 인종차별 조사와 모욕적 발언 사례, 강제연행 관련 사례, 외국인 보호소 외국인 폭행 관련 사례 등이 있었다.

나. 검찰 관련 사례 유형 및 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관련 사례 중 검찰 관련 사례로 첫째,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안전 영역, 사회적 약자보호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 영역 등으로 경찰에서의 인권영역과 마찬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나누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가 있었는지 인권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이 필요하며 규범화가 요청되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평가하여 보았다.

검찰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안전 영역 관련 사례를 관련 쟁점별로 구분하여 보았다.

① 외국인 피의자 접견·통신권 미보장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② 부당한 강제소환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③ 형집행정지 절차 위반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④ 검찰조사 계구 사용 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있었다.

검찰의 사회적 약자보호 영역 관련 사례로는 ① 외국인 보호소 직원의 외국인 폭행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② 장애인 복지시설의 학대 등에 의한 인권 침해 관련 사례,

장애인 조사 관련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③ 노인복지시설 강제노동 및 금전착취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등이 있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적극적인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관련 사례로는 ① 언론보도자료에 의한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② 대질조사시 전과 관련 질문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③ 범죄사실 및 디엔에이 채취대상자 정보유출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등이 있었다.

검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 영역 관련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① 비하발언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② 서명날인강요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③ 부당한 교도소유치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④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시 인권 침해 관련 사례 ⑤ 검찰청 구치감 화장실 차폐시설 미비 인권 침해 관련 사례 등이 있었다.

2.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방법

가. 분석의 필요성

한국에서 인권 침해 사건 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 침해 사건 사고는 매우 다양한 주체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인권 침해 사건 사고는 사실 실제로 발생하는 전체 인권 침해 사건사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많은 또는 모든 인권 침해 사건 사고를 찾아내어 원인을 밝혀내고 인권 침해 방지 방법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련 인력부족이나 조직체계 또는 과학수사의 미비³⁾

3) 과학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생화학, 화학, 생물학, 물리학, 사이버, 법의학, 드론 활용 관련, 유전자 디엔에이 분석, 디지털 분석, 독성분석, 안전사고, 지문, 총기, 화재방화 조사, 미세증거 분석, 혈중 알코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적인 과학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웹사이트, 감정업무,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접속일자 2018. 11. 7.) <http://www.nfs.go.kr/site/nfs/05/10502030000002017083103.jsp>). 이러한 과학수사의 진척과 발전이 범죄수사와 범죄인 검거의 확률을 높임으로써 범죄예방과 범죄대응력 제고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보호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부작용도 함께 있는데 또한 과학수사가 일정한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받거나 부당한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또는 전반적인 인권교육의 부실이나 부재 그리고 부적절한 권력구조나 부당한 외부압력 등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실제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리는 인권 침해 사건 사고가 상당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⁴⁾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밝혀지거나 또는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버린 것도 있음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기에 그 시대가 허락하는 가능한 자료와 증거들을 기록하고 모으며 평가하는 작업⁵⁾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 침해 사건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권 침해 사건 사고는 주체와 장소 및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에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찾아내고 문제점과 대안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남용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며, 수사기관은 수사의 업무를 통하여 다른 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것을 밝혀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감시의 역할도 매우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 관련 사례 정리 대상 시기는 2008년에서 2017년 4월까지다. 이 시기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08년 경찰청이 펴낸 ‘집회·시위현장

않도록 구성하는 것도 과학수사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

4)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0. 1. 15. 제정, 2000. 5. 16. 시행, 2009. 4. 1. 폐지),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한시법으로서 2005. 7. 29. 제정, 2006. 1. 1. 시행, 2009. 12. 31. 유효기간 종료) 등이 과거 제정되어 일정기간 운영된 바 있다.

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9).

법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2008년을 선진 법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 관리로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 경제살리기와 국민성공시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정권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집회의 기본권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적대적, 공격적 집회 진압이 특징을 이루었다. 2012년 박근혜 정권에서도 세월호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등 이 기조는 이어졌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집회에 대한 경비업무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패러다임과 태도가 어떤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사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엄벌주의가 강화되었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은 약화됐다. 정권의 문제점을 덮는 수단으로 특정 사건의 수사 내용을 홍보하기도 했다⁶⁾.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고문 사례도 발생했으며,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미고지나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도 계속 발생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달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을 함으로써 순간을 모면하려는 심리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상의 인권 보장은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수사기관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경찰 진상조사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이들 위원회는 특정사건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사위원회의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인권 침해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권 침해 방지와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관이 오히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자

6) 김형준, "MB 청와대 '강호순 사건으로 용산참사 비난여론 돌려라'. 최종수정 2018. 9. 5. <http://www.nocutnews.co.kr/news/5027224>.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살인사건의 증거물 등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활용방안이 적혀 있다.

권력위임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며 반드시 검토를 통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과 관련된 인권 침해로 기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매우 다양한 사건과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공식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명백히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고 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수정되거나 교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이후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나 지침 등을 수정하거나 조직 체계나 관행을 개선하는 일, 그리고 관련 인권 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점검 및 확인하는 작업이 경찰과 검찰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분석 방법

경찰과 검찰의 인권 침해 사건 사고는 과거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6공화국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많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모든 방법과 유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도 한국 경찰과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과 역할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와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제5공화국 이전까지의 경찰과 검찰의 인권 침해의 사례와 상황은 어쩌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수준으로 극도로 심각하고 열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⁷⁾ 대한민국이 제6공화국 이후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된 이래⁸⁾ 문민정부가

7) 제1공화국 건국「헌법」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으로 「헌법」규범이 실제적인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고 제2공화국을 거쳐 제3공화국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힘에 의한 통치로 전환되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중요성을 「헌법」에 강조하였으나 권력의 분립과 정당성의 문제는 이를 보장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4공화국은 사법부의 장악과 유신「헌법」을 통하여 「헌법」은 독재자를 위한 명목상 「헌법」일 뿐 「헌법」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역시 12·12사태를 통하여 권력 장악이 이루어졌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언론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며 군부 독재의 힘의 통치를 답습해 나갔다.

제6공화국은 6월 항쟁을 통하여 달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5공화국의 연장선에 있었고 권력형 부정부패, 법안의 날치기 통과 등으로 「헌법」의 실질적인 규범이 발휘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9차 개헌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신설되기도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적법절차조항의 신설, 체포·구속의 고지 및 가족통지,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과 검열 금지, 형사보상청구권 확대, 형사피해자 공판진술권 및 국가구조청구권을 신설 등은 이루

들어서고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⁹⁾가 출범하면서¹⁰⁾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인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의지가 실천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가야 할 길은 짧은 길이 아니라고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출범 이후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와 유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정권고 등을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거나 개선한 점도 있으나 또한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매우 유사한 사례 또는 흡사한 사례가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 연구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연간보고서의 내용 중 경찰과 검찰의 인권 침해 사건들의 핵심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안전 관련 사례, 사회적 약자보호 관련 사례, 기본적 자유권 보장 관련 사례, 수사기관의 인권교육과 규범화 관련사항 등 유형별로 요약하고 검토하여 경찰과 검찰의 인권 침해 사건발생의 현상과 특징을 이해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집회 및 시위 관련 인권 침해 사례와 사회적 약자 수사 관련 침해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경찰과 검찰의 인권 침해 사건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직무교육과 인권교육 및 대책방안 권고 역시

어졌다. (허영, 우리 「헌법」 규범력의 현주소,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 한국법학원, 2018.10.18. 23-31면. 참조)

8) 군부독재는 극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측근비리와 부정부패 및 권력남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권력자 중심의 국가운영의 부실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인권의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9) 1993년 유엔 총회에서 파리원칙인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신장과 보호의 권한을 부여받아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구성과 권한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기구가 개별적인 인권 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청문하고 심리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9350&cid=43667&categoryId=43667>, 최종접속일 2018.10.21.).

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17356&cid=40942&categoryId=34580>(최종접속일 2018.10.21.).

함께 살펴보고 반복되는 경찰과 검찰의 인권 침해 사고의 원인과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며 앞으로의 유사 인권 침해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집회 경비 업무, 수사 일반에 대해서는 우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침해구제분야 제3집, 제4집에 수록된 결정례를 분석하였고, 위 결정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결정례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경찰’, ‘검찰’, ‘수사’, ‘집회’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검토했다. 또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인권 침해가 확인된 판결문,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사례에 포함시켰다.

집회가 인권이 아니라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라는 국가기관이 인식이 지배하던 시기였으므로, 집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이 되어 무죄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벅차 적극적으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 결정문이나 판결 등 공식적인 자료 외에 인권단체들이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정리한 인권 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 기사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보고서에서도 국제앰네스티의 2008년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밀양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의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2005-2015』등을 비롯하여 인권단체나 변호사단체가 펴낸 보고서, 자료집을 주요한 자료로 삼았다. 그 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도 분석대상 자료에 포함시켰다.

성소수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 침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성소수자들의 경우 먼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고소를 하는 등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고¹¹⁾, 또한 형사절차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단체에 대한 신고 등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는 성소수자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와 기사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드러난 사례를 중심으로만 파악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성소수자가 겪는 인권 침해, 차별에 대한 두 차례의 실태조

11) 2014년 성소수자 약 3,000명을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성소수자 중에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5.1%에 불과하였다. 나영정 외,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32면.

사¹²⁾와 SOGI법정책연구회에서 2013년부터 매해 그 해의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한 연간보고서¹³⁾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기사화된 사례들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¹⁴⁾에서 ‘경찰’, ‘검찰’,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침해’ 등의 키워드로 조사하여 얻은 기사들을 참조하였고, 그 밖에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판례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상담 전화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 가운데 경찰·검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도 있다. 한편,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 제26조는 사법·행정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경찰·검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판단하는 데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다. 위 기관에서는 강제 노동 등과 같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개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경찰·검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분석하였다. 이 중 판례는 장애인 단체에서 제기한 사례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적용된 사례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¹⁵⁾과 홈페이지¹⁶⁾에서 분석 대상 사례를 수집하였다.¹⁷⁾

12) 나영정 외,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장서연 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4).

13)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SOGI법정책연구회, 2013-2017).

14) 빅카인즈 웹사이트(<https://www.bigkinds.or.kr>, 최종접속일 2018. 11. 7.).

15)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2018.

16)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웹사이트(<http://www.naapd.or.kr>, 최종접속일자 2018. 11. 7.).

17)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는 2018년 사례이지만, 장애인 학대 사건의 양상이 2017년 이전과 다르지 않고 그에 대한 자료가 없어 참조하였다.

제2절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안전 영역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가. 부당한 임의동행·강제연행

1) 임의동행 관련 권리미고지 인권 침해

부당한 임의동행과 관련한 사례로서, 유사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진정인이 마사지 등 유사 성행위 제공협약에 대해 부인하자 피진정인인 경찰이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사례¹⁸⁾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보고되었다. 처음에 진정인은 어머니 병원에 가야한다고 답변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여자 경찰관의 지원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필진술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이후의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고 참고인의 조언에 따라 귀가하였다.¹⁹⁾

피진정인인 경찰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장시간 동행요구를 하였으며 진정인이 이후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인 지인의 조언에 따라 귀가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온전히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²⁰⁾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²¹⁾

불법연행 즉 부당한 임의동행 관련 또 다른 사례로 세무서장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이 된 후 진정인이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임의동행이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임의동행

18)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13.자 15-진정-0033800 결정(결정레집 2016-8, 275면).

19)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13.자 15-진정-0033800 결정(결정레집 2016-8, 276면).

2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1) 결정레집 2015-8, 278면.

을 거부할 수 있고 임의동행에 동의하였더라도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진정한 임의동행이 아니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결정이 존재한다.²²⁾

유사한 사례로서 탈북자인 진정인들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탈북자들인 진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동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진정인의 자녀들만 야간에 남겨두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리고 온 경우,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임의동행시 유의사항 위반과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²³⁾

임의동행 관련 고지사항 미준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 다른 사례에서 진정인은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에 의해 경찰서까지 동행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변호사 선임 및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동행 장소에서 이탈할 수 있다거나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²⁴⁾

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사건관계인을 수사관서로 동행할 경우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아직 체포·구속 이전의 상태이므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수사관서로 동행하기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과 동행과정에서 자유로이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의 자발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임의동행 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²⁵⁾가 보장하는

22)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30.자 10-진정-0767600 결정(결정례집 2013-5, 323면).

23) 국가인권위원회 2012. 1. 17.자 11-진정-0402500 결정(결정례집 2013-5, 301면).

24) 국가인권위원회 2010. 11. 26.자 10-진정-124000결정(결정례집 2012-4, 134면).

25)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²⁶⁾.

임의동행과 관련한 권리 미고지 및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 등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약점으로 임의동행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역시 법규를 포함한 관련지식과 훈련을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신분증표 미제시 인권 침해

검문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인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노상에서 불심검문을 하면서 자신이 정복을 입어 경찰임을 피해자가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신분증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²⁷⁾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신분증표를 제시하며 소속, 성명을 밝혀야 한다.²⁸⁾ 이러한 신분증 제시 의무는 신분증 제시가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알리는 한편, 피검문자가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추후에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²⁹⁾. 또한 대법원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면서, 이러한 법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³⁰⁾ 판시하였다.³⁰⁾ 따라서 피진정인이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³¹⁾ 신체의 자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계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26) 국가인권위원회 2010. 11. 26.자 10-진정-124000결정(결정례집 2012-4, 135면).

27) 국가인권위원회 2008. 1. 28.자 07-진인-2439 결정(결정례집 2009-3, 75면).

28)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29) 국가인권위원회 2008. 1. 28.자 07-진인-2439 결정(결정례집 2009-3, 77면).

30)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3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

제4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³²⁾.

3) 부당한 강제연행 및 동의서 미보관

부당한 강제연행과 관련된 사례이다. 공연음란죄의 피혐의자가 신분증을 차에 놓고 두고 와서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신분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신분증이 없어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구대 동행을 재촉하면서 연행한 것이다. 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불법연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임의동행을 하는 과정에서 동행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도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³⁴⁾ 임의동행 동의서도 수사 기록에 편철하거나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규칙에서는 정하고 있다.³⁵⁾ 경찰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정하고 있는 인권 보호 사항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역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⁶⁾

신체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유 침해 방지와 관련한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고지, 임의동행 동의 후 임의퇴거 가능고지, 임의동행 동의서 편철 보관 등의 방법과 관련지식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에 속하며 임의동행과 관련한 법규를 포함한 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임의동행이 부당한 경우와 적절한 경우를 나누어 임의동행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수행능력을 고양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2) 국가인권위원회 2008. 1. 28.자 07-진인-2439 결정(결정례집 2009-3, 79면).

33)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0.자 16-진정-0052400 결정(결정례집 2017-9, 426-427면).

34)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

35)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

36)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0.자 16-진정-0052400 결정(결정례집 2017-9, 426-427면).

나. 과도한 불심검문

과도한 불심검문과 관련한 사례이다. 진정인이 주택가 골목길에 렌터카 시동을 켜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가용유상운송협회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차량 내부를 수색한 사례이다.³⁷⁾ 경찰관이 불심검문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³⁸⁾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³⁹⁾

경찰관의 불심검문 역시 자신의 신분증 제시, 소속과 성명 밝힘, 동행의 목적과 이유 설명, 동행 장소 제시 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는 불심검문과 관련한 경찰관의 기본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속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지식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불심검문과 관련한 실습 관련 훈련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성이 확인되고 점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체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1) 체포시 부상 관련 인권 침해

체포시 부상 관련 사례이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실랑이를 하며 밀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경찰은 진정인이 욕설을 하기도 하여 경찰관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욕설을 하고 저항하여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례이다. 진정인은 그 체포과정에서 손가락과 팔뚝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진정인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경찰관의 업무상 고충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체포과정에서의 진정인이 부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의 체포는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⁴⁰⁾

37)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0.자 16-진정-0189500 결정(결정레집 2017-9, 439면).

3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39)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0.자 16-진정-0189500 결정(결정레집 2017-9, 436면).

40)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13.자 15-진정-0194700 결정(결정레집 2016-8, 257면).

체포시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과 상해는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이며, 이에 대한 주의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찰의 체포와 관련하여 체포과정에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과정에서 최대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직무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현행법 체포 관련 서류작성 미흡

2014년 6월에 발생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사건이다. 진정인이 술에 취하여 빌딩 보안원을 폭행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파출소로 연행하게 된 사건이다.⁴¹⁾ 피진정인인 경찰은 진정인의 인적사항과 상해 진으로 벌금 미집행자임을 확인하고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발부하면서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였다.⁴²⁾ 또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보서도 발부하였으나 현행범인체포서나 권리고지확인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⁴³⁾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헌법」 제12조 제5항,⁴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⁴⁵⁾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도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서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범죄수사규칙」 제98조,⁴⁶⁾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 제5항⁴⁷⁾은 규정하고 있다.⁴⁸⁾

41)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 자 14-진정-0539700 결정(결정레집 2016-8, 287면).

42)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 자 14-진정-0539700 결정(결정레집 2016-8, 290면).

43)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 자 14-진정-0539700 결정(결정레집 2016-8, 291면).

44) 「헌법」 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4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6) 「범죄수사규칙」 제98조(체포·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제65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⁴⁹⁾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고지사항 준수와 현행범 체포서 등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업무 중의 하나로써 업무담당자의 직무교육에 필수적으로 반복 교육과 훈련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체포시 고지사항 미고지

2013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의 부당한 체포와 관련한 것으로 체포시 고지사항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앞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한 사건으로 사건현장에서 벗어나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진정인을 사건현장에서 벗어나 20분이 지난 상황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원인과 체포행위에 대한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접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 체포시 피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범죄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도 고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한 체포행위로 판단한 사건이다.⁵⁰⁾

현행범 체포는 사건현장에서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고지사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 또는 흠결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담당 업무인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7)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제3항의 고지는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이 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48)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 자 14-진정-0539700 결정(결정례집 2016-8, 291면).

49)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 자 14-진정-0539700 결정(결정례집 2016-8, 292면).

50)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10.자 13-진정-0995600 결정(결정례집 2015-7, 369면).

미란다 원칙 미고지 사례⁵¹⁾ 역시 지속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사례이다. 진정인이 경찰을 향해 욕설과 항의를 하자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이를 돌려달라 하였으나 무시하고 연행이유나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 없이 순찰차에 태워 연행한 사례⁵²⁾이다. 진정인이 신분증을 돌려달라 하는 등 순순히 연행에 응하지 않은 이상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5항⁵³⁾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⁵⁴⁾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⁵⁵⁾

술에 취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한 인권 침해 사례⁵⁶⁾이다. 경찰 교대 시간 즈음에, 경찰이 오가는 길에 앉아 있던 고OO씨에게 밀양성지능범죄팀장이 비키라고 요구하였다. 이 상황은 10여분 동안 지속되었고, 그 이후 지능범죄팀장은 고OO씨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며 연행하여 경찰차에 태웠다. 지능범죄팀장은 “선생님과 사모님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시비조로 말을 하였다. 체포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란다 원칙은 고지되지 않았다. 당시 지능범죄팀장에게 상당한 술 냄새가 났고 그 자리에 있던 주민들이 공무집행 중에 술을 먹으면 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지능범죄팀장은 바로 자리를 피했다.

고OO씨가 창원서부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지능범죄팀장의 당시 음주의혹에 대하여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에서 지능범죄팀장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지능범죄팀장은 “어제 마신 맥주 3캔이 무엇이 문제냐”며 도리어 화를 내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고OO씨는 “(지능범죄팀장에게 가까이 갔을 때) 술 냄새를 아주 역하게 맡았죠. 지나치다. 거의 만취다. 거기 문제제기를 하고 장하나 의원실에서 음주 측정을 하라고 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밀양경찰서에 술취한 경찰은 내려놓고 나서 (나는) 창원서부경찰서

51)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9-진인-2081 결정.

52)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9-진인-2081 결정.

5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54)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55)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9-진인-2081 결정.

56)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2005-2015』,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2015), 368면.

까지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수사를 하고...”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고OO씨에 대한 현행법체포는 미란다원칙 고지 등 현행법 체포의 실제적 절차적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능범죄팀장은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시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경찰은 해군기지사업장 앞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연좌시위를 벌이는 26명을 연행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면서 체포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5항⁵⁷⁾,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⁵⁸⁾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도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서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 제98조,⁵⁹⁾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⁶⁰⁾

57) 「헌법」 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9) 「범죄수사규칙」 제98조(체포·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이라도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

체포시 고지사항 미준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사례이고 앞으로 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4) 현행법 체포 사유 미해당

부당한 현행법 체포와 관련하여 또한 2013년 9월에 발생한 사건⁶¹⁾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수차례 신고가 있었고 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허위신고로 인정하여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체포의 주장과는 달리 순찰업무의 방해나 불필요한 순찰차의 출동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신원과 거주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등,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 현행법 체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어⁶²⁾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체포과정에서 체포에 불응하자 진정인에게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한 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체포 요건 위반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⁶³⁾

밀양송전탑 반대 관련 사례로서⁶⁴⁾ 시공사인 동양건설 소속 인부들이 단장면 동화전 마을 주민대책위원장 김○○씨(40세, 농민)를 20여분간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쓰는 원통에 노끈으로 묶어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시공사 직원들은 김○○씨가 굴착기 엔진에 설탕을 타고, 공사장 경계측량을 위한 말뚝을 뽑았다는 이유를 들었으

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는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이 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61)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 자 13-진정-0713100 결정

6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63)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자 13-진정-0713100 결정(결정레집 2015-7, 372면).

64)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2005-2015』,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2015), 368면.

나 엔진에 설탕을 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시공사 측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억류 행위를 한 시공사직원에게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김OO씨만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억류 과정에서 폭행 의혹이 있던 시공사 직원들은 현행범이 아니라고 보고 김OO씨만을 현행범으로 간주하였다. 이후 마을 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경찰에서는 시공사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김OO씨의 진술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은 굴착기에 설탕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현장 체포를 하겠다고 경찰들이 오기 전까지 김OO씨를 구금하였다. 구금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한전 직원들은 항의하는 다른 마을 주민을 폭행하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의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다.⁶⁵⁾ 그런데 본 사건에서 김OO씨는 마을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그 마을에서 10여년간 농사를 지어온 사람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었다. 또한 주된 범죄사실인 ‘굴착기 엔진에 설탕을 타고 있다’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었음에도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하였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례가 실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송전탑 반대 주민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제주강정 사례에서도 기자 등에 대해 현행범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체포가 있었다.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야 한다.⁶⁶⁾ 구럼비에 들어갔던 대학생들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중덕 삼거리에 진을 치고 봉쇄하였다.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공동공모 정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였고,

6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66)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1인을 방패로 가격하고, 사과를 요구한 4명의 노동자를 공무집행방해라며 연행하였다.⁶⁷⁾ 그러나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이므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는 바, 현행법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현행법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법체포 요건 및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텔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참가자를 경찰이 퇴거불응죄로 연행하였다.⁶⁸⁾ 그러나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닌 1인 시위자를 현행법 체포한 것이며 현행법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현행법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법체포 요건 및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경찰이 취재를 목적으로 ‘인간 띠 잇기’를 하여 레미콘 차량을 막고 있는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람(모 인터넷 신문의 기자증 소지)을 업무방해죄 공동정범으로 현행법 체포하였다.⁶⁹⁾ 이는 집회 참가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한 것으로 현행법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현행법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법체포 요건 및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현행법과 준현행법의 요건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현행법 체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부당한 현행법 체포와 같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및 업무수행에 점검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경미범죄 현행법 체포 관련

모욕죄와 관련하여 현행법 체포를 한 사건으로 2013년 1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휴대폰 번호가 112에 기록되어있고 지구대가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진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되어있으며 진정인이 역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도 확인되고 출입문 상황도 도망할 우려가 없는 경우이므로

67) 강정인권 침해조사단 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 침해 조사보고서』(강정인권 침해조사단, 2012), 72-73면.

68) 강정인권 침해조사단 외, 위의 책(주 67), 79면.

69) 강정인권 침해조사단 외, 위의 책(주 67), 83면.

현행법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에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여 모욕 혐의로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현행법 체포는 수사절차상 비례성 원칙에서 과잉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역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⁰⁾

제주 강정마을 사례로서 역시 경미범죄에 대한 현행법 체포사례이다.⁷¹⁾ 무단침입자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012. 2.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름비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하고 있던 10명에 대하여 신분확인 요구를 했고, 이들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고등학생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구두로 인적사항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들을 「경범죄처벌법」 위반(무단출입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4조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²⁾ 따라서 경미한 사건에서 현행범인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포·구속요건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 현행범인을 체포해서는 아니 된다.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⁷³⁾

경미범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거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0)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자 14-진정-0062500 결정(결정례집 2015-7, 393면).

71) 국가인권위원회 2013. 4. 9.자 12-진정-0685400 결정(결정례집 2014-6, 289면).

72)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3) 국가인권위원회 2013. 4. 9.자 12-진정-0685400 결정(결정례집 2014-6, 289면).

6) 단속지역 이탈 현행범 체포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가 된 사건으로 2012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트럭을 이용하여 굴비를 팔다가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건이다. 진정인이 단속에 응하였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나 단지 자신이 단속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이를 순찰차로 이동을 막고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⁴⁾

경범죄에 대한 현행범 체포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과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과는 구분하여 관련 법 규정 내용과 실제 상황에 대해 교육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구속사실 미통지에 따른 인권 침해

피해자⁷⁵⁾는 A사건과 B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A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어 2008. 7. 24. 형기만료일이었으나, 같은 달 9일 B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달 25일에 집행되었다. B사건 영장 발부 후에는 법원, 검찰청, 교도소는 피해자의 구속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⁷⁶⁾

법무부는 구속사실 통지는 법원의 의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 또는 법관이 고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 한하고, 「형사소송법」 제87조⁷⁷⁾에 따르면 구속의 통지는 구속영장 집행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교도소가 진정인의 구속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교도소가 구속영장집행 후 이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주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⁷⁸⁾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74) 국가인권위원회 2013. 1. 25.자 12-진정-0505100 결정(결정례집 2014-6, 265면).

75) 피해자는 진정인의 모(母)임.

76) 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7.자 08-진인-3598 결정(결정례집 2012-4, 121-122면).

77)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78) 「헌법」 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침해한 것이다⁷⁹⁾.

구속사실 미통지에 따른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사례로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2010년 1월 20일에 있었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교도소에 인치되었는데 가족들은 1월 26일에서야 구속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다.⁸⁰⁾

피의자 체포·구속 통지 관련 규정, 「헌법」 제12조제5항,⁸¹⁾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⁸²⁾ 제87조제1항,⁸³⁾ 「형사소송규칙」 제100조,⁸⁴⁾ 제51조 제2항⁸⁵⁾을 종합하면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후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구속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피의자의 체포·구속의 이유,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체포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변론·방어를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이기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의미에서 체포사실 등의 통지제도를 중요한 적법절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구속한 2010년 1월 20일로부터 24시간을 훨씬 초과한 같은 달 26일에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5항⁸⁶⁾을 위반하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79) 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7.자 08-진인-3598 결정(결정례집 2012-4, 122-123면).

80) 결정례집 2012-4, 139면.

81) 「헌법」 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8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83)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84) 「형사소송규칙」 제100조(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85)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②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86) 「헌법」 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⁸⁷⁾

바. 진술거부권 미고지 조사 인권 침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조사와 관련한 사례이다.⁸⁸⁾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⁸⁹⁾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서의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의 장소 즉 압수수색 현장 등에서 할 경우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⁹⁰⁾ 임의동행에 준하는 수사의 임의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정인을 사무실 지점장실에서 조사하면서 임의수사의 원칙으로부터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언제든지 조사장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막고 문을 닫았다. 또한 진정인이 사무실 지점장실에서 나간 사실이 없는 등 조사의 임의성이 확보되었다거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범죄수사규칙」 제56조 위반이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⁹¹⁾

임의조사의 원칙이 적절히 준수가 되었는지 또는 진술거부권이 고지여부 등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직무역량 프로그램에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87) 국가인권위원회 2011. 6. 15.자 11-진정-0009600 결정(결정례집 2012-4, 140면).

88)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2자 13-진정-0270500 결정(결정례집 2015-7, 347면).

89)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90) 「범죄수사규칙」 제56조(임의성의 확보) 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방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2자 13-진정-0270500 결정(결정례집 2015-7, 351면).

사. 압수 관련 인권 침해

1) 부당한 휴대전화 압수

휴대전화의 부당한 압수와 관련한 사례이다. 진정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신이 난폭은 전으로 위협을 받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확인을 약속하고 귀가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데스크 앞에서 항의하였고 외부로 전화를 걸면서 파출소 출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휴대폰을 9분 정도 압수하였고 이후 진정인에게 주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였다.⁹²⁾

그러나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현행범이 아니므로 체포와 관련한 압수로 볼 수 없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니므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⁹³⁾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와 관련하여 압수가 필요한 경우를 가려야 할 것이고⁹⁴⁾ 압수가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도록 하며⁹⁵⁾ 긴급을 요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⁹⁶⁾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부당한 모발채취

모발을 부당하게 채취한 사례이다.⁹⁷⁾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해야 하고⁹⁸⁾

92) 국가인권위원회 2013. 3. 20.자 12-진정-0896400 결정(결정례집 2014-6, 283-285면).

93)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94)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95)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96)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97) 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28.자 09-진인-4416 결정.

98)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임의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⁹⁹⁾. 그런데 경찰은 마을 내 선박 엔진손괴사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의심되는 머리카락 외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자 마을 사람 75명에 대한 유전자 대조로 용의자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경찰은 마을이장을 통해 주민들을 압박하여 동의를 얻어내어 머리카락을 채취 및 압수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한 머리카락에 대해 혈액형까지 조사했다면 압수 대상을 보다 압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범인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서 억지로 머리카락 채취에 동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용의자로 몰린 한 주민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제199조,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 및 제11조¹⁰⁰⁾의 각 규정에 따라 임의성을 확보해야할 주의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임을 소홀히 하여 「헌법」 제12조¹⁰¹⁾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¹⁰²⁾.

아. 신체수색 관련 인권 침해

1) 공개된 장소 과도한 신체수색 인권 침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수색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사례이다.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을 자신의 여자친구도 목격하게 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도록

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99)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100)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4조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0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02) 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28.자 09-진인-4416 결정

하여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이다. 그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일단 우선적으로 신체의 외부를 두드려서 만지는 외표검사나 또는 독립된 공간, 가림막을 이용한 장소에서도 신체검사가 가능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한 것은 진정인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침해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¹⁰³⁾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 의경이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간단한 몸수색이나 타인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대 의경 30여 명을 방법순찰대 1층 현관에서 하의 탈의시킨 후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과도한 신체수색은 피의자 또는 경찰 내부의 의경에 대해서 즉 내부와 외부로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체수색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한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사람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경찰 공무원의 선발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 등을 통하여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

2) 강압적 신체수색 인권 침해

부당한 강압적 신체수색과 관련한 사례이다.¹⁰⁵⁾ 영장에 의한 압수와 수색 및 검증을 할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도박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체포과정에서 수반되는 필요한 물리력의 행사 등은 일정부분 불가피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한 후 10시간이 경과하여¹⁰⁶⁾ 피의자의 신체를 제압하여 신분증을 꺼내고 신분을 확인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는 체포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법관이 발부한

103) 국가인권위원회 2013. 3. 20.자 12-진정-0723800 결정(결정례집 2014-6, 341면).

104) 국가인권위원회 2013. 5. 8.자 13-진정-0086800 결정(결정례집 2014-6, 346면).

105) 국가인권위원회 2012. 2. 16.자 11-진정-0161300 결정(결정례집 2013-5, 303면).

106)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영장을 필요로 하는 압수·수색 행위에 해당한다.¹⁰⁷⁾ 본 사건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신체의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법관의 영장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또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규정¹⁰⁸⁾을 위반한 것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¹⁰⁹⁾ 「형사소송법」 제198조,¹¹⁰⁾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¹¹¹⁾ 제11조¹¹²⁾ 등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³⁾

현행범인에 대한 압수와 수색에 대해 체포현장에서 바로 실시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시간적 정황이 급박한 경우인가를 판단하

107)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108)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0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10)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111)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112)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13) 국가인권위원회 2012. 2. 16.자 11-진정-0161300 결정(결정례집 2013-5, 308면).

여 그러할 경우에는 사후에 반드시 영장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압수 및 수색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이므로 직무교육에서도 관련 사례를 누적적이고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인권 침해¹¹⁴⁾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한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사례이다. 사법경찰관리가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해 형집행 즉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수배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85조,¹¹⁵⁾ 제492조,¹¹⁶⁾ 제475조¹¹⁷⁾가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¹¹⁸⁾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¹⁹⁾

형을 집행할 경우는 반드시 형집행장 사본이 아닌 원본 제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역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차. 부당한 보호조치 인권 침해¹²⁰⁾

1) 정신착란 의심자 보호

정신착란이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이 구호 조치한 사례이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이나 친지 및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114)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28.자 14-진정-0260200 결정(결정례집 2015-7, 403면).

115)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16)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7) 「형사소송법」 475조(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대법원 1996. 8. 8. 선고 95나54753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28.자 14-진정-0260200 결정(결정례집 2014-7, 407-408면).

119)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28.자 14-진정-0260200 결정(결정례집 2015-7, 403면).

120) 국가인권위원회 2013. 2. 21자 12-진정-0671500 결정(결정례집 2014-6, 269면).

한다.¹²¹⁾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아 통지하지 않은 것은¹²²⁾ 현행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인신을 강제한 것으로 높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피구호자가 시급한 가족의 조력을 받아야 할 사정이 많다는 점에서 이는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³⁾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구호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자주 반복되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구호대상자의 가족과 친지 등 연고자에게 신속하게 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적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게 알려져 구호대상자가 보호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취 상태 피의자 보호

주취 상태 피의자 신병 관리 과정에서 경찰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이다.¹²⁴⁾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가 호프집 사장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제압해 몸 뒤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는 지구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화장실을 가게 해 달라거나 손목이 조여 아프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면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수차례

12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④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122) 국가인권위원회 2013. 2. 21자 12-진정-0671500 결정(결정례집 2014-6, 272면).

123) 국가인권위원회 2013. 2. 21자 12-진정-0671500 결정(결정례집 2014-6, 269면).

124) 국가인권위원회 2009. 5. 14.자 09-직인-1 결정(결정례집 2012-4, 9면).

요구하였다.

경찰관은 피해자가 혀를 깨무는 등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에는 수건 1개를, 두 번째는 수건 2개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 수건을 피해자의 머리 뒤로 돌려 잡고 다른 경찰관은 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방식으로 총 3분 37초간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렸다. 경찰관은 피해자를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호송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배뇨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119에 구호 요청을 하였는데, 약 5분이 지나도 구급차가 오지 않아 순찰차에 피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였다가 심폐소생술 후에 심장 박동이 돌아왔으나, 약 열흘 후에 사망하였다.¹²⁵⁾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워 수갑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수차례 하였던 이상 경찰관들은 그 진정성을 주의 깊게 살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설령 자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2개의 수건을 겹쳐 재갈 물리는 행위는 경찰 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고, 그 유지 시간이 3분 37초이며,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기도유지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그 적정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형법」 제268조¹²⁶⁾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¹²⁷⁾ 및 제12조¹²⁸⁾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¹²⁹⁾

125) 국가인권위원회 2009. 5. 14.자 09-직인-1 결정(결정례집 2012-4, 17-19면).

126)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7)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8)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29) 국가인권위원회 2009. 5. 14.자 09-직인-1 결정(결정례집 2012-4, 23면).

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및 경찰장구 사용 등

1) 체포 과정에서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인권 침해¹³⁰⁾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인신 구속한 사례이다. 체포된 피의자를 인계하고 인신 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동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 올려 이동하는 완화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몸을 끌고 간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인권 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제8조 제1항¹³¹⁾ 및 제11조¹³²⁾ 역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³⁾

체포된 피의자를 인신 구속을 하면서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대한 상해를 입는 것을 막고 인격적 모욕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피의자가 죄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이기는 하나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피의자에 대한 태도 및 자세와 관련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공감대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안은 주취상태에서 폭행, 협박행위를 하는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이송하였는데, 진정인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경찰이 구두를 신은 오른쪽 다리로 진정인의 오른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사이를 발로 밟아서 제지한 사례이다. 흥분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구두를 신은 발로 사람을 밟는 것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불러오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¹³⁴⁾,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4조, 제8조¹³⁵⁾를 위반한 것이다.¹³⁶⁾

130)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13. 자 결정 14진정0544000

131) 「인권 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32) 「인권 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33)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13.자 14-진정-0544000 결정(결정레집 2016-8, 264면).

134)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5)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4조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다른 사례로 기자회견 말미에 구호를 제창하고 발언을 하자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여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경찰이 팔로 목 부위를 감아 조른 채 연행을 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추부 통증을 앓은 사례이다. 비록 피체포자가 저항하는 경우 이를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급소인 목에 위력을 가하는 것은 극히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목을 계속 조른 채 연행을 한 것은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 「헌법」 제12조¹³⁷⁾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이다.¹³⁸⁾

또한 진정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뒤로 채웠고, 더 이상 진정인의 특별한 저항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진정인이 바닥을 보게 눌린 후 다리를 이용해 진정인을 누르거나 무릎을 이용해 목 부위를 누르는 등 3분여간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8조 등을 위반해 「헌법」 제10조 및 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¹³⁹⁾

2) 과도한 수갑 사용 인권 침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수갑 사용과 관련된 사례이다.¹⁴⁰⁾ 진정인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112로 신고되었는데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갑이 채워졌다.¹⁴¹⁾ 이후 수갑이 조여서 풀어달라는 요구가 수차례 있었으나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36) 국가인권위원회 2009. 6. 29.자 09-진인-1454/1561(병합) 결정.

137)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38) 국가인권위원회 2009. 7. 29.자 09-진인-1256 결정.

139) 국가인권위원회 2011. 3. 2.자 10-진정-0344100 결정.

140)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2. 자 13-진정-0194800 결정

1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

비록 자신이 손목을 흔들며 조여졌다고 하더라도¹⁴²⁾ 이에 대해 2시간 정도 느슨하게 해 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붉은 수갑자국의 상처가 발생한 것¹⁴³⁾으로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¹⁴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과거 2011년 11월 2일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와 2012년 5월 24일 수갑 사용의 과잉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본 사건이 다시금 발생한 것이다.¹⁴⁵⁾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찰관을 비아냥거리는 행위가 있어 이를 현행범이 아님에도 수갑을 채워 체포한 행위,¹⁴⁶⁾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다가 일방적으로 퇴거한 후 다시금 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진 경우,¹⁴⁷⁾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저항하는 진정인을 통제하기 위해 수갑을 채워 27분간 바닥에 누워있게 한 행위¹⁴⁸⁾ 등 모두 정당한 수갑 사용이 아닌 사례로 지속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다.¹⁴⁹⁾

제주 강정마을 관련 사례에서도 과도한 수갑 사용이 있었다.¹⁵⁰⁾ 경찰이 주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자 주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항의하는 주민을 공무집행방해혐의와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하면서 수갑을 채웠고 이송차에서부터 수갑을 채운 상태로 유치장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위 주민이 체포될 당시, 경찰의 지시에 따라 호송차에 스스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적 행사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¹⁵¹⁾에 규정된 수갑 사용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

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142)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2.자 13-진정-0194800 결정(결정례집 2014-6, 311면).

143)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2.자 13-진정-0194800 결정(결정례집 2014-6, 309면).

144)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2.자 13-진정-0194800 결정(결정례집 2014-6, 305면).

145)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2.자 13-진정-0194800 결정(결정례집 2014-6, 310면).

146)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2.자 12-진정-0691900 결정

147)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5.자 12-진정-0748200 결정

148)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5.자 13-진정-0277100 결정

149)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5.자 13-진정-0277100 결정(결정례집 2014-6, 313면).

150) 강정인권 침해조사단 외, 위의 책(주 67), 91-92면.

15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정인이 반말과 욕설, 폭언을 함에도 차분한 목소리로 존댓말을 사용하여 답변하는 등, 도주, 자해, 가해의 위험이 없음에도 화장실에 안 보내주는 것에 항의하자 피고소인의 수갑을 채운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¹⁵²⁾을 무시하고 경찰관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써 「헌법」 제12조¹⁵³⁾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이다¹⁵⁴⁾.

유사하게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포승과 수갑을 풀어달라는 호소를 무시한 것은, 도주우려에 대한 추상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헌법」 재판소 결정과 최저기준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¹⁵⁵⁾의 기준인 도주의 현저한 우려나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의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수갑과 포승을 채운 행위는 「헌법」 제12조¹⁵⁶⁾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⁵⁷⁾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152)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153)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54)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9-진인-2430 결정

155)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⑤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⑥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56)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57) 국가인권위원회 2011. 6. 15.자 10-진정-0212200 결정

수갑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수갑이 사용으로 신체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과도한 총기 사용

과도한 총기 사용 관련 사례이다.¹⁵⁸⁾ 야간순찰근무 중 절도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권총을 들고 왼손만을 이용해 수갑을 채우려 시도하던 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권총에서 공포탄이 발사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3도 화상을 입힌 사례가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권총을 꺼낸 것이 잘못된 아니나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여 오발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¹⁵⁹⁾,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1조¹⁶⁰⁾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¹⁶¹⁾

4)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인권 침해

뒤통수를 찬 피의자에게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사례이다.¹⁶²⁾ 2016년 5월 4일 21시 모 호프집 앞에서 싸움이 발생한 사건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였다. 진정인이 경찰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158) 국가인권위원회 2010. 12. 15.자 10-진정-0512500 결정

15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4에 따라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60)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1조(장비의 손질 및 수리) ① 각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손질을 하여야 하며,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장비 출·입고시 마다 해당 장비를 손질하여야 한다.

161) 국가인권위원회 2010. 12. 15.자 10-진정-0512500 결정.

162) 국가인권위원회 2016. 10. 27.자 16-진정-0337200 결정.

이에 경찰은 스텐기능으로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으며 뒷수갑을 채워 진정인을 현행법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다시금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자 9초간 전자충격기를 다시 사용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피의자가 이러한 뒷수갑이 채워져 저항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¹⁶³⁾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¹⁶⁴⁾ 전자충격기 사용 요령 및 실사 훈련 교안,¹⁶⁵⁾ 경찰장비관리규칙¹⁶⁶⁾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위반한 사용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였다.¹⁶⁷⁾

또 다른 사건으로 전자충격기 사용으로 눈이 실명한 사례이다.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를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근무복 주머니에 넣어 두었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

163)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법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③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64) 전자충격기 사용 대상을 5가지로 규정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대상으로는 1.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자 2. 투기명령에 불응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저항하는 자 3.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려는 자 4. 주취상태나 마약 등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자 5.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로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6. 10. 27.자 16진정0337200 결정(결정례집 2017-9, 458)면].

165) 테이저건은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총구 앞에 카트리지를 끼워서 총알처럼 사용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일명 스텐방식으로 카트전자충격기의 카트리지를 분리하여 불발이나 근접거리 등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168130&memberNo=36645352> (검색일: 2018. 10. 2.)

166) 제79조(전자충격기) ①전자충격기는 물품관리관의 책임 하에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 전 배터리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2.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3.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7) 국가인권위원회 2016. 10. 27.자 16-진정-0337200 결정(결정례집 2017-9, 456면).

에서 전자충격기가 바닥에 떨어져 다시 한손으로 주워들고 진정인을 제압하다가 잘못하여 진정인의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사건으로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⁸⁾

전자충격기 사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2011년에는 116건이 사용되었고 2012년에는 199건이 사용되었으며 2013년에는 271건, 2014년에는 328건이 사용되었고 2015년은 433건이 사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자충격기는 전압이 5만 볼트에 이르며 경찰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0,295정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⁶⁹⁾

전자충격기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자충격기를 포함한 경찰장구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특별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부당한 가스분사기 사용 인권 침해

가스분사기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한 사례이다.¹⁷⁰⁾ 진정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이 처리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 (박카스) 병을 깨뜨리고 그 유리조각을 가지고 파출소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경찰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것이다. 유리조각을 가지고 파출소로 들어간 진정인의 행위는 제지될 필요가 있지만 그 제지과정이 매우 급박하여 어떠한 경고도 없이 바로 제지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위협예방 차원의 경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고절차가 없이 바로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침해이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¹⁾

또 다른 사례로서 진정인이 체포되어 연행된 직후 계속해서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뒷수갑을 채워 수갑걸이대에 고정시키고, 그럼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자 진정인을 향해 가스분사기를 1회 발사하였다. 이는 도주우려가 없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없음에도 가스분사기 관련 제반과정을 위반

168)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5.자 13-진정-0304600 결정(결정례집 2014-6, 314면).

169) 국가인권위원회 2016. 10. 27.자 16진정0337200 결정(결정례집 2017-9, 453면).

170)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2-진정-0325300 결정

171)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2-진정-0325300 결정(결정례집 2013-5, 261면).

하여 분사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침해이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²⁾

가스분사기의 사용에서도 매우 급박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경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가스분사기 사용과 전자충격기 사용 등 경찰장구의 사용수칙과 안전 사용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 교육과 훈련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경찰장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한 경우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 또는 문제점이 다시금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삼단봉·가스경봉·전자충격기 등 과도한 장구 사용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한 사례이다.¹⁷³⁾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0. 12. 8. 베트남인들의 도박 현장에서 가스총 5발과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고, 전자충격기, 가스경봉 및 삼단봉을 사용하여 총 34명을 검거하였는데 이 진압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삼단봉 및 전기충격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들의 머리, 팔, 등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1은 머리가 찢어지고, 피해자2는 손가락에 파열상을 입었다. 진압에 놀란 10여 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검거와 구타를 피해 거실 창문을 넘어 하천에 뛰어들거나 기숙사 측면 벽면을 이용해 도주하였으며, 이들 중 2명이 하천에 빠져 익사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위 피해자 34명을 수갑 및 케이블타이로 2~4명씩 손목을 묶은 채 사무실 바닥에 인치해 놓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구타하고, 베트남인 2~4명이 수갑 또는 케이블타이에 묶인 채 한꺼번에 화장실에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속자를 제외한 32명의 베트남인들에게 2010. 12. 19. 05:00경 체포하여 같은 날 22:00경 석방할 때까지 당일 11:00경 컵라면 1개씩만을 중식으로 제공하였다.¹⁷⁴⁾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안전사고로 사망에 이른 데에는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진정인들이 사복을 입은 채 베트남어 통역 없는 고지행위와 함께 50여명이 밀집해 있던 비좁은 숙소 안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였고, 저항

172) 국가인권위원회 2011. 11. 23.자 11-진정-0555900 결정

173) 국가인권위원회 2011. 1. 31.자 10-진정-777300 결정

174) 국가인권위원회 2011. 1. 31.자 10-진정-777300 결정(결정례집 2012-4, 95-98면).

또는 도주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장구 사용에 있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 제12조¹⁷⁵⁾가 규정하는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을 인치한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때린 행위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¹⁷⁶⁾ 및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¹⁷⁷⁾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정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해자들을 케이블타이에 장시간 묶어 두어 손목에 상처를 입혔고, 겨울에 보온 조치 없이 바닥에 쭈그려 앉혔으며, 2~4명씩 묶은 채 화장실에 보내 서로 바지 지퍼를 내리도록 하여 인격적 모멸감을 준 점, 새벽부터 22:00까지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제공한 점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¹⁷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인권 보호 원칙의 준수 의무 및 인종, 국적,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¹⁷⁹⁾ 및 제12조에서 연유하는 인격권, 건강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¹⁸⁰⁾

175)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76)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77)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78)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179)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80) 국가인권위원회 2011. 1. 31.자 10-진정-777300 결정(결정례집 2012-4, 99-101면).

타. 폭행행위 등 인권 침해

1) 고문에 의한 인권 침해

고문으로 인한 인권 침해 관련 사례이다.¹⁸¹⁾ 진정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경찰관 2명은 체포한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사람이 드물고 차들이 별로 안 다니는 쪽에 차를 세운 후, 진정인의 얼굴을 차량 방석에 처박고 등을 발로 누르고 날개꺠기를 하는 등 약 4회 30여분 정도 고문을 한 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였다.¹⁸²⁾

경찰관의 위와 같은 고문행위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고문)¹⁸³⁾,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¹⁸⁴⁾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¹⁸⁵⁾가 보장하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¹⁸⁶⁾

또 다른 유사사례로 경찰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여죄 및 공범관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일부는 스카치테이프를 얼굴에 감고) 피해자들을 엎어뜨려 등을 밟고

181)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8.자 10-진정-0419800 결정

182)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8.자 10-진정-0419800 결정(결정례집 2012-4, 109-115면).

18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게 될 국제문서나 국내입법을 해하지 아니한다.

184)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85)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86)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8.자 10-진정-0419800 결정(결정례집 2012-4, 116면).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날개찍기를 하는 등 폭행을 하거나 고문을 하였다.¹⁸⁷⁾

가해자들의 관련 피해자들의 대한 고문행위는 「형법」 제125조¹⁸⁸⁾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¹⁸⁹⁾에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¹⁹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이다.¹⁹¹⁾

2) 피의자 호송 중 폭행행위

피의자를 호송 중에 경찰이 폭행한 사례이다.¹⁹²⁾ 경찰차량에 내의 블랙박스의 장착과 작동은 경찰청에서 의무화하고 지시를 내렸지만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은 채 무전취식으로 호송 중인 진정인에 대해 얼굴과 머리등 10여 차례 폭행을 가하고¹⁹³⁾ 또 이를 뵈음에도 저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¹⁹⁴⁾ 경찰의 폭행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고 근절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경찰의 폭행행위 발생 방지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7) 국가인권위원회 2010. 6. 15.자 10직인1, 10진정2420, 10진인2543(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57면).

188)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89)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90)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91) 국가인권위원회 2010. 6. 15.자 10직인1, 10진정2420, 10진인2543(병합)결정(결정례집 2012-4, 69면).

192) 국가인권위원회 2013. 3. 20.자 13-진정-0052600 결정

193) 국가인권위원회 2013. 3. 20.자 13-진정-0052600 결정(결정례집 2014-6, 276면).

194) 국가인권위원회 2013. 3. 20.자 13-진정-0052600 결정(결정례집 2014-6, 275면).

3)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폭행행위

경찰이 수갑을 채운 피의자를 폭행한 사례이다.¹⁹⁵⁾ 이는 피의자 진정인이 경찰관에 게 폭행을 먼저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피의자가 이후 뒤로 수갑이 채워져 더 이상 폭행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피진정인이 피의자의 왼쪽 발목을 오른쪽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것은 형사절차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¹⁹⁶⁾

경찰 역시 인간이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피의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응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한 고충이 있음을 심본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지위와 입장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수행에는 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4) 주민 대치와 실랑이 중 폭행행위¹⁹⁷⁾

주민과 대치하여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발생한 폭행 사례이다. 마을 주민들과 다른 반대 주민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경찰 인력과 반대 측 주민들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주먹으로 팔을 내리치고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방어적이고 반사적인 행동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잉 대응으로서 경찰은 직무수행시 신체적 위협을 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의 원칙)¹⁹⁸⁾과 제8조(폭행 및 가혹행위 금지)¹⁹⁹⁾ 및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²⁰⁰⁾를 넘어

195) 국가인권위원회 2012. 4. 13.자 11-진정-0531200 결정.

196) 국가인권위원회 2012. 4. 13.자 11-진정-0531200 결정(결정례집 2013-5, 235면).

197)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자 12-진정-0467600 결정.

19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199)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

선 것이며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⁰¹⁾

5) 경찰모자로 내리친 폭행행위

경찰모자로 폭행이 이루어진 사례이다.²⁰²⁾ 진정인이 폭행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후 다시 경찰서로 출발하기까지 1시간 40분간 파출소에 있는 동안 경찰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을 경찰모자로 내리친 사실이 있으며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²⁰³⁾

6)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운 폭행행위

진정인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사례이다.²⁰⁴⁾ 진정인은 주취상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경찰관이 신원 및 현금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경찰관은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의자에 고정시켜놓았다. 진정인은 바닥에 침을 뱉었고, 경찰관의 옷에도 침이 묻자 경찰관은 쓰레기 배출용 반투명비닐봉지를 27분간 진정인의 얼굴에 씌워놓았다.²⁰⁵⁾

진정인이 비록 공무가 집행되는 경찰관서 안에 침을 뱉고 근무자에게까지 침을 뱉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갑이 채워져 소파에 묶인 상태로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 경찰관이 27분간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운 행위는 명백한 폭행의 일종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헌법」 제12조²⁰⁶⁾에서 인정하는 신체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²⁰⁷⁾

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01)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자 12-진정-0467600 결정(결정례집 2013-5, 281면).

202)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3.자 12-진정-0728600 결정(결정례집 2013-5, 290면).

203)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3.자 12-진정-0728600 결정(결정례집 2013-5, 290면).

204) 국가인권위원회 2009. 2. 25.자 09-진인-10 결정(결정례집 2012-4, 3면).

205) 국가인권위원회 2009. 2. 25.자 09-진인-10 결정(결정례집 2012-4, 3면).

206)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07) 국가인권위원회 2009. 2. 25.자 09-진인-10 결정(결정례집 2012-4, 7면).

7)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성추행

연행과정에서 경찰 등에 의한 성추행 사례이다.²⁰⁸⁾ 제주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에서에서 남성 경찰들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여성 활동가 5명을 질질 끌고 몸을 만지면서 강제 연행하였다. 위 여성 활동가 중 한 명은 상의가 벗겨져 항의 했으나 경찰은 무시하였고, 여성 활동가는 “이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여성 경찰관이 연행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저항했지만 남성 경찰과 남성 용역들이 여성 활동가를 추행하며 강제 연행하였다.

경찰은 직무수행시 신체적 위협을 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성추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의 원칙)²⁰⁹⁾과 제8조(폭행 및 가혹행위 금지)²¹⁰⁾ 및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²¹¹⁾를 넘어선 것이며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체포과정 중 폭행

체포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용산 참사 관련 사례이다.²¹²⁾ 40여명의 시민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이에 경찰은 위 기자회견은 금지 통고된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한 후, 이후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제창을 하며 기자회견을 계속 하였다. 이에 경찰은 최종 체포명령을 받은 위 참가자 중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경찰서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208) 강정인권 침해조사단 외, 위의 책(주 67), 102면.

209)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21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1)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12) 국가인권위원회 2010.4.12.자 09-진인-1945 결정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귀가하려는 참가자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참가자들을 4인 1조로 팔을 꺾고 사지를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근에 세워둔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다. 또한 변호사인 참가자가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고 위 체포행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해당 참가자의 왼쪽 팔을 뒤로 돌려 꺾고 목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허리띠를 움켜잡았고, 옆에 있던 경찰은 위 참가자의 양복 옷깃을 잡아 조여 올리고, 또 다른 경찰은 좌측 허리와 어깨를 붙잡은 상태에서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다.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체포 이유에 대해 구두로 항의했을 뿐이며, 여타 위험물품을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진압 경찰관들이 해당 기자회견 참가자의 목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저항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감내하기 힘든 신체적 고통과 인격적 수치심을 준 것이며,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헌법」 제10조²¹³⁾ 및 제12조²¹⁴⁾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참여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²¹⁵⁾.

다른 사례는 철거민 검거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행에 대한 것이다.²¹⁶⁾ 경찰이 용산 화재 참사 발생 후 철거민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민들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 경찰은 철거민이 망루 내에서 싸울 의사가 없다고 손을 들었는데도 발로 걷어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폭행하였고, 망루4층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을 당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부축을 받고 걸어가던 철거민을 “너 이 새끼 잘 걸렸어”라며 뛰어와 갈비뼈 안에 피멍이 들 정도로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또한 1차 진입 때 망루 3층에서 경찰이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려 실신했고, 경찰봉으로 등 부위를 3회 폭행 하였다²¹⁷⁾.

213)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14) 「헌법」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15) 국가인권위원회 2010.4.12.자 09-진인-1945 결정.

216)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2018), 32면.

217)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의 책(주 217), 54면.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하고, 체포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체포 등 직무를 수행하는 때라도 폭언이나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적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²¹⁸⁾. 또한 경찰은 직무수행 시 신체적 위협을 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 보호의 원칙)²¹⁹⁾과 제8조 (폭행 및 가혹행위 금지)²²⁰⁾ 및 제11조 (직무수단의 한계)²²¹⁾를 넘어선 것이며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 중국선원 폭행 등 인권 침해

중국선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사례이다.²²²⁾ 2013년 4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중국 선원을 해양경찰이 제압하여 선박이 나포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치아파절, 치근 파절,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다.²²³⁾

한편 중국선원에 대한 해양경찰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선원이 중국가면 여성 통역인을 죽여 버린다고 언급한 사실 등이 있는 상황이 있었고, 경찰의 수사를 돕는 여성 통역인을 중국선원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중국선원을 폭행하였다.²²⁴⁾

218)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의 책(주 217), 32면.

219)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22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1)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22)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23. 자 13-직권-0000300 / 13-진정-0240200·0245200 병합결정

223) 결정례집 2013-6, 325면.

224)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23. 자 13-직권-0000300/ 13-진정-0240200·0245200 병합결정(결정

또한 중국선박의 선상에서 중국선원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 이들이 심하게 저항하거나 폭력을 사용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장봉으로 해양경찰이 중국 선원들을 폭행한 것은 질서유지를 넘는 유형력행사로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 보호원칙²²⁵⁾과 제8조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규정²²⁶⁾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⁷⁾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중국선원이 먼저 폭행을 가하여 해양경찰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점 등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상의 고충은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심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수행 상 반드시 제압이 불가피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교육과 함께 업무수행 상 발생하는 상황대응과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 피해자 관련 인권 침해

1)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례이다.²²⁸⁾ 가해자는 주점에서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술잔을 집어 던지며 다른 손님의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손님이다. 가해자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레집 2014-6, 327면).

225)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226)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23.자 13-직권-0000300/ 13-진정-0240200·0245200 병합결정(결정 레집 2014-6, 328면).

228) 국가인권위원회 2015. 7. 24.자 15-진정-0183500 결정(결정레집 2016-8, 296면).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후 피의자 대기석에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여 수갑을 해제한 바, 화장실 바로 옆에 있던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진정인을 폭행하여 송곳니를 부러뜨렸다.²²⁹⁾

「범죄수사규칙」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원칙 준수와 피해자 등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등을 동행할 경우 유의사항과 함께 신변안전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는 피의자가 화장실을 갈 경우에 한쪽의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만큼 해제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²³⁰⁾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이러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²³¹⁾ 피해자 진정인의 이가 부러지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는 따라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2항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³²⁾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살펴야 할 의무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고 피의자 또는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서 경찰서 내에서 다시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방지되어야 하며 경찰의 업무가 경찰서 밖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도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신고 접수 후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인권 침해

112신고 센터의 대처 미흡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이다. 112신고센터의 접수자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서 피해자가 언급한 사실과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으로 시간을 경과시켰고

229) 국가인권위원회 2015. 7. 24.자 15-진정-0183500 결정(결정레집 2016-8, 296면).

230)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2조 (호송 중 유의사항) 호송관은 호송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231) 국가인권위원회 2015. 7. 24.자 15-진정-0183500 결정(결정레집 2016-8, 297면).

232) 국가인권위원회 2015. 7. 24.자 15-진정-0183500 결정(결정레집 2016-8, 297면).

상황의 지휘자는 긴급성과 심각성을 전파하거나 확인 또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부지령자는 상황을 오판하여 안이하게 대처하는 등 「헌법」 제10조²³³⁾가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²³⁴⁾ 결국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²³⁵⁾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이는 112센터의 전문교육 부재, 신고 및 지령확인 체계 불안정,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부실, 112센터의 지휘감독체계의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112 경찰 신고는 국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밀접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112 경찰신고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와 대응 방법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다루어질 필요²³⁶⁾가 있을 것이다.

3) 위법한 신체검사 인권 침해

신체검사와 관련한 인권 침해 사례이다.²³⁷⁾ 피해자는 이 사건 신체검사를 받기 이전에도 신고인, 유족,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만한 특이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신체검사가 이루어진 날에도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체검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가운을 입도록 한 다음 손으로 그 위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행하여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큰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신체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233)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34) 국가인권위원회 2012. 9. 18.자 12-직권-0000400 결정(결정례집 2013-5, 407면).

235) 「헌법」에 생명권을 별도로 명시하여 명백하고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의견과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근본내용이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236) 112 경찰 신고내용 중 신고 접수 내용은 1년 후 폐기하고 녹음 자료는 3개월 후 폐기한다는 것은 범죄 대응의 최전선에서 발생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기 위한 기본자료 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12 경찰 신고 내용이 매년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검토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진주원, 112신고내용 1년 후 폐기...지속되는 가정 폭력 파악 불가, 여성신문 기사, 최종수정 2018.10.30.,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405>)

23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²³⁸⁾ 이 사건 신체검사는 남자 경찰관들이 없는 곳에서 여경에 의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하. 전투경찰 순경의 의료조치 미흡 인권 침해

전투경찰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례이다.²³⁹⁾ 격오지에 근무하는 전투경찰순경이 2010년 6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료를 받았으나 소속 부대의 의료조치 소홀로 추가진단을 받지 못하여 2010년 7월 전역 후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²⁴⁰⁾ 격오지에 근무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피해자의 의료접근권 보장에 미흡함으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하였다.²⁴¹⁾

경찰 소속 구성원이 어떠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같이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관리역량이 검토되고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병발생은 조직 내부적으로나 조직 외부적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이 질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질병발생의 의문이 있거나 질병발생과 관련한 보고 또는 신고가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진료절차가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취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지속적으

238)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1항 내지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중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및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39)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3.자 12-진정-0837000 결정.

240)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3.자 12-진정-0837000 결정(결정례집 2013-5, 411면).

241)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3.자 12-진정-0837000 결정(결정례집 2013-5, 410면).

로 교육과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가. 외국인 피의자의 접견·통신권 미보장 인권 침해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접견·통신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례이다.²⁴²⁾ (나이지리아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 체포시 영사기관에 체포 및 구속사실을 통보하고 영사기관원과 접견하고 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등²⁴³⁾ 본국의 영사관원과 접견권 및 통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접견·교통권 보장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⁴⁾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이 외국인을 위한 차별화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형사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내국인과 동등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지인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범죄와 관련하여 체포되었을 경우 접견·통신권은 외국인 피의자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부당한 강제소환 인권 침해

감찰조사와 관련하여 강제소환이 이루어진 사례이다.²⁴⁵⁾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등에 따른 감찰조사는 임의조사이고 자료제출이나 출석 및 답변요청에 임의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 강제소환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강제소환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가 수용인인 경우 수용시설에서 검찰청으로 포승과 수갑이 채워져 강제구인의 형식을 취하여 호송되므로 조사의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찰조사에 근거하여 형사사

242)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1.자 14-진정-1033000 결정.

243)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1.자 14-진정-1033000 결정(결정례집 2016-8, 340면).

244)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1.자 14-진정-1033000 결정(결정례집 2016-8, 336면).

245) 국가인권위원회 2014. 8. 1.자 14-진정-0068700 결정.

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소환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겠다.²⁴⁶⁾

감찰조사는 조직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강제소환은 감찰조사의 임의성 보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진행되는 조사에 대해서 인권부서와 함께 적절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며 반영하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형집행장 절차 위반 인권 침해

검찰의 형집행장 제시와 관련된 사례이다.²⁴⁷⁾ 형집행장 제시와 관련하여 경찰인 사법경찰관리가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해 형집행 즉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수배자에게 제시할 때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시할 것을 필요로 한 것²⁴⁸⁾과 비슷한 검찰의 사례이다.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진정인이 벌금분할 납부를 위하여 자진출석을 한 경우에도 그 신청이 기각되어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할 경우 다시금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제시하지 않은 때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⁹⁾

검찰 형을 집행할 경우에 형집행장의 원본을 제시하거나 형 집행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형 집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절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검찰은 진정인이 벌금 7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소환절차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진정인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이다.²⁵⁰⁾ 「형사소송법」 제492조²⁵¹⁾는 벌금 또는 과료 미납부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경우 형 집행

246) 국가인권위원회 2014. 8. 1.자 14-진정-0068700 결정(결정례집 2015-7, 416면).

247) 국가인권위원회 2013. 10. 31.자 13-진정-0426100 결정.

248)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28.자 14-진정-0260200 결정(결정례집 2015-7, 403면).

249) 국가인권위원회 2013. 10. 31.자 13-진정-0426100 결정(결정례집 2014-6, 377면).

250) 국가인권위원회 2008. 9. 25.자 08-진인-619 결정(결정례집 2009-3, 288면).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따라서 노역장 유치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73조²⁵²⁾에 따라 소환절차를 밟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집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화로 납부 독촉을 하는 행위가 위 소환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하여 자유형 집행을 준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재산형에서 자유형으로 형이 대체되었음을 의미하는 만큼 재산형 집행을 위한 납부명령과 자유형 집행을 위한 소환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또한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한 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금납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피고인의 인권을 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집행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 제12조²⁵³⁾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²⁵⁴⁾

라. 검찰조사 계구 사용 인권 침해

검찰조사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조사를 한 사례이다.²⁵⁵⁾ 검찰수사관도 검사조사 시에 피의자의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 검찰수사관이 조사시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²⁵⁶⁾에는 예외적으로 사용²⁵⁷⁾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로 조사를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251)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2) 「형사소송법」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253)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54) 국가인권위원회 2008. 9. 25.자 08-진인-619 결정(결정례집 2009-3, 289-290면).

255) 국가인권위원회 2013. 11. 29.자 13-진정-0306900 결정.

256)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1헌마728 결정;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결정례집 2013-6, 384면).

257) 제호업무지침 제202조는 검사조사실에서 조사 진행 중 수용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특정강력범이나 마약사범, 정신질환 수용자, 자해 또는 자살 우려가 있는 수용자, 상습규율위반 수용자 그 밖에 도주·폭행·소요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11. 29. 자 13-진정-0306900(결정례집 2014-6, 384면)).

침해한 것이다.

검찰조사시에 반드시 계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증명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구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인 사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전자충격기 과잉 사용 인권 침해

경찰에 의한 전자충격기 과잉 사용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전자충격기 과잉 사용이 있었던 사례이다.²⁵⁸⁾ 검사인 피진정인1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소지한 다른 피진정인 2내지 6과 함께 진정인의 문 앞에서 대기하다, 진정인이 밖으로 나오자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진정인에게 테이저건 3발을 동시에 발사했고, 진정인이 도주하자 테이저건을 재차 발사하고 체포과정에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²⁵⁹⁾

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 2 내지 6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청법」 제47조²⁶⁰⁾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설령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범인검거를 위한 무기 및 장구의 사용은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수사관의 수, 무기의 종류,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²⁶¹⁾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명백하고 위급한 저항이 없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전경고도 없이 진정인에게 테이저건 3발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체포용 장비의 과다한 사용으로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258) 국가인권위원회 2008. 7. 3.자 07-진인-3390 결정.

259) 국가인권위원회 2008. 7. 3.자 07-진인-3390 결정(결정례집 2009-3, 281-282면).

260) 「검찰청법」 제47조(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①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261) 대법원 2004. 3. 25.자 2003도3842 판결

신체의 자유²⁶²⁾를 침해한 것이다.²⁶³⁾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가. 언론 보도 관련 인권 침해

1) 불충분 증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인권 침해

불필요한 내용 즉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표한 사례이다.²⁶⁴⁾ 시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매입하여 침수시키고 자신이 운영하는 수리업체에 수리하면서 보험금을 타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다²⁶⁵⁾는 것과 같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공표하고 피의사실 공표의 목적이나 필요성과는 관계없는 정보를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한 것은²⁶⁶⁾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²⁶⁷⁾

보도자료는 국민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유죄예단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 침해

유죄를 예단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한 사례이다.²⁶⁸⁾ 피진정인은 사이버범죄

262)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63) 국가인권위원회 2008. 7. 3.자 07-진인-3390 결정(결정레집 2009-3, 284면).

264)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508600

265)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16-진정-0508600 결정(결정레집 2017-9, 417면).

266)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의 언론공개 기준) 제84조(수사사건의 언론공개에 한계),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공보 제한 사항) 제11조 (공보시 유의사항)

267)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508600결정(결정레집 2017-9, 414면).

268)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1.자 결정 14진정1033200

수사대에서 중국산 산양삼 밀수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 바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에서 ○○원 대표 심마니 C씨는 국내 최고의 심마니로 14세부터 산삼을 채취하였으며 방송에도 수차례 소개되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명 코미디언과 대학 교수를 고문으로 소개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삼감정, 경매장으로 홍보하면서 사실은 중국산 산양삼을 대량 밀반입 및 판매한 것으로 기재하여 진정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⁶⁹⁾

「형법」 제126조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에서도 수사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공개를 할 경우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필요한 사항만 공개를 하고 공개되는 정보를 사용하여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²⁷⁰⁾ 대법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추측하게 하거나 예단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주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⁷¹⁾

중국산 산양삼이 금지된 농약이 함유되어 있고 불법으로 밀수입되어 대량유통되었다는 점에서 공표목적과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진정인의 신원이 특정되고 진정인의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²⁾

보도자료의 내용은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이나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잘못된 수사내용 언론발표 인권 침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보도자료 관련 사례이다.²⁷³⁾ 피진정인 경찰은 피의자 일방의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²⁷⁴⁾ 즉 피의자는 진정

269)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1.자 14-진정-1033200 결정(결정례집 2016-8, 310면).

270)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1.자 14-진정-1033200 결정(결정례집 2016-8, 311면).

27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272)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1.자 14-진정-1033200 결정(결정례집 2016-8, 312면).

273)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2.자 15-진정-0742400 결정.

인에게 현금 3천 5백만원을 빌려주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사귀던 관계 또는 현금을 빌려주면서 연정을 품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기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벌인 인질극 등과 같이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였다는 설명이 없이 사실로 단정하여 언론보도를 하였다.²⁷⁵⁾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사항에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발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²⁷⁶⁾한 바 있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와 제84조 및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도 수사사건의 언론공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공개하고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사항이나 범죄혐의 및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²⁷⁷⁾

피의자 일방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언론보도를 한 것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가족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성씨 및 가족관계를 드러냄으로써 특징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⁸⁾

보도자료는 충분한 증거와 일방의 진술이나 사실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진술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최종적으로 일정한 심의를 거치고 확인을 하는 단계와 절차를 통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피의사실 무관한 자료 언론공개 인권 침해

피의사실과 무관한 보도자료 관련 사례이다.²⁷⁹⁾ 진정인은 공갈 및 방화예비 혐의로 체포된 사건으로, 피진정인인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274)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2.자 15-진정-0742400 결정(결정레집 2016-8, 314면).

275)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2.자 15-진정-0742400 결정(결정레집 2016-8, 319면).

27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277)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2.자 15-진정-0742400 결정(결정레집 2016-8, 320면).

278)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2.자 15-진정-0742400 결정(결정레집 2016-8, 321면).

279) 국가인권위원회 2012. 3. 6.자 10-진정-0489900 결정

과거 진료기록을 TV 방송기자에게 노출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인이 폭행하였다는 내용을 소위 50대 이혼녀의 잘못된 만남 등의 제목과 주제로²⁸⁰⁾ 방송에 보도되었다. 이는 본인의 승낙범위를 넘어서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겠다.²⁸¹⁾ 보도자료는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보도자료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보도되기 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내부보고 문서 보도자료 배포

내부보고 문서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사례이다.²⁸²⁾ 진정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경찰이 진정인과 사건관계자들의 실명이 기재된 내부보고서로 만들어 놓은 검거보고서인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버기자 검거보고서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실에 나누어 준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 사항²⁸³⁾ 위반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²⁸⁴⁾과 제84조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²⁸⁵⁾를 위반한 것이고²⁸⁶⁾ 기본적으로 보

280) 국가인권위원회 2012. 3. 6.자 10-진정-0489900 결정(결정례집 2013-5, 332면).

281) 국가인권위원회 2012. 3. 6.자 10-진정-0489900 결정(결정례집 2013-5, 328면).

282)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2-진정-0102900 결정

283)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284)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④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하여야 한다.

285)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도자료라고 하더라도 익명으로 처리하는 바 본 사례는 실명 등 진정인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⁸⁷⁾

내부보고용 문서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과 이와 관련한 실명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보도자료의 목적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한 일정한 직무교육이 진행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나. 부당한 피의사실 고지 인권 침해

피의사실의 고지와 관련하여 규정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사례이다.²⁸⁸⁾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이를 뒤 교통사고조사계로부터 진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에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주소지에 방문한 것은 출석요구 방법과 관련한 「범죄수사규칙」 제54조²⁸⁹⁾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의사실을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알린 것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와 관련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²⁹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범죄수사규칙」에서는 피의사실 고지와 관련하여 일정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를 적극적으로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286)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2-진정-0102900 결정(결정례집 2013-5, 371면).

287)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2-진정-0102900 결정(결정례집 2013-5, 372면).

288) 국가인권위원회 2013. 4. 9 자 12-진정-0555900 결정

289) 「범죄수사 규칙」 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9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칙들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의 특단의 정황이나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한 최대한 정해 놓은 규칙들을 준수하여 고지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 기소 중지자 탐문수사 인권 침해

기소 중지자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면서 기소 중지자이며 경찰의 수배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²⁹¹⁾ 벌금 미납으로 기소중지된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진정인의 미성년 자식의 학교를 찾아가 모친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탐문수사를 한 것이다. 이는 진정인이 기소중지자로서 이는 경찰의 수배중인 사실을 알게 한 것으로 이는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므로²⁹²⁾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탐문수사의 수행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와 관련한 직무교육에서 반복적인 교육이 확인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전과사실 누설 인권 침해

경찰 대질조사과정에서 전과사실을 누설한 사례이다.²⁹³⁾ 진정인이 상대방과 쌍방 폭행으로 고소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진정인의 30년전 전과를 이야기해 위 상대방이 알게 한 것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9조²⁹⁴⁾ 위반이며, 「헌법」 제17조²⁹⁵⁾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이다.²⁹⁶⁾

291) 국가인권위원회 2013. 10. 31. 자 13-진정-0329400 결정.

292) 국가인권위원회 2013. 10. 31.자 13-진정-0329400 결정(결정례집 2014-6, 364면).

293) 국가인권위원회 2010. 4. 26.자 10-진인-435 결정.

294)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95)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96) 국가인권위원회 2010. 4. 26.자 10-진인-435 결정..

마. 부당한 전과조회 및 개인정보유출 인권 침해

경찰관들이 근거 없이 개인의 전과를 조회하고 이를 다른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례이다.²⁹⁷⁾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항, 제3항²⁹⁸⁾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²⁹⁹⁾에서 정하고 있는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³⁰⁰⁾

바. 경찰의 조사과정 중 사생활 침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이다.³⁰¹⁾ 경찰 차량으로 진정인과 진정인의 애인과 함께 이동하던 중, 경찰관이 “진정인이 술집에 가서 다른 아가씨와 같이

297)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8-진인-215 결정.

29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99)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00)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8-진인-215 결정(결정례집 2012-4, 207면).

301) 국가인권위원회 2011. 7. 27.자 11-진정-0265200, 11-진정-0290200(병합) 결정.

왔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진정인이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사항은 진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며 경찰관은 이를 수사 중인 담당자라 할지라도 그 발언에 신증을 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이 경찰관이 진정인의 사생활을 노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98조³⁰²⁾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³⁰³⁾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³⁰⁴⁾를 침해한 것이다.³⁰⁵⁾

사. 북한이탈주민 신분노출 인권 침해

북한이탈주민의 신분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경찰의 직무수행 중 노출이 된 사례이다.³⁰⁶⁾ 북한이탈주민의 신분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경찰의 직무수행 중 노출이 된 사례이다. 북한이탈주민 신분보호와 관련한 직무수행 중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이 유출되면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나 피진정인 경찰이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탈북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를 유출하여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³⁰⁷⁾와 「인권 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제9조³⁰⁸⁾를

302)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03)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04)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05) 국가인권위원회 2011. 7. 27.자 11-진정-0265200, 11-진정-0290200(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28면).

306) 국가인권위원회 2013. 11. 30. 자 13-진정-0219200 결정.

307)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30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반한 것이고 또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⁰⁹⁾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상 정보는 자신이 한국에서 직업생활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업무수행에서 탈북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교육에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 야간 자택 방문조사 인권 침해

야간에 자택을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이다.³¹⁰⁾ 피진정인 경찰이 야간 음주 단속을 수행하던 중 진정인의 서명 및 스티커 발부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거주지를 새벽에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되었다. 그로써 이러한 야간 자택 방문으로 그 가족에게 음주 운전사실을 알려지게 하여 정신적 충격을 준 점과 서명과 스티커 발부 보정작업이 반드시 새벽에 거주지를 방문하여 수행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였다.³¹¹⁾

야간에 자택의 방문조사가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경찰 내부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언이나 자문을 구하는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무리한 업무수행이 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미성년자를 통한 부모의 개인정보 취득과 진상보고서 공개

미성년자를 통한 부모의 개인정보 취득 등이 이루어진 사례이다.³¹²⁾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2008년 5월 6일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집회신고자에 대한 확인·검토를 위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해 줄 것을

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09) 국가인권위원회 2013. 11. 30.자 13-진정-0219200 결정(결정레집 2014-6, 370면).

310)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자 12-진정-0529400 결정.

311)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자 12-진정-0529400 결정(결정레집 2013-5, 374면).

312) 국가인권위원회 2008. 7. 3.자 08-진인-1739 결정.

요청하였고, 학생명부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 부친의 성명, 직업,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였다. 이후 경찰은 담임교사에게 부탁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학생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집회신고의 사실유무, 고3인데 왜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개인과 단체 중 어떤 자격으로 집회를 신고한 것인지, 단체명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단체인지, 도내 회원 수가 얼마인지, 누구의 지시로 전북대표가 된 것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진상보고서를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³¹³⁾

「경찰법」 제3조³¹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³¹⁵⁾는 치안정보 수집을 경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치안정보는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할 개연성에 관한 정보'로 해석함이 상당하다.³¹⁶⁾ 그러나 피해자는 집회 및 집회신고의 경험이 없는 학생인 관계로 관할 경찰서를 두 차례 방문하여 경찰관 면담과 안내를 거쳐 적법하게 집회를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집회신고의 배경 조사가 위와 같은 치안정보의 수집 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설사 치안정보의 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수업중인 피해자를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진상 보고서를 작성, 공개한 행위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³¹⁷⁾ 등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³¹⁸⁾ 따라서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313) 국가인권위원회 2008. 7. 3.자 08-진인-1739 결정(결정례집 2009-3, 124-125면).

314)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31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316) 결정례집 2018-3, 125면.

317)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

근거 없이 「경찰법」 제3조³¹⁹⁾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거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³²⁰⁾ 및 「경찰법」 제4조³²¹⁾에 의한 경찰작용의 일반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³²²⁾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³²³⁾

차. 지위를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누설

지위를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 및 누설 사례이다.³²⁴⁾ 경찰인 피진정인과 진정인 사이에 차량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경찰전산컴퓨터로 진정인의 차적 조회를 하여 진정인의 남편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남동생에게 전달한 사례이다.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도 없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타인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9조³²⁵⁾ 위반이며, 「헌법」 제17조³²⁶⁾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³²⁷⁾

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18) 국가인권위원회 2008. 7. 3.자 08-진인-1739 결정(결정례집 2009-3, 126-127면).

319)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32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21)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23) 국가인권위원회 2008. 7. 3.자 08-진인-1739 결정(결정례집 2009-3, 127-128면).

324) 국가인권위원회 2009. 7. 17.자 09-직인-1865 결정.

325)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26)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27) 국가인권위원회 2009. 7. 29.자 09-직인-2140 결정.

카. 미동의 촬영 증거수집 행위 인권 침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거지와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한 증거수집 행위 관련 사례이다.³²⁸⁾ 진정인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다음 날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집회금지통고서를 진정인의 우편함에 넣는 장면 및 진정인이 자택 현관문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였고, 위 촬영내용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방문사유와 관등성명을 밝힌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³²⁹⁾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주거지 및 진정인의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행위는 「헌법」 제10조³³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캠코더 촬영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헌법」 제17조³³¹⁾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³³²⁾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가.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 침해

악성댓글에 대해서 고소를 한 진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이다.³³³⁾ 진정인은 인터넷 댓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이 진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나 추단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위한 고소 남용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는 진정인의 평판과 명예를 해치게 되는 「헌법」 제10조의

328) 국가인권위원회 2010. 1. 25.자 09-진인-4260 결정.

329) 국가인권위원회 2010. 1. 25.자 09-진인-4260 결정(결정례집 2012-4, 127-128면).

330)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3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32) 국가인권위원회 2010. 1. 25.자 09-진인-4260 결정(결정례집 2012-4, 129면).

333)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5-진정-0288800 결정.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권 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³³⁴⁾ 이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4조³³⁵⁾와 제13조³³⁶⁾의 규정 내용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하여 내용의 적정성과 가능한 내용의 범위 및 표현 원칙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보도자료 배포 시에는 항상 일정한 공식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대질조사시 전과 관련 질문 인권 침해

대질조사시에 전과와 관련한 질문을 한 사례이다.³³⁷⁾ 대질조사 중 진정인의 전과사실에 대한 질문으로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³³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한다고

334)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5-진정-0288800 결정(결정레집 2017-9, 465면).

335)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4조(인권 보호의 책무) ①수사 및 공보 업무 종사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사건의 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기소 전 공개금지) ①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외적 공개) ①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본장 제4절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336)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3조 (일반원칙) ① 수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수사사건의 공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정하며, 주관적 가치 평가가 언급되지 않도록 한다.

337) 국가인권위원회 2016. 3. 2.자 15-진정-0983500 결정.

338)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전과사실을 물어서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제6조³³⁹⁾에서 규정한 인권 침해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³⁴⁰⁾

전과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대질신문 등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수사 관련 교육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범죄사실 및 디엔에이 채취대상자 정보유출 인권 침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와 관련한 정보유출 사례이다.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진정인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였으나 진정인이 불응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친척이라고 하는 제3자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임과 그 사유를 알려준 것은³⁴¹⁾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³⁴²⁾의 위반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⁴³⁾

디엔에이 채취와 디엔에이 정보관리는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권 보호 등이 과학수사의 필요성 및 요청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관련 사례교육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9)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제6조(해석과 적용) ①이 준칙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 등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이 준칙은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다른 훈령, 예규, 지침, 지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40) 국가인권위원회 2016. 3. 2.자 15-진정-0983500 결정(결정례집 2017-9, 460면).

341) 국가인권위원회 2014. 9. 1.자 14-진정-0217200 결정(결정례집 2015-7, 426면).

34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343) 국가인권위원회 2014. 9. 1.자 14-진정-0217200 결정(결정례집 2015-7, 423면).

3. 경찰 및 검찰 공통 사례 분석

가. 참고인 조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참고인 조사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관련된 사례이다.³⁴⁴⁾ 경찰이 참고인 조사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인적사항 기재란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설정해 놓은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³⁴⁵⁾

이에 대한 개선과 관련하여 경찰은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검찰은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무부는 관련 서식³⁴⁶⁾에서 등록기준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³⁴⁷⁾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사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의 각각의 인권부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과사실 포함 체포·구속 통지 인권 침해

전과사실을 포함한 구속통지서를 가족에게 발송한 사례이다.³⁴⁸⁾ 2010년 7월에 발생하여 201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례로서 진정인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상해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 경찰은 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진정인들의 가족에게 구속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진정인이 폭력전과 8범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형의 선고를 받는 등 총 전과 경력이 16범인 것으로 하여 통지하였다.³⁴⁹⁾

344) 국가인권위원회 2016. 9. 28.자 16-진정-0427400 결정.

34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제3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41조 (피의자신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 (참고인의 진술)

346)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347) 국가인권위원회 2016. 9. 28.자 16-진정-0427400 결정(결정례집 2017-9, 397면).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2. 3. 26.자 10-진정-0694700 결정.

전과는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개인정보이자 사생활 정보이고 공개 금지 대상에는 가족도 포함되므로³⁵⁰⁾ 가족 등에게 구속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도 세부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³⁵¹⁾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³⁵²⁾ 위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위반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적절히 조력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하여 가족에게 발송하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 통지를 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하여 검찰이 진정한 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한의 가족을 수신자로 하고 구속통지서에 전과를

349) 국가인권위원회 2012. 3. 26.자 10—진정-0694700 결정(결정례집 2013-5, 338면).

350) 국가인권위원회 2012. 3. 26.자 10—진정-0694700 결정(결정례집 2013-5, 339면).

35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④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5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기재하는 등 진정인의 주소지로 하여 -실제 진정인의 처가 수령하게 되었는데- 체포 통지를 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³⁵³⁾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위의 사례와 유사한 검찰의 구속통지와 관련한 사례로 2013년 2월 진정인을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하였고 진정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통지서가 발부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범죄사실이 시스템 상으로 자동으로 첨부되는 것을 수정하지 않아 전과사실 11회가 구속통지서에 포함된 사례이다.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개인정보 누설금지³⁵⁴⁾ 위반이며 역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³⁵⁵⁾

전과사실이 체포통지나 구속통지서에 포함되어 가족 또는 제3자에게 통지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직무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제4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영역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가. 경찰의 부적절 지명통보 인권 침해

경찰관인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지명통보³⁵⁶⁾와 관련한 사례이다. 진정인의

353)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자 14-진정-0889100 결정(결정례집 2016-8, 329면).

354)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55)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30.자 13-진정-0211700 결정(결정례집 2014-6, 358면).

356)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지명수배·지명통보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주소(또는 등록기준지)를 파악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직장에 경찰관들이 찾아와 진정인이 경찰에 의해 지명통보 되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은³⁵⁷⁾ 진정인이 심각한 범죄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10조에 반하며 진정인의 명예와 외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인 피진정인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³⁵⁸⁾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지명통보 대상을 정하고 있는바 우선적으로 지명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이의 통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검거경위 허위보고에 의한 인권 침해

진정인은 자신이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자수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검거경위를 자수가 아닌 탐문수사로 허위보고 하였고, 진정인이 이 사실을 항의한 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위보고를 하였다. 이처럼 이미 허위보고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에게 무시와 모욕감을 준 것으로 「헌법」 제10조³⁵⁹⁾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³⁶⁰⁾

2. 지명통보 대상

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된 자

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기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다. 제4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357)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 (직무수단의 한계)

「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지명통보)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명통보 대상).

358)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5-진정-0833100 결정(결정례집 2017-9, 405면).

359)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60)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9-진인-1688 결정.

다. 경찰의 욕설·폭언 등 인권 침해

1) 장애인 현행법 체포시 욕설

장애인 현행법을 체포하면서 경찰이 욕설을 한 사례이다. 경찰관이 장애인인 현행법을 체포하면서 욕설을 한 것³⁶¹⁾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³⁶²⁾ 이는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³⁶³⁾이라고 할 수 있다.³⁶⁴⁾ 또한 「형법」 제311조에서 모욕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³⁶⁵⁾에서도 폭언이나 강압적 어투 및 비하시키는 언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³⁶⁶⁾

폭행 혐의로 체포된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추 떼버려라”, “씨발 인간아” 등의 발언을 경찰이 한 것³⁶⁷⁾ 역시 인격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 모독일 될 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였다³⁶⁸⁾고 볼 수 있다.³⁶⁹⁾

욕설과 모욕적인 언어의 사용은 경찰관으로서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인 직무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찰관 선발과정에서부터 경찰관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채용선택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불법성매매업소 단속과정 중 욕설

불법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의 욕설과 관련한 사례이다.³⁷⁰⁾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불법성매매 업소 단속 활동과정에서 6명을 체포하였는데 진정인들이 단

361)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6-진정-0268800 결정.

362)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6-진정-0268800 결정(결정례집 2017-9, 450면).

363)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364)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6-진정-0268800 결정(결정례집 2017-9, 449면).

365)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6)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6-진정-0268800 결정(결정례집 2017-9, 444, 449면).

367) 국가인권위원회 2015. 3. 19.자 14-진정-1055400 결정.

36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헌법」 제10조.

369) 국가인권위원회 2015. 3. 19.자 14-진정-1055400 결정(결정례집 2016-8, 253, 256면).

370) 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4.자 15-진정0145500 결정.

속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권하였으나 설득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진정인들이 경찰관들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³⁷¹⁾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게 되었다.

경찰은 “정식으로 이의제기 하시고 업무방해가 되니 나가시라”고 하자 진정인은 “시발 왜 때려 지금”이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은 “언제 때렸느냐, 니가 이 새끼야 날 업어치기 했잖아”라고 하였으며 또한 조사실에서는 “이 새끼들이 진짜, 이 시발새끼들아, 경찰이 우습게 보이냐”며 “너가 지금 업어치기 했잖아, 이 시발놈아 어따 대고”라고 욕설을 하였다.³⁷²⁾ 이 후 진정이 되어 수갑을 풀어주었고, 진정인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³⁷³⁾

「헌법」 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8조에서도 직무수행 중에 폭언이나 강압적인 어투 또는 비하시키는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³⁷⁴⁾

본 사안에서 진정인이 욕한 사실도 있으나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욕설을 한 행위는 감정이 격하여졌다고는 하더라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⁷⁵⁾

경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진정인이 먼저 욕설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업무수행 상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관의 업무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71) 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4.자 15-진정0145500 결정(결정례집 2016-8, 298, 302면).

372) 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4.자 15-진정0145500 결정(결정례집 2016-8, 298, 303면).

373) 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4.자 15-진정0145500 결정(결정례집 2016-8, 298, 303면).

374) 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4.자 15-진정0145500 결정(결정례집 2016-8, 298, 304면).

375) 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4.자 15-진정0145500 결정(결정례집 2016-8, 298, 305면).

3) 식당 몸싸움 출동 후 욕설

경찰의 식당 몸싸움에 출동하여 욕설을 한 사례이다.³⁷⁶⁾ 피진정인인 경찰관의 얼굴이 빨갛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짹새 새끼 옷벗긴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³⁷⁷⁾ 이에 피진정인은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진정인이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³⁷⁸⁾에 위반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⁷⁹⁾

경찰의 출동 후 부적절한 욕설을 듣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같은 차원에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법과 규칙에 부합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교육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출석요구 및 조사과정 등에서의 욕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진정인과 통화중 혼잣말로 욕설한 사례이다. 진정인이 대질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자 진정인과의 통화 중 혼잣말로 욕설을 한 사례³⁸⁰⁾이다. 경찰의 이러한 부적절한 언어사용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³⁸¹⁾에 규정한 예절에 어긋나고 「헌법」 제10조³⁸²⁾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한 사례이다.³⁸³⁾ 진정인은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반말을 사용

376)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자 11-진정-0675800 결정.

377)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자 11-진정-0675800 결정(결정레집 2013-5, 380, 381면).

37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79)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자 11-진정-0675800 결정(결정레집 2013-5, 380, 384면).

380) 국가인권위원회 2009. 9. 14.자 09-진인-1701 결정.

38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38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83) 국가인권위원회 2009. 5. 14.자 09-진인-984 결정.

했으며, “이 새끼야 바른 말 해라, 사실대로 말해라.”는 욕설을 하였다.³⁸⁴⁾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고 그 여죄를 추궁한다는 사유로 욕설까지 한 행위는 비록 진정인이 피의자의 신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유사한 사례로 조사과정 중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는 사례이다.³⁸⁵⁾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참고인이 몸이 아파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반말로 막말을 하면서 거짓말조사가 탐지를 강요하고, 재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빨리 조사받으러 와라”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³⁸⁶⁾,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조³⁸⁷⁾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법」 제10조³⁸⁸⁾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³⁸⁹⁾

라.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 침해

경찰서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과 관련한 사례이다. 유치인의 자해를 막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를 관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차폐막을 사용하는 등 밀폐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설치하여 유치인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⁹⁰⁾

384) 국가인권위원회 2009. 5. 14.자 09-진인-984 결정(결정례집 2012-4, 205면).

385) 국가인권위원회 2011. 7. 5.자 11-진정-0232400 결정.

386)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87) 「인권보호수사준칙」

2조(인권 보호의 책무) ①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88)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89) 국가인권위원회 2011. 7. 5.자 11-진정-0232400 결정.

390) 국가인권위원회 2014. 8. 1 자 13-진정-0840800 결정(결정례집 2015-7, 400면).

마. 과도한 수갑 사용·수갑 노출 인권 침해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과 수갑 노출이 발생한 사례이다.³⁹¹⁾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상처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수갑이 착용된 부위를 가려주지 않고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다. 이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호송 중 유의사항과 관련한 제62조³⁹²⁾와 유엔이 정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중 피구금자 이송 관련 제45조³⁹³⁾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⁹⁴⁾

또한 다른 사례³⁹⁵⁾로 몸에 시너를 부어 경찰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진정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면서 얼굴에 화상이 심하고 수갑과 포승줄을 착용한 진정인을 그대로 노출시킨 채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병원으로 간 사례가 있다. 이렇게 피의자의 모습을 노출시킨 것은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형의 집행 및

391)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10.자 11-진정-0547400 결정.

392)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 호송관은 호송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의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을 동반하거나 면 접, 물건 수수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호송자는 흡연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심지, 번화가 기타 복잡한 곳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4.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용변을 보고자 할 때에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거나 화장실문을 열고 관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 할 때 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 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항상 피호송자의 기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관찰이 용이한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7. 호송중 피호송자에게 식사를 하게 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선박, 항공기에 의한 호송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93)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5조 ①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피구금자의 이송은 행정청의 비용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394)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10.자 11-진정-0547400 결정(결정례집 2013-5, 257면).

395) 국가인권위원회 2010. 12. 15.자 10-진정-0606100 결정.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³⁹⁶⁾와 호송 중 가급적 모습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2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³⁹⁷⁾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 외 유사한 사례³⁹⁸⁾로 절도피의자인 진정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찬 손을 가리지 않고 2시간 가량 노출시킨 것은, 호송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수갑을 착용한 진정인의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³⁹⁹⁾

경찰의 수갑 사용과 관련하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관련내용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내용이 직무교육에서 반복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심야조사 인권 침해

1) 폭행 관련 심야조사

피의자에 대한 심야조사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폭행의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직실에 인계되었고 이의 조사가 매우 급박한 사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인 새벽 5시부터 21분부터 7시 21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때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례이다.

또한 진정 외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수사기관의 밤샘 조사 또는 심야시간 조사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는 수면권과 휴식권이 행복추구권과 관련되며 따라서 심야조사는 비인권적 행위로 「헌법」 제10조⁴⁰⁰⁾에 위배된다고 하였다.⁴⁰¹⁾

396)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격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397)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98) 국가인권위원회 2011. 4. 13.자 10-진정-0342700·10-진정-0342900(병합) 결정.

399) 국가인권위원회 2011. 4. 13.자 10-진정-0342700·10-진정-0342900(병합) 결정.

400)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01)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3.자 12-진정-0111600 결정(결정례집 2013-5, 288면).

2) 뇌물 관련 심야조사

또 다른 심야조사 사례로 세무서장이 뇌물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심야시간인 새벽 12시 58분경에 피로로 조사중단을 요청하여 중단하였으나, 새벽 2시 30분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및 수정하게 하고 임의동행동의서도 제시하여 서명날인을 받고 새벽 3시에 귀가하게 한 것은,⁴⁰²⁾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³⁾

심야조사는 「범죄수사규칙」에서 금지⁴⁰⁴⁾하고 있고 휴식과 관련하여 휴식시간도 부여⁴⁰⁵⁾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무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3) 성폭력 사건 감찰 관련 심야조사

진정인은 성폭력 담당 경찰관인데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력 신고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감찰조사를 받게 된 사례이다. 진정인은 휴가 중인 2008. 4. 15. 18:00경 감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근무지인 OO경찰서에 19:00경 도착, 당일 20:00경부터 진술서 작성, 피진정인들의 질문에 답변

402)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30.자 10-진정-0767600 결정(결정레집 2013-5, 323면).

403)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30.자 10-진정-0767600 결정(결정레집 2013-5, 326면).

404)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심야조사 금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심야라 함은 작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야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전항 제5호의 경우에는 요청사유와 그 취지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05)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3(휴식시간 부여 등) ①경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고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조사를 받고 대기하다가 06:00경 귀가하였다. 진정인은 2008. 4. 16. 아침 출근해 근무하던 중, 23:00경 피진정인 1의 요구로 OO경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날 23:50부터 익일 03:05까지 문답형식의 조사를 받고, 이어 05:10까지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였다. 진정인은 휴가를 얻어 어린 두 자녀(만 1, 3세)를 돌보고 있던 중, 감찰조사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자녀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만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출석하였다.⁴⁰⁶⁾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밤샘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 침해행위임을 여러 번 결정한 바 있고(2005. 11. 28. 04진인3412외 다수), 경찰청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도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⁴⁰⁷⁾ 이와 같이 밤샘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 보장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감찰조사의 결과는 피감찰자에 대한 징계, 고발 등 신분상 불이익과 연관되는 것이므로, 방어권 차원에서도 밤샘조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2회에 걸쳐 밤샘조사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⁴⁰⁸⁾

4) 용산철거민 심야조사 및 장시간 구치감 대기(일명 ‘불러뽕’)

용산철거민 심야조사와 장시간 구치감에 대기하게 한 사례이다.⁴⁰⁹⁾ 2009. 1. 19.

406) 국가인권위원회 2009. 6. 23.자 08-진인-2602 결정(결정례집 2012-4, 33-37면).

407)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심야조사 금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야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전항 제5호의 경우에는 요청사유와 그 취지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08) 국가인권위원회 2009. 6. 23.자 08-진인-2602 결정(결정례집 2012-4, 36-37면).

409) 국가인권위원회 2010. 1. 11.자 09-진인-215 결정.

05:30경 용산 4구역 철거민 등 피해자들이 남일당 건물 옥상에 진입하여 망루를 짓고 농성을 시작하자, 이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같은 달 20. 07:20경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 23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2009. 1. 20. 07:30경 남일당 농성현장에서 체포되어 당일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검사들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인권 보호관의 허가절차를 받지 않았으며, 특히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를 했어야 할 만큼 조사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조사를 진행하였다.⁴¹⁰⁾

한편,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 통상 구치소를 출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구치감 거실에 피의자를 대기시켰다가 검사의 조사 소환 연락이 오면 해당 검사실로 호송하여 입회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구치감 거실로 환소하여 대기하다가 소환검사실로부터 조사종료 통보를 받고 피의자들을 구치소로 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 검사들은 구속 기소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2009. 1. 21. 발부된 이후, 피해자들을 소환하였다가 약 7시간 40분에서 9시간을 대기 시킨 후 조사를 시작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소환한 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약 5시간 내지 14시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키다가 그대로 구치소로 돌려보내는 등 총 2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시간 구치감에 대기시켰다.⁴¹¹⁾

2009. 1. 20. 수사개시 시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같은 해 3. 11. 구속 기소하기까지 서울구치소에 유치되어 있던 이들을 출석시켜 놓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야조사를 하고, 총 25회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시간 대기시키면서도 동 피해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및 가족 등 외부와 접견 및 교통을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였다.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39조⁴¹²⁾ 및 제40조⁴¹³⁾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

410) 국가인권위원회 2010. 1. 11.자 09-진인-215 결정(결정레집 2012-4, 44-45면).

411) 국가인권위원회 2010. 1. 11.자 09-진인-215 결정(결정레집 2012-4, 45-47면).

412)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9조(구속피의자 등의 조사)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 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구속피의자 등을 불필요하게 소환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교통에 지장을 초래하

항⁴¹⁴⁾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⁴¹⁵⁾ 및 제4항,⁴¹⁶⁾ 그리고 「헌법」 제10조⁴¹⁷⁾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수면권 및 휴식권)을 각 침해하였다.⁴¹⁸⁾

사. 탈북자 사실공개 및 부정적 발언 인권 침해

탈북자와 관련하여 탈북자임을 밝히는 사실공개와 관련된 사례이다.⁴¹⁹⁾ 피진정인이 탈북자임을 집주인에게 밝히고 또 그에 대해 위장결혼을 했거나 또는 간첩일 수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언급⁴²⁰⁾을 경찰관이 한 것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피진정인에 대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⁴²¹⁾

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속피의자 등과 대질조사를 하여야 할 사람이 있거나 자료를 보면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사받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나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속피의자 등을 소환한다.
3. 소환한 구속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구치감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준다.
4.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이감 조사는 대질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공조수사를 활용한다.

413)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심야조사 금지) ①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사료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 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③각급 검찰청의 인권 보호관은 전항에 의한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 보호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414) 「헌법」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15)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416)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417)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18) 국가인권위원회 2010. 1. 11.자 09-진인-215 결정(결정레집 2012-4, 51면).

419) 국가인권위원회 2012. 1. 17.자 11-진정-0402500 결정.

420) 국가인권위원회 2012. 1. 17.자 11-진정-0402500 결정(결정레집 2013-5, 299면).

421) 국가인권위원회 2012. 1. 17.자 11-진정-0402500 결정(결정레집 2013-5, 296면).

경찰관이 탈북자임을 밝힌 유사사례에서는 신분노출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⁴²²⁾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탈북자 신분에 대한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탈북자와 관련하여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정적인 언급은 탈북자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탈북자에 대한 생각과 자세 등 태도와 관련하여 일반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공감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업무와 관련한 공정성 및 부적절한 발언 등 일반적인 자세와 관련하여 채용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아. 교육대상자 모자 등 착용제한 인권 침해

교육 참여시 모자착용을 제한한 사례이다.⁴²³⁾ 교통참여 교육 시 교육대상자에게 모자나 선글라스 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용모와 복장을 제한하는 행위는 피진정인 경찰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위대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⁴²⁴⁾ 그러나 이러한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법령의 근거가 없고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도 착용이 가능하기에⁴²⁵⁾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⁴²⁶⁾

교육 프로그램 특성 상 모자나 선글라스 등의 착용이 교육을 특별하게 방해한다거나 교육이 불가능할 수 있는 등의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거나 시위대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례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법령 등에 없는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설명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422) 국가인권위원회 2013. 11. 30.자 13-진정-0219200 결정.

423)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1-진정-0315700 결정.

424)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1-진정-0315700 결정(결정레집 2013-5, 358, 361면).

425)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1-진정-0315700 결정(결정레집 2013-5, 358, 364면).

426)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1-진정-0315700 결정(결정레집 2013-5, 358, 358면).

자. 속옷탈의 인권 침해

피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속옷 즉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한 사례이다.⁴²⁷⁾ 피의자 조사 시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에게 브래지어가 자해 및 자살도구로 경찰업무 편람에 규정되어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하는바,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 여성 수용자에게도 브래지어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수용자만을 다르게 처우하여 반드시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경찰업무편람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12월에 권고하였다.⁴²⁸⁾

이후 대법원도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브래지어 탈의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⁴²⁹⁾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후에도 경찰은 한 동안 브래지어 탈의를 지속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⁴³⁰⁾ 2013년 3월에 경찰업무편람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하였다.⁴³¹⁾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이후에는 신속한 보완이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서 또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차.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노출 인권 침해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준 사례이다. 경찰이 공원과 주택가에서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피의자에게 모자를 씌우거나 수건으로 가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었다.

경찰이 범죄 현장검증 시 피의자에게 모자를 씌우거나 수건으로 가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근 아파트와 대기차량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었다.⁴³²⁾

427)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18.자 11-진정-0341500 결정.

428)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18.자 11-진정-0341500 결정(결정례집 2013-5, 386, 387면).

429)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

430) 로이슈,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브래지어 탈의 지속하는 경찰 규탄”, 최종수정 2013. 9. 20, <http://www.lawissue.co.kr/view.php?ud=15440>

431) 명숙, “평등하게 간헐 권리”, 최종수정 2016. 6. 16, <http://www.cowalk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4920>

432)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28.자 11-진정-0307000, 11-진정-0107100(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37면).

경찰, 검찰 및 교정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장구를 활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범행재연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공개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⁴³³⁾

유엔에서 결의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에서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⁴³⁴⁾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⁴³⁵⁾에는 호송 시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재물손괴와 절도죄 등으로 피의자 얼굴 공개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요건⁴³⁶⁾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⁴³⁷⁾

433)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28.자 11-진정-0307000, 11-진정-0107100(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38면).

434)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 호송관은 호송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35)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 ①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약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을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3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⁴³⁸⁾에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⁴³⁹⁾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가. 비하발언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비하발언이 있었던 사례이다.⁴⁴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너, 국어 못하냐?”, “너는 사람 말을 이해 못하냐?”와 같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비하발언을 한 것⁴⁴¹⁾은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 명예·사생활 등의 보호⁴⁴²⁾ 사항과 동준칙 제38조 피의자 조사시 준수사항 제3호⁴⁴³⁾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⁴⁾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비하발언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검찰 직원채용선발 과정에서도 평가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37)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28.자 11-진정-0307000, 11-진정-0107100(병합) 결정(결정레집 2012-4, 238면).

438)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39)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28.자 11-진정-0307000, 11-진정-0107100(병합) 결정(결정레집 2012-4, 239면).

440)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6-진정-0188100 결정.

441)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6-진정-0188100 결정(결정레집 2017-9, 475면).

442)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43)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44)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6진정0188100 결정(결정레집 2017-9, 472면).

나. 서명날인강요 인권 침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강요받은 사례이다.⁴⁴⁵⁾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 하다가 조서열람이 끝난 후 2시간 이상 이 경과한 후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과 서명날인을 거부했을 때 거부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⁴⁴⁶⁾ 조서작성 시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서명날인을 강요받은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⁷⁾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날인을 강요받지 않도록 조사자에 대한 교육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언급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한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잘못된 조서내용에 서명날인을 강요하여 법정에서 사용된 경우도 있기에 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이 먼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서명날인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압박을 가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부당한 교도소유치 인권 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여부 결정전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한 것과 관련한 사례이다.⁴⁴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체포 피의자는 교도소나 구치소의 일반수용자와 법적 지위가 다름에도 구속 결정전까지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⁹⁾ 또한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할 경우 일반수용자와 같이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항문촬영과 같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침해를 과도하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⁴⁵⁰⁾

445) 국가인권위원회 2016. 10. 27.자결정 16진정0320000/0320200

446) 국가인권위원회 2016. 10. 27.자 16-진정-0320000/0320200 결정(결정례집 2017-9, 485면).

447) 국가인권위원회 2016. 10. 27.자 16-진정-0320000/0320200 결정(결정례집 2017-9, 478면).

448)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결정 16진정0121100/0122000

449)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16-진정-0121100/0122000 결정(결정례집 2017-9, 488면).

450)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16-진정-0121100/0122000 결정(결정례집 2017-9, 495면).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구속여부 결정전까지 피의자는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⁴⁵¹⁾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여부 결정전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바로 유치하지 말고 구속여부 결정전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관행이나 업무절차를 확인하고 점검하여 절차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시 인권 침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피해자 조사와 관련한 사례이다.⁴⁵²⁾ 성폭력 관련 피해자가 무고를 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조사 받던 중 피해자가 자해를 하게 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⁴⁵³⁾ 이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⁴⁵⁴⁾과 「인권보호수사준칙」⁴⁵⁵⁾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451)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16-진정-0121100/0122000 결정(결정례집 2017-9, 487면).

452) 국가인권위원회 2016. 12. 27자 16-진정-0298200 결정.

453) 국가인권위원회 2016. 12. 27자 16-진정-0298200 결정(결정례집 2017-9, 502면).

454)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455)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1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이하 ‘성폭력 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3. 피해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삼간다.
5.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직접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미리 알려준다.
6.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⁶⁾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보호 관련 내용들이 충분히 숙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수사와 피해자 조사 관련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검찰청 구치감 화장실 차폐시설 미비 인권 침해

검찰청 구치감 화장실의 차폐시설이 미비한 사례이다.⁴⁵⁷⁾ ○○검찰청 ○○지청 구치감 내 화장실은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와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구속 피의자가 검찰청 구치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⁸⁾

「헌법」재판소는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치실 내 화장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⁴⁵⁹⁾으로 판단한 바 있다.⁴⁶⁰⁾

화장실을 통하여 도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차폐시설이 온전하지 않아 신체부위가 노출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재점검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②검찰청에서는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고, 성폭력 등 범죄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56) 국가인권위원회 2016. 12. 27자 16-진정-0298200 결정(결정레집 2017-9, 498면).

457)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자 14-진정-0574300 결정.

458)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자 14-진정-0574300 결정(결정레집 2015-8, 323-324면).

459)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460)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자 14-진정-0574300 결정(결정레집 2015-8, 327면).

제5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보호영역

1. 성소수자 관련 사례 분석

현재 형사절차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훈령들이 존재한다. 2005년 제정된 경찰청훈령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은 성적 소수자를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라고 규정하고, 성소수자의 수사에 있어 아우팅 제한, 유치인 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⁴⁶¹⁾ 또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유치장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⁶²⁾ 한편 2006년 제정된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수사에 있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⁴⁶³⁾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은 상당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 의하면, 948명의 응답자 중 5.0%인 47명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경찰이나 검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이 중 46.8%(22명)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29.8%(14명)은 ‘범죄 피해를 믿지 않거나 축소함’,

461)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4. “성(性)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④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62)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②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463)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7.7%(13명)은 ‘조사 과정에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체성을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람’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범죄 혐의가 강화’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4%(3명), 조사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함’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4.3%(2명)이었다.⁴⁶⁴⁾

나아가 경찰청은 2018년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경찰 인권 보호 규칙」⁴⁶⁵⁾으로 개정하면서 기존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경찰청은 개정이유로 다른 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 하였으나,⁴⁶⁶⁾ 성소수자 수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현재 다른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성소수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1) 성별표현이나 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시선과 발언

성소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정체성이 드러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남성/여성스럽지 못한 외견을 가진 경우, 성소수자에 편견을 가진 수사관에 의해 모욕적 발언을 듣곤 한다. 특히 사회 통념상 여성스러운 외모가 아닌 레즈비언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욕적 경험을 한다. 가령 “경찰조사를 받는데 가해자가 저 사람 남자냐 여자냐 구분도 안된다며 낄낄거리자 경찰도 같이 비웃었다”, “레즈비언 아니냐는 말과 함께 못 볼 걸 보듯한 말투와 표정”을 지었다는 사례 등이 있다.⁴⁶⁷⁾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의 1을 보고는 경찰의 태도가 변했던 경험을 한 사례, 경찰관이 “성매매로 먹고 사는 트랜스젠더 놈들”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례, “아웃팅 협박과 테러 위협을 하던 스토키와의 마찰에서 정체성을 이유로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되었고, 성향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

464) 장서연 책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14), 208면.

465) 「경찰 인권 보호 규칙(2018. 5. 14. 전부개정, 경찰청훈령 제872호)」

466) 개정 이유

인권영향평가 실시, 각종 인권 기구의 권고안 검토,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 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타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유사한 항목을 묶어 조항을 재배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467) 장서연 책임. 위의 책(주 465), 209면.

기를 들었다”는 사례,⁴⁶⁸⁾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사가 “성욕은 어떻게 푸느냐”고 물어본 사례⁴⁶⁹⁾가 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또는 성소수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격권⁴⁷⁰⁾을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명예,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⁴⁷¹⁾ 수사를 함에 있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욕적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제3조⁴⁷²⁾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발언의 정도에 따라서는 「형법」 제311조⁴⁷³⁾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2) 범죄피해 사실을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음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스토킹, 성추행, 데이트폭력을 당해서 이를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곤 한다. “옛 애인에게 심하게 맞아서 경찰이 왔었는데 상황을 설명하니깐 그냥 웃기만 하고 무시했다”, “성추행을 당했으나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여성 스토키를 신고했을 때 (경찰이)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무슨 사이야? 하며 웃었다”, “여자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듣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려 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등의 사례⁴⁷⁴⁾가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스토키 남성으로부터 아웃팅 협박전화를 당하였으나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 사례⁴⁷⁵⁾도 있다.

또한 성소수자 정체성과 무관한 사건임에도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과

468) 장서연 책임. 위의 책(주 465), 209면.

469) 국가인권위원회, 『08 -09 인권상담 사례집』, (2009), 192면.

470)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71)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72) 「범죄수사규칙」 2018. 8. 13. 개정된 것. 경찰청 훈령 제881호) 제3조(인권 보호)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73)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4) 장서연 책임. 위의 책(주 465), 209면.

475) 장서연 책임. 위의 책(주 465), 209면.

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가령 “금전적인 문제로 고소인 입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측에서 내가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그 때 담당 형사는 동성애자인 경우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 사건이 복잡해 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사례⁴⁷⁶⁾가 있다.

이처럼 수사관 개인의 편견에 기초해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기각하거나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조,⁴⁷⁷⁾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는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4조⁴⁷⁸⁾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1조⁴⁷⁹⁾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다.

3) 신분 확인의 문제

트랜스젠더의 경우 법적인 성별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외모가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사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본인임을 의심받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가령 “교통사고가 나서 한번 경찰서를 최근에 간 적이 있는데 계속 물어보더라. 왜 주민번호가 2냐고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이고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이니 교통사고에 관해서만 얘기 하랬더니 계속 물었다”는 사례 등이 있다.⁴⁸⁰⁾ 특히 법적성별과 다른 성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경찰서에 가서 신분증에 의해 법적인 성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했음에도 오히려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트랜스젠더에 대해 불필요하게 신원을 계속 확인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명예,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⁴⁸¹⁾ 위반이고, 「헌법」 제

476) 장서연 책임. 위의 책(주 465), 210면.

477)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78)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4조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479)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80) 장서연 책임. 위의 책(주 465), 210면.

17조⁴⁸²⁾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특히 이러한 일을 겪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수사과정 전반에 불신을 갖게 되어 범죄피해를 입어도 신고자체를 꺼리게 만든다는 점⁴⁸³⁾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피의사실과 무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누설

성소수자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⁴⁸⁴⁾로서 함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누설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난다. 2014. 2. 14.에는 ‘신종 마약 러쉬, 허브 판매 및 투약자 37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판매책 및 투약자들은 모두 동성연애자들로서 이 약품들을 성관계시 성적 흥분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2014. 3. 26.에는 ‘도심 한복판 아파트서 마약파티 한 동성연애 피의자 10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피의자들은 모두 동성연애자들이며, 이 중에는 트랜스젠더 2명도 함께 있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가 경찰에 의해 배포되었다.⁴⁸⁵⁾ 2015년에도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보도에서 피의자들이 동성애

481)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82)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83) 2014년 성소수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한 트랜스젠더 112명 중 경찰이나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8.8%에 불과했다. 한 50대 트랜스젠더는 이렇게 말한다.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도 나 때리고 나도 그 사람 때리고 그랬었는데... 그 때 마침 그 사람들이 나를 때리던 순간에... 집사람이 신고한 경찰들이 오다가 그 장면.을 목격 한거야. 내가 맞고 있는 그걸. 근데 경찰들이 오니까 난 일단 피한거야. 거기서 만약에 파출소 같이 가던가 하면. (트랜스젠더라는 게) 보록날 거 아냐. 그 당시에는 (도움 받을 사람 없이) 나 혼자 뿐이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 일단 그걸 알리는 것도 쪽팔리고. 그리고 예전에 (내 친구를) 어떤 놈이 쳐서 전치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고소를 못해요. 왜냐면.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해도 (성별 정정 사실이) 다 뜯다고. 개가 있었던 테가 지방이었는데 그 지방에선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다 안다고 시골이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행여나 말이 잘못 나와서 그제 보록나면. 개는 그 지역에서 살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는데. 그니까 애가 실컷 맞은 거 같은데 고소 안하겠다고.”

- 나영정 외,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128-129면.

484) 「개인정보보호법」 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인 사실이 상세히 기술되는 사례가 있었다.⁴⁸⁶⁾ 2016년에는 성매매 및 영상유포 혐의로 태국인 2명을 구속하면서 이들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사례도 있다.⁴⁸⁷⁾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누설은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4조⁴⁸⁸⁾ 위반이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존중과 비밀유지를 규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⁴⁸⁹⁾ 「형사소송법」 제198조 위반⁴⁹⁰⁾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제59조제2호 위반⁴⁹¹⁾이 될 수 있다.

다. 동성애자 대상 숙박업소에 대한 표적수사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우나, 휴게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경찰이 수시로 단속을 하는 사례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기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담긴 보도를 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3년 한 방송이 “이젠 동성애자 성매매까지 등장했다”며 집중보도하자 경찰은 소위 ‘게이사우나’를 집중 단속하였지만, 중대한 범위반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⁴⁹²⁾ 2015년에도 용산구에 위치한 사우나, 휴게텔을 단속하여 업주가 「풍속영업의

485)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4 한국 LGBTI인권현황 연간보고서』, (2015), 79-80면.

486)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위의 책(주 486), 54-55면.

487) 온라인 중앙일보, “원정 성매매 태국인 트랜스젠더, 동영상 찍어 판매까지”, 최종수정 2016. 6. 16, <https://news.joins.com/article/20180451>

488)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89)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90) 「형사소송법」 제198조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91) 「개인정보보호법」 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⁴⁹³⁾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한 바가 없고,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⁴⁹⁴⁾하였다.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언론 보도 등에 따라 동성애자 대상 숙박업소를 표적 단속하는 것은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조, 제5조⁴⁹⁵⁾를 위반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편파적인 수사로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기도 하다.

라. 트랜스젠더 피의자의 유치장 수용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80조⁴⁹⁶⁾는 성소수자 유치인의 경우 원하면 독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곳 이상의 경찰서를 1곳으로 묶어 광역유치장을 운영하고, 유치장이 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독거수용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⁴⁹⁷⁾ 교도소의 경우 2006년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어려움을 겪은 사례⁴⁹⁸⁾가 있고, 유치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제2항⁴⁹⁹⁾은 신체검사 시 동성(同姓)의 보호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성별과

492) 정환봉·박준호·이재욱, “경찰이 ‘게이 사우나’ 단속한 이유는?”, 최종수정 2013. 8. 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1338.html

493) 허재현, “게이 휴게텔...아무도 나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진 않았네”, 최종수정 2015. 1. 2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055.html

49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정1040, 2014고정1100(병합) 판결.

495)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정한 수사) ①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96)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④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97) 홍기옥,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207면.

498) 송윤세, “트랜스젠더 수감자 배려안한 교도소...국가배상 책임”, 최종수정 2016. 12. 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10104_0007074879

499)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②신체, 의복 및 소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외관이 다른 트랜스젠더의 경우 어떠한지 하는지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일어난다.⁵⁰⁰⁾

해외의 경우 트랜스젠더 피의자, 피고인의 수용시설에 대해 구체적 지침들이 존재한다. 가령 영국 법무부의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보호 및 관리(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sexual Prisoners)’ 정책⁵⁰¹⁾은,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적 처우, 교도소 내 배치, 개명(호칭), 신체검사, 복장규정, 물품 사용,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침해

1) HIV 감염 의무경찰에 대한 인권 침해적 조치

2016년 서울지방경찰청은 소속 의무경찰이 HIV 양성 반응을 통보받은 사안에 대해 비밀누설, 강제병원이송, 편견과 낙인 강화 등 인권 침해적인 조치를 하였다. 해당 의무경찰이 HIV 양성 판정을 받고 경찰청 고충처리반과 상담을 한 바로 다음날 언론을 통해 감염사실은 물론, 당사자의 성(姓)까지 공개되었다.⁵⁰²⁾ 경찰청은 또한 정밀검사를 목적으로 당사자를 경찰병원으로 후송했고, 당사자가 생활했던 내무반에 대해 전원 소독 및 동료대원에 대한 강제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⁵⁰³⁾

HIV의 감염사실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⁵⁰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⁵⁰⁵⁾ 등에 의해 비밀유지가 의무화된 정보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500) 홍기옥, 위의 책(주 498), 206면.

501) 「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SEXUAL PRISONERS」, PSI 07/2011, 2011. 3. 14.

502) 이동휘, “서울경찰청 기동단 의경 에이즈 양성 반응...경찰 ‘다른 부대원들 감염 여부 검진 중’”, 최종수정 2016. 5. 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02263.html?Dep0=twitter&d=2016052402263

503) 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성명-경찰청의 무능하고 호들갑스러운 대응이 에이즈 공포를 강화시켰다”, 최종수정 2016. 5. 25. <https://chingusai.net/xs/freeboard/472106>

50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고 기사화가 된 것은 경찰청 내 정보관리에 있어 미비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HIV는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없음에도 강제검사나 소독과 같은 과잉 대응을 한 것은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공포를 확산시킨 것으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⁵⁰⁶⁾위반, 「헌법」 제10조⁵⁰⁷⁾가 보장하는 감염인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다.

2. 장애인 관련 사례 분석

가.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미흡

사법절차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미흡했던 사례이다.⁵⁰⁸⁾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2010. 8. 3. 피진정기관(○○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2010 형제16817호 상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지청으로 2010. 8. 19. 10:00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청 326호 검사실 박○○ 수사관”이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발신번호가 일반전화번호(032-320-4326)여서 관련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없었다. 진정인은 같은 날 저녁 지인에게 전화연락을 부탁하여 출석 요구 사유 등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이에 앞서 2009. 12. 10. ○○○○경찰서에서 관련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당시 ○○농아인협회 소속 김○○ 수화통역사가 참여하였었다.⁵⁰⁹⁾

「헌법」 제11조⁵¹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505)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50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07)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08)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

509)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장애차별 결정례집 2018, 464-465면).

510)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법」 제26조,⁵¹¹⁾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항⁵¹²⁾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⁵¹³⁾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법·행정절차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포함되고,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에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⁵¹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이 구술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진정인 스스로 답변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하였던 점, 그 결과 진정인은 출석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수사 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출석 요구 건에 대해

5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12)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13)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결정례집 2018, 465면).

514)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결정례집 2018, 465-466면).

문의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법·행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⁵¹⁵⁾

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진술거부권 고지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부실했던 사례이다(‘별첨 8’ 참고).⁵¹⁶⁾ 피고인은 전체지능 iq 69로서 경도의 지적장애(9~12세 정도)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으로 2001. 3.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일반건조물방화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았다. 피고인은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와 쉬운 한글 단어의 독해가 가능하였지만, 법적 용어, 어려운 단어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란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어요”, “예”, “네”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양식에는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사법경찰관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출력하였음에도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없었다. 검사는 검찰 피의자신문 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고지 등 확인’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주었는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사가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하는 분이 피고인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 안 해도 괜찮다면서 설명해 주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재판장 신문 시에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재차 이를 신문하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⁵¹⁷⁾ 피고인은 각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내지

515)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결정례집 2018, 466면).

5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고합519 판결

517)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수준 및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서 진술 거부권 고지 여부 확인에 대한 답변에 “예”라고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예”라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하여 직접 또는 변호인 내지 조력자의 도움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피고인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실질적으로 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는 진술거부권 고지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 제10조, 제75조⁵¹⁸⁾를 위반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⁵¹⁹⁾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⁵²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7조⁵²¹⁾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

고 기재하라는 안내에 따라 그렇게 기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518)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5조(장애인 수사) ①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 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한다.

②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장비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19)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아 「헌법」 제12조 제2항⁵²²⁾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신뢰관계인 동석 없는 지적장애인 피의자신문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는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진 사례이다.⁵²³⁾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어려서부터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중학교까지만 겨우 마쳤을 뿐이다. 피고인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 어휘구사력이나 문장이해력, 지남력, 주의 유지력과 집중력, 단기기억력 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다른 지적장애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았는데,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⁵²⁴⁾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⁵²⁵⁾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서의 차별금지) ⑥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21)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7조(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22)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5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8. 23. 선고 2017고합24·2017전고4(병합) 판결

524)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⁵²⁶⁾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는 이루어졌지만,⁵²⁷⁾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은 2017. 5. 31. 10:00부터 11:40까지 100분에 걸쳐 이루어졌고,⁵²⁸⁾ 조서의 열람은 피고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관계로 대신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같은 날 11:40부터 11:50까지 10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였다.⁵²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⁵³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당시의 구체적인 외부 정황이 주된 판단요소가 되는데, 여기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였는지 여부, 변호인의 참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었는지 여부, 장애인 등 조력이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더라도 피의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정한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

변호인 입회나 신뢰관계인 동석 없는 지적장애인 피의자신문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인권보호

526) 당시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어서 논스톱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다.

527) 법원은 피고인이 그러한 권리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러한 권리가 가지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그 행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에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528) 법원은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집중력을 유지하며 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529) 법원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여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530)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47조⁵³¹⁾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헌법」 제12조 제2항⁵³²⁾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절차적인 확인과 점검이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신뢰관계인 없는 상태에서의 지적장애인 피해자 조사 사례

신뢰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이다.⁵³³⁾ 진정인의 아내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2009년에 성폭행을 당하였다. 진정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2010. 3. 고소하였다.⁵³⁴⁾ 같은 해 8. 25. 피해자는 성폭력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지방 검찰청 ○○지청 영상녹화실에서 피진정인(담당 검사)으로부터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당시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원이 동석하였다.⁵³⁵⁾ 조사 당시, 피진정인은 조사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면서 피해자와 동석한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원이 자리를 비운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그런데 막상 성관계를 하면 하고 싶으니까, 그게 좋아서”, “본인도 성관계 하는 거 자체는 싫은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사람과 하는 게 아니란 생각은 들었다는 거죠”라는 질문과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 고소장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⁵³⁶⁾

지적장애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를

531)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7조(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32)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533) 국가인권위원회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

534) 국가인권위원회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결정례집 2013-5, 269면).

535) 국가인권위원회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결정례집 2013-5, 270면).

536) 국가인권위원회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결정례집 2013-5, 271면).

받는 그 자체만으로 심리적 불안감이나 위축감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더욱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이나 진술권 등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항,⁵³⁷⁾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⁵³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⁵³⁹⁾ 등에서는 수사과정에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규정하는 등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력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⁵⁴⁰⁾ 그러므로 이들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형사·사법절차에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핵심적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조사에 있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자리를 비워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장의 작성 경위,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를 질문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⁵⁴¹⁾

53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사범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범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39)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540) 국가인권위원회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결정례집 2013-5, 271-272면).

541) 국가인권위원회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결정례집 2013-5, 272면).

마. 시각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장구가 사용된 사례이다.⁵⁴²⁾ 진정인은 벌금 90만원의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2016. 9. 13. 20:15경 112에 전화로 “시각장애인인데 도움이 필요하다.”로 알려, 자신의 거주지로 출동한 OO경찰서 OO지구대 경찰관에게 자신이 벌금수배자임을 알려 자수 의사를 밝히고, OO지구대로 이송되었다. 2016. 9. 14. 09:00경 OO경찰서 경찰관들은 진정인을 서울OOOO검찰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OO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서 형사와 대기실로 이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을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로 항의를 하였으며, 경찰관들은 “형집행장이 발부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해야 한다.”는 요지로 설명하고, 진정인을 서울OOOO검찰청 당직상황실로 이송하였다. 같은 날 09:34경 서울OOOO검찰청 당직상황실 근무자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하고, 수갑을 푼 상태로 당직상황실 내 유치장에 유치하였고, 같은 날 12:46경 진정 외 신병담당 당직계장 등이 진정인 포함 4명의 유치인을 OO구치소로 이송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고 약 20미터 떨어진 호송차량까지 이동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경우 112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사람으로 당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 및 신분이 확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실제적으로 도주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설령 도주하였더라도 체포가 매우 용이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 신분이 확실하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⁵⁴³⁾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⁵⁴⁴⁾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로, 「헌법」 제12조⁵⁴⁵⁾에서

542) 국가인권위원회 2017. 9. 28.자 16-진정-0773900 결정.

54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544)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보장하는 진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822호) 제3조 제1항 제2호⁵⁴⁶⁾는 형집행장을 받은 사람의 호송 시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송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와 같은 호송 시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장비 사용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속 직원들이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⁵⁴⁷⁾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조⁵⁴⁸⁾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장애인 등에 대해 장비 사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총장에게 위 지침의 보완을 권고하였다.

바. 경찰의 염전노예 피해자 신고 무시

염전노예 피해자 신고를 경찰이 소홀히 한 사례이다.⁵⁴⁹⁾ 원고는 전남 신안군 신의면에 위치한 염전에서 2013. 2.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일하였는데, 당시 근로계약의 내용은 ‘월급은 700,000원이며 소금을 안 낼 때에는 임금을 주지 않고 오직 숙식만 제공하며, 계약기간은 2013. 2.부터 소금생산이 끝나는 2013. 10.말까지’였다. 원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545) 「헌법」 제12조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546)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822호)」 제3조(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기준)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형집행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의 호송

54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48)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5가합571351 판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금을 내는 일 이외에도 소금을 포대에 집어넣는 포장작업이나 차에 싣는 상차작업도 하였으며, 밭일과 어업도 하였다. 염전주는 원고에게 소금을 내고 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8. 19. 03시경 탈출하여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은 ‘지금은 밤이니까 옆에 있는 방법사무실에서 자고 다음 날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3. 8. 20. 06시경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밖으로 나오는 경찰관에게 ‘염전주에게 맞으며 일하고 있으며, 힘들어서 섬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원고에게 방법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운동을 갔다. 원고가 방법사무실에서 혼자 기다리는 동안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염전주가 방법사무실로 찾아 왔다. 염전주는 원고에게 ‘염전에서 소금 낼 때까지만 일을 더 도와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경찰관 앞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현할 당시 염전주도 그 자리에 있었다.

원고는 2013. 10. 8. 03시경 탈출하여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밖에서 잠을 자면서 파출소가 열기를 기다린 다음 처음으로 파출소 밖으로 나오는 경찰관에게 ‘섬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다. 경찰관은 원고에게 방법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파출소 문을 잠그고 운동을 갔고, 그 후 30분 정도 경과한 후 염전주가 방법사무실에 혼자 있는 원고를 찾아왔다. 원고는 염전주와 함께 집에 돌아가 일을 한 후 그 다음날 오전에 배를 타고 신의도를 나갔으며, 나갈 당시 염전주로부터 합의금 4,000,000원 중 가불금 2,100,000원과 선불금 1,0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면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 하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가해자를 불러 피해자와 마주하게 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경찰공무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을 같은 공간에 있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원고의 신고를 받고도 염전주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있는 파출소 또는 방법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자신은 운동을 이유로 파출소를 비워두어 염전주와 원고를 독대하게 한 행위는, 인권존중, 공서양속 등의 위반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경찰관의

이러한 직무행위는 「범죄수사규칙」 제29조⁵⁵⁰⁾, 제200조 제1항⁵⁵¹⁾, 제205조⁵⁵²⁾,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조⁵⁵³⁾, 제67조⁵⁵⁴⁾, 제71조의2⁵⁵⁵⁾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⁵⁵⁶⁾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 550) 「범죄수사규칙」 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51) 「범죄수사규칙」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52) 「범죄수사규칙」 제205조(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조치) ①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연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등이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비상연락망 구축 등 그 밖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553)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조(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554)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67조(범죄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범죄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환부·가환부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장물 범에 대한 여죄 수사 등을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범죄피해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 555)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71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등)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사진, 영상물 등 신상정보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범죄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56)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 장애인 복지시설의 학대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례⁵⁵⁷⁾로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장애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인권 침해를 범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고 긴밀히 점검해야 하는 감독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 사회복지법인 ○○재단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고관절 골절 등 상해와 폭행, 학대, 금전착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회계상으로도 보조금 유용행위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통하여 2013년 11월 직권 조사를 거쳐 「형법」 제257조 상해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⁵⁵⁸⁾ 위반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⁵⁵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⁵⁶⁰⁾ 등의 위반을 밝혀내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

557)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15. 자 13-직권-0002400 결정.

558)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5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해를 결정한 바 있다.⁵⁶¹⁾ 장애인 시설종사자들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 및 학대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및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되었다.⁵⁶²⁾

또한 201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원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감금 및 강박 그리고 보조금 유용 행위가 있었던 사건⁵⁶³⁾을 직권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형법」 제260조, 「장애인복지법」 제4조,⁵⁶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⁵⁶⁵⁾,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⁵⁶⁶⁾ 본 사건 역시 검찰 또는 검찰직원에 의한 직접적인 인권 침해 사건은 아니지만 검찰은 타 국가기관의 법집행 감독기관이자 범죄수사를 통한 인권 보호의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관련 업무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로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복지부,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공동의 인권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적절히 감시감독이 진행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 노예노동 피해자에 대한 수사미진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21년 동안 하루 11시간씩 축사에서 일하며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축사 컨테이너에서 살았고, 구더기가 나오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었다. 피해자는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3년 치 임금이라며 4,7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

561)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15. 자 13-직권-0002400 결정(결정례집 2015-7, 648-649면).

562)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15. 자 13-직권-0002400 결정(결정례집 2015-7, 645면).

563) 국가인권위원회 2014. 10. 21. 자 14-직권-0001100외 1건 결정.

564)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5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566) 국가인권위원회 2014.10.21. 자 14-직권-0001100외 1건 결정(결정례집 2015-7, 707-711면).

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같은 마을에 살며 피해자를 측사에 보내고 방치한 가족은 입건조차 되지 않고 내사 종결되었다. 21년의 측사 노동으로 피해자가 받은 돈은 고작 4,700만원이고, 가해자를 비롯해 누구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⁵⁶⁷⁾

2018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가 가장 많고 이른바 ‘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매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착취 판정 총 218건 중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27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연령은 40 ~ 60대였고, 대부분 지적장애인이었으며,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제3자(가족, 지인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들은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농사, 측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 고기잡이, 식당 일, 건설노동,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1차 산업에서 장시간 노동하였다.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의 피해도 입었다. 대부분 피해자는 학대 행위자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고,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 폐가, 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거나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관리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신고된 27건 중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지인·가족 등에 의하여 유입되고,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타인이었는데, 유인행위는 거의 처벌되지 않는 실정이었다.⁵⁶⁸⁾

노동력 착취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입증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법령이 적용된다.⁵⁶⁹⁾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착취 문제가 통상적인 임금미지급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하게 인식되고 처리된다는 점이다.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30년을 일했건, 10년을 일했건 일괄적으로 3년 치의 임금을 계산하고 학대 행위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상호 합의하에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임금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⁵⁷⁰⁾

567) 이정민,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와 대책”,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의 책(주 15), 31면.

56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2018), 31-36면.

569)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의 책(주 15), 41면.

57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의 책(주 15), 42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행위는 「형법」 제348조⁵⁷¹⁾ 준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기죄 역시 위 사례와 같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⁵⁷²⁾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이 실제 피해에 상응하지 않고,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준사기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피해자의 몸 전체에서 오랜 노동의 흔적과 각종 질환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방임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현저하여 발견 즉시 병원에 이송될 수준이 아닌 이상 방임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⁵⁷³⁾ 피해자가 컨테이너, 창고, 폐가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병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호⁵⁷⁴⁾의 방임행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여성 관련 사례 분석

가. 여성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에 구금된 여성 피의자가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등 성희롱이 있었던 사례이다.⁵⁷⁵⁾ 이는 화장실 안에서 도주나 자해의 시도가 있다고 볼 급한 사정

571)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력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7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의 책(주 15), 43면.

57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의 책(주 15), 43면.

57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86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 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575)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31941 판결.

이 없는 한 화장실 문을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유치장 임신부 및 산모 보호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유치장 임신부 및 산모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례이다.⁵⁷⁶⁾ 진정인들과 피해자들(여성 33명, 남성 5명, 총 38명)은 교육감과의 면담요청을 위해 교육청을 방문하였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진정인 중에는 임신 8개월의 임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정인들은 2009. 8. 3.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찰서에 도착하여 분산, 인치되어 22:30경부터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임부인 진정인은 22:40경부터 23:20경까지 조사를 받았고,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23:50경부터 다음 날 01:06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 외 여성들은 8. 4. 01:00경부터 02:10경 사이에 순차로 조사를 받았는데, 심야조사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친 진정인들은 2009. 8. 4. 01:00경부터 03:20경까지 순차적으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유치장 내 각 유치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진정인을 포함한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은 이 사건 유치장 구금당시 진정인들에게 유치장 내부에 CCTV가 있음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유치장 출입문 위에는 'CCTV 설치구역'이라는 표식(세로 8센티미터, 가로 20센티미터)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에도 근무자들은 CCTV 모니터 및 유치장 안 감시대에서 진정인들을 감시하였다. 진정인들은 대부분 유치장 구금 경험이 없는 자들로서, 그 중 일부는 각 유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불로 가리고 속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서 속옷을 갈아입기도 했다. 진정인들 중 일부는 2009. 8. 4. 19:30경 추가조사를 받았고(임부인 진정인도 같은 날 20:50경부터 21:25경까지 재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23:00경 진정인들 전원이 석방되었다.⁵⁷⁷⁾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7조⁵⁷⁸⁾ 및 제31조⁵⁷⁹⁾에 따르면, 8개월의 임신부인

576) 국가인권위원회 2009.10.26.자 09-진인2888 등 20건 병합결정.

577) 국가인권위원회 2009.10.26.자 09-진인2888 등 20건 병합결정(결정례집 2012-4, 174-180면).

578) 「(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2007. 10. 30. 시행된 것,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27조(급식등)
①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급여에 있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위 진정인에게는 그에 맞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급여하는 등의 적당한 급여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피진정인들은 위 진정인이 경찰서에 연행된 후 석방되기까지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⁵⁸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동법 제69조)으로서 유치장예의 구금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고,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32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83조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7조⁵⁸¹⁾는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의 원칙하에, 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이 사안의 경우 진정인들 체포 당시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진정인들은 모두 유치원 교사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배우자 또는 보호자가 있으며 그 주거도 일정하여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②질병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죽이나 기타 그 자에게 적당한 식사를 급여하여야 한다.

③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를 대동한 자에 대한 급식은 당해 유아분까지 배려하여야 한다.

④유치인에게는 베개, 모포 등 침구류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기타 생활필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579) 「(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2007. 10. 30. 시행된 것,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31조(질병에 대한 조치) ①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여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임부, 산부 및 고령자는 제1항의 환자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임부라 함은 수태후 6월 이상의 부녀자를, 산부라 함은 분만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부녀자를, 고령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④경찰서장은 유치인의 질병이 위독하거나 조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어 그의 가족에게 연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80)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581)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47조(불구속수사 원칙) ①수사는 불구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하여야 한다.

③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속의 사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일단 진정인들을 석방한 후 소환하여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⁵⁸²⁾ 신체의 자유 및 제10조⁵⁸³⁾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은 적어도 자정을 넘어 조사를 시작한 진정인들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64조 제3항⁵⁸⁴⁾의 규정에 따라 심야조사동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위 진정인들의 「헌법」 제10조⁵⁸⁵⁾에 포함된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그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피진정인 및 이 사건 유치인보호관들이 진정인들에게 유치장 내부를 촬영·녹화하는 CCTV가 있고 이를 남성 경찰관들이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대부분인 진정인들의 「헌법」 제17조⁵⁸⁶⁾에 포함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인권을 침해하였다.⁵⁸⁷⁾

다. 브래지어 탈의 요구에 의한 인권 침해

여성의 브래지어 탈의와 관련한 사례이다.⁵⁸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582)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583)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84)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64조(심야 조사 금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 조사 동의 및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 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585)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86)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587) 국가인권위원회 2009.10.26.자 09-진인2888 등 20건 병합결정(결정례집 2012-4, 181-186면).

588)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

참석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자 경찰관들이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브래지어가 자살이나 자해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유치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도록 규정한 경찰업무편람에 따른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조치는 피해자들의 자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비슷한 사례⁵⁸⁹⁾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현행범 체포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했고, 진정인은 탈의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자해 및 자살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낮은 진정인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 요청은 「헌법」 제10조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별첨 7).

라.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 인권 침해

공개 장소에서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범인을 지목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인권 침해사례이다.⁵⁹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은 그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일시와 장소별로 범인을 지목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하였다.

경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가중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경찰관의 행위는 위에서 본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과실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589)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18.자 11-진정-0341500 결정.

590)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사실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유출하여 언론에 피해자 등의 성(姓)과 거주 지역, 학년, 나이 등이 보도되도록 한 일이 발생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의 신원 및 피해사실을 누설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⁵⁹¹⁾를 위반한 행위이다.

4.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및 노인 관련 사례 분석

가. 미성년자 피의사건 조사에서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사례⁵⁹²⁾

1) 자전거 절도 미성년자 피의자 조사 사례

피의자는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2010. 2. 25. 00:05경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와 함께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자전거 절도사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진정인의 집으로 동행하여 진정인의 부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관 피진정인 3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10. 2. 26. 13:0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진정인의 휴대전화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같은 날 13:40경까지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⁵⁹³⁾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⁵⁹⁴⁾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5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 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92) 국가인권위원회 2010. 11. 26.자 10-진정-109800 결정.

593) 국가인권위원회 2010. 11. 26.자 10-진정-109800 결정.

594)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한다. 경찰청 예규인 「소년경찰직무규칙」 제8조(소환시의 유의사항) 제3항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할 것이며, 특히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 규칙 제9조(면접시의 유의사항) 제3항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동 규칙 제31조(청소년 조사 시 유의사항) ‘소년의 보호자, 기타 소년에 대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제2호)’는 규정과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6조 제3호 ‘진술인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술인이 연소자이거나 심신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나 친족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한다’는 규정 등에서 피의자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년경찰직무규칙」,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수사할 때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⁵⁹⁵⁾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폭행사건 미성년자 피의자 조사 사례

미성년 피의자의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이다.⁵⁹⁶⁾

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이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595)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596) 국가인권위원회 2013. 4. 9. 자 12-진정-0070200 결정.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피의자로 조사할 경우에 보호자를 동석시킴으로써 경찰조사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사건에서 진술녹화실 밖에서 만15세인 피의자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을 대기시키는 것은 보호자 동석시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진술녹화실이 협소하여 고의로 배제시킨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⁵⁹⁷⁾ 보호자 동석이 어려웠다는 점이 보호자 동석을 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⁵⁹⁸⁾와 제10조⁵⁹⁹⁾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2조 제2항⁶⁰⁰⁾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¹⁾

또한 2011. 12. 자전거 절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참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진술서를 작성하며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²⁾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한 경찰조사는 항상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동석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확인과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부당한 조사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례이다.⁶⁰³⁾ 폭행사건의 피해자들의 부모가 만 14세인 이 사건 진정 피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597) 국가인권위원회 2013. 4. 9. 자 12-진정-0070200 결정(결정례집 2014-6, 295면).

59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회적 약자”라 힘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599)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600)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601) 국가인권위원회 2013. 4. 9. 자 12-진정-0070200 결정(결정례집 2014-6, 294면).

602)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 자 11-진정-0696500 결정(결정례집 2013-5, 279면).

603)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7. 자 10-진정-00161100 결정.

신원 및 거주지를 확인한 후 귀가조치 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자진출석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16:20 경 지구대로 왔는데, 경찰은 그 후 3시간 51분이 지난 20:11경에야 경찰서로 인계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자진출석 요구, 지구대 대기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을 한 사건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자인 부모 등이 동석하지 못한 사례이다. 이는 「범죄수사규칙」⁶⁰⁴⁾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위반이며 「헌법」 제12조의 피해자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⁰⁵⁾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⁶⁰⁶⁾에는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은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년경찰직무규칙」 제8조, 제9조⁶⁰⁷⁾는 소년의 소환 시 보호자의 협조를 구

604) 「범죄수사규칙」 제62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 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전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본다.

605) 국가인권위원회 2013. 5. 8. 자 13-진정-0035600 결정(결정례집 2014-6, 296면).

6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uch determination may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or one where the parents are living separately and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607) 「소년경찰직무규칙」(현재 소년업무규칙 2009. 11. 19. 개정되고 2013. 3. 25. 개정되기 전의 것, 경찰청예규 제413호)

제8조(소환시의 유의사항)

3.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9조(면.접시의 유의사항) 경찰관이 소년 또는 그 보호자를 면.접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할 것, 면접 시 보호자가 입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211조⁶⁰⁸⁾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⁶⁰⁹⁾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동석여부는 항상 절차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미성년자 불법구금 등 부적절한 조사로 인한 인권 침해

미성년자 불법구금 등 부적절한 조사가 있었던 사례이다.⁶¹⁰⁾ 진정인은 슈퍼마켓 절도사건을 조사하면서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피해자의 중학교에 찾아갔고, 피해자를 교무실 옆 회의실로 데려가 학교 관계자 입회 없이 신문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구두로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온 이후 학교관계자의 입회 없이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이후 진정인이 도착하자 진정인을 형사와 사무실에 대기시켰다가 조사가 끝난 뒤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임의동행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진술녹화실에서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았다.

임의동행이 적법한지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⁶¹¹⁾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608)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9)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610) 국가인권위원회 2011. 3. 2.자 10-진정-0096600 결정.

611)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⁶¹²⁾한 바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조사의 필요성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4항⁶¹³⁾ 등에 따른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 조력권에 고지를 하지 않았고, 사후에 진정인들에게 임의동행확인서를 받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소년업무규칙」 제8조제3항⁶¹⁴⁾ 조에 따라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자 입회 없이 조사를 하고 입회를 권유하지도 않았다.⁶¹⁵⁾ 이러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⁶¹⁶⁾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⁶¹⁷⁾

라. 미성년자 탐문수사 관련 인권 침해

탐문수사가 미성년자에게 공개적으로 진행된 사례이다.⁶¹⁸⁾ 경찰이 여러 교사가 보는 앞에서 10세인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로 이후 해당 미성년자는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탐문수사 행위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⁶¹⁹⁾와

612)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61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③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⑤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614) 「소년업무처리규칙」(2007. 12. 31. 개정된 것, 경찰청예규 제376호)

제8조(소환시의 유의사항) 경찰관이 직무상 소년 또는 그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유의하여야 한다.

3.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615) 국가인권위원회 2011. 3. 2.자 10-진정-0096600 결정.

616)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617) 국가인권위원회 2011. 3. 2.자 10-진정-0096600 결정.

618) 국가인권위원회 2013. 10. 31.자 13-진정-0329400 결정.

619)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제10조⁶²⁰⁾의 위반이고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⁶²¹⁾

미성년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와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그리고 탐문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모두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조사가 공개적이고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항상 신뢰관계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요청된다.

마. 노인복지시설 강제노동 및 금전착취 인권 침해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진 인권 침해 사례로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노인에게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지위와 임무를 고려할 때, 검찰의 적극적인 인권 침해의 방지와 인권 보호의 역할과 관련된 사례이다.⁶²²⁾

사회복지법인 ○○원 임원은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형법」 제356조의 횡령죄에 해당하여 검찰에 고발되었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위하여 증여되거나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가 없이 발일을 시킨 것과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등의 벌을 주는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⁶²³⁾

이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게 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서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를 통하여 인권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복지부와 법무부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62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621) 국가인권위원회 2013. 10. 31. 자 13-진정-0329400 결정(결정례집 2014-6, 365면).

622)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4. 자 14-진정-0061100.

623)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4. 자 14-진정-0061100 결정(결정례집 2015-7, 730면).

및 검찰의 공동 인권 보호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외국인 관련 사례 분석

가. 인종차별적 조사와 발언

인종차별 관련 조사가 미흡했던 사례이다.⁶²⁴⁾ 피해자는 한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진정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다른 승객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이에 진정인과 피해자는 위 승객을 데리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계속 합의를 종용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교수 신분증을 보여주었음에도 이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반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버스에서 겪은 사건은 인종차별적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도의 민감성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교수라는 신분을 믿지 못하는 등 인종에 따른 사회적 차별지위를 연상케 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동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⁶²⁵⁾에 따라 인종차별적 모욕사건을 다룸에 있어 지켜야 할 금지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1조⁶²⁶⁾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⁶²⁷⁾

624) 국가인권위원회 2010. 5. 31.자 09-진인-3104 결정.

625)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폐지제정,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4조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626)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27) 국가인권위원회 2010. 5. 31.자 09-진인-3104 결정.

나. 외국인 강제연행에 의한 인권 침해

외국인 강제연행과 관련한 인권 침해 사례이다.⁶²⁸⁾ 피해자는 인도네시아인으로 식당에서 2명과 식사를 하고 있던 중 경찰관 3명이 다가와서 신분증을 제시를 하였고, 한명이 한국말로 같이 가자고 했다가 다시 인도네시아어로 동행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분확인'과 기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소란스러우니 같이 가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하였을 뿐 동행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⁶²⁹⁾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판시한바 있다.⁶³⁰⁾ 그럼에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테러혐의나 불법체류 사실을 조사하겠다고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임의동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⁶³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⁶³²⁾

628) 국가인권위원회 2008. 3. 28.자 06-진인-1181 결정.

629) 국가인권위원회 2008. 3. 28.자 06-진인-1181 결정(결정례집 2009-3, 755면).

630)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63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 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흥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632) 국가인권위원회 2008. 3. 28.자 06-진인-1181 결정(결정례집 2009-3, 755-756면).

다. 외국인 보호소 직원의 외국인 폭행 인권 침해

외국인 보호소에서 보호소 직원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사례⁶³³⁾로 검찰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검찰의 적극적인 감독임무와 관련이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3은 피보호자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적이 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⁶³⁴⁾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의 4는 출입국공무원은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⁶³⁵⁾ 그 행사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도주의 방지 그리고 시설의 보안,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⁶³⁶⁾

재외동포로서 위조학위증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사실이 발견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진정인이 수용 중에 외국인 보호소 직원의 상의착의 지시나 방을 옮기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화장실 알루미늄 봉을 뜯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몸싸움이 있는 뒤 외국인 보호소 직원으로부터 몸과 머리를 걷어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여러 개의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⁶³⁷⁾

진정인의 알루미늄 봉을 뜯는 행위 등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봉을 회수하고 진정인을 제압하여야 할 정당한 목적과 사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나 위 보호소 직원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서「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4를 위반하였고 또한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⁶³⁸⁾

633)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7. 자 14-진정-0061300 결정.

634)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3 (피보호자의 인권존중 등).

635)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4 (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636)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7. 자 14-진정-0061300 결정(결정례집 2015-7, 602면).

637)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7. 자 14-진정-0061300 결정(결정례집 2015-7, 601면).

638)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7. 자 14-진정-0061300 결정(결정례집 2015-7, 603면).

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검찰은 약자 보호와 함께 최고의 법집행기관이자 정당한 법치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기에⁶³⁹⁾ 진정인은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을 고발하였다.⁶⁴⁰⁾ 검찰은 최고의 법집행기관이자 범죄수사를 통한 인권 보장기관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수사와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감독하고 살피야 하는 이중적인 지위와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입국 사무소나 외국인 보호실 등 외국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함께 인권 보호 또는 인권 침해 방지와 관련한 공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점검하고 살피는 역할이 요청된다.

6. 응급구호 미흡 관련 사례

응급구호 조치가 미흡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례이다.⁶⁴¹⁾ 경찰관들이 환자복을 입은 피해자가 길거리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원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조사 대기실 의자에 수갑을 채워 앉아 있었는데 잠이 들자 경찰이 이를 풀어주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게 되었다. 다음 날 경찰관들은 오전 피해자들을 깨우려 했으나 피해자는 반응이 없었고 경찰관들이 힘을 합쳐 피해자의 상체와 다리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지명수배관서 검찰청에 도착하게 되었다.⁶⁴²⁾

검찰청 당직근무 직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구치소로 운전하여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구치소 교감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알고 신병인수를 거부하여 다시 검찰청 당직실로 옮기게 되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119구급대에 전화하였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뇌내출혈과 두개골

639) 검찰 웹사이트, 소개마당, 검찰바로알기, 검찰이란? (접속일자: 2018.10.11.)

http://www.spo.go.kr/spo/intro/know/pro_info.jsp

640)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7. 자 14-진정-0061300 결정(결정례집 2015-7 597, 597).

641)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30. 자 13-진정-0140000 결정.

642)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30. 자 13-진정-0140000 결정(결정례집 2014-6. 336면).

골절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간단한 의사표시만 가능하며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었다.⁶⁴³⁾

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2항 영장집행 시 유의사항⁶⁴⁴⁾과 「범죄수사규칙」 제90조 제2항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시 인권 침해 유의사항⁶⁴⁵⁾과 그리고 제92조 체포·구속영장 집행이 부적당한 경우에 조치사항⁶⁴⁶⁾의 내용대로 피의자의 신체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속영장의 집행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최소한의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면 구속영장의 집행을 중지하고 그 신체의 상태를 살폈어야 하는데도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신체를 들어 올려 이동하였으며⁶⁴⁷⁾ 구치소에 수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병을 인계하려는 점과 신병인수가 거부된 후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점들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인권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⁸⁾

검찰 또는 경찰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643)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30. 자 13-진정-0140000 결정(결정례집 2014-6, 337면).

644)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영장의 집행) ②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645) 「범죄수사규칙」 제90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②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646) 「범죄수사규칙」 제92조(체포·구속영장 집행이 부적당한 경우) 경찰관은 영장의 집행을 받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지휘한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한다.

647)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30. 자 13-진정-0140000 결정(결정례집 2014-6, 339면).

648)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30. 자 13-진정-0140000 결정(결정례집 2014-6, 340면).

제6절 집회·시위 경비업무 관련 영역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함)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집시법」 제1조)한다고 하여 적법/위법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범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기본권·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자 국제인권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소한 범위반의 경우도 「집시법」, 「형법」, 「도로교통법」 등 갖가지 법을 동원하여 통제와 처벌 위주로 집회에 대응해왔다. 「집시법」을 동원했지만 그 실질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좀 더 원시적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을 위반해서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고 경찰 장구를 공격적으로 사용해서 집회 참가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상의 원칙, 국제인권법상의 원칙, 인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은 무시되었다.

1. 집회 방해

가. 1인 시위 방해로 인한 인권 침해

1인 시위 방해로 인한 인권 침해 관련 사례이다.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 등을 들고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하는 것이고, 현행 법률상 집회와 시위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의 다수를 요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진정인이 차량에서 피켓을 꺼내 1인 시위를 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이를 막아선 사례⁶⁴⁹⁾가 있다.

1인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형된 형태로서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방해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⁶⁵⁰⁾ 및 「헌법」 제12조

649) 국가인권위원회 2010. 8. 23.자 09-진인-4569 결정.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⁶⁵¹⁾을 위반하여 「헌법」 제21조⁶⁵²⁾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⁶⁵³⁾

또 다른 사례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정인이 1인 시위를 하려 하자 경찰이 무조건 안 된다며 가로막고 시위용품을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타박상을 입힌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⁶⁵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을 과잉하게 수행하여 「헌법」 제21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⁶⁵⁵⁾

나.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로 집회 방해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별첨 2]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따른 집회 방해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이다.⁶⁵⁶⁾⁶⁵⁷⁾ 대한문 앞에 화단이 설치되었고(쌍용자동차 노조의 대한문 앞 농성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임), 이후 경찰은 화단 보호 명목으로 화단 앞 집회를 금지하고자 하였다. 2013. 7. 25. 집회에 대해 ‘대한문 앞 인도 부분에서는 집회가 주최될 수 없다는 교통조건 통보’에 대해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가 있었고, 당일 집회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남대문 경비과장은 경찰병력이 집회 공간 내인 화단 경계로부터 폭 0.8미터 가량의 공간에 경찰을 배치하여 집회 공간의 일부를 점거한 상태로 노란색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게 하였다.

65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65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652)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653) 국가인권위원회 2010. 8. 23.자 09-진인-4569 결정.

65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655) 국가인권위원회 2011. 11. 23.자 10-진정0703200, 11-진정0344500(병합) 결정.

656)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문 앞 집회방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6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5129952 판결.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점거와 질서유지선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경찰 병력은 철수되지 않았고 결국 집회는 충돌, 체포, 연행 속에 무산되었다. 경찰이 질서유지선이라는 명목으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은 위법한 경찰력 행사이며, “집회의 자유는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⁶⁵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한 것이다. 법집행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집회 개최, 진행을 막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방해 행위이다.

2. 통행 방해, 제지 등 관련

가.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통행방해에 의한 인권 침해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과 통행방해에 의한 인권 침해 관련 사례이다.⁶⁵⁹⁾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거나, 일상적인 이유로 청와대 인근을 통행하던 시민들인 A, B, C, D는 2016.8. 경부터 2017.2.경 까지 경비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불심검문을 당했다. 2017.2.3. 15:00경 A 등 4명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7-2 OO어린이집 앞 청와대 외곽 경호경비 검문 지점을 통과하려하자 경찰관 정복에 신분증을 목에 패용한 경장 000이 이동 중인 A를 밀착하여 행선지를 묻고 이를 거부하는 A에게 손을 뻗어 제지하면서 소지품 확인을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2016.11.15. 09:02경 경찰관 정복에 신분증을 목에 착용한 경사 000가 불심검문을 하면서 택시에 승차 중이던 C에게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고지하지 않고 행선지를 묻고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다가 C가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자 차량을 돌려 나가도록 하였다.

피진정인들(경비경찰관) 청와대 인근에서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에 대해 불심검문 또는 안전 활동을 수행하면서 당시 진정인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을 살 만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에 기초하여 검문의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은 채 업무관행에 따라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행선지를 질문하는 방법으로 검문을 실시하였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658)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659) 국가인권위원회 2008.3.28.자 17-진정-0195000·16-진정-0594000·16-진정-0936900·16-진정-0953600(병합) 결정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않고 검문을 실시하여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집회 참가자들의 인도통행봉쇄, 해산명령 및 최루액 발사에 의한 인권 침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인도통행봉쇄와 해산명령, 최루액 발사 등과 관련한 인권 침해 사례이다.⁶⁶⁰⁾ 원고들은 옥외집회 및 시위·행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처분을 받아 법원에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경찰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후 을지로를 따라 행진하는 경로에 있던 인도를 봉쇄하고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 행진 참가자들이 이러한 인도봉쇄조치에 항의하자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을 분사하고, 도로 점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해산을 명령하였으며, 항의하던 행진참가자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은 이 사건 인도봉쇄조치는 상당수의 참가자들이 차도에 진출한 상태에서 극심한 혼잡과 교통사고 등 시민들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⁶⁶¹⁾ 및 「도로교통법」 제6조 제4항⁶⁶²⁾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행진 전 차도에 이미 모두 차벽이 설치되어 차량소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태였고, 다수의 참가자들은 인도로 행진하였고 차도를 잠시 이용한 일부 참가자도 다시 인도로 진입하였으며, 인도통행을 안내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거나 차도로 진입하는 참가자들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인도봉쇄조치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이 사건 행진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

6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4가단5177347 판결.

66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사고,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662) 「도로교통법」 제6조 제4항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거나 이러한 사정이 임박하였음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인도봉쇄조치는 경직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⁶⁶³⁾

또한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은 경찰의 위법한 인도봉쇄조치로 인해 야기되었으므로, 경찰이 인도를 행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참가자들의 요구에 응하였다면 위와 같은 충돌은 쉽게 해소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정당한 항의를 들어주지 아니한 채 해산명령 및 최루액 분사를 한 행위는 「집시법」 및 경직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행위이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한 이상 이에 항의하는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 또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원고 17명에 대한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하여 대한민국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⁶⁶⁴⁾

다. 집회를 마친 후 다음 집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집회를 마친 후 다음 집회로 이동하는 집회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한 것과 관련한 사례이다.⁶⁶⁵⁾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이후,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주관의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인도를 통하여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다수 병력으로 인도 등을 막고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저지하였다. 경찰은 이동저지에 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간헐적으로 통로를 만들어 광화문 문화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일반 시민만 선별하여 통과시켜 주고 서울역 광장 집회와 관련한 피켓, 조끼, 깃발 등을 소지한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저지하였다. 경찰은 항의하는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해산명령을 내리고 캡사이신 최루액을 발사하였으며, 항의하는 집회참가자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6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4가단5177347 판결.

6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4가단5177347 판결.

6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38629 판결.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집회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으로 단체로 행진하려 한 것은 미신고 집회, 신고범위 이탈집회, 거짓신고 집회 등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던 자들이 단체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한 것이 아니라 광교에서 일정 시간 정리 집회를 갖고 집회를 마친 후 대체로 깃발 등을 접고 삼삼오오 광화문으로 이동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행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수 시간 동안 막고 해산을 요구하며 최루액을 분사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통행제지와 같은 포괄적, 전면적 통제는 급박하고 명백하여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⁶⁶⁶⁾를 인용하면서, 그럼에도 경찰이 이 사건에서 ‘공권력 발동의 적법한 요건 등을 사전에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권력 발동의 적법한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요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원고들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⁶⁶⁷⁾

라. 과도한 통행제한에 의한 인권 침해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과 관련한 사례이다.⁶⁶⁸⁾ 2008. 5. 28. 새벽 종로에서 촛불문화제 종료 후 거리 시위하던 참가자들이 해산한 후에도 청계광장 주변 및 광화문 일대의 인도와 차도를 봉쇄하여 종로1가의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⁶⁶⁹⁾ 2008. 5. 28.~2008. 5. 29.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에

666)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6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38629 판결.

668)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2395 결정, 08-진인-2290 결정.

669)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2395 결정, 08-진인-2290 결정(결정례집 2009-3,

서 문화제를 마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시점에 청계천으로부터 사방에 이르는 도로와 인도 등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았다.⁶⁷⁰⁾ 2008. 5. 29. 22:50경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서 시위대 해산 후에도 전경들이 인도를 막았다.⁶⁷¹⁾ 2008. 5. 31. 21:00경 교보문고 앞에서 참가자들이 촛불문화제를 마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교보문고 앞 인도를 봉쇄하여 일반통행인들의 통행을 가로막았다.⁶⁷²⁾ 2008. 6. 10. 23:30~2008. 6. 11. 00:30 사이 정보통신부 뒷길 근처 골목길을 전경버스로 막아 놓아 인근주민들의 귀가를 방해하였다.⁶⁷³⁾

일반적으로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통행차단조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하는 모든 시민을 시위대로 가정하고 전면적으로 그 접근을 완전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시위대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이며, 경찰은 향후 경비업무 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제한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⁶⁷⁴⁾

166면).

670)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2395 결정, 08-진인-2290 결정(결정례집 2009-3, 166면).

671)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2395 결정, 08-진인-2290 결정(결정례집 2009-3, 167면).

672)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2395 결정, 08-진인-2290 결정(결정례집 2009-3, 167면).

673)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2395 결정, 08-진인-2290 결정(결정례집 2009-3, 167면).

674)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2395 결정, 08-진인-2290 결정(결정례집 2009-3, 167면).

3. 차량 차단 및 천막철거 등으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⁶⁷⁵⁾

가. 방송차량 진입차단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집회·시위 상황에서 방송차량 진입차단 등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과 관련한 사례이다. 집회를 앞두고 경찰청장이 노동조합의 방송차량 등이 집회 장소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도심에 진입 시에는 법적 제재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지방경찰청은 해당 차량들을 주차장에서부터 차단하고 고착시켰으며 이에 항의하는 진정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연행을 하기도 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⁶⁷⁶⁾는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는 경우 제지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집회에 참여할 가능성만으로 차고지에서부터 고착한 행위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⁶⁷⁷⁾의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차량 운행 자체를 금지하고 집회 장소로의 접근 자체를 막은 것은 집회 참가를 현실화되기도 전에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⁶⁷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21조⁶⁷⁹⁾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⁶⁸⁰⁾

나. 집회 차량을 견인하여 집회 개최 무산시킨 집회의 자유 침해

집회·시위 상황에서 집회차량을 견인하여 집회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한 사례이다.⁶⁸¹⁾ 원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고 신효순 심미선 13주기 추모행사’를

675) 국가인권위원회 2009. 10. 5.자 08-진인-2845 결정.

67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677) 「헌법」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678)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679)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680) 2009. 10. 5.자 08-진인-2845 결정

6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5289223 판결(※1심 판결임 / 쌍방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 현재 대법원 계류 중).

개최하기 위해 광화문 KT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당일 현장에 도착하여보니 같은 장소에서 다른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원고가 기자회견을 당장 중단시키기 어렵다고 보아 그 바로 앞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조형물을 하차하기 위해 차량을 횡단보도에 정차시키자, 경찰관들이 차량으로 와 미신고물품 반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이유로 범칙금 및 견인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둘러쌌다. 경찰은 차량을 이동시키겠으니 경찰병력을 풀어달라는 원고의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분간 차량을 둘러싼 병력을 풀어주지 않다가 차량을 견인하였고, 차량 견인에 항의했던 원고 단체 사무처장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위 추모행사는 결국 열리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법원은 단순한 차량이동 등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행해진 이 사건 차량 견인조치에 대해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는 원고들의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기원하는 정당한 법률상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보고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⁶⁸²⁾

다. 집회천막에 대한 위법한 강제철거

경찰의 집회천막 강제철거와 관련한 사례이다.⁶⁸³⁾ 하동군청 정문 앞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이 하동군청 정문 앞 도로에 노조원들이 설치한 접이식 천막이 불법설치물임을 경고하고 이를 철거하려고 하자 노조원들이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에 집회참가자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회주최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 천막 철거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며 법원은 ‘그 천막 설치 행위로 다소간 통행의 불편이나 미관의 훼손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6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5289223 판결.

68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6. 29. 선고, 2015고단963 판결.

다고 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⁶⁸⁴⁾나 「도로법」 제96조⁶⁸⁵⁾에 근거한 공무집행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사건 천막 철거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⁶⁸⁶⁾

라. 집회 방한용품 탈취행위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의 집회방한용품 탈취행위와 관련한 사례이다.⁶⁸⁷⁾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유성기업에서 일하다가 자살한 노동자 문제 등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진행하였다. 경찰은 농성 당일 밤 공대위측의 침낭 반입 등을 차단하고, 농성 장소 안에서 이용 중이던 침낭, 깔판 등을 수거하였으며, 다음 날 새벽 공대위측이 반입하려던 침낭, 카펫 등을 수거하였다. 이러한 수거 과정에서 농성참가자들은 경찰에 의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집회 방한용품 탈취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농성이 미신고집회에 해당하여 경찰이 수차례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공대위가 불응하였고 서울시에서 공대위측에게 서울광장 무단점거를 이유로 자진철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탈취행위 전까지 이 사건 농성장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고, 농성참가자들이 방한용품을 사용한다고 하여 특별한 위험이 가증될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려우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탈취행위가 중대한 경찰 장해

684)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685) 「도로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각호 생략)

68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6. 29. 선고, 2015고단963 판결.

6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18971 판결(※2심 판결 / 상고하지 않아 2017. 10. 14. 그대로 확정).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절박한 실력 행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탈취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⁶⁸⁸⁾의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⁶⁸⁹⁾

4. 금지통고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장소경합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한 인권 침해

경찰의 집회·시위와 관련한 무리한 규정해석 및 금지통고와 관련한 사례이다.⁶⁹⁰⁾ 진정인들의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시설보호요청과 진정인들의 불법집회·시위 전력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에 진정인들은 장소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해당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신고가 있어 경합”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권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진정인들이 집회를 진행하자 해산경고를 하고 강제연행을 하였다

경찰이 금지통고로 든 이유는 ‘장소경합’, ‘군시설로 인한 시설보호요청’, ‘진정인들의 불법집회·시위 전력’이다. 그러나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통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⁶⁹¹⁾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목적의 집회여야 하는데 사안은 그러하지 않고, 두 번째 신고장소는 군시설과 떨어진 곳이다. 그리고 진정인들의 불법 집회·시위 전력으로는 금지통고를 할 만한 직접적 위협의 명백성이 없다. 따라서 경찰의 금지통고는 금지통고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헌법」 제21조⁶⁹²⁾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⁶⁹³⁾

68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6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18971 판결.

690) 국가인권위원회 2009. 7. 30.자 08-진인-3157 결정.

69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92)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비슷한 사례로 진정인들이 소속된 단체나 연대단체가 불법집회·시위 전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것은, 명백한 공공위협 발생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 막연한 가능성만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이기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⁶⁹⁴⁾

5. 과잉진압과 폭행 등 공격행위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집회·시위 상황에서 경찰이 후퇴하는 사람에 대해 공격을 한 사례이다.⁶⁹⁵⁾ 피해자는 2008. 6. 28. 자정 경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프레스센터 쪽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립된 진압경찰들이 흥분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 때 서울시의회 차벽 앞에서 진압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시청광장 지하철 5번 출구 인도 쪽으로 피하기 위해 가고 있었으나 시위대가 많아 지체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가슴부분을 가격한 뒤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두피 하혈종 및 코뼈를 부러트리는 상해를 가하였다.⁶⁹⁶⁾

가해 진압경찰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가 진압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상황에 해당한다거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무장상태로 후퇴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방패로 가격한 행위에 대해 달리 진압경찰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이다.⁶⁹⁷⁾

693) 국가인권위원회 2009. 7. 30.자 08-진인-3157 결정.

694) 국가인권위원회 2009. 11. 16.자 09-진인-1993 결정.

695) 국가인권위원회 2008. 10. 27.자 08-직인-11 결정.

696) 국가인권위원회 2008. 10. 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례집 2009-3, 152면).

나. 지켜보는 사람,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경찰이 집회·시위 상황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나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공격을 한 사례이다.⁶⁹⁸⁾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차도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측 인도 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피해자가 밀려나 오는 시민들과 뒤에 있던 여성들, 유모차들이 엉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고 외쳤으나,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방패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 옆구리, 어깨부위 등을 찌고 발로 밟아 우측머리에 3센티 크기의 열상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⁶⁹⁹⁾

당시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시위대열 속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스스로 넘어져서 다치는 등 진압경찰의 공격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 진압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다. 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⁷⁰⁰⁾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집회·시위 상황에서 경찰의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과 관련한 사례이다.⁷⁰¹⁾ 진압경찰 수 백 명은 2008. 6. 28. 자정 경 시의회 쪽 차벽 틈새를 통해 나온

697)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레집 2009-3, 152-153면).

698)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2506 결정.

699)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레집 2009-3, 153면).

700)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레집 2009-3, 153-154면).

701)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직인-11 결정.

후 시청 쪽 방향으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다른 피해자 ○○○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자 ○○○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을 계속하여 가격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위 ○○○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을 감싸 안으면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의 피해자 ○○○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⁷⁰²⁾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다. 위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⁷⁰³⁾

라.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집회·시위 상황에서 경찰의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과 관련한 사례이다.⁷⁰⁴⁾ 진압 경찰은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프레스 센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차벽 틈으로 뛰어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오된 진압경찰 1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진압경찰 옆에 있다가 후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부딪혀 넘어졌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려고 팔로 감싸자 팔을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⁷⁰⁵⁾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 상태의 20대 여성인 점, 가해 진압경찰들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경찰봉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방어행위로

702)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례집 2009-3, 154-155면).

703)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례집 2009-3, 155면).

704)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직인-11 결정.

705)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례집 2009-3, 155-156면).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⁷⁰⁶⁾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집회·시위 상황에서 경찰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과 관련한 사례이다.⁷⁰⁷⁾ 피해자는 14세인 자로서, 2008. 6. 8. 05:00경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딩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었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갑자기 방패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⁷⁰⁸⁾

당시 상황은 시위가 종료되어 가고 있었고, 진압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도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신장 150cm정도의 체구가 작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방패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⁷⁰⁹⁾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여대생을 군화발로 밟고 밀치는 영상이 방송에 공개된 바 있다. 2008년 6월 1일 여대생 이모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진압경찰 한 명이 내 머리채를 잡더니 나를 땅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진압경찰은 군화발로 두 번, 세 번 내 뒷머리를 찼습니다. 그때 경찰 버스 밑에 공간이 보여 그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겁이 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진압경찰이 내 머리채를 잡더니 다시 나를 땅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머리를 차였습니다. 두 번째 전경이 첫 번째 전경과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와서 계속 손으로 나를 때리고 있던 경찰로부터 나를 보호해줬어요.”⁷¹⁰⁾

706)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례집 2009-3, 156면).

707)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

708)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례집 2009-3, 157면).

709)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례집 2009-3, 157면).

당시 영상에는 직접 가해자 외에 지휘자로 보이는 경찰이 촬영을 못하게 막는 장면도 발견된다.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라기보다는 조직적 비호하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와 함께 집회 참가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인격권 침해이다.

바. 의료진에 대한 공격

집회·시위 상황에서 경찰의 의료진에 대한 공격과 관련한 사례이다.⁷¹¹⁾ 피해자는 의사로서 촛불시위현장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2008. 6. 29. 01:00경 서울시 의회 앞 인도에서 대오를 이탈한 진압경찰 1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피해자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⁷¹²⁾

피해자는 시위대에 합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료지원단이 입는 노란색 조끼를 입은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진압경찰들의 위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⁷¹³⁾

6. 물리력 남용과 공격적 경찰 장구 사용

가. 경찰봉의 위법한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경찰의 경찰봉 위법 사용과 관련한 사례이다. 2008년 6월 29일, 경찰이 촛불집회에서 경찰봉으로 무저항의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폴리스라인 뒤쪽에서부터 돌진해 시민들을 향해 뛰었을 때 장씨⁰⁰는 뛰지 않고 천천히 뒤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런 공격적 행동도 보이지 않았던 장씨에 경찰봉으로 폭력을 가했다.

710) 국제앰네스티,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국제앰네스티, 2008). 14면.

711)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

712)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례집 2009-3, 158면).

713)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08-진인-11 결정(결정례집 2009-3, 158면).

“제가 뒤돌아서 가는데, 누구한테 부딪혔는지, 누가 밀었는지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지자마자 진압경찰 여러명-최소 5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긴 진압봉으로 나를 때렸는데 주로 머리를 발로 찼어요. 제가 팔로 머리를 감쌌기 때문에 팔을 계속해서 맞았어요. 그러면서 진압경찰들은 저한테 욕을 했어요. 저는 의식이 들어 왔다 나갔다 했어요. 시민들이 와서 저를 구급차로 옮겨줬어요.”⁷¹⁴⁾

경찰봉 가격행위는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⁷¹⁵⁾,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21조⁷¹⁶⁾,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4원칙과 제13원칙⁷¹⁷⁾ 및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⁷¹⁸⁾ 제2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제5 항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⁷¹⁹⁾

714) 국제엠네스티, 위의 책(주 711), 15면.

715)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16)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17)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 9. 7. 제8차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채택)

• 제4원칙 법집행관들은 임무수행시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다른 방법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무기 및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3원칙 법집행관들은, 불법이지만 비폭력의 시위를 해산함에 있어, 유형력 사용을 피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유형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718)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 12. 17. 유엔총회 채택)」

• 법집행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하며,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제2조).

719)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결정(결정례집 2009-3, 160면).

나. 위법한 살수차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경찰의 위법한 살수차 사용과 관련한 사례이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은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하였다. 물에 최루액을 섞어서 혼합·직사 살수를 하여 피해자가 살수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피해자가 직사살수로 전도된 이후에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와 그를 구조하던 주변의 시위참가자 5명을 상대로 17초간 직사살수가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몇 개월 후 사망하였다.

혼합살수는 법령에 열거하지 않는 살수차의 사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결정),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를 사용하면서도 살수차가 의도한 목적대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하고 살수요원을 교육, 훈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⁷²⁰⁾

다. 색소물포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색소물포를 사용한 사례이다.⁷²¹⁾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장비과 경장은 2008. 8. 15. 종로2가에서 「8. 15. 100차 집중 미식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상황과 관련하여 물포1호 조작요원으로서 근무명을 받고 3회에 걸쳐 위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방송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위에 있는 취재기자, 노약자, 여성, 어린이, 구경나온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하여 대피할 것과 파란색 색소를 사용한 물포를 이용하여 차후에 검거조치 하겠다는 방송을 하고, 같은 날 21:35경 도로상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 파란색 색소를 탄 물포를 살수하였다.⁷²²⁾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720)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침부] 백남기 사망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진상조사위원회, 2018).

721) 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28.자 08-진인-3187 결정.

722) 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28.자 08-진인-3187 결정(결정례집 2012-4, 307-308면).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⁷²³⁾ 그런데 색소물포 사용은 노상에서 파란색 색소가 섞인 물을 몸에 맞고 타인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인격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포함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⁷²⁴⁾

라. 경찰들이 집회 시위 진압 중 방패로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한 인권 침해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한 사례이다.⁷²⁵⁾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250여명은 2008. 8. 13. 18:00경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마무리 하려고 하였다. 이때 경비업무 중인 경찰들이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집회 참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집결하면서 4차선을 점거하므로, 교통소통을 위해 하위 2개 차선에서 정리 집회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집회참여자들은 경찰들이 방패로 막아서자 대치하면서 이를 밀고 당기며 저항하였고, 이때 사복을 입고 있던 의경대원이 방패 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채증하였다. 이에 피해자 등은 불법채증이라고 주장하며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밀치며 항의하였고, 이때 경찰이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을 연행하려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다가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다.⁷²⁶⁾

「헌법」 제12조 1문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경찰봉·방패 등 경찰장구 사용의 원칙을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의 제1항⁷²⁷⁾에 의하면, 경찰은 현행법의 체포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제3조⁷²⁸⁾에서도 경찰

723)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724) 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28.자 08-진인-3187 결정(결정례집 2012-4, 308면).

725)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8-진인-3072 결정.

726)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8-진인-3072 결정(결정례집 2012-4, 273면).

72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봉, 방패 등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경찰장비의 사용방법을 구체화 한 「경찰장비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377호) 제91조 제5항에는 경찰봉의 경우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할 것과 방패를 사용할 때에는 방패모서리로 상대의 머리 등 주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들이 경찰 장구 사용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집회 시위 진압 중 방패로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한 행위는 「형법」 제125조⁷²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는 「헌법」 제12조⁷³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⁷³¹⁾

7. 집회 시위 진압경찰의 식별표시 미부착 내지 은폐에 의한 인권 침해

2008. 6. 1. 및 2008. 6.28. 촛불집회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일부 진압경찰들은 명찰을 검은색 테이프로 가리거나 부대표시 없는 헬멧과 방패를 사용, 또는 명찰이 아예 없는 의복을 입은 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에 임하였다.⁷³²⁾

일부 진압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훈령인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 제149조(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위치) “기동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그 취지에 반한 행위이다. 또한 식별표시를 가리거나 미부착하는 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력 행사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집회·시위진압

728)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729)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730)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731)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8-진인-3072 결정(결정례집 2012-4, 273-274면).

732)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결정(결정례집 2009-3, 169면).

등 경비업무 시에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⁷³³⁾

8. 채증

가. 대화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위법한 채증에 의한 인권 침해

대화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위법한 채증과 관련한 사례이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3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자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경찰서 정보과장이 “대표자에게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여 마을회 부회장 등이 정보과장과 대화를 진행하는 중, 경찰이 정복을 입지 않고 사복차림으로 대화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채증하였다.⁷³⁴⁾ 또한 한 활동가가 경찰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경찰병력 10명이 서 있는 곳에 들어가자 “채증하라”는 지시와 함께 채증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다. 당시는 집회 중도 아니었고, 활동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농로 중간에 서 있던 상황이었다.⁷³⁵⁾ 이뿐 아니라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길 한쪽 편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을 경찰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채증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왜 길 건너편의 사람들을 채증하느냐”라며 항의하자, 경찰은 “경찰이 하는 일에 이의 달지 말라”며 체포하겠다고 말했다.⁷³⁶⁾

위 경찰의 각 채증활동은 인권 침해 예방이나 사후구제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채증활동규칙」 제1조⁷³⁷⁾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8조⁷³⁸⁾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733) 국가인권위원회 2008.10.27.자 결정(결정례집 2009-3, 169면).

734) 강정인권 침해조사단 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 침해 조사보고서』(강정인권 침해조사단, 2012), 17면.

735) 강정인권 침해조사단 외, 위의 책(주 735), 98면.

736) 강정인권 침해조사단 외, 위의 책(주 735), 99면.

737) 「채증활동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3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8조(채증 활동) ①경찰관서의 장은 집회·시위 관련자의 인권 침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하여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에 의한 증거수집 활동도 보장하여야 한다.

판시하고 있는 바⁷³⁹⁾, 이에 따르더라도 위 경찰의 각 채증활동은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범죄 수사상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채증에 의한 인권 침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채증과 관련한 사례이다.⁷⁴⁰⁾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2013. 10. 17. 바드리마에서 진행되었는데 기자회견 동안 경찰의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발언자들에 대한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성미산 마을 학생들이 발언과 노래를 하는 동안에도 채증이 이루어졌다. 채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 노래하는 장면을 왜 찍냐는 질문에 경찰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자회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2014. 6. 11.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채증이 이루어졌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백여개의 카메라를 통해 채증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채증이 사람들을 자극한다는 변호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인권 침해감시단의 항의는 묵살되었다.

경찰은 채증의 법적 근거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채증활동 규칙에 의하면 “채증”이란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⁷⁴¹⁾ 대법원에서는 영장 없는 채증에 대해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⁷⁴²⁾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4월에는 채증활동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⁷⁴³⁾가 있었고

739) 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판결.

740)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2005-2015』,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2015), 376면.

741) 2012. 9. 26. 시행 「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호. 2017. 7. 26.부터 시행중인 현 채증활동규칙에서 채증의 정의는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74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743) 국가인권위원회 2014.3.04.자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경찰청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채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불법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9. 변호인 조력권 침해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집회 참가자에 대해 현장 접견 요구한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와 인권 침해가 문제되었다.⁷⁴⁴⁾ 이 사건 경찰은 변호사가 집회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체포 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여 현장접견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체포한 집회참가자를 승합차에 태웠다. 이에 변호사가 계속하여 접견을 요청하면서 승합차를 막아서자 변호사를 둘러싸고 밀어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접견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2, 3분 만에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⁷⁴⁵⁾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경찰관)이 체포 현장에서 피해자(변호사)의 접견 요청을 수락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체포 현장에서의 접견이 곤란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나중에 경찰서 등 다른 장소에서 접견하게 해 주겠다고 안내하는 것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경찰의 체포·호송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년 이상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인신구속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고, 문제된 집회참가자에 대한 체포 절차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상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접견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74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745)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사법경찰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체포행위가 직무집행의 법령상 요건과 필요성 및 상당성을 결여한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⁷⁴⁶⁾

10. 노동쟁의·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OO자동차 농성 및 진입 과정 중 인권 침해⁷⁴⁷⁾

가. 회사측 용역경비 등의 폭행 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방조행위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회사측 용역경비 등의 폭행 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방조행위 관련 사례이다. 2009. 6. 27.경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직원 100여명이 쇠파이프와 소화기, 사제방패 등으로 무장하고 공장에 진입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과 몸싸움을 하였고, 노동조합원 중 한명은 용역경비원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얼굴을 다쳤으며, 같은 날 용역경비원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치아 10여개가 부러진 노동조합원을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우고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용역경비원과 회사측 관리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노동조합원이 부상당하였는데, 경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⁷⁴⁸⁾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직원들이 집단으로 노동조합원을 폭행하고, 공장 내의 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차량의 운전자와 간병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인바, 이러한 용역경비원 등의 행위에 대하여 수수방관한 경찰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협발생의 방지)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⁷⁴⁹⁾ 규정에 반하고

746)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747) 국가인권위원회 2009. 10. 5.자 09-진인-2363 외 54건(병합) 결정.

748) 국가인권위원회 2009. 10. 5.자 09-진인-2363 외 54건(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83면).

74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협 발생의 방지 등) ①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⁷⁵⁰⁾

나. 식수 공급 중단과 의약품 반입 및 의료진 출입 차단에 대한 경찰의 묵인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한 인권 침해

식수 공급중단과 의약품 반입 및 의료진 출입차단 등과 관련한 사례이다. (※)OO자동차는 2009. 7. 17. 이후 식수 공급을 중단하고 소화전을 차단하였고, 2009. 7. 20. 이후 생필품 및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고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같은 해 8. 2. 이후에는 단전조치를 취하였으며, 노동조합원의 가족이 농성장에 의약품 반입 등을 위해 공장에 진입하려하자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회사의 임직원이 이를 차단하고 의약품 반입 및 의료진 출입을 차단하거나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경찰은 이를 보고만 있거나 최소한 묵인하였고,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행위를 함으로써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당뇨병,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50여명이 충분한 약을 복용하지 못하였다.⁷⁵¹⁾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750) 국가인권위원회 2009. 10. 5.자 09-진인-2363 외 54건(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87면).

751) 국가인권위원회 2009. 10. 5.자 09-진인-2363 외 54건(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83-284면).

「경찰법」 제3조 및 제4조⁷⁵²⁾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증립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⁷⁵³⁾,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⁷⁵⁴⁾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제10조 후문⁷⁵⁵⁾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인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점거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과 소화전을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 또는 회사측이 차단하는 것을 묵인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의 생명권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원들이 비록 불법 점거 농성 중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장 내에 식수와 식량이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식수와 식량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피진정인들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인권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의

752)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증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5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754)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 (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755)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생명권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⁷⁵⁶⁾

다. 경찰장비(최루액,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경찰의 경찰장비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이다. 경찰은 농성기간 중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에게 살수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다량의 최루액을 지속적으로 살포하였고, 경찰이 살포한 최루액에 맞아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10여명의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 급성피부염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9. 7. 22. 헬기와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포된 최루액은 그 농도가 다른 때와 달리 매우 높아 최루액을 맞은 노동조합원들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상처를 입었다.⁷⁵⁷⁾

또한 2009. 7. 22.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40여명이 도장공장에서 정문 쪽으로 뛰어나갈 때, 도장 공장 앞 50m떨어진 곳에서 가림막 뒤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전자충격기를 발사하여 노동조합원 중 2명이 각각 왼쪽 뺨과 왼쪽 허벅지를 맞았고, 같은 해 8. 5. 및 8. 6. 오전 강제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도주 중인 노동조합원들의 가슴과 몸에 다목적발사기를 발사하여 목과 가슴에 총탄을 맞은 다수의 노동조합원들이 정신을 잃었다.⁷⁵⁸⁾

농성노조원들이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어 시설물의 보호, 농성의 해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강제진압 행위는 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3 제1항⁷⁵⁹⁾,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 제8조 제15조⁷⁶⁰⁾에

756) 국가인권위원회 2009. 10. 5.자 09-진인-2363 외 54건(병합) 결정(결정레집 2012-4, 285-286면).

757) 국가인권위원회 2009. 10. 5.자 09-진인-2363 외 54건(병합) 결정(결정레집 2012-4, 289면).

758) 국가인권위원회 2009. 10. 5.자 09-진인-2363 외 54건(병합) 결정(결정레집 2012-4, 289-290면).

75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760)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협을 방지하기

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찰봉, 최루액,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할 경우, 생명·신체 등의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1조⁷⁶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제5항⁷⁶²⁾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루탄 및 최루액을 포함하는 최루장비는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8조 제2항, 같은 규칙 제76조 제4항⁷⁶³⁾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찰장비 중 '전자충격기'는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목적발사기'는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제한) ②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761)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62) 제82조(특별관리) ⑤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763) 「경찰장비관리규칙」 (2008. 12. 9. 훈령 제532호)

제76조(특별관리) ④ 전자충격기, 석궁, 다목적 발사기, 특수진압차, 물포총, X-RAY 촬영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충격기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한다. 특히, 우천·강설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사용 전 배터리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다.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3. 다목적 발사기

가. 휴대시 안전자물쇠 안전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안전위치에서 격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안전자물쇠가 안전위치임을 확인한 뒤에 실탄을 장전한다.

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 및 법령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경찰들이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봉지형태의 최루액을 살수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특히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농성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다량 살포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피부병 등의 신체이상 증상을 유발케 하고, '전자충격기를 노동조합원들의 안면에 발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및 이미 체포되어 저항 불능 상태에 있거나 도주 중인 노동조합원의 목과 가슴에 다목적발사기를 발사하여 의식을 잃게 한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규정한 각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의 방패, 경찰봉, 개인소화기 등에 의한 폭행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방패와 경찰봉 및 개인소화기 등에 의한 폭행이 있었던 사례이다. 2009. 8. 5. 경찰들은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기습적으로 진압을 시작하였고 진압 과정에서 일부 진압경찰들이 이미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부 노동조합원들의 온 몸을 방패로 찌고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다시 다른 2명의 진압경찰이 지나가다가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저항능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원을 위와 같이 반복해서 폭행하였고, 진압경찰들의 폭행을 피하다가 노동조합원 2명이 공장옥상에서 떨어졌다. 또한 위 진압과정에서의 피해자는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개인소화기로 온몸을 수회에 걸쳐서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경찰에게 방패로 가슴을 맞고 넘어진 후 다시 방패로 팔과 허리를 맞아 팔이 부러지고 척추에 금이 가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에게 다목적발사기로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짓밟히고 경찰서 연행 중 재차 방패로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⁷⁶⁴⁾

764) 국가인권위원회 2009.10.5.자 09-진인-2363 외 54건(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92-293면).

일반적으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및 이로부터 파생된 ‘경찰 비례의 원칙’이다. ‘과잉금지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범죄 및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진압경찰이 정당방위적 상황 등이 아님에도 농성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⁷⁶⁵⁾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⁷⁶⁶⁾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장비를 사용할 경우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1조⁷⁶⁷⁾, 제54조 제1항⁷⁶⁸⁾ 및 제87조 제1항⁷⁶⁹⁾에 따르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인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 및 법령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일부 진압경찰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76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766)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767)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768)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769)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1조 및 제54조 제1항에 반해 노동조합원들을 진압 및 체포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방패 및 경찰봉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이는 「형법」 제125조⁷⁷⁰⁾에 규정된 직무수행상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11. 행정대집행, 농성에서의 경찰 경비

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통행로 봉쇄 및 이른바 ‘고착’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행정대집행 시 통행로 봉쇄 및 이동권 제한과 관련한 사례이다.⁷⁷¹⁾ 2013. 5. 20.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찰에 의한 통행권 제한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공사현장으로부터 평균 3~4km 떨어져 있는 마을 진입로에서부터 경찰의 제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지역을 이동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통행까지 봉쇄되었다.

상동명 여수마을에서는 경찰이 공사장 진입로가 아닌 마을에서 공사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다리를 봉쇄하였다. 다리 건너편에는 마을 주민의 밤나무 밭이 있었는데 공사장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민의 출입을 봉쇄하였다.

특히 이른바 ‘고착’ 형태의 이동권 제한도 있었는데 2014. 6. 11. 공사현장에 있었던 행정대집행과정에서 경찰은 아래와 같이 마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변호사의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였다. 마을 주민 등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려는 신고리~북경남 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하면서 위 송전탑 건설 공사 현장 입구나 송전철탑 예정 부지에 움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었다. 밀양 시장은 이들이 설치한 이 사건 움막이 산지관리법 등에 위반하여 철거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4.

770)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771)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위의 책(주 741), 383면.

6. 11. 철거 집행을 실시하였고 경찰은 철거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움막들을 점유하고 있던 마을 주민 등을 움막 밖으로 강제로 퇴거시키고 접근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위 철거 집행 과정의 경찰권 행사가 위헌적이었는지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법정 의견은 각하였지만 재판관 5인은 “피청구인으로서 행정대집행현장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방법, 시간적 지속성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직후 경찰들은 움막 안에 있던 위험물들을 수거하였고, 청구인들은 철거현장과 위험물로부터 격리되어 당시 관계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발생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고, 철거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청구인들이 위험한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우려도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행정대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청구인들의 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처럼 전면적인 방법이 아닌 부분적인 이동의 제한으로도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는 있었고, 청구인들은 행정대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것이라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라고 하여 강제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⁷⁷²⁾

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진압을 한 경찰의 식별표시 미부착 및 경찰복 미착용에 의한 인권 침해

행정대집행 시 경찰의 식별표시 미부착과 경찰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례이다.⁷⁷³⁾
 2013. 5. 20. 이후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장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들은 그들의 신분(부대명,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전혀 부착하지 않았다.
 2014. 6.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움막 안에 진입한 경찰의 경우 이름표가 대부분 조끼에 가려져 있었고, 신분 표식이 없는 제복을 입거나 정복이 아닌 사복차림이었다.

772)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681 결정.

773)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위의 책(주 741), 384면.

또한 채증을 하는 경찰들이 등산복을 입고 있는 등 경찰인지 혹은 한국전력 소속 직원들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10. 27.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당시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해 직권조사한 후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대원 근무복에 대원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하라는 것이 권고의 내용이다. 또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는 2011년 대한민국 방문 이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 사안에서 경찰은 경비 과정이라는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식별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신원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욕설에 의한 인권 침해

경찰의 주민들에 대한 욕설이 있었던 관련 사례이다.⁷⁷⁴⁾ 밀양 북북면 127번 송전탑 건설현장 근처에서, 경찰 등이 마을 주민들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현장 조사단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에게 주민 접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불가피하게 시민과 경찰의 대치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다.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충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잦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못지않게 공권력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시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경찰의 욕설은 「형법」 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격권 침해 행위이다.

774)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위의 책(주 741), 394면.

라.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인권 침해(용산 참사)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관련한 사례이다.⁷⁷⁵⁾ 경찰은 서울청 진압작전계획서 상의 안전 조치조차도 준비되지 않아 진압작전의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에도 진압작전을 개시하였고, 진압작전 수행과정에서 경찰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조치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직 ‘농성자 검거’를 목적으로 진압작전을 강행하였다. 또한 1차 진압 후 유증기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고도화된 상황 등이 경찰지휘부에 순차적으로 보고되었는에도 경찰지휘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하였다⁷⁷⁶⁾.

경찰은 농성을 진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태양 및 위험물질 보유여부, 농성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에 비추어 농성진압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또는 진압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해야 한다. 즉,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농성진압을 하여 진압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한 경찰의 행위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⁷⁷⁷⁾⁷⁷⁸⁾,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 보호의 원칙⁷⁷⁹⁾과 제11조 직무수단의 한계⁷⁸⁰⁾를 넘어선 것이다.

775)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진상조사위원회, 2018), 7-32면.

776)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의 책(주 776), 7-32면.

777)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의 책(주 776), 7-32면.

778) 국가인권위원회 2010.2.9.자 [보도자료]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의견 제출 2면.

779)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78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2. 소수자 영역

가. 성소수자

1)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금지통고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제16회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집회 금지를 통고⁷⁸¹⁾했다. 퀴어문화축제측과 반대 집회가 시간과 장소가 겹치면서 시민 통행과 교통에 불편을 줄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⁷⁸²⁾ 퀴어문화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같은 해 대구지방경찰청도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교통 소통의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구퀴어문화축제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었다.⁷⁸³⁾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⁷⁸⁴⁾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고 하고 있다.⁷⁸⁵⁾ 그럼에도 경찰의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복적인 금지통고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특히 소수집단과 민주주의에 있어 집회가 갖는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충돌우려와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등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경찰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베니스 위원회의 「평화적 집회를 위한 지침」⁷⁸⁶⁾에도 반하는 것이다.

781) 임종명 “경찰, 성소수자축제조직위·반대 단체 모두에 ‘옥외집회금지’”, 최종수정 2015.06.01. <https://news.join.com/article/17926255>

782) 서울행정법원 2015. 6. 16.자 2015아10859 결정.

783) 대구지방법원 2015. 6. 24.자 2015아10155 결정. 김일우, “경찰이 막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올해도 열린다”, 최종수정 2015. 6. 26.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7674.html>

784)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785)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호(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786)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nd ed. 2010. 6. 4.)」

33. 평화적 집회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인기 없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데, 이 점이 적대적 반대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에서

2) HIV/에이즈 인권행사에 대한 불법 채증과 연행

2011. 8. 24-27. 3박 4일간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대회(ICAAP, 이하 ‘아이캡’)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아이캡은 대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IV/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을 논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행사 마지막 날인 8. 27. 벡스코 실내에서 “차별 반대”, “의약품 접근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는 자리에서 경찰의 채증 및 연행 사건이 일어났다. 일반 시민임을 가장하여 시위 모습을 촬영하던 사람이 사복 형사로 밝혀졌고, 이에 참가자들이 항의하자 경찰들이 몰려와서 참가자들을 강제로 데려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행에 항의하던 변호사가 같이 연행되는 일도 발생하였다.⁷⁸⁷⁾

당일의 아이캡 행사는 벡스코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행사이고, 이 날의 행진은 옥내집회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⁷⁸⁸⁾에 따른 신고대상도 아니다. 또한 이 날 별도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경찰이 아무런 고지 없이 채증을 실시하고 이에 항의하자 참가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 제127조⁷⁸⁹⁾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나. 장애인

1) 전동휠체어를 장애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의 집회 진압과 인권 침해

전동휠체어를 장애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압한 것과 관련한 사례이다.⁷⁹⁰⁾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국의 장애인단체 관계자 150여명은 2008. 7. 16.부

나오는 잠재적 무질서가 평화적 집회에 대한 제약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787) 홍지은, “트랜스젠더에게 성기 모양 묻는 공항 직원...”야만의 한국”, 최종수정 2011. 8. 3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6930#09T0>

7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9)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790)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8-진인-2825/08-진차-877/08-진차-874(병합) 결정.

터 약 한 달 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장애인가족 지원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장관면담요구, 집회·시위를 종로구 계동 소재 위 기관 청사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에 관할지역 경찰서장은 '장애인 단체 집회 대비 경력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총괄지휘 하에 경찰서 경비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제○기동단장에게 경비업무를 현장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2008. 7. 23. 및 24. 경비진압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찰들이 위 집회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중증장애인들을 인도로 밀어내면서 이들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뒤에서 빼내어 강제로 분리시켰다. 그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있던 장애인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⁷⁹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⁷⁹²⁾에 의하면,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보조기구 중 휠체어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기구로써 신체의 일부로 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있어 휠체어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보조기구로써,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와 분리되는 경우에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및 모멸감을 넘어서서 신체활동의 급격한 제약을 초래함으로써, 인격권을 비롯하여,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그리고 주거이전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이동권 등 중대하고 포괄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⁷⁹³⁾

791)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8-진인-2825/08-진차-877/08-진차-874(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58-260면).

79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8. 30. 정부종합청사 앞 장애인 집회 시 경찰이 중증장애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를 장애인과 분리하고 늦게 돌려 준 사건과 관련하여, “전동휠체어나 타의의 도움이 없이는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전동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전동휠체어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활동 불가로 인해 전동휠체어와 분리되는 경우 초래되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 그리고 전동휠체어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예기치 않게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전동휠체어와의 분리는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분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그 분리시간은 최단시간이어야 한다.”라고 결정⁷⁹⁴⁾한 바 있다.⁷⁹⁵⁾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위 경찰들의 휠체어 분리행위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및 제10조⁷⁹⁶⁾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시 가져야 할 차별금지 및 인권 존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⁷⁹⁷⁾에서 연유하는 위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이동권을 각 침해한 것이다.⁷⁹⁸⁾

793)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8-진인-2825/08-진차-877/08-진차-874(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61면).

794) 국가인권위원회 2006. 12. 6.자 06-진인-1851 등 병합 결정.

795)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8-진인-2825/08-진차-877/08-진차-874(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62면).

796)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797)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798)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31.자 08-진인-2825/08-진차-877/08-진차-874(병합) 결정(결정례집 2012-4, 263면).

2) 장애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최루액 분사

장애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최루액을 분사한 것과 관련한 사례이다.⁷⁹⁹⁾ 원고들을 포함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200명은 2014. 4. 20. 10:35경부터 11:55경까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11:57경 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으로 진입하였다. 위 전장연 회원들은 승강장 16번에서 1번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13번 승차홈 부근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는데, 전방에 있는 일부 회원들이 위 폴리스라인을 손괴하고 경찰장비(방패)의 탈취를 시도하였다.⁸⁰⁰⁾ 이에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12:00경 위 전장연 회원들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원고 000이 확성기로 이용하여 경찰이 길을 막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등 위 전장연 회원들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서 경찰에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12:06경 위 전장연 회원들에게 두 번째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위 전장연 회원들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서 12:07경 “버스 타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전방에 있는 회원들은 그 구호에 맞춰 폴리스라인과 방패를 밀면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경찰은 확성기를 이용해 위 전장연 회원들에게 자진해산요청을 하거나 처벌의 위협을 경고하였으면서도, 분사기 사용에 관하여는 미리 경고하지 않고 12:09경 집회 참가자들을 향하여 최루액을 분사하기 시작하였다.⁸⁰¹⁾ 경찰은 12:09경 최루액 분사를 시작하면서 지휘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위 전장연 회원들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 앞에 있던 경찰관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장애가 있는 전장연 회원들에게까지 분사를 계속하였으며, 12:16경 위 전장연 회원 한 명이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피켓을 빼앗은 후 위 회원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였고, 12:18경 채증자용 삼각대에 올라가 후방에 있는 전장연 회원들에게까지 분사기를 난사하였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12:15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7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527105 판결.

800) 12:00경 이 사건 전장연 회원들 중 일부가 경찰관들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으나 원고 박려형 등 다른 전장연 회원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12:06경 흥분한 전장연 회원 1명이 폴리스라인 구조물을 들어 경찰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자 원고 박려형 등 다른 전장연 회원들이 이를 빼앗아 뒤로 치웠다.

801) 법원은 경찰이 12:09경부터 분사기를 사용하였고, 집회 참가자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그로부터 50분이 경과한 13:00경 체포되었기 때문에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1차 해산명령을 한 후에도 최루액 분사는 몇 분간 계속되었다.⁸⁰²⁾ 위 전장연 회원들은 200명으로 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폭력 등 돌발행위를 하는 사람을 소수이고 그러한 행위를 말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이 사건 현장에 배치된 경찰의 규모는 900명 이상이 되었다.

경찰이 사용하는 최루액은 파바(PAVA)라는 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로서 심각한 과량 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피부· 눈 접촉, 섭취시 매우 유해하고 가려움증, 수포 생성을 초래할 수 있을만큼 신체에 끼치는 위험성이 크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분사기가 사용되기 전까지의 경과, 분사기가 사용된 시점, 분사의 양상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장연 회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어서 경찰의 분사기 사용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경찰의 분사기 사용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⁸⁰³⁾ 이 사건에서 경찰의 장애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최루액 분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1항,⁸⁰⁴⁾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와 제12조,⁸⁰⁵⁾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7조⁸⁰⁶⁾를 위반한 것이다.

802)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해산절차인 자진해산요청, 3번 이상의 해산명령을 거치지 않고 1차 해산명령을 발하기도 전에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8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527105 판결.

804)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805)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806) 구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본 검찰·경찰 인권옹호 기능 진단

수사기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로는 수사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권 침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업무의 공정성이나 적법성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외부기관 또는 외부적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및 인권 보호 임무수행이 요청되는 경우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 관련 직무교육과 상호논의 시행, 수사기관의 「헌법」과 관련 법규 및 관련 준칙에 대한 지식교육,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규와 준칙대로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 업무수행에서 수사대상자나 참고인 또는 주변 관련자에 대한 언행과 자세 및 태도 확인과 점검, 수사기관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인권 침해 관련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 점검에 대한 민감성과 적극성 제고방안 등이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1. 경찰 인권교육 권고 영역

가. 범죄발견 단계

1) 불심검문시 신분증 미제시 불심검문 관련 교육 필요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 등 관련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시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고 있는 바⁸⁰⁷⁾ 단속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하여야 한다.

8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④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것⁸⁰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⁸⁰⁹⁾

단지 경찰관의 정복을 입었다는 것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 제시의무가 당연히 해제되었다고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데,⁸¹⁰⁾ 경찰관이 범죄행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임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례⁸¹¹⁾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직무교육시 관련 규정과 관련 판례를 함께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동행거부권 미고지 등 부당한 강제연행방지 교육 필요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공연음란죄 피해의자를 경찰관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⁸¹²⁾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 실시와 함께 이러한 사례를 알 수 있도록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⁸¹³⁾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15년에도 발생하였는데⁸¹⁴⁾ 임의동행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동행요구를 한 것은 신체의 진정한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임의수사의 원칙과 임의동행절차와 관련하여 판례⁸¹⁵⁾나 관련규정⁸¹⁶⁾

808)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0.자 16-진정-0189500 결정.

809)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0.자 16-진정-0189500 결정(결정례집 2016-9, 436면).

810)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0.자 16-진정-0189500 결정(결정례집 2016-9, 441면).

81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812)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0.자 16-진정-0052400 결정.

813)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0.자 16-진정-0052400 결정(결정례집 2016-9, 422면).

814)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13.자 15-진정-0033800 결정.

815)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 6810)

816)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등을 참고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관련 사례를 전파하여 교육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¹⁷⁾

나. 수사진행 단계

1) 체포시 권리고지 및 서류작성 관련 교육 필요

체포시에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고지하는 것과 체포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⁸¹⁸⁾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고지한 사실을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서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헌법」과 법률, 훈령 및 직무규칙 등이 규정하고 있다.⁸¹⁹⁾

이러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한 바 있다.⁸²⁰⁾

2) 현행범 체포 관련 교육 필요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행범 체포가 부당한 현행범 체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알고 이에 맞는 상황에서 요건이 맞는 경우 현행범인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순찰차가 1회 출동한 것, 불필요한 순찰차의 출동야기가 없다는 점, 진정인의 신원 및 거주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 진정인의 신고내용이 112 종합상황실에 녹음되어 체포할 급박한 상황이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 체포의 요건⁸²¹⁾을 갖추

817)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13.자 15-진정-0033800 결정(결정레집 2015-8, 271면).

818)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자 14-진정-0539700 결정.

819)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자 14-진정-0539700 결정(결정레집 2015-8, 291면).

820)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자 14-진정-0539700 결정(결정레집 2015-8, 292면).

821)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 체포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²²⁾

진정인의 휴대폰 번호가 113에 기록되어 있고 지구대의 발생보고서에 진정인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입문의 상황 상 도주할 우려가 없는 등 체포의 필요성⁸²³⁾이 없는 경우에도 모욕죄를 이유로 하여 현행법으로 체포한 경우 역시 현행법 체포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비교적 경미한 모욕죄혐의로 체포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도 반하고⁸²⁴⁾ 과잉에 해당할 수 있어⁸²⁵⁾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현행법 체포와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시 권고하였다.⁸²⁶⁾

3) 영장 등 제시 관련 교육 필요

가) 체포영장 제시 교육 필요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아 신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85조⁸²⁷⁾에 위배되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인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822) 국가인권위원회 2014.6.2.자 13-진정-0713100 결정(결정례집 2014-7, 375면).

823)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824) 국가인권위원회 2014.6.2.자 13-진정-0713100 결정(결정례집 2014-7, 393면).

82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826) 국가인권위원회 2014.6.2.자 13-진정-0713100 결정(결정례집, 2014-7, 387면).

827)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보호 원칙 제4조⁸²⁸⁾ 위반, 「범죄수사규칙」 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제174조 제1항⁸²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⁸³⁰⁾

나) 구속영장 제시 교육 필요

구속영장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사법경찰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를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는 바 진정인을 검찰에 인계할 때까지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만 휴대폰 조회기로 단지 지명수배사실을 1회 조회하였을 뿐 이었다⁸³¹⁾.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지명수배자 검거 후 영장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한 바 있다.⁸³²⁾

다) 형집행장 (원본)제시 교육 필요

형집행장 제시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벌금 수배자에 대해 형집행장 집행은 검사가 발부하고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 집행에서도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집행장도 원본제시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반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과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벌금미납 수배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경우 반드시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을 국가인권위원회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82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829) 「범죄수사규칙」 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830) 국가인권위원회 2012. 4. 13.자 10-진정-0785200/ 11-진정-0329300 병합결정(결정레집 2012-5, 311면).

831)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자 15-진정-0229600 결정(결정레집 2015-8, 285면).

832)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자 15-진정-0229600 결정(결정레집 2015-8, 280면).

는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대검찰청의 업무상 협력이 필요함을 첨언하였다.⁸³³⁾

앞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로서 2013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벌금 미납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된 진정인이 벌금 분할납부 신청을 위해서 스스로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신청한 벌금 분할납부가 기각되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형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집행장을 제시할 것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³⁴⁾

4) 압수·수색

가) 휴대전화 압수 관련 교육 필요

휴대전화 압수 등 압수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것도 아니고 주취인의 핸드폰 사용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예견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주취인의 핸드폰을 짧은 시간 약9분 정도 압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³⁵⁾

나) 신체수색 관련 교육 필요

신체수색과 관련하여 관련 기본교육과 사례교육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현행법으로 체포된 자를 경찰 지구대 내의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게 한 것은 외표검사 등 다른 방식의 검사가 가능하거나 또는 독립된 공간이나 가림막을 사용한 장소에서 신체검사가 가능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굴욕감을 주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⁸³⁶⁾

또한 경찰 방법순찰대 의경대원의 휴대폰 소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형점검이나 간단한 몸수색 또는 독립된 개별공간에서 하는 방법 이외에 1층 현관에서 하의 탈의를 시킨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에서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833)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23.자 12-진정-0187100 결정(결정레집 2014-7, 408면).

834) 국가인권위원회 2013. 4. 9.자 12-진정-0555900 결정(결정레집 2013-6, 377면).

835) 국가인권위원회 2013. 3. 20.자 12-진정-0896400 결정(결정레집 2013-6, 281면).

836) 국가인권위원회 2013. 3. 20.자 12-진정-0723800 결정(결정레집 2013-6, 341면).

피해자의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³⁷⁾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수색 및 신체검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³⁸⁾

신체수색시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청에 의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도박범죄 혐의의 현행법체포 후 이동하여 10시간 후 경찰서 내에서 신체를 제압당하여 신분증이 꺼내지고 확인된 것은 단순한 소지품 검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아니며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⁸³⁹⁾ 위반, 제215조⁸⁴⁰⁾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⁸⁴¹⁾ 의무위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⁸⁴²⁾ 위반, 제11조⁸⁴³⁾ 위반으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권 보호와

837) 국가인권위원회 2013. 5. 8.자 13-진정-0086800 결정(결정례집 2013-6, 346면).

838) 국가인권위원회 2013. 3. 20.자 12-진정-0723800 결정(결정례집 2013-6, 341면).

839)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840)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8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842)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843)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⁴⁴⁾

5) 조사방법 관련 교육 필요

가) 심야조사 관련 교육 필요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심야시간은 피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심야조사가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수행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거나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밤샘조사 또는 심야조사를 행하는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심야조사 금지⁸⁴⁵⁾ 위반이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내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심야조사금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⁴⁶⁾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수면권과 휴식권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적정한 수면과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심야조사는 인간의 생존방식과 기본적 생활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고통과 피로감을 줄 가능성을 높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⁸⁴⁷⁾ 하기도 하였다.⁸⁴⁸⁾

844) 국가인권위원회 2012. 2. 16.자 11-진정-0161300 결정(결정례집 2012-5, 303면.)

845)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심야 조사 금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 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소년·노약자·장애인·외국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846)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3.자 12-진정-0111680 결정(결정례집 2012-5, 285면).

847) 국가인권위원회 2008. 2. 13.자 06-진인-2974 침해구제 제1위원회 결정.

나) 야간 방문조사 관련 교육 필요

야간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이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서명과 스티커 발부가 누락되어 그의 거주지를 불시에 야간인 새벽 2시 30분에 방문하여 보정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준 점과 반드시 그 보정작업이 야간 또는 새벽에 수행하여야 할 만큼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경찰의 직무수행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적합하면서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야간 불시 방문조사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 보호의 원칙,⁸⁴⁹⁾ 제9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⁸⁵⁰⁾ 제49조 사실확인시 유의사항⁸⁵¹⁾의 위반이며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⁵²⁾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검토 및 점검이 필요하다.⁸⁵³⁾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피의자의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나 「범죄수사규칙」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피의자신문 과정에 입회하거나 또는 경찰관의 승인 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848)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30.자 10-진정-0767600 결정(결정례집 2012-5, 325-326면).

849)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85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851)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9조(사실확인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52)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2.자 12-진정-0529400 결정(결정례집 2012-5, 374면).

853) 국가인권위원회 2013. 5. 27.자 12-진정-0456100 결정.

이에 대한 개정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한 바 있다.⁸⁵⁴⁾

이후 「범죄수사규칙」 제59조가 개정되어 신문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 및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⁸⁵⁵⁾을 2013년 4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위하여서는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어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이외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12조 제4항⁸⁵⁶⁾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⁵⁷⁾

과거 「범죄수사규칙」에서 변호인 참여가 피의자신문에 입회하는 것만을 의미하거나 경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⁸⁵⁸⁾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⁸⁵⁹⁾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이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는가는

854) 국가인권위원회 2013. 5. 27.자 12-진정-0456100 결정(결정레집 2013-6, 297면).

855) (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제8조(변호인 참여와 제한)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변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간단한 메모는 제외한다.

③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856)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857) 국가인권위원회 2013. 5. 27.자 12-진정-0456100 결정(결정레집 2013-6, 300면).

858) 국가인권위원회 2013. 5. 27.자 12-진정-0456100 결정(결정레집 2013-6, 297면).

859) 「범죄수사규칙」 제5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변호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에 따른다.

지속적으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7) 임의성 미확보 조사 교육 필요

임의수사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수사가 강제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⁸⁶⁰⁾ 임의수사가 원칙으로 경찰이 조사를 할 경우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경우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진정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언제든지 조사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또 이를 증명할 필요도 있는데⁸⁶¹⁾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범죄수사규칙」 제56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자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임의수사 원칙과 진술거부권 고지 등 준수사항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⁸⁶²⁾

다. 개인정보보호

1)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가) 피의자 특정 관련 보도자료

피의자를 특정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⁸⁶³⁾은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⁸⁶⁴⁾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⁸⁶⁵⁾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⁸⁶⁶⁾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발표는

860)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861)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2.자 13-진정-0270500 결정(결정레집 2014-7, 351면).

862)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2.자 13-진정-0270500 결정(결정레집 2014-7, 347면).

863)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16-진정-0508600 결정.

864)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865)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⁸⁶⁷⁾

경찰청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에서는 수사사건에 대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필요한 사항만을 공개하도록 하고⁸⁶⁸⁾ 동규칙 제84조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에서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명예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⁸⁶⁹⁾

역시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보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사건 등을 공보할 경우 얼굴이나 성명과 같은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범죄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⁸⁷⁰⁾ 동규칙 제11조 공보시

866)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16-진정-0508600 결정(결정례집 2016-9, 414면).

86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86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④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하여야 한다.

869)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870)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공보 제한 사항) ①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2.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3. 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4. 사건관계자의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자료

유의사항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공보할 때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공보내용에 함께 포함⁸⁷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⁷²⁾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성(姓), 운영업체 종류, 나이, 사업장 소재지 등이 공개되어 동종업계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피의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진정인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⁸⁷³⁾과 저렴한 중고차를 침수시켜 수리하거나 폐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법에 위반되며⁸⁷⁴⁾ 이러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위반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경찰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⁷⁵⁾

5. 범죄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 (다만, 사건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예외로 한다.)

6. 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

7. 수사사건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8. 국민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수법 및 참혹한 피해상황 등

②공보책임자 등 관계 경찰관은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71)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보시 유의사항) 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 또는 추측이나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사건관계자에게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872)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508600 (결정례집 2016-9, 419면).

873)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16-진정-0508600 (결정례집 2016-9, 420면).

874)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수사사건 언론공개 기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공보제한 사항) 제11조 (공보시 유의사항)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75)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508600 (결정례집 2016-9, 421면).

나) 유죄단정 표현 보도자료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자료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금지된 농약이 포함된 중국산 산양삼을 불법으로 밀수입하여 대량 유통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조사를 받은 후 보도자료에 피의자를 추정가능한 표현과 함께 피의자의 성과 나이가 표시되어 신원이 특정될 수 있고⁸⁷⁶⁾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침해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수사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하여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⁷⁷⁾

다) 객관적 사실 미확인 보도자료 교육 필요

객관적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여 피의자는 진정인에게 현금 3천 5백만원 을 빌려주는 등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사귀던 관계라는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하지 않은 채 언론 보도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성씨와 나이 및 가족관계를 밝혀 특정될 수 있도록 한 사실⁸⁷⁸⁾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한 바 있다.⁸⁷⁹⁾

2) 피의사실과 무관한 자료 공개

피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진정인은 공갈 및 방화예비로 체포되었는데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료 중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거진료 기록 사항을 TV 방송기자에게 노출시켰고 이는 폭행과 관련하여 방송이 되었다.⁸⁸⁰⁾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주의사항⁸⁸¹⁾ 위반한 것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876) 국가인권위원회 2015.11.11.자 결정 14진정1033200 (결정례집 2015-8, 310면).

877) 국가인권위원회 2015.11.11.자 결정 14진정1033200 (결정례집 2015-8, 312면).

878)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2.자 결정 15진정0742400

879) 국가인권위원회 2015.12.22.자 결정 15진정0742400 (결정례집 2015-8, 321면).

880) 국가인권위원회 2012. 3. 6.자 10-진정-0489900 결정(결정례집 2012-5, 332면).

881)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

직무규칙」 제83조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⁸⁸²⁾과 동규칙 제84조 수사사건 언론 공개의 한계⁸⁸³⁾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사항을 언론에 공개되거나 공표되지 않도록 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⁸⁴⁾

3) 지명통보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지명통보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의 지명통보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⁸⁸⁵⁾으로 국민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의 지명통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실시를 권고하지는 않았으나 사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된다.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⁸⁸⁶⁾과 범죄수사 규칙⁸⁸⁷⁾에서 지명통보는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882)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피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④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하여야 한다.

883)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 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884) 국가인권위원회 2012. 3. 6.자 10-진정-0489900 결정(결정례집 2012-5, 328면).

885) 국가인권위원회 2016.7.20. 자 결정 15진정0833100

886)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명수배·지명통보 대상) 제2호 가

887) 범죄수사 규칙 제179조 (지명통보) 제1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 결과 소재가 불명된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진정인의 자택을 찾아가는 행위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인권 보호원칙에 위반⁸⁸⁸⁾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의자는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기는 하였으나 처가 소재를 확인해 주거나 본인이 조사관을 교체 신청하는 등 경찰서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재 불명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⁸⁸⁹⁾

「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1항과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지명통보 대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법규에 대해 교육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4)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필요

북한이탈주민 신분사항 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임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이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민감한 정보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⁹⁰⁾

라. 사회적 약자 보호

1) 여성에 대한 기본교육 필요

직장마다 성희롱이나 성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경찰의 여성피의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본적인 성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임신부나 산모에 대한 보호에 대한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88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889) 결정례집 2016-9, 411면.

890) 국가인권위원회 2013. 11. 30.자 13-진정-0219200 결정(결정례집 2013-6, 370면).

또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신분노출 금지와 관련한 주의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미성년 피의자 보호자의 조력보장 등 교육 필요

미성년 피의자 보호자 조력보장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부모가 참여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⁸⁹¹⁾ 절도혐의 등의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수사규칙」 제211조 보호자와의 연락 규정⁸⁹²⁾ 위반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 사회적 약자보호 조항⁸⁹³⁾에 위배되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⁸⁹⁴⁾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적법절차의 위배이다. 미성년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석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⁸⁹⁵⁾

미성년자에 대한 구금, 미성년자에 대한 탐문수사 등과 관련하여서도 기본적으로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891)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자 11-진정-0696500 결정(결정레집 2012-5, 279면).

892)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3)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894)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은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제2항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895)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자 11-진정-0696500 결정(결정레집 2012-5, 274면).

3) 외국인 관련 기본교육 필요

한국에서 외국인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모욕적 발언은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임의동행, 체포,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고지되거나 설명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내용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과 번역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내부 또는 외부적인 기관에 의해 점검하는 절차가 진행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4)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 교육필요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조사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비웃음이나 모욕적 시선과 발언 또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불쾌한 질문 등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부적절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헌법」 제10조 인격권 침해이고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⁸⁹⁶⁾ 「범죄수사규칙」 제3조⁸⁹⁷⁾ 위반이며 「형법」 제311조⁸⁹⁸⁾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차별금지를 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교육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성소수자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하는 몇몇 국가도 있으므로⁸⁹⁹⁾ 한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성소수자 관련 사항이나 범죄에 대해서 보도자료 작성을 유의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96) 「인권보호수사준칙」(2018. 8. 16. 개정된 것, 법무부 훈령 제1170호)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97) 「범죄수사규칙」 2018. 8. 13. 개정된 것, 경찰청 훈령 제881호)

제3조(인권 보호)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98)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99) 신양섭, 이슬람법과 이란 「형법」의 성소수자 처벌연구, 제4회 법학연구소 종교와 법센터 학술대회, 세속 이슬람 사회제도에서의 샤리아, 2018.12.12. 15면.

5) 장애인에 대한 기본 교육필요

장애인은 기본적인 생활과 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사와 사법절차에서도 적절한 편의제공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하거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편의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 신문이나 피해자 조사 시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 장구가 과도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학대나 폭행 등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해서도 항상 점검하고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마. 물리력 및 경찰장구 사용

1)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피의자 신병인계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재물손괴 및 폭행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신병 인계 등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양쪽 어깨를 들어 올려 이동하거나 여러 명이 들어 올려 이동하는 등의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인 몸을 끌고 가는 것은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⁹⁰⁰⁾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⁰¹⁾

2) 과도한 수갑 사용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수갑의 사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⁹⁰²⁾에 따르면 수갑 등 장구 사용은 생명, 신체의 보호나 항거 제지를 위해

900)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13. 자 결정 14 진정 0544000

901)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13. 자 결정 14 진정 0544000 (결정례집 2015-5, 269면.)

902)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계구는 원칙적으로 공동생활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명백한 필요성이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⁹⁰³⁾한 바 있다.

또한 1955년 UN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 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33조⁹⁰⁴⁾에서도 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①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이 경우에도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 의료상의 이유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경우, ③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도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에 한정하여, 계구 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이 수갑을 사용함으로써 손목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 수차례 있었고⁹⁰⁵⁾ 또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왼쪽팔뚝이 골절되는 되는 사고⁹⁰⁶⁾도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

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903)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사건 결정

904) 33. Instruments of restraint, such as handcuffs, chains, irons and strait-jackets, shall never be applied as a punishment. Furthermore, chains or irons shall not be used as restraints. Other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not be used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a) As a precaution against escape during a transfer, provided that they shall be removed when the prisoner appear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 (b) On medical grounds by direction of the medical officer;
- (c) By order of the director, if other methods of control fail, in order to prevent a prisoner from injuring himself or others or from damaging property; in such instances the director shall at once consult the medical officer and report to the higher administrative authority.

905) 2011년 ○○경찰서 체포·구속 피의자 수감으로 인한 상처 통계 (단위:명)

	계	입감자수	미입감자수
계	1,495	1,448	47
상처발생	55(5.9%)	85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5집, 국가인권위원회 2012, 246면.

906) 국가인권위원회 2012. 5. 24.자 12-직권-0000200 결정(결정례집 2012-5. 243면).

하지 위해 2011년 11월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권고⁹⁰⁷⁾와 2012년 5월 수갑 사용의 과잉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2013년 6월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시금 권고하였다.⁹⁰⁸⁾ 또한 수갑의 착용부위를 가리는 것과 관련하여 수갑이 착용된 부위가 노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의 유동인구가 많아 노출가능성이 높은 곳을 고려할 때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수갑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⁰⁹⁾

3) 전자충격기 안전교육강화 필요

전자충격기 안전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충격기는 전자충격기 사용과 관련한 기준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전자충격기 사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⁹¹⁰⁾

경찰관 중 일부가 범죄인 또는 정신병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흥기에 찰려 순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기도 하다.⁹¹¹⁾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07) 국가인권위원회 2012. 5. 24자 12-직권-0000200 결정에서 수갑의 사용과 관련하여 장구 사용보고서, 체포·구속인 신체확인서 작성준수 여부 관련 업무점검 실시와 장구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권고의 적극적 이행과 결과를 회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한 바 있다. (결정례집 2012-5, 241면).

908)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2.자 13-진정-0194800 결정(결정례집 2013-6, 305면).

909) 국가인권위원회 2012. 7. 10.자 11-진정-0547400 결정(결정례집 2012-5, 252면).

910) 국가인권위원회 2016. 10.27.자 결정 16진정0337200 (결정례집 2016-9, 452면).

91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9760&ref=A> (검색일: 2018.9.10.)

한편 전자충격기 사용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2013년 7월 전기충격기의 안전수칙 준수가 미흡한 상황으로 진정인의 눈이 실명하게 된 사건이 발생한 바, 전기충격기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개선에 대한 권고도 이루어진 바 있다.⁹¹²⁾

4) 가스분사기 사용 관련 교육 필요

가스분사기 안전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진정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어 병을 깨뜨리고 그 유리조각을 가지고 들어오자 이를 경고 조치 없이 바로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저지)⁹¹³⁾와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29조 제2호⁹¹⁴⁾에 해다하는 분사기 사용과 관련한 제133조 제2호⁹¹⁵⁾를 위반 한 것으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⁹¹⁶⁾

가스분사기 사용과 관련하여 아주 급박하고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경고

912)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5.자 13-진정-0304600 결정(결정례집 2013-6, 314면).

91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저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914)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2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루장비”란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최루·자극·연막 또는 신호 등의 효과를 일으키거나 이를 제거하는 최루작용제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 및 작용제를 말한다.
2.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가스발사총”이란 장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하여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최루탄발사기”란 장전탄통에 최루탄을 장착하여 추진탄에 의한 가스방출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장치된 장비를 말한다.

915)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33조(최루장비의 안전관리)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 분사기 등 최루장비를 휴대·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분사기
 - 가. 범인 검거 및 제압 등 유사시 정당한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 라. 분사기의 사용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분사기 운용지침」에 따른다.

916)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2-진정-0325300 결정(결정례집 2012-5, 265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¹⁷⁾

5) 경찰차량 운행시 블랙박스 작동 교육 필요

경찰차량 운행시 블랙박스 작동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청에서 지시하고 의무화한 경찰차량 내의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작동하라고 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아 경찰차량 내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10여 차례나 폭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의자 호송을 위해 경찰차량을 운행할 경우 반드시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¹⁸⁾

바. 기타 인권 침해 및 불법행위

1) 경찰의 욕설 및 폭언 등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경찰의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6년에 권고한 사항으로 체포현장 녹음파일에서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이 새끼, 미친 새끼네. 이거”, “개새끼가 이게”, “앞드려 새끼야”, “웃긴 놈의 새끼네 이거”, “쫓만한 새끼가! 야 이 새끼야!”, “짜가지 없는 새끼가. 이거”, “술 쳐먹고 개지랄해. 새끼가”, “앞드려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⁹¹⁹⁾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행위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⁹²⁰⁾

2015년에 권고한 사항으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에서 경찰이 “씨발 인간아”, “고추 떼버려라”는 등의 발언이 이루어졌는바⁹²¹⁾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⁹²²⁾ 조항을 위반

917) 국가인권위원회 2012. 8. 16.자 12-진정-0325300 결정(결정레집 2012-5, 261면).

918) 국가인권위원회 2013. 3. 20.자 13-진정-0052600 결정(결정레집 2013-6, 275면).

919)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6-진정-0268800 결정(결정레집 2016-9, 447~448면).

920)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0.자 16-진정-0268800 결정(결정레집 2016-9, 444면).

921) 국가인권위원회 2016.8.4.자 결정(결정레집 2016-9, 255면).

922)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실시와 관련 사례 전파를 권고하였다.⁹²³⁾

2012년 11월에 권고한 사항으로 식당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출동한 경찰이 얼굴이 붉다는 이유로 경찰이 술 먹었다고 하면서 진정인이 “짹새 새끼 옷 벗긴다.”라는 욕설을 하였다. 경찰이 이에 “야, 이 새끼야.”라고 한 것은 경찰관으로서 직무수행 중 폭언이나 강압적인 어투 및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²⁴⁾

경찰관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비록 발생한 사건이 험악한 사건 또는 욕설이 오가는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경찰관의 욕설 사용은 통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폭행행위 금지 교육 필요

경찰관의 폭행행위는 금지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관에게 피의자가 먼저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갑을 채워서 더 이상 폭행이나 위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후에 경찰이 피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행위는 형사절차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31조 제3항⁹²⁵⁾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23) 국가인권위원회 2016.8.4.자 결정(결정례집 2016-9, 256면).

924)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2.자 11-진정-0675800 결정(결정례집 2012-5, 380면).

925) 기존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은 2012년 폐지되었고 이의 내용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보완 되었다. 본 관련 규정으로는 동규정 제37조 현행범인의 체포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현행범인의 체포) ①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및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조 제1항⁹²⁶⁾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⁹²⁷⁾ 경찰관의 폭행행위 금지와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²⁸⁾

경찰관의 폭행과 관련한 또 다른 사례로 폭행협의를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한 후 진정인이 폭언을 하고 업무방해적 행위를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찰관이 자신의 모자로 진정인의 얼굴을 내리친 행위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 보호의 원칙⁹²⁹⁾과 제8조 폭행·가혹행위 등의 금지⁹³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³¹⁾

사.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1인 시위방해, 집회 장소 점거 등 집회방해, 부당한 불심검문이나 통행 방해, 집회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집회 방한용품 탈취행위, 집회금지통고, 집회과잉진압,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사진 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의료진에 대한 공격, 경찰봉의 위법한 사용, 위법한 살수차 사용, 색소물포 사용, 방패로 안면 폭행, 위법한 채증, 변호인 조력권 침해, 다목적 발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나 최루액 등 경찰장비 부적절한 사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과 사례가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바 있다.

④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제6항,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926)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27) 국가인권위원회 2012. 4. 13자 11-진정-0531200 결정(결정례집 2012-5, 239면).

928) 국가인권위원회 2012. 4. 13자 11-진정-0531200 결정(결정례집 2012-5, 235면).

929)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93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 등의 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가혹 행를 포함하여 신체에 한 부당한 침해 는 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931)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3.자 12-진정-0728600 결정(결정례집 2012-5, 295면).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상황과 사례 및 법원⁹³²⁾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규가 교육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상명하복식 업무수행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상급자나 하급자 역시 법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알고 명령을 내리고 따를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아. 전투경찰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환자 경찰에 대한 적절한 조치교육과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격오지에서 근무하던 전투경찰순경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도 추가진단을 받지 못한 채 만기 전역하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 대원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환자 대원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유기적으로 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조치를 부실하게 하고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대원에 대한 진료상황, 일정, 관리상 정보교환 등 지정병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³³⁾

2. 검찰 인권교육 권고 영역

가. 범죄발견 단계

1) 자살사고 방지 대책 마련

검찰은 수사시 발생하는 자살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⁹³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932) 특수한 판단 및 전문적인 검토가 요청되는 영역과 관련하여 특히 기업과 관련한 인권문제 등 환경법원이나 노동법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933)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23.자 12-진정-0837000 결정(결정례집 2012-5, 417면).

934) 2018년 최근 수사도중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은 인권 침해 신고센터의 전면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실시하며 현장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검찰총장은 강조하기도 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1/2018121102466.html?utm_source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여 자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의 수사도중 자살한 이가 83명에 이르고,⁹³⁵⁾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노회찬 의원, 이강남 광동병원 이사장,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 2017년, 2018년에도 자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⁹³⁶⁾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바⁹³⁷⁾ 자살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³⁸⁾

검찰 조직 내부인의 자살 또는 사망사고 및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고 등의 직접적인 원인과 표면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조직 자체 또는 조직 외적인 요소 전반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진단과 평가를 적절히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인권센터의 활동을 외부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활동과 연대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대질조사시 전과질문 주의

검찰은 조사시 전과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진정인이 대질조사 중에 전과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⁹³⁹⁾ 조사를 하면서 검사가 수사기록에 나오는 사문서 위조 등의 전과기록을 언급하며 고소인과의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명예를 훼손하는 인권 침해이자⁹⁴⁰⁾ 제3자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질 경우 인격적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⁹⁴¹⁾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

=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18.12.13.)

935) 국가인권위원회 2016.9.28.자 결정 15진정0765001 (결정레집 2016-9, 31면).

936) <http://news1.kr/articles/?3496283> (검색일: 2018.12.13.)

937) 국가인권위원회 2016.9.28.자 결정 15진정0765001 (결정레집 2016-9, 32면).

938) 국가인권위원회 2016.9.28.자 결정 15진정0765001

939) 국가인권위원회 2016.3.2.자 결정 15진정0983500

940) 국가인권위원회 2016.3.2.자 결정 15진정 0983500 (결정레집 2016-9, 461면).

941) 국가인권위원회 2016.3.2.자 결정 15진정 0983500 (결정레집 2016-9, 463면).

나. 수사진행 단계

1)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응급구호 조치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관과 검찰직원은 피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속영장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피의자의 신체 상태를 잘 살펴서 병원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의자의 신체를 들어 올려 역지로 검찰청으로 이동하거나 인권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구치소로 이동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피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선 경찰과 검찰은 우선 응급구호를 먼저 실시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등 인권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⁴²⁾

2) 부당한 강제소환 금지 교육 필요

임의조사 시에 강제소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감찰조사는 임의조사이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를 포승과 수갑이 채워지는 강제소환을 하는 것은 임의성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환과 관련하여 소환이유, 소환목적, 소환요구자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형식이며 조사 대상자의 동의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감찰조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용자를 강제소환하지 않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⁹⁴³⁾

3) 조사 중 일정한 메모행위 금지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조사 중에 메모행위를 금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수사의 밀행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조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피의자에게 메모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⁹⁴⁴⁾이므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허용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942)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30.자 13-진정-0140000 결정(결정레집 2013-6, 331면).

943) 국가인권위원회 2014. 8. 1.자 14-진정-0068700 결정(결정레집 2014-7, 416면).

944)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2.자 13-진정-0573200 결정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사건⁹⁴⁵⁾에서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법률유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여 검찰총장은 권고를 수용하고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⁹⁴⁶⁾ 재차 권고하기도 하였다.⁹⁴⁷⁾

참고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9조의 2⁹⁴⁸⁾에서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⁹⁴⁹⁾에서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메모는 허용하고 있다.

이후 대검찰청 개혁위원회는 2017년 10월 이와 관련하여 다시금 피의자 메모를 권고하기도 하였으며 수사에 방해가 우려 되지 않는 한 이후 피의자도 메모가 가능하도록 법무부를 거쳐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도 하였는데,⁹⁵⁰⁾ 이와 관련한 직무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서명 날인시 강요행위로 행동자유권 침해 관련 교육 필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서명 날인과 관련하여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

945) 국가인권위원회 2011. 11. 23. 10진정0421700

946) 국가인권위원회 2014. 8. 1.자 13-진정-0840900 결정(결정례집 2014-7, 401면).

947)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2.자 13-진정-0573200 결정(결정례집 2014-7, 415면).

94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④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1.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949)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제21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④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간단한 메모는 제외한다.

950) 검찰 조사받을 때 신문내용 메모할 수 있게 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4/201810040264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18.10.23.)

하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조서 작성자가 피의자의 서명날인 거부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귀가를 방해함으로써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서명날인을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⁵¹⁾

다. 사회적 약자 보호

1) 장애인

가)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폭행, 학대, 금전착취가 장애인시설종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보조금 유용 및 사적 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장에게는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유용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권고되었고 구청장에게는 불법적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 조치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항목을 포함할 것 그리고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검찰총장에게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상해, 폭행, 학대 행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보조금에 대한 용도의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고발이 된 바⁹⁵²⁾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은 시와 구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이 함께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방지 교육 필요

장애학생과 관련한 조사시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등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사건 처리시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신뢰자

951) 국가인권위원회 2016.10.27.자 결정 16진정0320000/0320200 병합 (결정례집 2016-9, 478면).

952)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5.자 13-직권-0002400 결정(결정례집 2014-7, 645면).

동석 기회부여 등 신퇴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수정·조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최종확인서도 읽어 보지 않는 등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게 주의조치하고 학교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⁹⁵³⁾ 물론 이는 장애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나 처분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권고한 사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부 및 해당 학교 관계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는 향후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므로 이와 더불어 검찰 역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더불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장애인 조사시 신뢰관계인 동석확인 교육 필요

장애인 조사시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조사시 장애인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없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고소장 작성 경위와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왜 거부하지 못하였는지 등을 질문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62조의 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조항⁹⁵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사법 또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953) 국가인권위원회 2014.11.17.자 14-진정-0309200 결정(결정례집 2014-7, 796면).

954)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 제26조에 위반⁹⁵⁵⁾한 것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조사를 받는 경우에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과 관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⁵⁶⁾

2) 외국인

가) 외국인 피의자 접견·교통권 침해방지 교육 필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접견 및 교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고지 등 관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시 자신의 국가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권과 교통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범죄수사규칙」 제241조,⁹⁵⁷⁾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4조,⁹⁵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7조⁹⁵⁹⁾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

95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956) 2012. 10.22.자 10-진정-0546300 결정(결정레집 2012-5, 268면).

957)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외국인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사기관 통보) ①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94호 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95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4조(외국인 수사) ①외국인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해당국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구속시 본국의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권 보장 관련 규정과 절차에 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⁶⁰⁾

나. 외국인 보호시설 구금 외국인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외국인 보호시설 구금 외국인 및 관련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 피의자가 출입국공무원에 의한 강제력 행사차원에서 시행된 폭행으로 늑골 골절 상해를 입은 바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4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소속직원에게 인권 보호 방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⁶¹⁾ 이와 관련하여 본 사건은 비록 검찰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은 아니지만 검찰은 법집행기관이자 법감독기관으로서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을 법무부와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소장⁹⁶²⁾ 등과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개인정보보호

1) 전과사실 포함 구속통지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구속통지에 전과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구속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구속통지서에 피의자의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민감한 정보를 가족이 알 수 있게 한 것이므로⁹⁶³⁾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⁹⁶⁴⁾ 및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959)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7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 ①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960)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11.자 결정 14진정1033000 결정(결정레집 2015-8, 336면).

961)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7.자 14-진정-0061300 결정(결정레집 2014-7, 597면).

962)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7.자 14-진정-0061300 결정(결정레집 2014-7, 604면).

963)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자 결정 진정0889100

96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체포의 통지) ①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할 수 있다.⁹⁶⁵⁾ 이와 관련하여 가족에게 전과사실을 알게 한 유사사례들이 발생한 바 있는데,⁹⁶⁶⁾ 역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유사사례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체포사실 통지의 취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⁶⁷⁾

불필요한 전과사실이 구속통지서에 포함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송되는 유사 사례가 2013년 9월에도 발생한 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아울러 개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⁶⁸⁾

2)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교육 필요

디엔에이 감식시로 채취 등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대상자에게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채취가 어려워진 경우 이를 제3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차치하더라도 제3자에게 그 대상자가 디엔에이 감식시로 대상자임과 그 사유를 알게 하는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였다.⁹⁶⁹⁾

3)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피의자 특정금지 등 보도자료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

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26., 2008. 1. 7.>

②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965) 국가인권위원회 2015.6.17.자 결정 14진정0889100 결정/ 2006.5.18. 06-진정-169/ 2012. 3.26. 10-진정-0694700/ 2013.9.30. 13-진정-0211700 (결정례집 2015-9, 333면).

966)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30. 13-진정-0211700, 2012. 3. 26. 10-진정-0694700, 2006. 5. 18. 06-진정-169

967) 국가인권위원회 2015.6.17.자 결정 14진정0889100 결정(결정례집 2015-9, 334면).

968)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30.자 13-진정-0211700 결정(결정례집 2013-6, 358면).

969) 국가인권위원회 2014. 9. 1.자 14-진정-0217200 결정(결정례집 2014-7, 423면).

하다. 400명을 상대로 고소한 인터넷 기자, 개고기 반대에 대한 댓글 관련 700명을 고소한 사람, 세월호 사건 관련 허위인터뷰 후 자신에 대한 댓글로 비방한 사람 1500명을 고소한 사람 등으로 보도자료에 제시하여 당사자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공보준칙을 위반하였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⁹⁷⁰⁾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⁹⁷¹⁾

마. 기타 인권 침해 및 불법행위

1) 비하발언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교육 필요

비하발언을 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너 국어 못하냐?”, “너는 사람 말을 이해 못하냐?”, “너는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 등과 같이 조사과정에서 수치침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비하발언을 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전파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⁹⁷²⁾

2) 차폐시설 미비 화장실 인격권 침해 개선필요

화장실 차례시설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검찰청 ○○지청 구치감 내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와 소리가 차단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구속피의자에게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바, 구치감 내 화장실 이용시 신체 노출이 되지 않고 냄새와 소리가 차단 될 수 있도록 시설과 관련하여 개선 조치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한 바 있다.⁹⁷³⁾

970)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제4조(인권 보호의 책무), 제9조(기소 전 공개금지), 제10조(예외적 공개), 제13조(일반원칙), 제14조(표현방법)

971) 국가인권위원회 2016.7.20.자 결정 15진정0288800 (결정례집 2016-9, 465면).

972) 국가인권위원회 2016.7.20.자 결정 16진정 0188100 (결정례집 2016-9, 472면).

973) 국가인권위원회 2015.6.17.자 결정 14진정 0574300 (결정례집 2015-8, 327면).

제8절 소결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⁹⁷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인권을 보호를 확인하고 보호하며 보장하는 국가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일정부분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침해는 장소, 시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인권 침해의 방지와 인권 보호는 어느 한 개인 또는 어느 한 국가기관만의 노력으로 온전히 달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에 항상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점검하며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역할과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인을 검거하고 범죄인의 범행을 통하여 사람(국민)의 생명, 신체, 인격, 사생활 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활동 가운데 발생하는 생명, 신체, 인격, 사생활에 대한 침해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국민에게 더욱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확인 및 보장,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보장 등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의 다양한 법규와 훈령 등에서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다양한 법규와 훈령 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실천하고 집행하거나 판단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적절한 인식과 지식 또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훈련미흡 또는 자세와 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 관련 조직이 법에 따른 인권을 보호하거나 인권을 보장하기에 부적절한 내적 또는 외적인 압력을 받거나 스스로 인권 보호와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개인이나 조직 모두 인권의 보호와 인권 보장과 관련한 공동의 논의와 참여를

974)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인권의 보장과 보호는 어려움에 처하거나 인권 침해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경찰과 검찰의 다양한 인권 침해 관련 사례 중에서 생명과 신체보호 및 안전 관련 사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침해사례 등은 그 이전에도 많이 발생한 사례이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지만 제3·4·5공화국에서도 생명권 침해 등 다양한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제6공화국 이후에도 욕설과 과도한 수갑 사용, 서명날인 강요, 심야조사 등 관련 침해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체의 보호 및 자유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1948년 제정 「헌법」에서부터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한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 원칙 등과 함께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규정되었고 1963년 「헌법」에서는 진술거부권이 규정되기도 하였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행복추구권 및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이 신설되었고 1972년 제4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된 구속적부심사제도 등이 다시금 규정되었다.⁹⁷⁵⁾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적법절차의 보장, 체포·구속의 고지, 가족 등への 통지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헌법」상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체의 자유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당한 임의동행, 부당한 현행범 체포, 과도한 수갑 사용, 과도한 신체수색, 진술거부권 미고지, 구속영장 미제시, 피의자 호송 중 폭행행위,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적법절차 위반 부당한 가스분사기 사용, 부당한 강제소환 등 신체의 자유와 보호를 침해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사생활의 자유 및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하였지만 현재에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피의사실 고지, 탐문수사 및 방문조사, 전과사실 포함 구속통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수사기관의

975) 권녕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425~426면.

침해사례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례 중에서 성적 소수자와 관련한 사례와 관련하여 경찰은 (구)「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차별금지 등의 규정을 두었고,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법무부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있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규정들은 포괄적인 원칙만을 서술하고 있을 뿐 성소수자가 형사절차에서 겪는 인권 침해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규정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경찰 인권 보호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그나마 존재하던 성소수자를 명시한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구체적인 차별 현실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한 모욕, 성희롱, 차별적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침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적인 것으로 보아 표적수사를 하거나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방해하거나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경찰은 「헌법」을 수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명목상의 중립이라는 이유 아래 사태를 방관하거나 결과적으로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편을 들어주어 사회적인 혐오와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은 경찰이나 검찰의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결과이기도 한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를 예방, 금지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구체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담기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경찰청은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의를 제작하고 있으나⁹⁷⁶⁾ 이것이 일선 경찰들에게까지는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 검찰을 포함 형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연수에서 필수적으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경찰서, 검찰청에 성소수자 연락담당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연락

976)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 293면.

담당관(LGBTI liaison officer)이란 어떤 단체/기관과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상호 대변하는 방식으로 접점(contact point)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⁹⁷⁷⁾ 이런 연락담당관을 통하여 각 기관 및 지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이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하여 다양한 장애인 가운데 형사 절차에서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된 부류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통칭한 표현)이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일 때는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반대로 피해자 신분일 때는 피해를 주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형사 절차에서 이들을 조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들의 의사소통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형사 절차에서 의사소통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과 검찰이 설명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26조 제6항에서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기관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확인 의무, 조력 내용 고지 의무,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것과 같이 평가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경찰 인권 보호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의사소통조력인에 대한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발달장애인이 겪는 구체적인 차별 현실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편의의 내용이 다르다. 각 유형의 특성을

977) 나영정 외, 위의 글(주 484), 96면.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대검찰청에서 2014년 10월 '장애인 피해자 인권 보장 조사 가이드'를 만들고, 경찰청에서 2015년 7월, '장애인 수사 매뉴얼'을 만든 것은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을 꾸준히 교육하다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이상 꾸준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기대해 본다.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확인점검과 인권 침해 방지 교육 등을 관련 유관기관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이해 및 공감의 적절한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례교육과 인식 개선 교육이 요청된다. 피의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분노출 등 성 관련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남성 등과 관련하여서도 함께 검토되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 탐문수사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특별한 보호 조치나 고지사항과 설명 등과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인종차별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에 대한 금지, 임의동행과 관련한 설명이나 고지사항 미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 이외에도 외국인 범죄피해와 관련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도 함께 정보가 교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금지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금지가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집회신고의 일괄금지 등 기본권 침해⁹⁷⁸⁾나 집회 시에 발생하는 신체의 보호 및 자유침해 관련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의 인격발현을 위해 타인과 함께 모이는 것 그 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자,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

978) 국가인권위원회 2016. 3. 28.자 결정 14진정0464100 집회금지에 의한 인권 침해: 특정장소에 대한 집회신고의 일괄금지 통고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결정례집 2016-9, 386면).

소이다.⁹⁷⁹⁾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헌법」 자체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허가제 금지), 집회 자유 제한의 목적인 공익은 집회의 자유에 비례하는 ‘중요한’ 법익이어야 한다는 점(중요한 법익 보호),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직접·명백·현존 위험의 원칙), 집회 금지와 해산은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라는 점(집회 금지의 최후수단성)등 집회 자유 제한시 특별히 준수되어야 할 원칙들이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절 집회의 자유는 인권·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집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은 전도되어 집회는 원래 금지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경찰 행정은 운용되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⁹⁸⁰⁾에 대한 원칙은 사라지고 집회는 불법시되었다. 특히 경찰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동원하여 집회를 막고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집시법」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 「형법」은 물론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소음진동규제법,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까지 동원하여 규제했다.

집회에 대한 괴롭힘 수준의 간섭과 방해도 자주 있었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규정을 남용해서 집회 장소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집회 용품 반입을 막거나 하는 등의 행위,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도 해산명령을 계속 남발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협박하고 위축시키는 행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화단 설치’등 집회가 개최될 공간에 조경을 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막는 행위 등 변형적인 집회 방해의 방식도 나타났다.

그 외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물리적 수단인 차벽, 살수차 사용, 평화적 집회 참가

979)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980) 2010년 6월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사무소(OSCE/ODIHR)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가 채택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제2판은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하거나 차단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다(평화적 집회 지침 Section A. 1. 3).

자들에 대한 경찰봉 구타 및 방패 공격 등 집회 참가자들을 적으로 상정한 듯한 진압이 다수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급기야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라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문제, 경찰 인권교육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1) 우선 법적인 문제로 현행 보호의 대상 여부를 적법/위법 구도로 나누고 있는 현행 「집시법」 제1조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 집회는 보호되며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 자체로 선언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 집회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 「집시법」은 집회방해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와 경찰 등의 경우 처벌을 달리하여⁹⁸¹⁾ 경찰 등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찰이 집회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없었다. 이런 불처벌과 면책이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 현장에서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 지적해도 오히려 “고소할테면 고소해보라”는 식의 대응도 자주 목격되었다. 위법한 경찰 작용을 한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관행이 형성되어야 한다.
- (3)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와 처벌이 사라져야 한다. 평화적으로 도로를 행진한 사람들에게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단지 집회에서 걸었다는 이유로 몇백만원씩의 벌금을 물어내는 것이 반복되는 사회는 집회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즉시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 (4) 집회 현장에서 충돌을 완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들이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으로 충돌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잦았다. 충돌을 야기하여 ‘폭력집회’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외에도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적대적 의식도 한 몫을 했다.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경찰은 집회 보호의

9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는 교육과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에 의한 기본적 인권 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며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인식개선과 지식함량제고 및 인권감수성 계발, 조직차원의 인권 보호 개선사항 논의 및 반영, 인권 보호를 위한 개별기관 차원을 넘어선 개인과 민간기관 및 관련기관 간의 공동논의 및 협력방안 추진 등 인권교육과 관련 규범의 준수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인권 침해 방지와 인권 보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한 개인, 한 개별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되기는 어려운 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다양한 시민단체, 깨어있는 개인들, 인권 관련 국제기구 등이 모두 함께 지켜보고 서로 교육하며 상호 평가하는 등의 끊임없는 교류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이 모든 인간의 권리로써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가장 긴밀하게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할 국가기관이 보호하지 않거나 방관 또는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권을 인간의 권리의 관점을 인간의 의무로 전환하여 국가기관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지키고 부담하여야 할 의무적⁹⁸²⁾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982) Aaron Xavier Fellmeth, *Paradig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XFORD, 2016. p.18

제 5 장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 평가

구정우·김두년·정진원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 평가

제1절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1.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가.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작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조사, 예측, 평가하는 영향평가로, 이를 통해 인권 침해 및 차별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특히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 등과 같은 국가적 단위의 목적과 개인의 인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에 의한 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¹⁾

행정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국가기관은 위「헌법」률심사제도, 「헌법」소원제도, 심급제도, 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인권 침해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작용이 행해지기 전에 미리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국가작용을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인권영향평가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며,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구체

1)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 등 기타 공식조직을 대상으로 그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화될 수 있다.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를 사전에 제거 또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작용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나.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활용

인권영향평가는 단기적 평가 제도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영향력을 관찰하고, 실질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권리주체 및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들과의 대화와 인터뷰 조사 자료 없이 데스크 리서치로만 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제도나 정책이 가져올 실질적 영향력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평가 과정 중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과 권리주체들은 스스로가 가진 권리를 인식하고,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집단의 인권을 보존하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²⁾ 또한 인권개선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또는 제도의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평가에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따르며, 비차별, 참여, 권한, 투명성 등으로 구성된 인권기반적 접근을 바탕으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인권영향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³⁾ 먼저 첫 단계는 사전 분석을 통해 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어떤 집단이 영향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영향받은 권리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는 범위선정으로, 연구문제를 정하고, 평가담당자를 선정하고, 평가 장소 및 시간 등의 계획을 설정하여 평가 구조를 짜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로 데스크 리서치, 이해당사자와의 상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포함한다. 네 번째는 분석 단계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추어 해석하며, 정책 또는 제도가

2) Götzmann, Nora, T. Bansal, E. Wrzoncki, C. Poulsen-Hansen, J. Tedaldi, and R. Høvsgaar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ance and Toolbox*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Copenhagen. 2016).

3) MacNaughton, Gillian, and Lisa Forman. "Human Rights and Health Impact Assessments of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omparative Study of Experiences in Thailand and Peru". *Journal of Human Rights* 14.1. 2015. pp. 124-148.

가지는 인권적 영향력을 측정한다. 특히 영향력을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즉각적 파급력이 있는 영향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향력도 파악해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결론을 짓는 단계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 결정과 권유 사항으로 중심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리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뷰과정을 통해서 평가보고서의 권유사항을 추진하였을 때, 이 권유안이 가져오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전반적인 영향평가 과정도 돌이켜보는 단계이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기관의 정책에 대해서 뿐 아니라 개발관련 분야, 건강분야, 아동의 권리, 공공기관 및 사립기관 프로젝트, 국제거래 또는 투자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각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평가 목적 및 방법론, 분석기법, 이해당사자의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과 같이 특정 인권을 향상시키거나 특정 정책에 초점을 맞춰 대체로 사전에 진행되는 반면, 기업 부문의 인권영향평가는 기업 활동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에 초점을 두어 사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영향평가를 문서화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이해와 책임을 증진시켜 기업과 권리주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공고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함이다.⁴⁾

다. 인권영향평가 운영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논의 중인 곳은 지역적으로 광주, 서울, 수원 등이 있다. 아직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진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현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성북구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2012년에 인권증진기본조례를

4) Götzmann, Nora, T. Bansal, E. Wrzoncki, C. Poulsen-Hansen, J. Tedaldi, and R. Høvsgaar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ance and Toolbox*.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Copenhagen. 2016.

제정하였고, 조례 내부 내용에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⁵⁾

광주광역시는 2017년 10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였다. 2018년 7월 기준 조례안 10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중 6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⁶⁾ 조례제정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추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하여, 2018년 인권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였다.⁷⁾ 수원시의 경우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민 인권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⁸⁾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영향평가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용역을 발주하여 연구에 착수하였고⁹⁾, 경찰청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6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¹⁰⁾

해외의 경우 국가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공식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와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기관, 특히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구의 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침해 유형과 사례를 소개하는 문건을 꾸준히 발간해 왔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경찰의 경우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5) 성북 법무 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http://law.seongbuk.go.kr/lims/front/law.html?pAct=view&pPromulgationNo=2184>. 2018.11.07 방문.

6) 중앙일보 『광주시 광역지자체 첫 인권영향평가 도입한다』. 2017.10.20. <https://news.joins.com/article/22033565>, 광남일보 『광주시, 광역지자체 첫 인권영향평가』. 2018.7.15.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31643870297957010>

7) 연합뉴스, 서울시, 환경·교통·성별 이어 '인권영향평가' 도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3/0200000000AKR20180213194600004.HTML>. 2018.02.14.

8) 휴먼시티 수원. 인권영향평가. <http://www.suwon.go.kr/sw-www/www02/www02-11/www02-11-11.jsp>. 2018.11.07 방문.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2018년 주요 인권 현안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tpage=2&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2490>. 2018.11.07. 방문.

10) 경찰청. 수사권 가진 경찰의 인권 침해, 사전 예방으로 해결 한다,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20452&menuNo=200488>. 2018.11.07 방문.

라. 우리나라 인권영향평가의 개선점¹¹⁾

인권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인권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인권영향평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로서 단기적이거나 임시적인 평가로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인권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권 침해 유형을 탐지하여 방지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했던 피해자들을 식별하여 필요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는 그 평가를 수행할 때, 국민의 의견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이 평가에 반영되어, 평가 결과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도 평가에서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 존중은 개인의 주요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는 영향은 없는지를 평가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한 평가 절차와 정확한 기준이 영향평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의 논의에 대한 세심한 기록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영향평가의 기법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들이 실제 영향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과 향후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사후평가와 리뷰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인권영향평가 기법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11) 장인호, 인권영향평가 확대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성균관법학 29, 2017.

2.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해외 사례 분석¹²⁾

가. 영국 경찰 인권 안내서¹³⁾

영국 경찰 인권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가 인권법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본 안내서는 2008년 경찰당국이 1998년에 제정되고 2000년부터 효력이 발생된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 그리고 2006년 ‘경찰 정의법(the Police and Justice Act)’에서 경찰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998년 인권법에 의해 부여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언급한 점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었다. ‘경찰 정의법’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권에 관한 유럽협정(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과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을 그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안내서 내용은 경찰이 준수해야 할 인권법 내용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표 5-1〉 1998 인권법에 명시된 인권법 조항

구분	설명	조항
절대적 권리	전시와 긴급 상황에서도 절대 제한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권리	2조. 생명권
		3조. 고문 금지
		4조 1항 노예 금지
		7조. 법에 의거하지 않은 벌을 받지 않을 권리
특수한 권리	절대적 권리보다는 강제성이 약하지만 전시와 긴급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권리	4조 2항, 3항. 강제 노동 금지
		5조. 자유권과 안전권
		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9조 1항.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2조. 결혼 할 권리
		2조 1항. 교육을 받을 권리
		3조 1항. 자유 선거권
		1조 6항. 사형제 폐지

12) 본 사례연구 집필에는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손누리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13) Association of Police Authorities, Human Rights Guidance for Police Authorities: Monitoring Compliance with the Human Rights Act 1998, 2009.

구분	설명	조항
자격이 주어진 권리	공익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	8조. 사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
		9조. 사상과 종교를 표현할 권리
		10조. 표현의 자유
		11조. 집회 및 조직의 자유
		14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1조 1항.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

출처: Association of Police Authorities. "Human Rights Guidance for Police", 2009, pp. 7-8.

본 안내서에서 제시한 인권법 조항 내용 중 경찰에 적용되는 인권법의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2〉 경찰에 적용되는 인권법 주요 내용

구분	인권법	주요 내용
1	사람 보호	- 경찰은 생명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범죄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경찰은 그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실제적이며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방법을 실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자살과 같이 반드시 범죄적인 행위가 아닐 때도 경찰에게 부과됨. - 생명의 위험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의무 위반임.
2	학대 금지	-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 또는 벌은 절대적으로 금지됨. 여기서 고문은 매우 심각하고 잔인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비인간적 행위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중요 정보나 자백을 받고자하는 행위 또는 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함. -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도 비인간적 행위로 인식하며, 괴로움, 고통, 열등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적 가치를 손상시킬 경우, 이는 모욕적 행위로 정의됨.
3	무력 사용	- 불법적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체포 또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 이상으로 치명적 무력이 사용되는 경우, 무력은 적절한 정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은 정도여야 함. -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권에 관한 유럽협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무력 및 화기 사용에 대한 유엔 기본 원칙에 의하면, 자기 방어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심각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저항을 억제하고 체포하기 위한 목적,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화기를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됨. - 화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경찰은 반드시 자신이 누구임을 명시하고, 화기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해야 함. 상해와 손해를 최소화하고 상해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과 의료적 지원을 보장해야 하며, 경찰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한 화기 사용과 화기를 사용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지침과 그 상해를 인식하여야 함. - 경찰은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며, 개인의 안전이 위협당할 때나 보안유지상 필요할 때만 사용가능함.

구분	인권법	주요 내용
4	경찰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의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	• 경찰에 의한 무력과 화기 사용에 의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가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보고서는 주무관청에 송부되어야 함. • 이 경우 경찰관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며, 반드시 적절하고, 공정하며 철저하게 진행되어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 조사범위는 해당조직과 수행계획을 포함하며, 무력을 사용한 사람과 그 지시자가 받은 훈련, 지침, 의사소통이 되었는지 등도 포괄함. 경찰관에 대한 조사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보호하고 사망사인을 밝히기 위해 적절한 기관에서 진행해야하며 사망자의 가족 또한 참여가 필요함.
5	공공질서	• 모든 사람은 평화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는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 될 수 있음. 단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제한을 정당화 할 수 없음. • 다른 위협으로 인해 시위가 와해되거나 분열될 소지가 있는 경우, 경찰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것은 절대적 의무는 아님. • 평화시위는 먼저 정부 기관에 고지되어야 하며, 평화시위에 대한 금지조치는 다른 조치로 막을 수 없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만 시행될 수 있음.
6	범죄 수사	• 대부분의 범죄 수사는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수사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야 함. 정보, 데이터, 샘플 등을 보유하는 것은 사생활의 상당부분을 침해하는 소지가 되기에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함.
7	감시	• 모든 비밀 수사는 반드시 2000년 수사권에 대한 규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을 따라야 함. • CCTV를 사용하는 것과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이슈를 일으킬 수 있기에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함. • 경찰의 감시로 인해 사생활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재판소나 기관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함.
8	정보원과 비밀 요원	• 경찰이 정보원과 비밀요원을 수사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들이 범죄를 조장해서는 안 됨.
9	탐색, 압수	• 탐색과 압수는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필요시에 행해져야 함. • 탐색과 압수에 대한 동의는 실제로 동의하거나, 고지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지 않음.
10	체포와 구금	• 모든 사람들은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당할 수 없음. • 구금과 체포는 반드시 법에 의거해야 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론이 있어야만 체포를 할 수 있음. • 모든 사람들은 구금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함. • 구금 중인 수감자도 의료진찰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건강은 보호되어야 함. • 구금자의 돈, 귀중품, 옷 또는 다른 소지품들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함.
11	체포 및 구금 이유	• 모든 체포는 사전에 피고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되어야하며, 체포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내되어야 함. • 구금된 피고는 그들의 권리와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아야 하고, 체포의 이유와 체포 시점, 경찰관의 신분, 그리고 구금될 장소는 기록되어야 함. • 어린 아이와 같이 약자들이 구금될 경우,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에게 그들의 체포, 구금 사실을 알려야 함.

구분	인권법	주요 내용
12	변호사와 접견	- 모든 구금자는 체포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기본적 권리로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함. - 용의자와 변호사의 대화내용은 변호사가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등의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비밀로 지켜져야 함.
13	심문	- 폭력, 위협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기된 질문은 용의자의 결정과 판단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함. - 모든 용의자는 질의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심문 장소와 시간은 기록되어야 함.
14	재판 출석	- 범죄로 체포된 모든 피고는 적절한 방법으로 법원 앞에 출석할 권리가 있음. - 재판에 출석하기 전 구금기간은 최대 4일을 넘지 않아야 함. - 법원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의 석방을 명령할 권한이 있음.
15	보석	-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금되어서는 안 되며, 보석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 가정임. -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석이 금지됨. - 보석은 조건부일 수 있음.
16	아동	- 아동의 체포, 구금은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방법이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행해져야 함. - 아동범죄자의 신분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범죄자의 기록은 반드시 비밀로 다루어 져야 하며, 제 3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됨. - 보호소에서 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하며,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의료적, 신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아야 함. - 아동의 보호자는 그들의 아동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고지 받아야 하며, 판사와 관련기관은 지체 없이 석방문제를 고려해야 함.
17	피해자	- 피해자는 반드시 그들이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고, 공정하게 대우되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을 자격이 있음. -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시점과 경과를 보고받아야 함.

출처: Association of Police Authorities. "Human Rights Guidance for Police", 2009, pp. 18-22.

안내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 인권법 재정으로 부과된 새로운 의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의 모든 성과는 모니터링되어야 한다는 것과, 발생한 문제가 인지되고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찰당국과 경찰사이에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문제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된다. 경찰의 성과 모니터링에 관하여는 인권법의 이행은 필수적이며 선택사항이 아니지만,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인권법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2단계로 구분되는데 우선 모니터링되는 경찰의 행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의 실질적 절차 마련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¹⁴⁾

14) Association of Police Authorities. Human Rights Guidance for Police Authorities:

본 안내서는 경찰의 인권법 준수에 대한 평가 기준 또한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기준의 적용은 각 기관별로 다양하며, 본 안내서에 설명되어있는 최소 기준과 모범 수행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은 적용 가능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기관에서 제안한 기준은 각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고, 결정한 적용 수준에 대하여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기관별로 적용수준은 차이가 있으나 경찰의 업무가 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되어야 할 공통의 영역을 아래 표와 같이 명시하였다.

〈표 5-3〉 경찰의 업무 평가 영역

구분	내용
훈련	• 훈련 교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훈련은 인권원칙은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하며, 이해가능하고 실제 적용가능 함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함 • 정기적이고 업데이트된 인권 훈련이 제공되어야 함
지침	• 지침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어느 경찰 기관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인권법을 모든 지침들이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인권영향평가 형식을 따르며, 충분히 이해 가능해야 함 • 지속적으로 지침이 업데이트 되고 있음을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지침은 가능한 한 경찰관들이나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함
경찰에 대한 불만사항과 규율 또는 시민의 행동	• 경찰에 대한 불만사항과 규율 또는 시민의 행동은 인권법 준수에 대한 경찰의 업무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임 • 경찰에 제기된 불만의 추세와 패턴을 검토해야 함 • 경찰이 부정적 의견과 건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가해야 함
인권 인식	•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경찰 내 인권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경찰의 인권에 대한 노력을 주장하는데 중요함 • 인권에 대한 인지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는 않으나 설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음
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보고와 정보	• 인권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보고는 매우 중요한 방법임 • 타 관련기관으로는 보호소 방문자, 경찰감찰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IPCC), 왕립경찰지구대(Her Majesty's Inspectors of Constabulary, HMIC), 감시위원실(Office of the Surveillance Commissioner), 개인정보법원(the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 국립경찰력증진기관(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NPIA), 평등과 인권위원회(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 등이 있으며, 지자체도 매우 중요한 정보원임

출처: Association of Police Authorities. "Human Rights Guidance for Police", 2009, pp. 12-13.

나.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10가지 지침¹⁵⁾

본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10가지 지침서는, 국제사면위원회와 각국의 경찰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로서, 유엔의 ‘경찰·범죄 정의와 인권 지침’을 근간으로 작성되었고 경찰에 국제인권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간략한 안내를 그 내용으로 한다. 본 지침서는 세계 인권선언의 조항을 바탕으로 경찰관이 지켜야 할 인권에 대한 기본적 규칙을 수립하였으며, 정부 관료, 국회의원, 기자, NGO 단체들에게 경찰 훈련과 교육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알리고자 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본 지침서에 제시된 10가지 인권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¹⁶⁾

우선 1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여성, 난민,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법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권과 신체적 안정권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누구도 임의적 체포와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할 수 없다. 또한 법에 의거하여 자유권을 빼앗긴 모든 사람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와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누릴 자격과 공정한 재판, 이동의 자유, 평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2조에서는 경찰은 공감과 존중의 자세로 모든 피해자를 대해야 하며 특히 그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여기서 피해자는 법 위반으로 정신적 신체적 상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과 그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로 규정되며, 경찰관은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그들의 안전을 위협과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고, 피해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필요한 도움 등을 지체 없이 피해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특히 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며, 폭력을 겪었던 여성들이 2차 폭력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수사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종, 피부색, 성, 성적 취향, 나이, 언어, 종교, 국가, 정치적 의견, 장애, 민족 등의 요소 또는 그들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15) Amnesty International. 10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8.

16) Amnesty International. 10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8. pp. 4-1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찰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조는 엄밀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적법한 무력사용이 불가결할 때, 경찰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하며, 최소한의 피해와 상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한 상해를 당한 사람에게 모든 가능한 의료적 조치와 도움을 최대한 빠르게 제공해야 하며, 상해를 당한 사람의 주변 친척 또는 친구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상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특히 경찰관의 무력사용에 의해 상해와 사망이 초래되었을 경우, 사건에 대하여 상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상관은 사건에 적합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4조에서는 비폭력적이지만 불법 시위를 한 경우, 무력사용은 허가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이 필수불가결할 경우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화기는 비폭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폭력적 시위의 해산을 위해서 다른 수단과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의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

5조의 내용은 치명적 해를 입힐 수 있는 무력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에만 사용 가능하며, 화기 사용은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에,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화기 사용이 법에 의거하여 가능한 경우도 5조에서 예시를 나열했다. 예를 들면 자신/타인을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경우, 심각한 범죄를 막기 위할 경우, 범죄자의 위협과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등이며, 이 상황에서도 화기 사용은 최소한도로 가능하다. 특히 경찰은 불가피하게 화기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 반드시 그들의 신원을 말하고, 화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의 경고가 범죄자에게 전달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며, 경찰이 불필요한 상해와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리고 화기 사용의 엄격한 주의를 위해 경찰은 화기와 탄약의 배당과 저장, 통제 등을 단속하고,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배당된 화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관이 업무 중 화기를 사용 했을 경우에 대한 조사와 보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6조의 내용은 체포는 임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체포되는 사람은 체포 시점과 이유를 알아야 하며, 체포 시점, 이유, 구금 장소의 정보와 경찰관의 신원 등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이 기록은 구금자 또는 그의 법률대변인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구금된 자의 재판은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구금자가 재판에 나타날 수 있는 보장이 있을 경우, 석방되어야 함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구금자는 자신이 구금되는 장소 정보를 공유 받아야 하며, 그 구금 장소를 관할하는 관리자와는 별도로 지명된 전문가들이 그 구금 장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구금은 보통의 경우 삼가되어야 하며, 망명 신청자는 구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구금될 수 없다.

7조는 모든 구금자들은 체포 후 그들의 가족, 법률대변인과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보통의 경우, 구금된 직후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학대, 고문, 실종과 사망의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죄가 선고되지 않은 구금자의 경우,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금자는 그들의 권리를 고지 받고, 그들에 대한 대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관은 체포, 구금 장소, 이송 및 석방 등의 정보를 구금자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금자의 가족은 구금자가 구금 장소로 이송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구금자는 그들의 법률자문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8조는 모든 구금자는 반드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고문, 학대도 구금자에게 가해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구금자는 그들이 경찰관의 통제 아래에 있기에 본질적으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벌에 대한 상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경찰관들은 구금 장소에서 일어나는 강간 및 성적학대는 고문으로 규정하며 용인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여성 경찰관은 여성 구금자의 심문에 참석하고, 여성 경찰관이 여성 구금자의 신체 탐색을 전담하여야 한다. 또한 구금자는 자백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거나 타인에게 대항하는 증언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

9조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처분이나 실종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으며 거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분이란 임의적이고, 법의 본질을 위반하는

처분이고, 실종이란 구금되었던 사람의 행방이 은폐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심각한 인권 훼손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공공기관, 시민단체, 군대도 실종을 명령할 수 없다.

10조는 10가지 기본 규칙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관과 검찰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경찰에 의한 모든 인권 침해는 반드시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누가 어떠한 항목을 위반하였는지, 경찰관이 죄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 다른 경찰관의 목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 법 집행에 관한 인권 지침서¹⁷⁾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위한 법 집행에 관한 인권 지침서는 유엔 인권사무소와 세계 변호사 협회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며, 인권법 훈련 방법과 인권법에 관한 개별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와 법의 해석과 적용에 바탕이 되는 출처 등을 수록하였다. 본 지침서는 총 16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4〉 유엔인권사무소 법 집행에 관한 인권 지침서 전체 내용 개관

구분	제목	주요 내용
1장	국제 인권법과 법조계의 역할	국제인권법의 범위와 출처, 그리고 의미와, 인권이 각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2장	주요 인권 조례 사례와 실행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1966&1989),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1966), 아동의 권리 협약(2000), 범죄와 집단학살에 대한 협약(1948),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1965), 고문,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협약(1984), 여성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1979) 등에 대한 해석과 실행 방안
3장	각국의 주요 인권 조례와 실행	아프리카, 미국, 유럽 등에서 이루어진 인권 조약의 내용과 그 실행방안
4장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장애물과 변호사, 검사, 판사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법
5장	체포와 구금에 대한 인권	적법한 구금과 체포를 설명하고, 기본적인 인권인 자유권과 안전권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6장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수사~재판)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과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을 권리와 수사 시 지켜져야 할 인권

17)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2003.

구분	제목	주요 내용
7장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재판·판정)	재판에서 마지막 판정까지 지켜져야 할 기본적 인권과 형벌의 제한, 법, 상소권
8장	자유권 보호에 대한 국제법	고문,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금지, 구금 중 외부와의 접촉, 구금과 이의 제기 감독 등에 대한 법률적 필요조건
9장	비구금형	비구금형에 대한 일반적 원칙, 비구금형에 대한 차별화된 사법적 절차와 그 실행 방법 등
10장	아동의 권리	아동 권리에 대한 기본적 원칙, 청소년에 관한 사법적 정의의 목적, 고소된 아동에 대한 법 집행, 아동의 자유권 박탈 등에 관한 설명
11장	여성의 권리	법 앞에 동등할 권리와 여성 권리, 생명권과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예와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설명
12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과 집회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한 법 조례
13장	법 집행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 법 앞에서 동등할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 인종, 성, 언어, 종교적 차별에 대한 법적 사례
14장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법원의 역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소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와 각 세부 권리에 대한 사례
15장	인권 침해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호,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호에 대한 의무
16장	비상사태에서의 법 집행	비상사태의 정의, 국제법에 명시된 훼손 불가능한 인권과 의무

출처: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2003.

위의 전체 챕터 중 수사 시 인권과 관련된 4, 5, 6장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¹⁸⁾

먼저 4장에서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독립된 기관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법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으로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결정적임을 언급하였다. 4장의 주요 내용은 사법부의 독립성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독립성을 각각 서술하였다.

- **판사의 독립성** : 판사는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고, 전문적 자격과 개인적 진실성에만 기초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재임 기간의 장기적 안정성과 적절한 보상을 보장받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18)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2003. pp. 113-250.

승진되어야 한다.

- **검사의 독립성** : 검사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간섭과 압력 없이 안전하게 직업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 앞에서의 평등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 보장 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법 집행 관계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 의한 인권 학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변호사의 독립성** : 변호사는 직업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또는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의뢰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변호해야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5장에서는 체포와 구금에 관한 인권법을 다룬다. 인간의 자유권과 신체적 안전권, 임의적 체포 및 구금, 구금의 적법성 등을 골자로 하며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간의 자유권과 신체적 안전권** : 체포와 구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행해져야 한다. 자유권과 신체적 안전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판사와 검사는 이를 반드시 지키고, 이를 위반하는 법률적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유권과 신체적 안전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적절한 이유 없이 자유권을 박탈당할 수 없고, 임의적 체포나 감금을 당할 수 없다.
- **임의적 체포 및 구금** : 인간의 자유권 박탈은 임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구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개인이 사람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타인의 폭력을 부추길 경우 등 필요성이 있을 때만 허용되며, 차별에 의해 자유가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 체포와 구금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구금은 합리적인 혐의에 기반 되어야 한다.
- **구금의 적법성 검토** : 재판 전 구금의 적절성은 범죄의 무거움, 도주의 위험, 증인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함께 지목된 피고와 협공의 가능성, 피고의 행동, 조사의 복잡성 등으로 결정이 되며, 석방은 재판 전까지 주어져야 한다. 구금 중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를 박탈당한 누구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제기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구금의 적법성을 결정하거나 구금된 자의 석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 구제는 피구금자가 이용 가능해야 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이루어진 구금은 구금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거절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6장에서는 민사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형사 절차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다룬다.

-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 :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의 실질적 보호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에 의존한다. 모든 피고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여성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남자와 법정에서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 : 공인의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 고문 또는 다른 학대는 수사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서 엄격하게 금지되며,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예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철저히 조사 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구금된 사람은 자유권 박탈에 대하여 법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과 개인적으로 상의할 수 있다. 용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 시인과 자백에 대한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되며, 묵비권을 행사 할 권리가 있다. 또한 심문은 항상 기록되어야 한다.

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경찰에 대한 인권 훈련 안내서¹⁹⁾

본 안내서는 경찰의 업무에 연관된 국제인권규범을 소개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인권 지침들을 개발하여, 경찰들이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본 안내서는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파트는 경찰이 지켜야 하는 인권에 대한 세부 정보와 출처 그리고 기준을 명시한 매뉴얼이고, 두 번째 파트는 인권에 관련된 주제와 팀 연습 지침과 훈련자들을

19)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 Trainer's Guide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 2002.

위한 조언 등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경찰들을 위한 가독성 높은 포켓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안내서의 흐름은 먼저 경찰에게 인권을 가르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고민하고 인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한 후, 경찰에게 필요한 16가지 주제의 인권 훈련을 소개하고 있다.

안내서의 내용 중 경찰 수사 및 인권 보호와 관련된 5가지 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5〉 경찰 수사 및 인권 보호와 관련된 5가지 주제와 그 주요 내용

주제	구분	내용
차별 금지	관련 규범	-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며, 경찰은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경찰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하며, 인종, 성, 종교, 언어, 피부색, 정치적 의견, 국가 등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 됨. - 특히 여성, 청소년, 노약자 등 특별한 대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여야함
	경찰관을 위한 지침	- 지역사회 또는 경찰조직 내에서 나타나는 민족적 인종적 고정관념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며, 민족, 인종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 소수자들의 요구와 불만 그리고 제안에 대하여 대변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함.
	고위 경찰관을 위한 지침	- 경찰관의 민족, 인종의 다양성 인식과 공정하고 차별 없는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을 조직함 - 다양한 민족, 인종 집단에 대하여 적절한 행동과 언어 태도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지시함 - 다양한 인종의 경찰관들을 모집하고, 지역사회의 소수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불만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고안함 - 차별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벌을 내리며, 다양한 집단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경찰관들에게는 보상을 줌
경찰 수사	관련 규범	- 모든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죄가 선고되기 전 무죄로 추정 받아야 함 - 고문과 다른 비인간적 대우는 절대적으로 금지됨 -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항상 비밀이 지켜져야 함 - 아무도 자백과 증언을 강요받지 않으며, 임의적이고 과도한 조사 개입 활동은 허락될 수 없음 - 수사는 전문적이고 철저하고 적절하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수사의 목적은 피해자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고 범죄의 사인, 행태, 위치, 시간 등을 파악하며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함
	경찰관을 위한 지침	- 수사 시 정보 기록에 대한 규범적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수사활동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진행 전 자문을 받아야 함 - 모든 용의자를 대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며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여야 함

주제	구분	내용
경찰 수사	경찰관을 위한 지침	• 모든 인터뷰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을 보존해야 함 • 수사기술을 배우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함 • 수사를 할 때 이것이 합법적인지, 필요한 행동인지, 용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함 • 용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거나 그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으며, 수사의 목적은 독립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있음
	고위 경찰관을 위한 지침	• 수사에서 법적 보호 장치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함 • 효과적 과학 수사와 합법적 기준을 지키는 수사 기술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관리 규정을 마련함 • 자백에 대한 의존과 희생자들을 보호할 규정을 확립함 • 수사활동에 있어 법적인 규정을 위반하면 엄격한 벌을 선고함
체포	관련 규범	• 모든 사람은 이동의 자유가 있으며, 안전할 권리와 자유권이 있음 • 임의적 체포와 구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구금이 적법하지 않으면 반드시 석방되어야 함. • 체포된 사람은 합당한 시기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석방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가 있음 • 모든 체포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체포 시기와 보호소로 이송된 시기, 재판에 출석한 시기, 관련 경찰관 신분, 보호소에 대한 정보, 심문의 상세 내용 등이 기록되어야 함 • 체포 기록은 구금자와 그의 법률 자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구금자의 가족은 구금자의 체포 사실과 구금 장소를 고지 받아야 함
	경찰관을 위한 지침	• 체포 권한과 체포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주기적인 리뷰 과정을 가짐 •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체포를 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사람을 대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에 참가함 • 체포 시 저항이 과하지 않을 시, 조용하고 정중한 언어로 체포를 시도하고, 필요할 시에만 권위적이고 강경한 톤을 사용함 • 체포되는 사람의 권리를 카드에 적어 체포가 되었을 때, 알려줌 • 체포 기록을 신중히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고위 경찰관을 위한 지침	• 체포 절차에 대한 명확한 명령을 발표하고, 체포 절차와 체포되는 자의 권리, 인간적이고 안전한 체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경찰관들에게 제공함 • 사람을 대하는 기술과 갈등해결기술, 자기 방어와 제재조치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 법에 의거한 체포 정보에 대한 기록 형식을 개발함 • 모든 체포 후 경찰관에게 보고를 듣고, 체포가 기록되었는지 신중하게 확인함 • 체포된 사람들이 법률 자문을 받는 데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구금	관련 규범	• 재판 전 구금은 법인 아닌 예외사항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 • 구금자는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 행위, 협박과 폭력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 구금자의 가족과 법률대변인은 모든 정보를 받아야 함 • 청소년은 성인과 별도로, 여자는 남자와 별도로, 죄가 선고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선고된 사람과 별도로 구금되어야 함 • 구금자는 구금된 이유에 대하여 알아야 함 • 구금자는 외부와 연결될 권리가 있으며, 가족의 방문과 사적인 대화를 할 권리가 있음

주제	구분	내용
구금	관련 규범	• 구금자는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시설에서 구금되어야 하며, 적절한 음식과 물, 보금자리, 옷, 의료서비스, 운동 그리고 개인위생을 위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믿음은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구금자는 자신의 구금에 대한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여성과 청소년 구금자의 특수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자백이나 자신의 유죄를 강요받을 수 없음.
	경찰관을 위한 지침	• 성직자, 법률자문인, 가족, 조사관과 의료진들의 방문을 가능하게 함 • 구금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잘못된 대우를 받은 의심이 들면,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함 • 벌을 줄 때 제재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제재 도구는 이송 시 도주를 방지할 때나 의료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명령이 있을 때나 상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을 때에만 사용될 수 있음 • 무력 사용에 대한 규칙을 학습함
	고위 경찰관을 위한 지침	• 구금자에 대한 상시명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공표함 • 구금시설을 지키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제공함 • 식사 관습 등의 구금자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신념을 존중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마련함 • 구금자에게 구금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구금자의 권리 등을 알려야 함 • 모든 고문, 비인간적 대우와 벌을 금지해야 함 • 기본적인 식사 요구가 있는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요구에 응해야 함. 아침과 저녁의 간격이 15시간이 넘지 않아야 함 • 자살 방지 등을 위해 심리 보호에 대한 교육에 한 명 이상의 경찰관을 배치해야 함 • 모든 구금자의 병세, 상해, 중독증, 정신이상 등을 확인함 • 구금지역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치명적 해가 되지 않는 통제 방법을 사용할 것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무력 사용	관련 규범	• 비폭력적인 방법이 먼저 시도되어야 함 • 무력은 오직 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상해와 피해는 최소화 되어야 함 • 모든 경찰관들은 무력의 분별력 있는 사용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함 • 모든 무력이나 화기를 사용한 사건은 보고되어야 하며, 상관에게 검토받아야 함 • 상관은 부하의 잘못된 화기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심각한 상해나 죽음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방어할 때, 심각한 범죄를 막을 때, 범인의 도주를 막을 때, 다른 방법은 불충분할 때와 같이 매우 극단적인 상황일 경우에만 화기를 사용해야 함 • 화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경고를 제시하여야 하며, 경고에 복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함. 단,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을 때와 심각한 상해나 사망의 위험이 초래될 때는 위의 절차를 시행하지 않아도 됨 • 화기 사용 후에는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의료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상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상해 사실이 고지되어야 하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자세한 사건에 대한 보고가 제공되어야 함
	경찰관을 위한 지침	• 응급처치, 자기 방어, 방어 장비 사용, 화기 사용,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기술 훈련에 참여함 • 방패, 방어조끼, 헬멧, 비치명적 장비를 사용하는 연습을 함

주제	구분	내용
무력 사용	경찰관을 위한 지침	• 치명적 해를 입히지 않는 무기를 포함하여 무력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연습해야함 • 설득, 중재, 협상 등의 기술을 터득함 • 비폭력적인 방법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함 • 동료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 개입함
	고위 경찰관을 위한 지침	• 무기와 무력사용에 대하여 분명한 지침을 마련함. • 응급처치, 자기 방어, 방어 장비 사용, 화기 사용,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기술 훈련을 제공함 • 최대한 넓은 범위의 분별력 있는 무력 사용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마련함 • 무력사용과 연관되어 있는 경찰관들에게 스트레스 상담을 제공함 • 화기 사용 절차와 저장, 통제와 관련하여 엄격하게 관리함 • 공식적으로 지급된 무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비공식적으로 지닌 장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제재를 부과함 • 화기 사용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함

출처: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 Trainer's Guide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 2002, pp. 50-112.

마. 스코틀랜드 평등 · 인권영향평가 기본 운영 지침²⁰⁾

본 기본 운영 지침은 스코틀랜드 경찰에서 준용하는 것이며, 2010년 평등법, 1998년 인권법을 기반으로 한다. 평등과 인권영향평의 방향과 절차를 제시하여, 경찰의 활동이 인권과 평등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하고, 차별과 비인권적 행위를 금지하고자 기본 운영지침이 마련되었다. 본 기본 운영지침에 의하면, 정책과 활동, 의사결정 등의 영역에서 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하고, 정책이나 활동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영향평가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영향평가를 할 때는 명확한 증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평등과 인권 법규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해야 한다. 영향평가의 책임소재에 있어, 지침과 절차는 정책기관에서 관리하지만 영향평가 결과 기록과 기반 자료 및 증거는 소유권을 가진 부서에서 관리하며,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자료의 경우,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에 적용되는 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의 경우, 평등영향평가와 인권영향평가는 별도로 구성되며, 그 중 인권영향평가에서 다루는 항목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20)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EQHRIA Home - SHRC - Equality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ttp://eqhria.scottishhumanrights.com>. accessed Oct 02, 2018.

자유권'에 관한 항목으로, 그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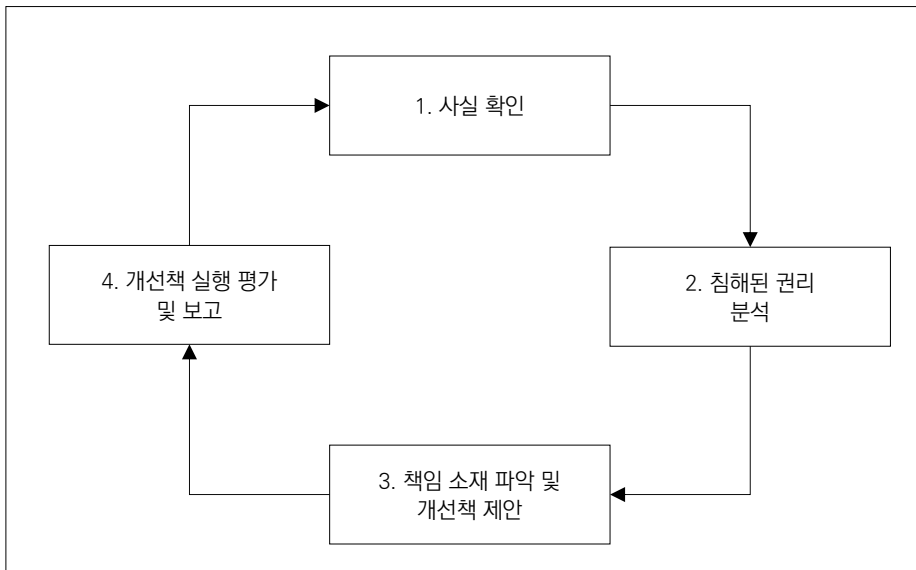
- 생명권
- 고문금지
- 노예와 강제노동 금지
-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법적인 근거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산 및 소유물에 대한 보호

스코틀랜드는 정부, 공공기관, 사립기관 등의 정책 실행과 절차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평등영향평가를 확장시켜 발전해온 것으로, 아직 국제적인 인권영향평가 사례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야 될 여지가 많다.

스코틀랜드 인권영향평가에서 사용하는 인권 프레임은 단순히 인권법에 준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스코틀랜드 인권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국제인권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 아동인권 조약, 장애인 인권 조약, 여성차별철폐 조약,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방지 조약, 난민 및 인종 차별 철폐 등도 프레임에 포함된다.²¹⁾

이와 더불어 스코틀랜드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에서는 인권의 기준과 원리를 실행할 때 필요한 인권기반의 접근법인 '공정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1) Harrison, James, and Mary-Ann Stephens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Review of Practice and Guidance for Future Assessments." Edinburgh: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see <http://www.scottishhumanrights.com/search>. 2010.



[그림 5-1] 스코틀랜드 평등·인권영향평가 공정한 접근법

출처: <http://eqhria.scottishhumanrights.com/eqhriatrainingfair.html>, 2018.10.02. 방문.

공정한 접근법은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당사자가 누구이며, 평가해야 할 중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법적 기준과 모아진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인권적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권리가 침해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분석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인권적 이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고, 이 개선책을 누가 이행할 것인지 설계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추후 실행에 대하여 기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권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하도록 평가 횟수, 평가조건, 평가자를 정한다.

위의 일련의 4가지 단계에 대한 사례로 이슬람교 반대 시위 사례를 들 수 있다.²²⁾ 사례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스코틀랜드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이슬람사원을 스코틀랜드에 짓는 것을 저지하는 시위를 기획하고, 시위대의 행진이 이슬람 사원을 지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의회는 이 시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놓고,

22)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Case Study 3 - SHRC - Equality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ttp://eqhria.scottishhumanrights.com/eqhriacs3marches.html>, 2018.10.02. 방문.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일어난 폭력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에 시위를 금지하는 안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시위를 허용하는 안 중 어떤 안이 좋은지 고민하였다. 특히 이 운동은 이슬람교 신자들과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소수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평등법에 위배된다는 점도 중요 고려 대상이었다. 이에 의회는 보다 나은 결정을 위해 이 사례에 평등과 인권영향평가를 적용하였다.

이 사례에서 규정한 영향평가 대상은 ‘시위 허가 결정 문제’이다. 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공정한 접근법을 적용하면, 1단계인 ‘사실 확인’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의회의 결정이 특정 집단(특히 소수 집단)에게 잠재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확인과 어떤 양적, 질적 증거들이 이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이해 당사자들이 이 영향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그들이 의회와 교섭하는데 필요한 도움 등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사례에서 중요하게 확인되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집단의 권리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슬람교 반대집단은 그들이 이슬람교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슬람교와 비이슬람교로 이분했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인권적 이슈는 무엇인지와 인권법을 따르는 결정을 적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침해된 인권은 무엇이고, 그 중 절대 침해되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침해된 인권 중 제한 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가 왜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또한 권리가 가장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는지와 제한되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지 등을 분석한다. 증거를 토대로 특정 소수 집단이 차별받았는지와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이 있는지 등을 찾아내고,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분석단계를 사례에 적용해 보면, 이슬람교 반대 집단의 주요 권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이다. 이는 모두 ‘자격이 주어진 권리’²³⁾이기에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과 본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위의 자유는 국가적 안보와 국민의 안전,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3) ‘자격이 주어진 권리’는 1998년 영연방 인권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제한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의회가 결정을 내릴 때, 폭력의 발생이 방지되어야 하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슬람교 반대 집단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최소한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책임 소재 파악 및 개선책 제안’은 결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책들이 있어야 하는지와 누가 필요한 개선책들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를 논의하는 단계이다.

이 사례에서 개선책으로 주어진 선택안은 총 3가지이다. 1) 시위를 허가하는 대신 시위의 행렬이 경찰의 안내에 따르는 안, 2) 시민과의 충돌 또는 이슬람 종교 단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른 행진로로 시위를 제한하는 안, 3) 마지막으로 시위의 허가를 거절하는 안이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회는 이슬람교 반대 집단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경찰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사례에 대한 최종안을 결정할 때, 의회는 평등법인 중 하나인 ‘좋은 관계를 양성할 의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좋은 관계는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소수 집단들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활동이며, 이는 종교적 혐오를 부추기는 운동과 양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와 같이 시위를 허가할 때,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일지라도 이슬람교 반대 집단의 권리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의무도 의회는 따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이슬람교 반대 집단에게 다른 행진로로 우회하여 시위하도록 하는 안을 선택하는 것이 권유되었다. 이 결정안을 제시할 때 시위 도중 공격적인 언어와 행동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정책 및 결정에 대한 평가 단계’이다. 결정의 결과들을 기록하고, 그 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도모하였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결과의 한계와 추가적인 고려사항 등을 고민한다.

제시된 사례는 기존에 있던 시위에 관한 정책을 돌아보게 만든다. 개별 사례에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과 평등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시위에 관한 정책은 폭력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전제에 두고 있다. 이는 의회에게 개별 사례에 대한 폭력의 가능성을 가늠하게 만들어, 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

바. 스코틀랜드 공공기관 평등영향평가²⁴⁾

본 지침서는 공공기관의 2010년 평등법 의무를 준수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지침서에는 평등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영향평가와의 연관성 그리고 영향평가의 목적을 설명하고,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과 실질적 고려사항 등을 수록하였다.

평등영향평가의 방법 중 누가 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인가는 영향평가의 결과가 정책이나 수행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개선시키는 파급력을 가진 만큼 해당 정책에 전문성이 있거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 또는 사람이 평가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며, 정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인 부서나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자일 경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평등영향평가 진행 시 영향평가와 연관이 있는 특정 집단을 반드시 영향평가에 참가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의 인터뷰나 피드백을 하나의 정보 또는 증거로 영향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는 집단을 영향평가 주체로 포함할 경우, 정책 실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실질적인 영향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향평가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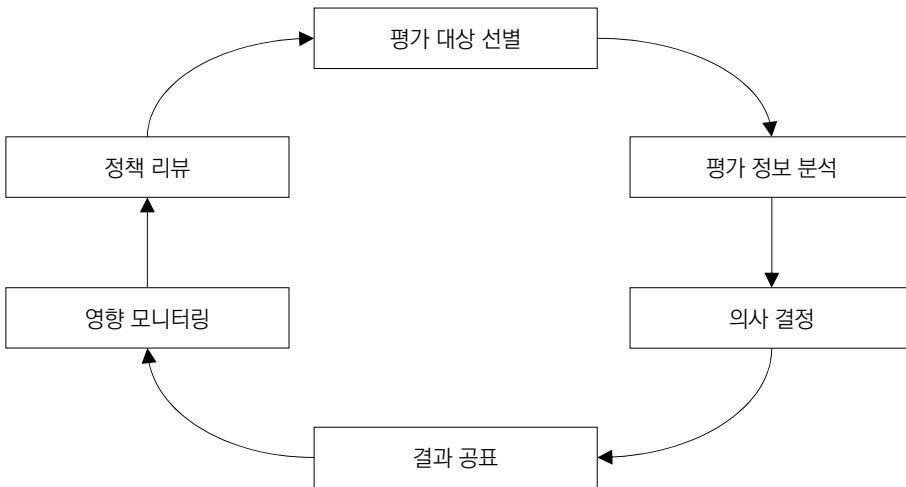
그리고 평등영향평가의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새롭게 고안된 또는 수정된 정책이나 실행안들이다. 사전 평가 뿐 아니라 사후 평가도 평등영향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안들이 평등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정책안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의 파급력과 중요성에 따라 평등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다. 평등영향평가는 3대 주요 요소인 ①비합법적인 차별을 제거하였는지와 ②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③특수성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좋은 관계를 촉진시켰는지에 관한 신중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고민에는 특정 정책의 변화는 다른 정책이나 실행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변화들이 축적되면 그 영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충분한 관련 정보와 영향력의 결과

24)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Assessing impact and the Public Sector Equality Duty. 2016.

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부정책과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복지사들의 휴식 등의 문제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경사항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에 포괄적인 관점에서 각 정책들의 영향력과 차별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평등영향을 평가하는 시기는 정책이나 실행안이 결정되기 전에 주로 행해진다. 평등영향평가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기에 정책을 만들거나 개발시키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된다. 평가는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행해질 수 없다. 그렇기에 정책 결정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통합적 정책 개발의 일부로 들어가야 한다.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새롭게 개발되거나 수정된 정책안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평등영향평가의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5-2] 평등영향평가 절차

출처: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Assessing impact and the Public Sector Equality Duty, 2016, pp. 20-29

절차의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평가 대상 선별단계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민해야 한다.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평등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집단이 이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승진정책을 평가할 때, 차별 받는 집단은 누구인지와 어떤 차별이 예상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는 반드시 해당 정책이 끼치는 각각의 보호받아야 되는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차별 문제는 인종, 종교, 나이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에 2가지 이상의 특성에 대하여 끼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증거나 정보가 관련 집단에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인구통계 데이터,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감사 결과 및 조언 등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특정 집단에 미치는 결과가 찾기 힘들 경우, 그 집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정보의 빈틈을 매울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평가 정보를 통한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다. 우선 정책이 차별을 제거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책이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끼친 증거나 간접적인 차별을 발생시킨 증거 등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집단에 끼치는 불편감이 제거되었는지와 차별받는 집단의 요구를 만족시켰는지 특정집단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불편감을 해소시켰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받는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이 편견을 깨고,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4가지 선택사항이 있다.²⁵⁾ 첫 번째 선택은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차별사항이 없고, 현재 정책이 공평한 기회를 모든 집단에 제공하고 있고, 좋은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고 있을 때는 현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두 번째 선택은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차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25)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Assessing impact and the Public Sector Equality Duty. 2016. pp. 26-27.

이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도 고안되어야 한다.

세 번째 선택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에 차별이 내포되어있으나 이 차별이 합법적이며, 정당하다고 예상될 경우, 평등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 평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중단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네 번째 선택사항이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정책안에 있고,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을 때는 정책실행을 중단하거나 제거한다.

그 다음 단계는 의사결정이다. 결정을 할 때에는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두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 적절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다른 집단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린 결정은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서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기록되어야 하며, 그 기록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인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는 정책을 적용시키기 위한 적절한 시기에 실시되어야 한다. 공표를 통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기에 결정된 정책이 실행된 직후에 공표되는 것이 권장된다.

이렇게 평가 결과의 공표로 평가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단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그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알 수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뷰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리뷰를 통해 정책의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책안에 새롭게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평등법 의무를 달성할 수 있다.

사. 영국 학교 내 평등 영향평가 지침서²⁶⁾

본 지침서는 학교에서 평등영향평가를 시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자료로 고안되었으며, 영향평가 방법과 보고 그리고 원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도모하고,

26) Kath Bridger. Building capacity for equality impact assessment in colleges. Equality Challenge Unit. 2013.

2010년 평등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평등에 대한 의무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학교는 공공기관 평등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비합법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기회의 공정함을 기하며, 소수 집단과 사회구성원들과의 좋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근거로 나이, 장애, 성별, 결혼, 임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의 보호받아야 할 고유 특성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나 활동 등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평등영향평가에 대한 진행 방법을 본 지침서에 소개하였다.

본 지침서를 적용하는 데 있어 2010년 평등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내의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넓은 지식 그리고 평등 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등영향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평등영향평가에서 말하는 부정적 영향은 교내의 결정, 규율, 활동의 결과가 교내 소수자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며, 중립적인 결과는 어떠한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결과도 일으키지 않는 경우이고, 긍정적인 결과는 소수자들에게 기회의 균등성이 보장된 결과를 말한다. 또한 결과들 중에는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결과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자료에서 말하는 증거 중 질적인 증거는 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인터뷰, 서술 등의 정보이며, 양적인 증거는 숫자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프로파일 등의 정보이다.

평등 영향평가의 평가자는 평가의 책임이 있는 의사회사 팀의 상급자/리더 또는 팀 내 관계자, 평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소유권자가 해당된다.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와 개선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직급의 관계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평등영향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²⁷⁾

- 1) 특정 소수 집단에게 영향을 미친 정책 및 수행의 증거를 확인한다.

평가자는 업무적 수행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를 확인한다. 증거는 양적 증거, 질적 증거, 사례 등이 있으며, 이 증거가 어떤 권리 또는 차별요소와 연관되는지도 확인한다.

27) Kath Bridger. Building capacity for equality impact assessment in colleges. Equality Challenge Unit. 2013. pp. 9-11

- 2) 새롭게 수립된 또는 수정된 정책과 수행들이 특정 소수 집단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자는 평가 대상 범위에 포함된 업무적 수행이 특정 사람들에게 적절치 못한 또는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한다. 실질적 증거(양적, 질적, 사례 등)를 기반으로 차별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며, 증거가 충분히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지와 어떤 이유(특정한 인종, 성, 나이 등)로 인해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한다.

- 3)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제안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자는 어떻게 하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계획한다. 평가 범위 내,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총 4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평가결과 종류〉

- 어떠한 개선책도 필요 없는 현상 유지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정당할 경우)
- 차별의 장벽을 없애는 개선책 마련 필요
- 차별행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력 도모
- 차별을 불러 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폐지

- 4)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관계자에게 공유한다.

평가자는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개선책을 소통한다. 결과 공표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본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은 보장되었는지와 평가결과인 개선책이 결과적으로 장기적 목표에 부합한지 등을 고민한다.

- 5) 개선된 사항과 결정들이 이행되고 있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영향력을 평가한다.

개선책의 추후 이행에 대하여 평가 방법을 설계한다. 개선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한다. 개선책의 설계뿐만 아니라 이행 또한 중요하기에, 새로운 모니터링과 점검 시스템을 고안하기보다는 연차보고 및 평가 등의 현재의 시스템에 추가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이행에 대한 책임을 설정하는 것은 개선책 운영에 도움이 된다.

위의 절차를 적용한 구체적인 학교 평등 영향평가의 사례로 외부학습에 대한 학교 정책 변경 사례인 Broadly 대학교 사례를 들 수 있다.²⁸⁾ Broadly 대학교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공인 농업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선택적 안으로 제안된 외부 학습을 수행한 학생들이 외부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다 실무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 학습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실무적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와 함께 평등법에 본 결정이 어긋남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이 정책 변경이 차별을 가져오는 집단은 없는가이다. 개인의 보호받아야 할 고유 특성에 의해 성과가 감소된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의무적인 외부 활동이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정집단에 대한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은 정책 변경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정책 변경이 소수 집단에게 혜택을 주거나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가이다. 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외부 학습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학생들의 보호받아야 할 고유 특성 때문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는 참여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학생은 이동과 학습청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외박이 필요한 외부 학습의 경우, 그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소수집단의 경우, 외부학습의 시기와 장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언어가 다른 학생들도 외부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정책 변경이 편견을 제거하거나 소수 집단과의 관계를 증진 시키는데 일조하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생들과 외부 파트너들과의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은 외부 산업관계자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 내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고려 항목에 따라 학교는 정책 변경이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28) Kath Bridger. Building capacity for equality impact assessment in colleges. Equality Challenge Unit. 2013. pp. 12-33.

대한 개선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우선 영향평가의 첫 번째 항목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개선책으로는 외부 학습 파트너들과 함께 시설, 활동, 교통, 장소 등의 문제를 고민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학생들과 함께 그들이 외부 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와 어떤 조치가 외부 학습으로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해본 결과, 비디오와 외부 전문가 초청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 외부 학습과 비슷한 결과를 얻는 방법, 외부 학습 시기와 장소가 융통성 있게 조정되는 방법,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외부 파트너들과의 활동 리뷰 등이 논의 되었다.

세 번째 항목인 소수 집단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학생들과 외부 파트너들과의 대화와 토론으로 외부 학습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외부 학습 의무화 정책은 수정,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해결책은 학생과 외부 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논의를 통해 나온 구체적 해결책으로 외부 학습 외 다른 방법을 통해 실용적 기술을 익히거나, 시간과 장소에서 융통성 있는 외부 학습을 운영하거나, 모든 학생들과 함께 외부 학습의 결과에 대하여 리뷰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아. 태국 FTA 인권영향평가²⁹⁾

2006년 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FTA가 국내와 국제 인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FTA watch(태국 시민 단체)의 우려가 2006년 인권영향평가를 촉발시켰다. FTA watch는 FTA가 가지는 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에 대한 영향력은 반드시 정확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은 FTA에

29) MacNaughton, Gillian, and Lisa Forman. Human Rights and Health Impact Assessments of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omparative Study of Experiences in Thailand and Peru. *Journal of Human Rights* 14.1 .2015. pp. 133-136.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렇게 FTA watch에 의해 촉발된 FTA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농업, 환경, 지적 재산권, 서비스, 투자에 대한 미국과의 FTA에 인권영향평가를 도입시켰고, 1997년 태국 「헌법」과 1999년 국내 인권법을 바탕으로 FTA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FTA 인권영향평가에서는 건강권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사회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인권평가 위원회는 주요 FTA 협상가들을 통해 영향평가에 쓰일 정보를 수집하였고, 정부기관의 문서와 설명을 점검하고, 3개 하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적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수행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에는 태국이 특허권을 도입했던 197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압력이 자세히 서술되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 미국의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압력은 태국의 의약품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2년 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요청에 따라 특허권법을 수정하게 하였고, 이는 곧 태국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2006 FTA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요청을 분석하여, 미국의 요청은 시장 독점권을 심각하게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지적재산권이 반영된 브랜드가 있는 의약품의 폐해를 공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의약품과 브랜드가 있는 약품을 비교하여, 브랜드 의약품은 일반 약품보다 2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가격이며, 그 비용 또한 최저 임금의 1.5배에서 4.7배에 육박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약품의 높은 가격상승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국민의 건강 예산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국민 건강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각인시켰다.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협상 연기를 포함하여, 정부가 독단적으로 FTA를 진행하기보다 FTA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인권영향평가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의약품과 공공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은 FTA 협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고, 만일 협상에서 건강권, 공공건강서비스, 의약품 접근성 등을 요구한다면, 건강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바탕으로 이를 거절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가 공표된 이후, Shinawatra 정부는 군사 쿠데타로 물러났으며, FTA 협상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자. 소결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작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조사, 예측,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인권 침해 및 차별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기존의 절차들과 달리, 국가작용이 행해지기 전에 미리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작용을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장치이기에, 개인의 인권 침해를 저지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이다.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시기는 인권영향평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정책이나 실행안이 결정되기 전에 주로 행해지며, 정책 결정과정의 초기 단계에 통합적 정책 개발의 일부로 포함되어, 정책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을 확인한다. 특히 특정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알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기적 평가성에 그치는 영향평가가 아닌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영향평가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국내 및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하며, 비차별, 참여, 권한, 투명성으로 구성된 인권기반적 접근을 따른다. 그리고 영향평가의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새롭게 고안된 또는 수정된 정책이나 실행안들 중 그 영향의 파급력과 중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영향평가 절차는 사전분석, 범위선정, 증거 수집, 영향력 분석, 결론 및 제언, 평가 및 리뷰 단계로 구성된다. 인권영향평가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평가자 및 평가 위원회는 영향평가의 결과가 정책이나 수행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개선시키는 파급력을 가진 만큼 해당 정책에 전문성이 있거나 결정권을 지고 있는 부서 또는 사람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인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스코틀랜드 경찰과 유엔인권사무소에서는 경찰 인권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 하는 권리로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와 강제노동 금지,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적인 근거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재산 및 소유물에 대한 보호, 안전할 권리,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 금지, 자백과 증언 강요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제2절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1.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논의 경과 및 선행연구

가.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경과

현 정부는 출범에서부터 인권을 국가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국가 정책 및 제도들이 인권 보호 및 보장, 더 나아가 인권 증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여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인권영향평가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정운영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발표한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제 목표로는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 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 공감대와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1년 간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이끌어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되었으며, '인권 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인권 보호' 분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안을 분석,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회관리, 초동조치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집회·시위 자유보장,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등 치안활동 전반에 관한 개혁 권고안 30건을 의결, 발표하였다. 경찰청은 권고안 가운데 자체계획 수립이나 훈령, 예규 정비 등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경찰활동 전반에서 인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 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하여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였다.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경찰의 인권 보호 종합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제정된 규칙으로, 경찰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목표수립, 정책 결정, 업무수행 등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의 준거를 제공하고, 기능별 업무에 대한 인권 보호 직무준칙과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³⁰⁾ 이를 개정한 경찰 인권 보호 규칙에는 경찰 개혁 방안의 하나인 ‘인권영향평가제’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앙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였다.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는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치안정책 시행, 집회와 시위 대응 등 경찰 활동 전반에서 인권 침해 요인을 미리 평가하여 예방하고자 실시되는 제도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의 시행 근거, 평가 대상 및 시기, 평가 기준과 평가 절차를 마련(제4장 제21조, 22조, 23조 및 24조)하였다. 아래의 표는 개정된 경찰 인권 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제872호, 2018. 5. 14.)의 총칙과 인권영향평가 관련 조항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5-6〉 경찰청 인권 보호규칙 총칙 및 인권영향평가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 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21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경찰청장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
제22조(평가의 기준)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법률유보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30) 김상운. 수사 경찰의 인권 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12. 8(4): pp. 151-167.

3. 적법절차의 원칙

4. 그밖에 인권 침해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및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제23조(평가 절차)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 해당 사건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이전

2. 제21조제1항제2호: 해당 사건이 확정되기 이전

3. 제21조제1항제3호: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한에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점검) 인권 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듯 경찰청 훈령에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8년 6월 27일, 중앙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실시한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는 평가결과와 관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하였다. 또한 장시간 조사 시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나.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 관련 선행연구 동향

경찰청은 2015년부터 관련 연구를 통해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준비하여 왔다. 특히,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³¹⁾” 및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연구³²⁾”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하여 경찰청이 발주하여

31) 이준일·김지혜·이승택·박진아.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 경찰청. 2015.

32) 구정우·김선웅·김두년·정진원.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연구. 경찰청. 2017.

수행된 연구로, 최근 실시된 인권영향평가의 기본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이준일 외(2015)의 연구는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그 개념과 필요성 및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경찰의 직무영역에 맞추어 규정하여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경찰 직무 및 경찰 영역의 인권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준일 외(2015)는 경찰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인권영향평가의 4대 기본원칙으로 ① 법률유보의 원칙, ② 적법절차의 원칙, ③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④ 평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 인권영향평가제의 기본 윤곽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5-7〉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도 개요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도 개요			
유형		정책판단형 인권영향평가 (사전예방적 성격)	실태조사형 인권영향평가 (사후시정적 성격)
대상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 예정인 정책 및 경찰청 훈령 등의 제·개정	시행 중인 정책 및 경찰청 훈령 등
절 차	개시	경찰청장이 결정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에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 (인권 보호담당 관이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경찰청인권위 원회가 확정)
	수행	감사관 또는 인권 보호담당관이 방식 결 정(외부 위탁 또는 내부 수행)	인권센터가 수행 (내외부의 의견수렴 절차 혹은 실태조사 이후 제기된 사항에 관한 영 향평가실시)
	심의 확정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평가서 심의 후 보 충 의견을 첨부하여 확정 (경찰청장 및 경 찰위원회에 보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평가서 심의 후 개선 권고 의견을 첨부하여 확정 (경찰청장 및 경 찰위원회에 보고)
	반영	경찰청장 검토 후 정책 개선 (경찰위원회가 미반영된 평가 의견에 대해 개선 요구 가능)	
효력		영향평가보고서 및 개선 의견은 권고적 효력 (경찰위원회가 의결로 개선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	

출처: 이준일 외.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015. P. 83

이후 경찰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구정우 외(2017)는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 인권영향평가의 실질적 기준과 범위, 그리고 운영방안 등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인권실태 조사 설계와 평가지표(체크리스트) 개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실태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범위,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지표 개발 부분에서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4개 분야, 즉 ① 법령의 제·개정, ② 중요 치안정책, ③ 대형 집회·시위, 그리고 ④ 청사의 신·개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및 세부 체크리스트 및 지표를 제안하였다. 각 영역에서 제안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령의 제정 및 전면개정의 경우는 인권영향평가를 사전평가의 형태로 진행하고, 현행법령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로 진행하며, 제정 및 전면개정의 경우 법령 단위로 평가(상하위 법령 포함)하고 일부 개정의 경우 조문 단위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인권관련 국제조약 및 상위법령 위배 여부를 검토하고, 두 번째로 인권 침해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통제장치의 작동 여부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이준일 외(2015)가 제안한 인권영향평가의 4대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체크리스트는 주관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버전과 인권 보호담당관실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에서 활용하는 버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치안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치안정책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정책의 집행 이후 즉, 사후평가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7년 경찰청의 주요 치안정책을 대상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한 후 마찬가지로 인권영향평가 4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와 지표를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안종합성과평가의 평가지표와 인권영향평가 지표 간의 상충 가능성을 탐색하고, 상충할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대형 집회·시위 영역에서는 먼저 기존의 '시위현장에 대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구정우 외(2017)에 의하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통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집회·시위를 규제,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 실현에 중점을 둔 관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경찰은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차별적 권리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집회·시위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집회·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전-진행-사후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집회·시위가 발생하기 전 집회신고서를 바탕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집회·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집회·시위 종료 후에는 관리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집회·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서도 인권영향평가의 4대 기본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체크리스트를 구성, 이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사의 신개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경찰 청사를 신축하고 개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이용자 즉, 일반 국민과 피의자, 그리고 경찰 근무자의 측면에서 인권영향평가 세부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 단계 측면 즉, 청사의 신·개축 계획, 시공 및 준공의 단계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세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분석

가. 경찰 인권영향평가지표 체계 및 항목 분석 - 기존 연구의 한계

이준일 외(2015)의 연구는 중앙부처의 인권영향평가 선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제도의 개요를 마련하여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데 법 중심적

접근방식을 견지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과 효과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주로 법학 및 정책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작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조사, 예측, 평가하는 영향평가로, 이를 통해 인권 침해 및 차별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좁은 의미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About) 평가일뿐만 아니라, 인권을 위한(For), 그리고 인권을 통한(Through) 평가이어야 한다. 즉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기반적 접근을 통해 인권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권리보유자(Rights-holder)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부담자(Duty-bearer) 또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권영향평가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기본원칙 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구정우 외(2017)의 연구보고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연구”는 그간의 관련 연구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에 실질적인 프레임과 체크리스트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여 중앙부처 가운데 최초로 실시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대상 분야를 ‘법령의 제·개정’, ‘주요 치안정책’, ‘대형 집회·시위’ 및 ‘청사의 신·개축’이라는 분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됨(2018년 6월 21일)에 따라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서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현재 실시 중인 경찰 인권영향평가는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치안정책 시행, 집회·

시위 대응 등 경찰활동 전반의 인권 침해 요인을 미리 평가하여 예방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 기대되나, 경찰활동 가운데 국민과 직접적인 접촉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수사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수사과정 및 절차 전반에 초점을 맞춘 인권영향평가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인권영향평가제가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통한 국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증진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수립 및 설계에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수사과정에 초점을 맞춘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상 영역(단계)을 설정하여 각 영역(단계)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나. 경찰 인권수사매뉴얼: 인권수사 체크리스트 및 보완점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직면하는 인권 침해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인권수사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인권수사매뉴얼은 수사단계별, 범죄 유형별로 피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언행을 써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인권수사매뉴얼은 총 6장(1. 인권의 이해, 2. 수사와 인권, 3. 구금과 인권, 4. 사회적 약자의 인권, 5. 언론보도와 인권, 6.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제2장과 3장, 그리고 4장의 경우, 각 수사단계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인권관련 이슈를 구체적 사례를 예로 들어 사안별로 정리하고, 관련 규정을 제시한 후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인권수사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5-8〉 2017년 인권수사 매뉴얼

제1장 인권의 이해	
제1절 인권이란 무엇인가	
제2절 인권관련 선언과 규정	
제3절 경찰활동과 인권	
제2장 수사와 인권	
제1절 수사의 이해	
제2절 내사	임의동행된 피내사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이 있는가
	내사 사건에 대한 공개가 허용되는가
	피내사자에 대한 출석 강요가 인정되는가
	① 인권 보호를 위한 내사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
제3절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정북경찰관(의경 포함)이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가
	불심검문 중 휴대품을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 수 있는가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연행이 가능한가
	임의동행 후 상대방의 퇴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② 인권 보호를 위한 임의동행 시 체크리스트
제4절 함정수사	함정수사는 적법한 수사 방법인가
	③ 인권 보호를 위한 함정수사 관련 체크리스트
제5절 영장없는 강제수사	긴급체포의 요건과 그 한계는 무엇인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그 한계는 무엇인가
	사건현장에서 압수수색의 한계는 무엇인가
	④ 인권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6절 경찰장구 및 무기의 사용	정당한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수갑사용의 한계는 무엇인가
	⑤ 인권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7절 수사과정의 피의자 권리 고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권리 고지는 필수적인가
	체포, 구속의 통지는 석방 전에만 하면 되는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⑥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 체크리스트
제8절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폭행, 가혹행위로 얻은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심야조사는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로 용인되는가
	임의동행된 피내사자에게 변호인과의 교통권이 있는가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⑦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제3장 구금과 인권	
제1절 신체검사	⑧ 유치인 인권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2절 신체자유권·인격권 및 접근교통권	
제3절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제4장 사회적 약자의 인권	
제1절 장애인 수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수사과정에서 장애유형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⑨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2절 성적 소수자 수사	성 정체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가
	성적 소수자에 대해 어떠한 언행을 사용해야 하는가
	유치장 입감시 성적소수자는 독방에 수용해야 하는가
	⑩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5장 언론보도와 인권	
제1절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홍보 지침	
제2절 수사사건 언론공개 기준관련 법규	
제6장 부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주: 2018. 5월 인권 보호 규칙으로 개정됨)

출처: 경찰청. 인권 보호 수사 매뉴얼. 2017에서 발췌·정리

인권수사매뉴얼은 각 수사단계 및 수사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지침으로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체크리스트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항목이라기보다 경찰수사관 각각의 인권 감수성에 의지한 자가진단적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해 평가 체크리스트로서의 강제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보다 체계적이어야 하고, 보편적인 기준 하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인권 침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 수사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수사의 각 단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권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후 체크리스트에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경찰 수사과정 인권 영향평가 지표 또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 경찰 인권영향평가: 수사과정 및 절차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원칙 및 기준을 고려한다. 먼저 유엔의 인권기반적 접근 원칙을 기본적인 대원칙의 틀(framework)로 삼고,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기존연구³³⁾에서 제시·적용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의 4대 기본원칙을 고려한다. 또한 인권수사 매뉴얼 상 제시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도 함께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수사관의 인권 보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 원칙 또한 함께 고려한다. 각각의 원칙 및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찰 수사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

가) UN의 인권기반적 접근 원칙

먼저 유엔의 인권기반적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원칙을 고려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인권기반적 접근을 "규범적으로는 국제인권 기준에 근거를 두고, 실행 차원에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인간개발의 과정에 대한 개념적 체계 또는 틀(Framework)"로 정의하고 있다.³⁴⁾ 즉, 인권기반적 접근이란 모든 국제적·국내적 사회문제에 대하여 인권적 관점(Human rights perspective)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은 법과 사회규범, 관습 및 제도 등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기반적 접근은 '인권', '기반'과 '접근'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³⁵⁾ 각각의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권기반적 접근에서 말하는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인권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방법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반(Based)'은 특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호나 취향 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다.

33) 이준일·김지혜·이승택·박진아.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 경찰청. 2015.

34) OHCHR.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2005.

35) 한국인권재단. 인권기반 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2016

마지막으로 ‘접근(Approach)’은 인권기반 접근이라는 것이 엄격한 법 또는 규칙이라기보다는 실행을 위한 정책 프레임이자 도구라는 것을 의미한다.³⁶⁾

이러한 인권기반적 관점은 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권기반적 접근을 보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는 인권기반적 접근에 대해 “인권기반적 접근은 UNDP의 이행 전략을 풍부하게 할 잠재력을 가진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방법론을 구성한다. 이는 인간발전을 위해 개발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도록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제까지 간과되었던 요소들을 포함한 행동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⁷⁾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인권기반적 접근은 단체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공통의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적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2003년 인권기반접근을 실행하던 UN 기관은 인권기반적 접근에 대한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에 합의하였다. 공통의 이해는 크게 세 가지의 원칙과 13개의 함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9〉 스탬포드 공통 이해 (Stamford Common Understanding): 원칙과 함의

스탬포드 공통 이해: 원칙	
1	모든 개발 협력, 정책, 기술 지원의 프로그램들은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장치들에 명시된 인권의 실현을 증진시켜야 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문서에 담긴 기준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원칙들은, 모든 분야와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래밍 과정의 단계에서 모든 개발협력과 프로그래밍을 이끌어야 한다.
3	개발 협력은 ‘의무 부담자’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스탬포드 공통 이해: 함의	
1	참여하는 주민은 재화나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라기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 주요 행위자로서 인식해야 한다.
2	참여는 수단이자 목적이다.

36) 한국인권재단. 인권기반 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2016. pp. 49-50.

37) 한국인권재단. 인권기반 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2016. pp. 49.

스탬포드 공동 이해: 합의	
3	전략은 사람들을 무력화(disempowering)가 아니라 자력화(empowering)한다.
4	결과와 과정 모두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5	분석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6	프로그램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제된 그룹들에 초점을 맞춘다.
7	현지 지역사회와 주민이 개발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가진다.
8	프로그램은 불균형/불평등(disparity) 감소를 목표로 한다.
9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접근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10	빈곤퇴치/개발 관련 문제에 대한 상황분석을 통해 즉각적, 근본적 그리고 기본적인 원인들을 규명한다.
11	프로그래밍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중요하게 다룬다.
12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13	프로그램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책무성을 지원한다.

출처: UN. Statement of Commo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gramming. 2003.

이 공통의 이해는 인권기반적 접근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 원칙으로 보편성과 양도 불가능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비차별과 형평성, 참여와 포용, 책무성과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기구에 명시된 인권 실현을 증진시켜야 하고,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인권 기준과 원칙들을 적용해야 하며, 의무부담자와 권리보유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기여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UN OHCHR이 2005년 발간한 “빈곤감소 전략에 대한 인권적 접근 - 원칙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권기반적 접근의 실행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³⁸⁾ HRBA를 개발 프로그램에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패널(PANEL)과 팬더(PANTHER)원칙을 꼽는다. 이 원칙들은 HRBA의 특징을 5-7가지로 정식화하여 꼽은 것으로, HRBA의 주요 특성과 원칙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패널(PANEL) 원칙은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자력화(Empowerment) 그리고 인권기준과의 연계(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팬더(PANTHER) 원칙은 패널 원칙을 보다 세분화하고 보완하여 UN 식량농업기구(FAO)가 만든 것으로, 기존의 패널(PANEL) 원칙에 투명성

38) OHCHR.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2005.

(Transparency)', '인간 존엄(Human Dignity)',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추가하여 만든 것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내용에서 패널(PANEL)의 마지막 원칙인 인권 기준과의 연계와 매우 유사하다. 아래에서는 인권기반적 접근의 실행원칙(PANEL 원칙)에서 각각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참여(Participation)

인권의 관점에서 참여는 존엄성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선택, 결정하고 같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³⁹⁾ 특히, 권리보유자로서의 시민이 국가 등 의무부담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 및 실행의 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여는 단순히 수동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86년 UN 발전권 선언은 참여의 조건으로 '능동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권기반적 접근의 원칙으로서 진정한 참여는 자신의 권리에 관련된 정책, 제도 수립 및 실행의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의사로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정한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리보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역량강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나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 등 많은 투자를 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의 진정한 참여가 가능케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책무성(Accountability)

책무성은 '책임'과 '의무'의 복합어로, 주로 공적 기관이나 공적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국가에게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증진할 의무를 발생시킨다.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39) 한국인권재단. 인권기반 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2016. pp. 60

은 이러한 책무를 강조하며, 국가와 국제기구를 포함한 모든 의무부담자가 인권에 관한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인권 보호의 책임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엔은 2005년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기준과 다국적 기업 활동을 규제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특별대표로 임명하였고, 약 2년간의 기초연구를 거쳐 2008년 “보호, 존중, 구제: 기업과 인권에 대한 프레임워크(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작성하였고, 이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인권 침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The State Duty to Protect), 인권을 존중해야 할 기업의 책임(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Protect), 그리고 구제책 마련(Access to Effective Remedies)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⁰⁾ 즉 국가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업은 기업 활동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존재하며, 기업 활동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사법적, 비사법적 방식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이후 약 3년간의 이행지침 마련 및 자문기간을 거쳐 2011년 인권이사회에 보고되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이 수립되었다.

이렇듯 인권 보호 및 보장, 더 나아가 증진에는 반드시 의무부담자의 책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의무부담자는 국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관련된 국내법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경찰수사와 같은 업무활동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책임 또한 지니는 등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0) Ruggie, Joh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3.2. 2008. pp. 189-212.

(3) 비차별(Non-discrimination)

비차별(Non-discrimination)은 평등을 실현하는 소극적인 수단으로, 인권의 핵심적 가치이자 일반적 원칙으로 간주된다. 차별은 사전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생각이나 특징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표적인 차별로는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차별, 나이차별, 학력차별 등이 있다.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권 보편성의 근거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권기준과 규범에서 비차별 또는 차별금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⁴¹⁾

차별금지의 영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와 시대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UN 사회권 위원회(CESCR)는 2009년 일반논평에서 공적, 사적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과 같이 규약에 명문화된 영역 이외에도 “기타의 신분”으로서 나이, 장애, 국적, 혼인과 가족상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강상태, 거주 장소,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차별금지영역에 포함시켰다.

HRBA의 비차별 개념 역시 이러한 인권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차별금지 및 평등의 실현과 맥을 같이한다. 인권기반적 접근에서 비차별은 “권리 실현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고, 예방되어야 하며,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우선권은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큰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 즉 소외되고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권한 강화(Empowerment)

인권기반적 접근에서는 권한 강화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개인과 공동체는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개인 또는 집단이 스스로의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자발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이나 결과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한강화는 자결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⁴²⁾

41) 한국인권재단. 인권기반 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2016

권한 강화는 앞서 언급한 참여, 책무성, 그리고 비차별성과도 연관된다. 먼저 권한 강화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진정한 참여가 가능하려면,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권한 강화를 통해 참여를 위한 권력(Power)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확보 과정은 사회적 배제와 박탈, 그리고 차별에 대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역량의 강화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한강화는 참여의 조건이자 과정이며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권한 강화는 책무성 강화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권기반적 접근방법은 의무부담자들에게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 즉 책무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의무부담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고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것 또한 요구한다.

결국 인권기반적 접근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인권 실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5) 인권 기준과의 연계(Link to Human Rights Standards)

인권 기준과의 연계(Link to Human Rights Standards)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실행 중인 인권 기준과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 또는 개발의 목표를 연계해서 법·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기반적 접근은 그 자체가 국제인권의 주요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기준과의 연계는 인권기반적 접근의 상기한 원칙들, 즉 참여, 책무성, 권한강화가 법적,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 기준은 인권 규범과 제도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국내적 기준과 국제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인권 기준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인권 관련 법률과 규정, 그리고 판례 및 결정례를 지칭하고, 국제적 기준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과 관련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비준한 조약의 경우, 이 조약들이 모든 정부 기관에 걸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42) 한국인권재단. 인권기반 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2016. p. 64.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헌법」에 의거하여 「헌법」에 의해 체결 및 공포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경찰 인권영향평가 4대 기본원칙 (이준일 외, 2015)

다음으로, 기존연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준일 외(2015)가 제시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의 4대 기본원칙 및 이를 적용한 구정우 외(2017)의 연구를 참고한다. 이준일 외(2015)는 경찰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찰 직무 및 경찰 영역의 인권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전제 아래, 경찰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인권영향평가의 4대 기본원칙으로 ① 법률유보의 원칙, ② 적법절차의 원칙, ③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④ 평등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경찰의 인권영향평가는 “경찰 작용은 법에 근거하고(법률유보), 법의 절차에 따라(적법절차), 필요한 만큼(과잉금지) 차별 없이(평등)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각의 원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의 직무나 권한의 사용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원칙이다.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제한할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가를 인권영향평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앞서 개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내법적 근거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문에서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제9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에도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인권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준일 외(2015)에 의하면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실체적 적법절차 및 절차적 적법절차 모두가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체적 적법절차는 공권력이 준수하게 되는 법률이 그 내용상 합리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절차적 적법절차는 공권력이 법률을 집행할 때 그 절차가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절차적 적법절차는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그 대상자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이 공권력 행사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절차에 영향을 미칠 권리를 지닌,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상정한다. 이러한 원칙은 앞서 언급한 인권기반적 접근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한 강화(empowerment)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갖고 그 견해가 공정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권력의 사용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기 전에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고지받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자신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의 보장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평등의 원칙이다. 이준일 외(2015) 또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 즉 미성년자나 장애인, 또는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 그들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경우의 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채택한 어떤 행위가 수단으로서 정당한 목적

에 부합하는 것이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목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헌법」적 원칙"이다(이준일 외, 2015: 22). 이준일 외(2015)에 의하면, 이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은 경찰의 직무 및 권한의 사용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원칙이다.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이 상호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업무 그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부분, 경찰의 활동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은 때때로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경찰의 활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당화된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실제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가 요청된다. 즉, 불심검문, 임의동행,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과 같이 경찰의 직무 집행법상 부여된 경찰 권한의 행사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단의 적합성은 경찰의 직무, 권한의 사용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가 여부에 관한 원칙이다. 즉, 추구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수단 간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합성은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소침해성의 원칙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행사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 그러한 제한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원칙이다. 만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도 경찰직무 수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경찰의 행위는 불필요한 인권의 제한이 되고, 더 나아가 인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은 경찰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권을 제한하게 될 경우, 그러한 행위가 유일한 것인지, 즉 인권을 제한하지 않거나 덜 제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해당 행위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하여 경찰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경찰 스스로의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

다음으로 법익의 균형성은 경찰의 직무, 권한의 사용으로 인권이 제한될 경우, 그 제한이 법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한 원칙이다. 즉, 경찰의 직무 수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중요성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개인의 인권을 비교하여 그 둘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러한 인권의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경찰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가 단순히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단인가에 대한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적과 중요성에 비추어 제한된 인권의 정도와 범위가 과연 적절한지 여부까지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

이준일 외(2015)가 제시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의 4대 기본원칙 가운데 마지막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경찰의 직무, 권한의 사용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평가 원칙으로, 법 내용상의 평등과 법 적용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7개의 국제인권조약에도 기본적인 인권 규범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유엔 인권사무소의 경찰에 대한 인권 훈련 안내서에도 차별금지를 위한 인권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법 내용상의 평등은 경찰의 직무를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마련되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며, 법 적용의 평등은 경찰이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때,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즉, 경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경찰의 직무나 권한의 행사에 관련된 규정이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여부와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어 실행될 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준일 외(2015)가 제안한 경찰 인권영향평가 4대 기본원칙을 참고하여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경찰청 2017년 인권수사매뉴얼)

먼저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때 실시할 수 있다.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가 수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주관적 범죄혐의가 존재해야 하고, 소송조건의 구비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의 조건이다. 수사의 신의칙은 국가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수사비례의 원칙은 수사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침해될 개인이나 공공의 이익과 수사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형사사법적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은 수사의 기본이념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주의란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여부 또는 증거에 구애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절차법상의 이념을 말한다. 적법절차의 준수는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도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때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규정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여 기본적 인권의 보장 역시 수사의 기본이념에 포함된다. 이렇듯 경찰이 명시하고 있는 수사의 조건과 기본이념에 이미 인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권 보호에 대한 강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i) 수사비례의 원칙, ii) 수사비공개의 원칙, 그리고 iii)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의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수사비례의 원칙은 수사의 결과에 따른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의 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수사비례의 원칙은 앞서 이준

일 외(2015)의 경찰 인권영향평가 4대 기본원칙 가운데 과잉금지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수사비공개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범인의 발견, 검거 또는 증거의 발견, 수집, 보존 등 수사목적상 지켜져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자의 개인적인 비밀, 사생활, 명예 등의 보호를 위해서도 요청되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꼽는다. 자기부죄금지란 「헌법」에 명시된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는 실제 경찰수사관들의 수사활동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구성함에 있어 실제 수사활동을 하는 경찰수사관이 따르고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역량의 세 가지 유형⁴³⁾

Sparrow(1996)는 역량의 개념을 조직역량, 관리역량, 개인역량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직역량은 조직 경영전략과 직결되어 있는 조직차원의 거시적인 역량으로, 조직 전반적 자원과 능력을 의미한다. 조직역량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확산되어야 하고 고객지향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실행중인 경찰인권영향평가제도는 조직역량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들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리역량은 조직 밖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의된 역량을 의미한다. 관리역량은 개인차원의 역량으로, 교육 및 훈련의 목표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를 그 구성요소로 한다. 예를 들면, 강사의 관리역량은 강의 내용 및 정보(지식), 강의력 및 교수법(기술), 이타심 등(태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개인역량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능력으로, 직무 관련 기본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러한 역량에 관한 논의를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에 적용하여보면, 경찰의 인권보장역량은 조직 차원과 구성원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경찰 기관 차원의 조직역

43) Sparrow, Paul R. Competency based pay too good to be true, People management, Dec. 5. 1996. pp. 2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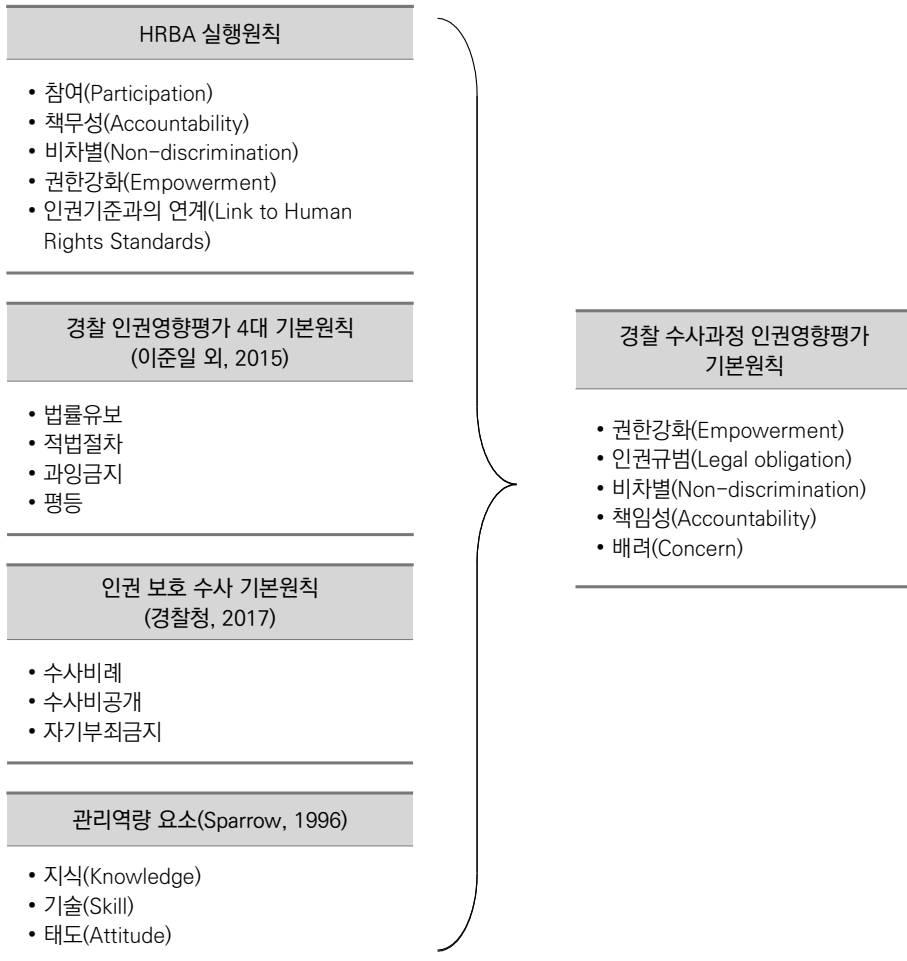
량은 상당히 많이 논의되어 있고, 인권영향평가제도에도 반영되어 있다.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및 실시는 현 경찰조직의 핵심 목표인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의 일환이었고, 이는 조직 차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에 직결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찰기관 구성원 차원의 관리역량은 상대적으로 논의된 바가 매우 적다.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차원의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지식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리역량 측면에 집중하여 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재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관리역량은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지식은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로, 보유자에 따라 지식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수사기관 구성원의 관리역량에 해당되는 것은 법률이나 규정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특정 과제의 수행 능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건에 대한 분석력이라든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능력 등이 포함된다. 수사기관 구성원의 경우, 사건의 조사 시 이러한 분석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특히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세로, 일반 조직의 경우 과제수행에 대한 적극성이나 고객지향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수사기관 구성원에게 공정성 및 타인에 대한 공감성은 중요하게 요구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역량의 세 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지식은 이미 경찰 직무 교육을 통한 법령의 학습 등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체크리스트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기술요소와 공정성, 공감성 및 인권감수성과 같은 태도요소는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으로 기술과 태도라는 관리역량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인권영향평가가 단순히 경찰이나 경찰수사관에 대한 평가로 그치지 않고, 평가를 통하여 개인의 인권보장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인권기반적 접근 원칙, 경찰 인권영향평가 4대 기본원칙,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기본원칙 및 관리역량 3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도출하였다. 아래의 표는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의 구성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5-10〉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



본 연구는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으로 권한강화(Empowerment), 인권규범(Legal obligation), 비차별(Non-discrimin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및 배려(Concern)를 제안한다.

첫 번째 원칙은 권한강화(Empowerment)이다. 앞서 언급했듯, 인권의 관점에서 참여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선택, 결정하고 같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가 가능하려면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참여를 위한

권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와 권한 강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적용하여 보면, 권리보유자로서 개인은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피의자 혹은 피의자 신분 에 놓인 국민의 경우, 그들에게 통상적인 경우에 부여하는 참여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피조사자에게 개인의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피조사자 개인이 자신이 가진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를 충분히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권한강화는 교육, 그리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우선은 이러한 의미 있는 권한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무부담자, 즉 경찰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수사 대상인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사항을 고지하고 이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무부담자의 인권 보장 역량 또한 강화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인권규범(Legal obligation)이다. 이는 수사과정을 포함한 모든 경찰의 대민활동은 인권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인권기반적 접근의 기본원칙에서 언급했듯, 인권기준은 인권규범과 제도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인권 관련 법률 및 규정, 판례 등을 모두 포함하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과 관련 제도를 포함한다. 인권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인권기반적 접근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찰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에 포함되는 법률유보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원칙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관 자신이 국내 인권규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규약들을 인지하고 이 규약들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과 피의자의 주요 인권의 목록 및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수사관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은 단순히 기존의 인권규범이나 제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규범의 침해사례, 또는 그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찰 수사관의 인권 보호역량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이다. 비차별은 인권의 일반원칙이자 핵심가치이다. 인권기반적 접근은 "모든 차별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고, 예방되어야 하며, 제거되어야 한다"는 비차별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준일 외(2015)가 제시한 경찰 인권영향평가 4대 기본원칙에도 이러한 내용의 평등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경찰의 직무, 권한의 사용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특히 세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현저히 제약받는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인권의 핵심가치인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부담자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감수성 및 인권 보장 역량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원칙은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이다. 인권기반적 접근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의무부담자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더 나아가 이를 증진할 의무를 다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책임에는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또한 포함된다. 의무부담자로서 경찰수사관은 국내법 및 국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수사과 같은 경찰활동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책임 또한 지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책임성의 원칙에는 과잉금지의 원칙 또한 포함된다. 경찰 활동과 같이 공권력이 채택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적 이슈가 된다. 그러나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한다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함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최소화가 우선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정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원칙으로 배려(Concern)의 원칙을 설정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관리역량의 주요 요소로, 인권존중 태도를 포함한다.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부담자로서 경찰관의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의무담자의 역량강화는 관리역량의 세 가지 요소, 즉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 가운데 지식은 경찰 직무 교육을 통한 법령의 학습 등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체크리스트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기술 측면의 역량과 공정성, 공감성 및 인권감수성과 같은 태도 측면의 역량 강화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으로 기술과 태도라는 관리역량의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를 통하여 개인의 인권 보장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2)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영역 및 체크리스트 제안

경찰의 수사과정에 초점을 맞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수사의 단계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사의 단계적 과정은 내사(수사의 전 단계) → 수사의 개시 → 수사의 실행 → 사건 송치 → 수사의 종결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범죄형의 유무에 대하여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이 최초로 사건을 수리,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입건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사건이 수리되면, 범인발견 및 증거수집 등의 수사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통상 수사의 실행단계라고 부른다. 수사의 실행 후, 사건에 대하여 진상이 파악되고 적용할 법률과 처리의견을 제시할 정도가 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데, 이 단계를 사건송치라고 한다. 사건의 송치 후 여죄가 발견되었을 경우, 검사의 보강수사 지시 하에 추가적인 수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 추가적인 수사활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종결된다.⁴⁴⁾

44) 현행법상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며,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권이 없다. 그러나 2018년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의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을 크게 내사단계, 수사의 실행단계, 그리고 수사의 종결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수사의 실행단계에는 다양한 수사유형이 포함되는데, 인권 침해의 소지가 빈번히 지적되는 불심검문, 체포·구속, 조사의 3가지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단계에서 인권 보호와 관련된 근거 규정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규정들이 현실 수사과정에서 준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가) 내사단계

내사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범죄혐의 유무에 대하여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내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내사의 개시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8조 범죄의 내사"에서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내사처리 규칙(경찰청훈령 제884호)을 통해 내사의 착수, 진행 및 종결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규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내사처리 규칙의 총칙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되어있다.

〈표 5-11〉 경찰 내사 처리규칙

경찰 내사 처리규칙 (경찰청훈령 제 8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수사개시 전에 내사를 함에 있어서 내사의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내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 인권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사의 기본)

-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내사는 신속·공정·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④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경찰의 내사 처리규칙에 따르면, 내사과정은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사비공개의 원칙 또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의 인권수사 매뉴얼은 내사단계에서 피내사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상황으로 크게 세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피내사자의 변호인 접견권 유무 여부, 내사사건의 공개여부, 그리고 피내사자에 대한 출석 강요가 그것이다. 피내사자의 변호인 접견권 유무 여부와 관련하여서 경찰은 경찰의 내사 처리규칙 제2조 제1항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피내사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접견교통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와 동일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피내사자를 임의동행하였을 경우 피내사자에게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임의동행 사실과 관련하여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사사건의 공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의 내사 처리규칙 제2조 제4항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및 "(경찰청)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9조에서 "경찰관은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수사비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피내사자에 대한 출석 강요와 관련하여서는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2조 제2항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경찰관은 피내사자의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고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내사 단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안할 수 있다.

〈표 5-1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내사단계

기본원칙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인권규범	내사를 실시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가?		
	피내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뚜렷한 근거가 있었는가?		
권한강화	피내사자에게 동행을 요구할 시 동행의 이유와 동행 장소를 고지하였는가?		
	피내사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와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는가?		
비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소수자’에 해당되는가?		
	학력,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약자가 피내사자인 경우,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예: 권한이해 확인, 조력인 동반 등)		
책임성	개인의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는가?		
배려, 인권규범	내사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는가?		

나) 수사의 실행단계

수사의 실행단계에는 매우 다양한 수사유형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수사의 실행단계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빈번히 지적되는 불심검문, 체포·구속, 조사의 3가지 수사 유형에 중점을 두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불심검문

먼저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할 경우, 주로 질문, 소지품 검사, 신체수색 및 임의동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수상자라고 인정될 경우, 경찰관은 그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강제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등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대상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체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수색 시에는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장소와 위치의 선정에 주의해야 하며, 오직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그쳐야 한다. 또,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 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근처의 경찰서나 파출소 등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불심검문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및 주민등록법 제26조를 관련 규정으로 두고 있다. 다음의 표는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 5-13〉 불심검문 관련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5565호)

제3조(불심검문)

-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⑥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법 (법률 제14286호)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 ①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분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분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 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분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불심검문에 있어서 경찰의 인권수사매뉴얼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 되는 4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불심검문 시 정복경찰관 신분증 제시 여부, 불심검문 중 휴대품 조사 정도, 임의동행 거부 시 강제동행 가능 여부, 그리고 임의동행 후 상대방의 퇴거요구 수용 여부가 그것이다.

먼저 불심검문 시 정복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및 주민등록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및 성명을 밝힌 후 검문의 이유와 목적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불심검문의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심검문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 소지품의 조사에 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에는 소지품 조사의 정도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는 관계로, 일부 국내·외 판례로부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놓았다. 인권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휴대품 검사는 의복이나 휴대품의 외부에서 만져서 확인하는 정도까지만 허용되나, 흥기를 소지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방을 직접 열어 내부를 보여주도록 설득하여 확인⁴⁵⁾"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품 검사는 흥기소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만 허용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휴대품 검사 시에는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⁴⁶⁾"고 규정함으로써 소지품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특성 또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의동행 거부 시 강제동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45) 경찰청. 인권 보호 수사 매뉴얼. 2017. p. 37.

46) 경찰청. 인권 보호 수사 매뉴얼. 2017. p. 3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제5항, 그리고 제7항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이 임의동행 요구에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동행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동행에 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상대방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할 수 없으며, 수배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득하여 동의를 구하되 욕설, 위압적 표현,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행을 하는 경우에는 동행의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며 상대방의 가족 등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의동행 후 상대방의 퇴거요구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임의동행 후 조사나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하며,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퇴거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언제든지 즉시 퇴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고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불심검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안할 수 있다.

〈표 5-14〉 불심검문 체크리스트

기본원칙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권한강화	임의동행 시 상대방에게 가족과의 연락기회를 부여하였는가?		
	임의동행 시 상대방에게 변호인 조력권, 퇴거요구권 등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는가?		
인권규범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 요구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및 성명을 밝힌 후 검문 또는 임의동행 요구의 이유와 목적을 고지하였는가?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를 하도록 하였는가?		
책임성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 요구 시 합리적인 판단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는가?		
	공권력을 과잉으로 행사하지 않았는가?		

기본원칙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비차별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검문 또는 임의동행 요구의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했는가?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그들에게 변호인 조력권, 퇴거요구권 등의 권한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배려	반말이나 고성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불심검문 시 소지품 조사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하에 비강압적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는가?		

(2) 체포·구속

수사의 실행과 관련하여 체포 및 구속은 개인의 신체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의 경우, 그러한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수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으로 현행범 체포와 함께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⁴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47) 황문규,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판결 2011도 3682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14, p.187-218.

48)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p. 245.

〈표 5-15〉 긴급체포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13720호)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경찰의 인권수사매뉴얼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 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하며, 체포 시에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최소한의 강제력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긴급체포의 대상이 미성년자나 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일 경우, 피의자의 권한을 고지 후 그 이해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법 체포에서 현행범인은 현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지칭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4조에 명시되어 있다.

〈표 5-16〉 현행법 체포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13720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행위가 된다.

현행범의 체포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한계가 주요 쟁점이 된다.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5조에 의하면,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범죄 실행 직후인 자'의 요건에 의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장소적 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현행범의 요건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의 2항을 보면, "②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누구인지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의 요건에 의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주의사항 또한 충분히 고려한 후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현행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체포나 강제연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추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포·구속의 통지 또한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하면,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97조에 의해 이러한 통지는 체포·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사법경찰관 명의로 일정 서식의 체포·구속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시 고려해야할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5-17〉 체포·구속시 체크리스트

기본원칙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인권규범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 체포의 합리적, 합법적 근거가 있었는가?		
	체포 후 지체없이 가족에게 통지하였는가?		
	체포·구속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고 반영하였는가?		
권한강화	체포·구속 시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가?		
	체포·구속 시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 법률상 보장된 권리와 방어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책임성	체포·구속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체포·구속의 과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을 포함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비차별	미성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 권리 이해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학력,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는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연행을 한 적이 있는가?		
배려	체포과정에서 반말이나 고성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3) 조사(신문)

피의자 조사(신문)는 수사기관이 피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신문 자체가 경찰관서에서 이루어지고, 복수의 경찰관과 대면하여 계속되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피의자를 위축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전인 권위주의 정권시절 형성된 폭력적인 경찰수사관의 이미지도 그러한 선입견에 일조한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모두 피의자 신문을 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한을 고지하여야 한다. 특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의자가 외국인이거나 농아자일 경우,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은 통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신문)와 관련하여 경찰의 인권수사매뉴얼에서는 크게 4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 여부, 폭행 등 가혹행위 여부, 심야조사 및 변호인 조력권이 그것이다.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술거부권의 경우, 변호인 조력권과 더불어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 가운데 대표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진술거부권이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들 때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또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찰의 인권수사를 위한 기본원칙 중 하나로 확립되어 있다.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18〉 진술거부권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13720호)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의 고지)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경찰관의 인권수사매뉴얼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 시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 통역 등의 조력인을 통하여 진술거부권을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한 후 신문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신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및 가혹행위,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조사(신문)과정에서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는 「헌법」 및 「형법」에 의해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해 폭행·가혹행위를 통하여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 표는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5-19〉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규정

헌 법
제12조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 법 (법률 제15793호)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제13720호)
제309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폭행 및 가혹행위의 금지는 비단 국내법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규약으로도 명백하게 규정되어있다. 유엔이 1984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1995년에 가입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은 당사국에게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방지할 의무’, ‘고문의 피해자를 지원할 의무’ 그리고 ‘고문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를 요청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이러한 국내법·국제법상의 인권규범을 준수하여 조사(신문)과정에서 일체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없도록 인권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는 그동안 대표적인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으로 지적되어 왔다. 심야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체력이 고갈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시민사회 및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심야조사에 의한 신문조서는 해당 조사가 피의자의 수면·휴식권을 침해하여 얻어낸 진술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의 대법원 판례결과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야조사에 관한 기존의 결정에서 “「헌법」제10조는 수면권과 휴식권을 소위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는 인격권을 그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권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적정한 수면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심야조사는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 생활 및 생존방식을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밤을 새워 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자는 물론 피조사자의 심신에 고통과 피로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금하고 다만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⁵⁰⁾

이와 함께 경찰 조사의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에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심야는 00시부터 06시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예외사항 또한 두고 있어 예외가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심야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정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49) 홍관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 법학논총, 2018. 38(1), pp. 591-640.

5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2012. pp. 325-326.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또한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은 2000년대 이르러서야 명문화되었다. 2003년 대법원의 ‘송두울 교수 사건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2004년 ‘총선시 민연대 최열 대표 사건 결정’의 결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비로소 명문화되었다.⁵¹⁾

〈표 5-20〉 변호인 조력권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13720호)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51) 조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저스티스. 2017. pp. 86-105.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개시 전인 내사단계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이후 피의자 신문과정에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피의자 신문조서에 강력한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외부와의 접견교통권이 차단된 채 이루어지는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로 하여금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인한 심리적 자포자기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권 침해의 소지 또한 다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것은 신문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써도 그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변호인 조력권을 포함한 피의자 방어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17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중 조언을 할 수 있으며, ② 신문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③ 필요한 경우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조사일시를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⁵²⁾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시범운영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변호인에게 신문내용 기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변호인에게 신문내용 기재를 허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의자에게도 신문내용의 기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를 작성할 때,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답변을 하였는지, 폭언이나 자백강요 등 인권 침해를 받았는지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관행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의

52) 최준영, 토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2018, pp. 52-58.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피의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상당수의 피의자는 법에 보장된 피의자 권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안다고 하더라도 조사(신문)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조사 중 본인의 진술이나 수사관의 질문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은 추후 이어질 수사나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피의자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⁵³⁾ 또한 이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관의 불법적인 강압수사나 조사과정에서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가 도입되어 잘 활용된다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지난 2018년 4월부터 약 3개월 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및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등의 피의자 권리 안내 등의 내용이 4개의 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진술내용을 기록하여 앞으로의 조사과정 및 소송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자기변호노트를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8명 가운데 67%인 72명이 자기변호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57%인 67명이 다음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자기변호노트를 기록하겠다고 응답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자기변호노트 작성권 이외에도 경찰 수사과정 인권 보호를 위해 ‘진술녹음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가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나 회유, 수사관의 고압적 언행 등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중대하게 제기되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53) 권보은,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2018.

공유하였다. 이에 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조서의 임의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진술녹음은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조사의 전과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작·왜곡의 가능성이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녹음·녹화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첫째, 조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둘째, 진술자의 기억 환기, 그리고 셋째,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의자 조사(신문)시 고려해야할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표 5-2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조사(신문)단계

기본원칙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권한강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법률상의 피의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변호인 참여 신청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등)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실제로 자유롭게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음하였는가?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주요인권규약이 제시하는 규범을 준수하였는가?		
인권규범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 및 인권 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피의자 신문 전에 법률상의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피의자가 이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변호인 참여 신청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고 반영하였는가?		

기본원칙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비차별	소년·노약자·장애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보장해 주었는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자의 참여를 보장하였는가?		
	학력,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는가?		
	성적 소수자가 관련 시민단체의 조력을 받아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수용해 주었는가?		
	피의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경우에도 성적 소수자의 성정체성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였는가?		
배려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지 않았는가?		
	수사과정에서 폭언, 욕설, 강압적인 어투, 비하하는 언어,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가?		

3) 수사종결 단계

수사의 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모든 수사에 대한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 있다. 그러나 2018년 6월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의하면,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한 ‘정부안’으로 향후 입법절차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 어느 쪽이 권한을 더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 등 국민의 삶이 수사권 조정으로 얼마나 개선될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직 수사관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수사권 조정과는 별개로 수사종결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2〉 수사종결단계 체크리스트

기본원칙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권한강화	조사내용에 대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비차별	조사내용을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사에 참여한 신뢰관계인이나 보조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였는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보존하였는가?		

3.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용 방향

가. 경찰 인권영향평가 추진 체계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운용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 전에 기존연구에서 제안된 경찰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로 경찰청 소관법률(경찰법) 또는 경찰청 훈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경찰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청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청내 소관부서는 감사관 산하의 인권 보호담당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29호 제6조제2항)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절차는 개시 → 심의, 확정 → 결과 통보 → 반영의 단계로 진행하도록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 인권영향평가는 관계부서 협의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하면서 개시된다. 이후 인권 보호담당관이 기초심사를, 경찰청인권위원회에서 본 심의를 실시한다. 심의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안된 경찰 인권영향평가(안)의 개요는 다음 표에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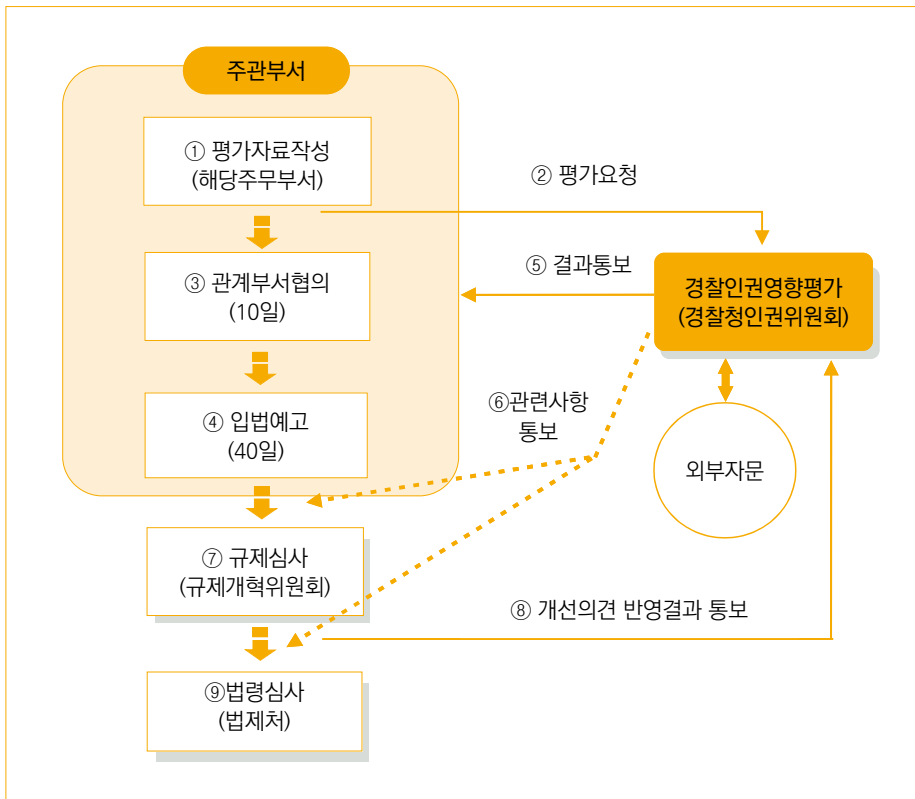
54) 구정우·김선웅·김두년·정진원.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연구. 경찰청. 2017.

〈표 5-23〉 경찰인권영향평가(안)의 개요

구 분		경찰 인권영향평가	
목적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관법령 및 주요정책이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치안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한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근거법령		경찰청훈령(경찰 인권 보호 규칙, 경찰청훈령 제872호, 2018. 5. 14 일부개정)	
조직		“경찰청인권위원회”에서 담당 - 담당부서 : 감사관 산하의 인권 보호담당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29호) 제6조 제2항)	
대상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 활동의 주요 영역 (법령의 제·개정 및 치안정책, 대형 집회·시위 등)	
평가 절차	개시	관계부서 협의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 요청	- 경찰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거쳐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 - 인권 침해 유발요인이 있는 법령 중 평가대상 선정
	심의·확정	- 인권 보호담당관이 기초심사 - 경찰청인권위원회에서 심의	좌동
	결과통보	입법예고 종료일 이전에 결과통보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 참고의견 등)	심의 종료 후 소관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현행유지, 개선권고, 참고의견 등)
	반영	경찰청장 검토 후 입법에 반영 또는 제·개정에 반영	
효력		권고적 효력(경찰위원회 의결로 개선 요구 시에는 법적효력)	

출처: 구정우 외.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연구. 2017. p. 87.

경찰 인권영향평가의 업무처리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에 따라 〈그림 3〉, 〈그림 4〉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림 3〉는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행단계를 도식화한 것이며, 〈그림 4〉는 현행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행단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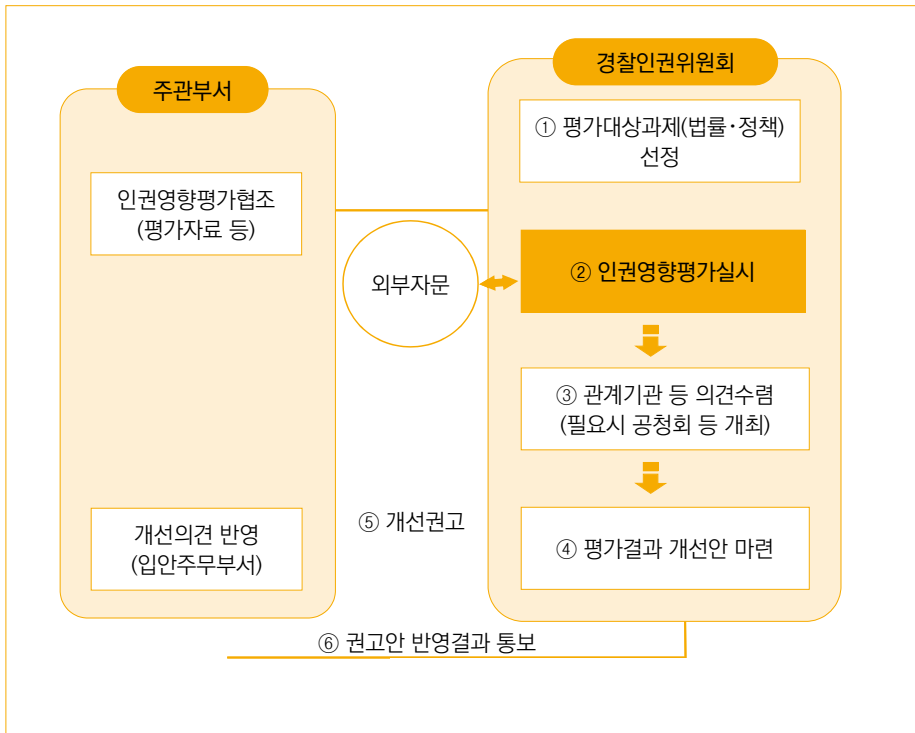


[그림 5-3]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행단계

출처: 규정우 외.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연구. 2017. p. 90

경찰청 산하 주관부서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령안과 경찰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경찰인권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소관부서가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 자료를 토대로 통상 40일 이내(관계기관 협의의 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권영향평가 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참고의견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

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림 5-4] 현행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단계

출처: 구정우 외,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연구, 2017. p. 93

다음으로, 현행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그림 4〉), 경찰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계획을 각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인권영향평가 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경찰청 주관부서는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하며, 위원회는 법령 및 정책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개선권고(안) 작성한다. 주관부서와 협의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는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만약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부서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안된 경찰 인권영향평가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 중점을 둔 인권영향평가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나. 경찰 인권영향평가 주제

지난 2018년 6월 최초 실시된 경찰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청 내의 감사관 소속 인권 보호담당관이 주관하여 실시되었다. 2018년 5월 개정된 '경찰 인권 보호 규칙'에 의하면, 경찰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청장이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표 6) 참조). 본 연구는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주제로 현행과 같이 경찰청장이 주관하도록 하는 제1안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안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한다.

먼저 제1안으로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역시 현재 실시중인 경찰 인권영향평가와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일선 경찰이 수사활동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작성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경찰서의 인권 보호담당관이 일괄 수집하여 요청이 있을시 경찰청의 인권 보호담당관실에 제출한다. 인권 보호담당관은 제출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실시할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찰 인권영향평가와 함께 즉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찰청장이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할 경우, 외부 자문을 받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2안 또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2안으로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제안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 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임명제청에 사전 동의권을 행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갖고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나,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 결과, 명목상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자문기구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형식적·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과한 상태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여 왔다.⁵⁵⁾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7년 6월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을 위해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에 소속하되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하면서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을 포함한 강화된 권한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에 따르면, 독립적인 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위원을 임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사무기구에 "인권 보호팀"을 설치하여 경찰 인권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9019호) 제5조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에 의하면,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9조 의견청취 등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55) 경찰개혁위원회. 경찰개혁위 권고안(30건). 2018.

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또는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심의·의결을 할 때, 경찰 인권영향평가를 자료로 첨부하도록 명시하여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경찰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만, 법이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경찰위원회 실질화도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시간 내에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제안된 두 가지 안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경찰청 인권 보호담당관이 주관하는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별도의 법 개정절차 없이 즉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가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 주관하는 경우, 경찰청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제도정비, 더 나아가 조직구성 및 역할배정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안을 채택하여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경찰 인권영향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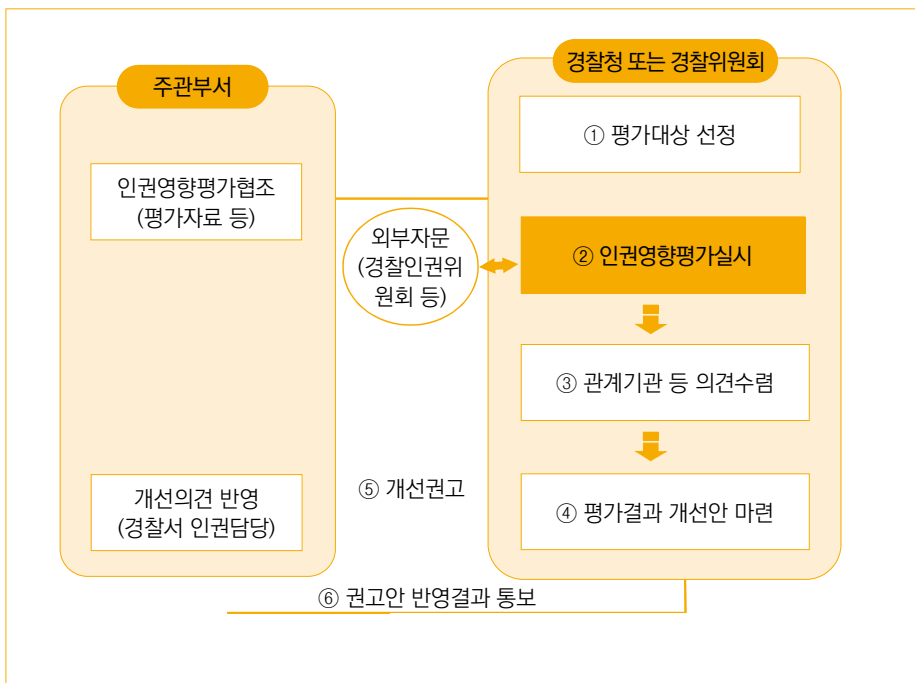
인권친화적인 경찰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에만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는 당면한 문제해결만을 위한 미봉책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경찰의 인권역량 강화라는 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 주기를 확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는 각 서 단위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⁵⁶⁾들을

56) 현실적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는 모든 수사사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경찰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모집단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제안된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수사단계별로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수사관이 해당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각 서별로 인권 보호관을 두어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수집된 자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앞서 제안된 경찰 인권영향평가 주체에게 제출한다.

경찰청 인권 보호담당관 또는 경찰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시 대상이 되는 수사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외부자문기구(경찰인권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에는 심의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서 및 일선 경찰서로 환류하여 경찰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림 5>은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5-5]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단계

출처: 저자 작성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는 그 속성상 사후평가로 진행된다. 경찰 인권영향평가의 주 목적 가운데 하나가 경찰 활동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나,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수사활동 이전에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후평가 결과를 경찰수사관에 환류함으로써 유사한 침해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효과가 전무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평가의 결과는 추후 같은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에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은 평가결과가 구성원 또는 해당조직의 상벌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인권영향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조직이나 구성원에게 상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찰조직 및 구성원의 인권 보호 역량을 키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평가결과를 인권역량 향상의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소결

현 정부는 인권을 국가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설정하고, 과제 목표로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을 제시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권영향평가제 실시를 명시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청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 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인권영향평가제’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6월, 중앙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였다.

경찰청은 친인권적 경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2015년부터 관련 연구를 통해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준비하여 왔다. 그 가운데 이준일 외(2015)의 연구는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제도의 개요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경찰 인권영향평가의 기본 바탕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데 법 중심적 접근방식을 견지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과 효과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한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기본적 접근을 통해 인권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권리보유자(Rights-holder)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부담자(Duty-bearer) 또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으로 권한강화(Empowerment), 인권규범(Legal obligation), 비차별(Non-discrimin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및 배려(Concern)를 제안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경찰의 수사과정을 크게 내사단계, 수사의 실행단계, 그리고 수사종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제시된 기본원칙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운영방안으로 현행과 같이 경찰청장이 주관하도록 하는 안과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위원회가 주관하는 안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현행 경찰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청 내의 감사관 소속 인권담당관이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함께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별도의 법률 재개정이나 기구의 정비 없이 절차와 도구가 확정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주관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찰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두 번째 안을 제안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 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임명제청에 사전 동의권을 행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에 따르면, 독립적인 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위원을 임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사무기구에 "인권 보호팀(가칭)"을 설치하여 경찰 인권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행할 수 있다. 먼저 일선 경찰이 수사활동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작성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경찰서의 인권 보호담당관이 일괄 수집하여 요청이 있을시 경찰청의 인권 보호담당관실(제1안) 또는 경찰위원회 인권 보호팀(제2안)에 제출한다. 인권 보호담당관 또는 인권 보호팀은 제출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결과는 즉시 환류하여 유사한 침해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찰조직 및 구성원의 인권 보호역량을 키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평가결과를 인권역량 향상의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절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1. 영향평가 관련 법제의 개관

인권영향평가와 유사한 각종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이 개별법을 법률로 제정하고 위임입법으로 소관부서에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표 5-24〉 개별법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근거법령	영향평가 종류	비 고
※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4567호, 1993.6.11. 제정, 2011.7.21. 전면개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	- 환경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1046호, 2011.9.15.제정) - 2017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

개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각 부처별로 소관법률을 개정하여 ‘영향평가’에 관련 장을 신설하거나 해당 조문을 신설할 수도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교통영향평가 제도인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장(제3장)을 설치하고 제15조 내지 32조에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지역 및 사업(제15조), 지역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제17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제19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제22조), 이행조치명령 등(제24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제25조) 등의 구체적인 조문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및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라는 근거 조문만을 두고, 동법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에서 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0조 내지 제34조에서 부패유발의 가능성, 법령준수의 용이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그 밖의 부패유발 가능성 존재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제31조(자문기구),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제34조(이해관계인 출석요구)등의 규정을 두고 입법과정에서의 부패영향평가를 명문화 하고 있다.

〈표 5-25〉 소관법률 내에 장(章) 또는 조문(條文)을 신설하는 경우

근거법령 및 조문	영향평가 종류	비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장(교통영향평가) - 제15조 내지 제32조)	교통영향평가	국토교통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28조(법령 등에 의한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불안전영향평가)	건축물안전영향평가	국토교통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영향평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영향평가	행정안전부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에는 근거규정이 없지만 행정규칙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있다. 경찰청의 경찰인권 보호규칙이 대표적인데, (경찰청)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7.28.폐지제정)을 (경찰청훈령 제873호, 2018.5.23.일부개정)으로 개정하면서 제4장(인권영향평가)을 신설하였다. 경찰청 및 지방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의 업무(제4조 4호)에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6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서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규정하고, 제22조(평가기준)에서 평가기준을, 제23조(평가절차)에서 평가절차를, 제24조(점검)에서는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5-26〉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근거법령	영향평가 종류	비 고
※ 경찰인권 보호규칙(경찰청 훈령 제873호) 제21조 내지 제24조)	경찰인권영향평가	경찰청

2.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

가. 검찰의 인권관련 업무 개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검찰청법(법률 제14582호, 2017.3.14. 시행, 법무부 검찰과 소관)에는 인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법무부의 조직과 기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207호, 2018.10.2.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의 주요업무는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NAP의 수립), 인권 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담당한다(대통령령 제11조의2). 소관법령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인권구조과 소관), ‘인권 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법무부훈령 제834호, 2011.9.8.시행, 인권조사과 소관)’, 인권 보호상황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899호, 2013.6.19. 제정)이 있다. ‘법무부 인권정책 자문단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1152호, 2018. 4.30. 시행, 인권정책과 소관)’은 30인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전반적인 검찰, 범죄예방, 교정 및 출입국·외국인 정책 등의 법무행정의

인권 침해 예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의 심의기구로는 범위가 너무 넓다. 법무행정관련 인권 침해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처리·구제하는 인권 침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의 주요업무는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검찰행정(인사·조직 등),公安·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公安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대통령령 제10조). 법무부 검찰국의 소관법률은 각급 검찰청 사건의 수리·수사·수사·처리 및 공판 수행을 총괄하는 「검찰사무규칙」(법부령 제924호, 2018.5.2. 시행, 검찰과 소관)을 비롯하여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1151호, 2018.5.10. 시행, 형사기획과 소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1060호, 2016.4.22. 시행, 형사기획과 소관), 「외국인 범죄 수사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1100호, 2015.12.8. 시행, 국제형사와 소관)이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행정과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을 총괄 지휘하고 있어 수사과정의 인권 보호와 관련성이 밀접하다.

나. 인권영향평가의 조직구성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운영지원과 소관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규정」(법무부훈령 제1114호, 2017.08.08.시행)에 의거하여 법무부 소관 법무·검찰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제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고 보인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운영과 행정지원은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2) 법무부 인권국

법무부 소관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총괄 기획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내의 인권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

과의 소관업무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는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1152호, 2018.4.30.시행)’을 주관하고 있고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외부자문을 포함한 기획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인권 침해 사건에 관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무부 인권조사과에서는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시행세칙 인권 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45호, 2011. 8. 4. 시행) 및 인권 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법무부훈령 제834호, 2011. 9. 8. 시행), 인권 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899호, 2013.06.19. 시행)등의 소관법령을 가지고 있어 법무행정분야의 인권 침해 예방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법무행정관련 인권 침해 사건의 자체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업무로 하고 있다.

결국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라고 하더라도 국가전체의 인권정책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고 추진력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인권국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3) 법무부 검찰국

법무부의 수사과정은 모두 검찰청 소속의 검사의 전속업무로 되어 있고 검찰조직과 검찰행정(인사·조직등), 검찰예산에 관한 업무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담당한다.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담당한다. 검찰사건에 관한 지휘업무를 위해서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924호, 2018. 05. 02.시행)과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956호, 2017. 3. 30. 시행)을 가지고 있다.

검찰국 형사법제과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업무를 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을 규정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시행)’를 가지고 있다.

검찰국 형사기획과는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1151호, 2018.5.10. 시행)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1060호, 2016. 4. 22. 시행)’을 가지고 있다. 이 용역의 목적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영향평가업무에 한정한다면 검찰국에서 형사기획과에서 실질적인 기획과 감독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4)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의 수사업무를 총괄 심의하는 기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다. 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15호, 2018.1.2.시행)에 따라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서 운영 및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검찰의 수사업무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검찰조직내의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는 검찰조직의 수사업무를 총괄 심의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획조정부)가 담당하도록 한다.

5) 각급검찰청(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등의 각급검찰청에는 수사검사와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

한편,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1151호, 2018.5.10. 시행) 제67조 내지 제73조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를 보장, 강화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인권 보호관을 둔다(제67조 제1항). 인권 보호관은 부부장검사 이상의 검사를 인권 보호관으로 지정하는데(동조 제3항), 대검찰청에는 감찰본부장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여러명 일 때에는 제1차장검사)를 인권 보호관으로 지정한다(동조 제2항). 다만, 부부장 검사 이상의 검사가 없는 검찰청에는 검사를 인권 보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인권 보호관은 인권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인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제68조). 인권 보호 담당관은 인권 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인권 보호관의 위임을 받아 인권 보호와 관련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제69조). 이상의 사항을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업무 운영체계를 개관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27〉 현행 검찰의 인권업무 운영체계 개관

구 분		내 용	
목적		검찰과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국민의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규정		- 검찰청법(법률 제14582호, 2017.3.14. 시행)에는 인권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1151호, 2018.5.10. 시행)’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1060호, 2016.4.22. 시행)’은 수사과정의 전반적인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다만,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검찰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경찰청의 ‘경찰 인권 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873호, 2018.5.23. 일부개정)’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본부)	주관부서	• 법무부 인권국	• 법무부 검찰국
	담당부서	- 인권 침해예방, 구제(인권조사과)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수사과정 인권 보호 (형사기획과) - 검찰사건 사무처리(검찰과)
	인권업무	• 인권정책 및 사후구제업무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각급 검찰청	대검찰청	• 인권 보호관(감찰본부장) ⁵⁷⁾ : 인권 보호담당관(부부장검사이상) ⁵⁸⁾	
	고등검찰청	• 인권 보호관(차장검사) ⁵⁹⁾ : 인권 보호담당관(부부장검사이상)	
	지방검찰청	• 인권 보호관(차장검사, 제1차장검사) : 인권 보호담당관 (부부장검사이상)	
	지청	• 인권 보호관(지청장)-인권 보호담당관(부부장검사 또는 검사)	
경찰청		• 검찰 송치전의 사건처리와 관련된 인권 보호	

다.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절차

각급 검찰청(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수사검사)과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인권 보호관)간의 관계에서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인권영향평가 요청(수사검사)

수사검사가 수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사계획수립시점을 기준으로 수사계획서에 의거 수사착수 시부터 수사종결 시까지 수사과정에서 예상되는 검찰인권영향평가서(이하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인권 보호관 또는 인권 보호담당관에게(이하 “위원회”)에 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다.

57)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7조 제2항 전단.

58)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7조 제3항.

59)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7조 제2항 본문.

인권 보호관에게 인권영향평가 요청시 함께 제출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5-28〉 인권 보호관에게 인권영향평가 요청 시 함께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검찰자체수사사건	• (검찰)인권영향평가서	• 수사과정 전반의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
경찰송치사건	• 검찰인권영향평가서	• 경찰수사과정을 제외하고 검찰 수사과정의 영향평가만 작성
	• 경찰인권영향평가서	•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서는 첨부자료로 제출

2) 인권영향평가 및 결과 통보(인권 보호관)

인권 보호관은 수사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거쳐 수사착수 전후에 수사검사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수사착수 전후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최소한 수사종결 전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수사대상자의 미확정, 인권영향평가서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평가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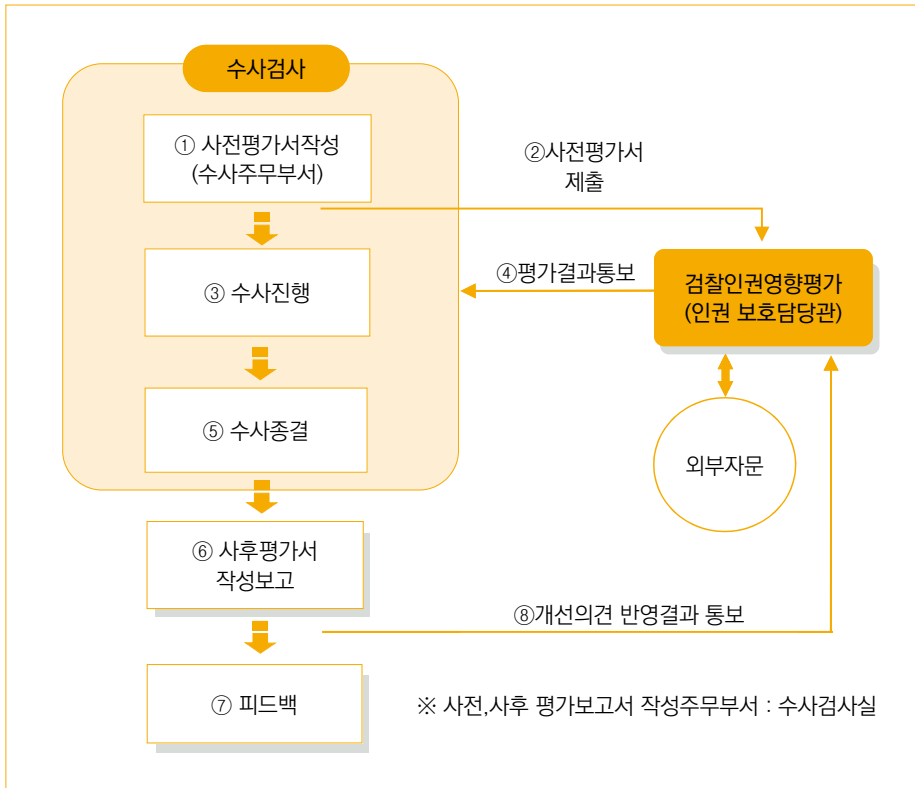
인권 보호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검찰인권영향평가기초자료와 수사검사가 작성한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인권 보호관은 인권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또는 수시로 수사검사에게 인권영향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수사검사는 인권 보호관으로부터 인권영향평가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3) 인권영향평가의 흐름도

법령이나 주요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의 시행결과를 예측하여 사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는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검사가 사건에 착수하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수사절차에 따라서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 인권 보호관에게 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하고 인권 보호관은 수사과

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인권영향평가의견을 통보하고 수사검사는 수사과정 종료 후에 개선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영향평가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5-6]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흐름도

라. 검찰의 인권영향평가 보완사항

- 1) 첫째, 현행 법규상 검찰의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 검찰청법(법률 제14582호, 2017.3.14. 시행)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924호, 2018.5.2. 시행)에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둘째, 검찰의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인권영향평가규정을 설치할 경우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1151호, 2018.5.10. 시행)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

보준칙(법무부훈령 제1060호, 2016.4.22.)에 각각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먼저 도입한 경찰청의 경찰 인권 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873호, 2018.5.23.일부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3) 셋째, 검찰관련 법령에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내부 조직에 의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성 있는 제3의 기관 또는 민간조직을 인권영향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15호, 2018.1.2.시행)을 개편하여 검찰수사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인권보호수사준칙 내의 조직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등 각급 검찰청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원회를 설치하고 위촉 위원 중에는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경찰인권 보호규칙 참조).

마.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기초자료 및 체크리스트 작성

1)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수사검사실에서 작성하는 검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참고서식)는 수사착수사유에서부터 체포·구속단계, 압수·수색단계, 피의자 신문단계, 피해자·피의자 조사단계, 사회적 약자 보호, 처분 및 공판단계, 수사상황 공개단계에 따라서 예상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첨부하도록 한다.

〈표 5-29〉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사건명							
피의자	성명:			성별:		연령:	
수사착수사유	신고	제보	고소 고발	언론	내사	변사	경찰송치
체포·구속	체포	구속	구속사유 통보(가족등)		출국금지		지명수배
압수·수색	피의자	제3자	주거,사무실		컴퓨터, 금융거래		신체지명수배
피의자 신문	출석요구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등 참관		심야조사		촬영
피해자, 참고인보호	피해자진술권	신뢰관계자 동석	전용조사실		신변보호		사생활보호
사회적약자보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약자		외국인		환자
처분 및 공판단계	기소	불기소	각하		약식기소		공판
수사상황공개	공개	비공개	일부공개				
수사종결	기소			불기소			
	구속	불구속	약식	기소 유예	협의없음		공소권없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국제인권규범, 인권관련 국제조약,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준칙,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예상하여 수사검사가 작성하여 인권 보호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표 5-30〉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인권 보호 수사총칙

근거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헌법」 제12조제3항 준칙 ⁶⁰⁾ 제1조	[인권 보호 목표] 전반적인 수사절차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를 준수에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가?		
검찰청법 제9조의3 준칙 제2조	[인권 보호의 책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와 사업정의 실현을 위해 사법경찰관리가 지휘·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세계인권선언 제5조, 고문방지협약 제15조 「헌법」 제12조제2항 형사소송법 ⁶¹⁾ 제309조 준칙 제3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차단하고,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의 임의성을 차단할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헌법」 제11조 준칙 제4조	[차별의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배제하였는가?		
세계인권선언 제12조 「헌법」 제17조 준칙 제5조	[공정한 수사]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준칙 제6조	[명예·사생활보호]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조치를 하였는가?		
준칙 제7조	[임의수사원칙]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 범위를 최소화 하였는가?		
준칙 제8조	[수사지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는가?		

〈표 5-3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수사착수단계

근거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형소법 제307조 준칙 제11조	[내사·수사 착수 시 유의사항] 내사·수사 착수 시 유의사항(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한 근거, 신고자, 제보자, 피내사자,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제보동기, 내사나 수사의 가치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는가?		
준칙 제12조	[내사·수사의 장기화지양] 수사기간이 장기화되지 않고 단기간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인가?		
준칙 제13조	[출국금지 등 억제] 관계자의 출국금지나 출국정지가 필요 없는 사건인가?		

60)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1151호, 2018.5.10. 시행), 이하 이 준칙의 경우에는 해당 조문만을 인용한다.

61) 형소법(법률 제13720호, 2016.1.6.시행) 이하 '형소법'이라 한다.

〈표 5-3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체포·구속 단계

근거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헌법」 제27조제4항 준칙 제14조	[체포·구속 최소화] 체포·구속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는가?		
검찰청법 제30조 준칙 제15조	[체포여부 결정시 유의사항]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체포인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준칙 제16조	[구속수사 기준 등]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과, 범행의 성격이나 선고형량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가?		
준칙 제17조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조사]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면담 조사하였는가?		
형소법 제200조의2 검찰청법 제21조, 준칙 제18조	[구속영장 청구서등 유의사항]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체포 또는 구속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가?		
형소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5 검찰청법 제20조 준칙 제19조	[체포·구속 시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준수사항(피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집행공무원의 소속 성명의 고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고지, 변명기회의 부여, 영장의 제시, 자해 등의 예방조치,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의 침해금지, 가족과 지인의 보호 등)을 확인하였는가?		
검찰청법 제26조 준칙 제20조	[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24시간 내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등에 구속일시와 장소, 변호인 선임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가?		
준칙 제21조	[지명수배 해제] 지명 수배자를 검거, 인수 또는 자진 출두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였는가?		
준칙 제22조	[구속의 취소] 구속 후 사정변경으로 구속사유가 없어진 경우 신속히 구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검찰청법 제44조 준칙 제23조	[구속사건의 신속처리]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계속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준칙 제24조	[구치감 시설기준] 구치감은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표 5-3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압수·수색·검증 단계

근거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검찰청법 제51조 준칙 제25조	[압수·수색 영장청구] 압수·수색·검증이 대상이 구체적이고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인가?		
「헌법」 제16조 형소법 제106조, 제125조 준칙 제26조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압수·수색과 관련한 준수사항(압수·수색영장의 제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경우 그 사유의 고지, 주간 집행 원칙과 기재된 영장에 의한 야간집행,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 보장, 수사에 필요한 범위의 압수·수색과 과잉압수의 금지, 압수목록의 교부, 영업 서류 등의 신속한 환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형소법 제106조 제3항 준칙 제27조	[컴퓨터 등 압수·수색] 컴퓨터를 압수하는 경우 저장장치에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본체를 압수하였는가?		
형소법 제124조 준칙 제28조	[신체의 수색·검증] 신체의 수색·검증하는 경우 수치심이나 명예훼손 예방조치를 하고 여성의 경우 성년여성을 참여시켰는가?		
준칙 제29조	[사체의 검시·부검] 사체를 검시·부검하는 경우 변사자나 유족에게 예의를 갖추고 법의학 지식이 있는 자의 참여와 장례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준칙 제30조	[금융거래자료추적] 금융거래자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범죄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계좌와 직후로 연결된 계좌로 한정하였는가?		
준칙 제31조	[통신제한 등의 최소화]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인가?		
준칙 제32조	[압수물의 부당사용금지] 압수물을 정당한 직무범위 이외에 사용하거나 수색·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누설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표 5-34〉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피의자 신문단계

근거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검찰청법 제7조	[수사기밀의 유지] 검사 및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은 수사 기밀을 준수하고 있는가?		
검찰청법 제12조 준칙 제33조	[출석요구] 피의자 출석 요구 시 유의사항(명예 또는 사생활침해 예방, 시간적 여유부여, 피의사실 고지, 대표자의 우편진술,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헌법」 제12조2항 형소법 제283조의2 준칙 제34조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였는가?		
준칙 제35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형소법 제243조의2 검찰청법 제9조의2 준칙 제36조	[신문 시 변호인 참여] 피의자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또는 대표변호인 1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검찰청법 제12조의2 준칙 제37조	[가족 등의 참관] 피의자가 미성년자 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을 허용하고 있는가?		
준칙 제38조	[피의자 조사 시 유의사항] 피의자 조사 시 유의사항(강압적이고 무리한 조사 금지, 소환 즉시조사 착수, 공정성의 의심 받는 언행 금지, 혐의사실 해명기회부여, 사생활 보호조치, 부당한 함의 강요금지, 위험한 물건의 격리조치, 출석 후 상황기록 작성보관, 수기메모의 허용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헌법」 제12조 제5항 준칙 제39조	[구속피의자 등의 조사]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변호인, 가족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석 가능 여부 확인, 신속한 조사 후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내고, 불필요한 이감을 지양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준칙 제40조	[심야조사금지] 피의자 조사는 자정이전 종결을 원칙으로 하고, 자정 이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인권 보호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가?		
준칙 제41조	[참여직원 단독조사 금지] 검사실 수사업무 종사자는 검사 없이 단독조사를 지양하며, 검사가 조사 종료 후 조서내용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준칙 제42조	[휴식시간부여] 장시간 조사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요청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는가?		
준칙 제43조	[자백편중 수사의 지양] 자백의 합리성이 의심되거나, 공범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증명력 판단에 신빙성이 있는가?		

〈표 5-35〉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의 보호

근거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검찰청법 제13조의5 준칙 제44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보장]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사실관계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청 등 의견진술기회의 제공, 피해자의 상담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가?		
준칙 제45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등 수사결과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수사결과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가?		
준칙 제46조	[2차 피해방지] 검사는 수사과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복조사, 증인신청, 원하지 않는 접촉 지양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검찰청법 제12조의3, 준칙 제47조	[신뢰관계자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참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는가?		
준칙 제48조	[전용조사실의 이용]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진술이 어려운 경우, 16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전용조사실을 이용하고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고 있는가?		
준칙 제49조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검사는 특정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신고자,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27조5항 준칙 제50조	[피해자의 권리와 유익한 정보제공] 검사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수사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와, 압수물 가환부,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준칙 제51조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성폭력 등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사생활의 비밀보호, 편안한 상태의 진술환경, 피해사실 노출방지, 비난이나 저속한 표현의 금지,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사실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안내,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준칙 제52조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피해자나 참고인 소환시 지체없는 조사, 원거리 거주자의 우편진술, 공조수사, 전자우편 또는 전화청취 방법에 의한 조사, 출석 거부 시의 정중한 협조요청 등 출석을 강요하는 언행을 지양하고 있는가?		

〈표 5-36〉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소년·장애인·외국인에 대한 보호

근거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준칙 제53조	[소년에 대한 조사] 검사는 소년(만20세 미만의 자)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등의 비행원인을 파악하고, 나이, 지적능력, 심신상태 등에 따라 친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에 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준칙 제54조	[소년의 구속수사 억제]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 신속한 우선수사와 구속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가?		
준칙 제55조	[장애인의 수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수사하는 경우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는가?		
준칙 제56조	[외국인의 통역지원]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지원하고 있는가?		
준칙 제57조	[외국 영사와의 접견·통신] 외국인의 경우 본국의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권과, 체포·구속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통지를 요하는 경우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을 통지하고 있는가?		

〈표 5-37〉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사건의 처분 및 공판단계

근거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준칙 제58조	[사건의 결정] 검사는 사건의 결정시 유의사항(진상규명과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사건의 동기에 대한 정황, 민사소송 등 다른 분쟁해결 절차 진행여부,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의 병합수사, 재기(再起) 사건의 신속한 중국처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준칙 제59조	[고소·고발 사건의 불기소 처분]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불기소 처분전에 고소·고발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불기소 결정문 작성 시에 사실관계와 주요쟁점에 대해 사건거관계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는가?		
준칙 제60조	[고소·고발 사건의 각하]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 또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각하처분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건관계인 소환이나 사건지연을 방지하고 있는가?		
검찰청법 제73조 준칙 제61조	[사건의 종국적 근원적 해결] 검사는 사건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의 중간처분을 억제하고 신속한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준칙 제62조	[공판] 검사는 공소제기 후 또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회복 여부 등을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구형에 반영하여 적절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판결의 반복 여지가 없는 사건은 과감하게 상소를 지양하여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헌법」 제28조 준칙 제63조	[형사보상제도 안내] 검사는 형사보상법상의 보상청구자격이 인정되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형사보상 청구를 안내하고 있는가?		

〈표 5-38〉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수사상황의 비공개

근거	체크리스트	대답	
		예	아니오
공보준칙 제3조	[수사사건 공개금지] 수사사건의 공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공보준칙 ⁶²⁾ 제7조, 제11조	[공보의 요건] 수사사건의 공보는 공보담당관이 공보자료에 의거 전담하고 있는가?		
준칙 제64조 공보준칙 제9조	[기소 전 공개금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일체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가? 사건관계인의 소환여부, 귀가시간,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의 수사상황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해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공개범위를 최소화 하고 있는가?		
준칙 제65조 공보준칙 제16조	[수사상황 공개방법] 검사는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공보담당관에 의한 공개, 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사건관계인의 익명사용,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의 신상 비공개, 잘못된 보도에 의한 정정보도, 유죄를 예단하는 표현의 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준칙 제66조 공보준칙 제23조, 제24조	[수사 광경 촬영금지] 수사 광경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를 허용하며, 사건관계인의 언론접촉을 차단하고 있는가?		
공보준칙 제28조, 제29조	[수사보안] 수사사건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검사 및 수사관의 언론접촉을 금지하고 있는가?		

3. 소결

검찰의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수사검사가 수사에 착수하고자 할 경우, 수사계획수립시점을 기준으로 수사계획서에 의하여 수사착수부터 수사종결까지 전체 수사과정에서 예상되는 검찰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인권 보호관 또는 인권 보호담당관에게 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다. 요청 시에는 검찰자체 수사사건과 경찰송치사건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검찰 인권영향평가서를, 후자의 경우 검찰 인권영향평가서와 경찰 인권영향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한다. 인권 보호관은 검찰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와 수사검사가 작성한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체크리스트(본 연구에서 제안함)를 기준으로 인권영향평가를

62)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 제1060호, 2016.4.22.시행), 이하 '공보준칙'이라 한다.

실시한다. 인권 보호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또는 수시로 수사검사에게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검찰의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입·실행되려면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현행 법규상 검찰의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 검찰청법(법률 제14582호, 2017.3.14. 시행)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924호, 2018.5.2.시행)에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찰의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인권영향평가규정을 설치할 경우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1151호, 2018.5.10. 시행)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1060호, 2016.4.22.)에 각각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먼저 도입한 경찰청의 경찰 인권 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873호, 2018.5.23.일부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찰관련 법령에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내부조직에 의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성 있는 제3의 기관 또는 민간조직을 인권영향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15호, 2018.1.2.시행)을 개편하여 검찰수사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인권보호수사준칙 내의 조직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등 각급 검찰청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 위원 중에는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경찰인권 보호규칙 참조).

제 6 장

결 론

강 태 경

결론

1.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학술논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논의를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중 미흡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경찰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비판,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경찰 관계 재설정의 필요성을 다룬 언론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검찰·경찰 개혁 못지않게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경찰의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을 다룬 언론보도도 상당수 있었다. 이는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경찰 개혁 과제가 두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둘째, 수사기관의 인권규범 위반 관행에 대한 고발성 기사가 상당수 있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욕설, 강압적 태도, 밤샘조사 등 그릇된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경찰의 경우 집회·시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과도한 장구 사용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수사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들의 특징은 적법절차를 무시하였다기보다는 적정성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집회·시위 대응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여성과 정신질환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와 수사기관구성원에 대한 처우 문제는 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감수성이 낮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적 논의는 언론보도와 달리 매우 다양한 쟁점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었다.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경찰 권한 분배 문제는 헌법적 차원과 형사사법제도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다루어지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에 수사와 관련된 쟁점들은 범죄발견 활동(내사, 불심검문), 수사진행(체포,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이라는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특징이 있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덧붙여 인터넷 패킷감청, 영상녹화, 수사자료표, 신속처리절차, 재정신청, 즉결심판, 피의사실공표죄, 형사절차 전자화법, 독직폭행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학술적 논의가 언론보도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수사기관 구성원의 낮은 인권감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멈추지 않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자는 입장이 많다는 점이다. 법학자들이 논의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로 집중되는 경향은 이해할 수 있는 바이지만 인권보장역량이 단순히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권교육 강화나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주제가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 검찰·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는 앞서 살펴본 언론보도와 학술적 논의에서 다루어진 쟁점들과 의견들이 균형 있게 담겨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권 조정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관해서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이 합의해 나가야 할 쟁점들이 많기는 하지만, 두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검찰·경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검찰·경찰의 권한 나누기에 있다기보다는 검찰·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정책 과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따라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인권 인프라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사회적 약자·소수자, 즉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기본권 보장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둘째, 앞선 기본계획 성과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과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가 형사정

책분야의 중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하에서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현안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수집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간 정보 유통 및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누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이었다.

셋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기반으로서 법과 제도 개선이 핵심 추진과제로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형사정책 분야에서 제3차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체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과 평가라는 틀 안에서 경찰과 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성과도 평가되어야 하고,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 폭 확대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평가 역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대 효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검찰이 체포·구속장소 감찰시 불법 구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송치 전 수사지휘 업무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체포·구속영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신구속의 적정성·신중성을 제고해야 한다. ③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신문 참여 보장,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보호 등 형사절차적 권리의 증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④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 확립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학계와 인권단체 그리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인권 존중적인 시스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⑤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브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이와 같은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⑥ 업무 개선의 초점을 업무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전문성 강화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시민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해야 한다.

3. 경찰과 검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 사례들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분석하며 평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하거나 어떠한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또는 어떠한 조직적, 문화적, 구조적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개혁 또는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검토하였다.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6공화국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검찰의 인권 침해 사건은 「헌법」상의 다양한 내용의 개헌과 함께 법률적 개정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 관련 법규와 훈령 등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침해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좀처럼 쉽게 근절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를 생명과 신체보호 및 안전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권 영역, 집회와 시위 관련 영역, 미성년자와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관련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세분화하여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생명과 신체보호 및 안전 영역에서는 부당한 강제연행, 과도한 불심검문, 불법체포, 구속영장 미제시, 고지필요사항 미고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 과도한 수갑 사용,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부당한 압수, 과도한 신체수색, 부당한 업무처리, 부당한 보호조치, 피의자에 대한 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의료조치 미흡, 외국인 피의자 접견·교통권 미보장, 부당한 강제소환, 형집행절차 위반, 검찰조사 과도한 계구 사용 등이 주요 쟁점과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약자보호 영역에서는 피의자 미성년자에 대한 강압수사, 피해자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미성년자에 대한 탐문수사 관련 인권 침해, 위급한 피의자에 대한 응급조치 미흡,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폭행,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시설에서의

학대나 폭행 등이 주요 쟁점과 문제점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에서는 잘못된 보도자료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인권 침해, 부당한 피의사실고지, 기소 중지자 탐문수사, 북한이탈주민 신분노출 관련, 야간 자택 방문조사,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전과사실 포함 체포·구속통지, 대질조사시 전과 관련 질문, 범죄사실 및 디엔에이 채취대상자 정보유출 등이 관련 인권 침해 문제점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영역에서는 부적절한 지명통보, 체포시 욕설과 폭언, 개방형 화장실 또는 차폐시설 미흡 관련, 과도한 수갑 사용 및 수갑노출, 심야조사, 탈북자 사실공개 및 부정적 발언, 교육시 모자 착용 등 제한, 속옷탈의, 비하발언, 서명날인 강요, 부당한 교도소 유치, 성폭력 피해자 조사 관련 인권 침해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살펴보았다.

다섯째, 집회·시위 관련 영역에서는 집회방해와 여성·아동에 대한 공격, 의료진에 대한 공격,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사진촬영자에 대한 공격,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등 노골적 폭력행사, 과잉진압,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 및 형사처벌, 부당한 불심검문, 통행방해 및 최루액 발사, 집회의 자유침해, 방한 용품 탈취, 경찰봉, 방패, 개인소화기 등의 과도한 위법한 사용, 과도하고 위법한 살수차 사용, 위법한 채증, 변호인 조력권 침해, 욕설과 폭언 등이 주요 쟁점과 문제점으로 검토하였다.

여섯째,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영역에서는 모욕적 발언, 범죄피해사실 무시, 부당한 대우, 피의사실 무관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누설, 동성애자 표적수사, 트랜스젠더 피의자 유치장 관련 문제,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지적장애인 진술거부권 불충분한 설명, 신뢰관계인 동석 없는 장애인 피의자 신문과 피해자 조사, 시각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 염전노예 피해자 신고무시,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관련, 노예노동 피해자 수사미진, 여성피의자 성희롱, 유치장 임신부 및 산모보호조치 미흡, 브레지어 탈의 관련,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 미성년 피의자 보호조치 미흡, 미성년 피의자 불법구금, 미성년자 탐문수사 관련, 외국인 인종차별 및 모욕적 발언, 외국인 강제연행, 외국인 보호소 폭행 관련이 주요 관련 인권 침해 사항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인을 검거하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인권 침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 업무의 최첨단에서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오히려 「헌법」과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충분히 적절히 수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수사기관과 기타 인권 보호 기관이나 인권 침해 방지 기구와 연대가 부족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서 인권 보호에서 부족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 이외에도 밝혀지지 않거나 소개되지 않은 사례 등이 많을 수 있기에 인권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살피며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잘못된 보도자료에 대한 교육, 지명통보 방식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련 법교육, 임의동행 관련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피의자 체포 관련 고지사항과 서류작성 관련 교육, 적법한 현행법 체포 관련 직무교육, 지명수배자 체포 관련 교육, 형집행정지 제시 관련 교육, 임의수사와 진술거부권 관련 교육, 적법한 불심검문 관련 교육, 욕설과 폭언 및 모욕적 발언 금지교육, 과도한 물리력 사용금지 교육, 전자충격기와 가스분사기 및 경찰장구 관련 적법한 사용 관련 교육, 블랙박스 사용 관련 교육, 적법한 신체수색 관련 교육, 개인정보유출 방지 관련 교육,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조치 관련 교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관련 교육, 성희롱 방지 및 성폭력 조사 관련 교육, 외국인 차별금지 교육, 집회·시위 관련 사례교육 및 법 교육, 부당한 서명날인금지 관련 교육, 전과포함 구속사실 통지금지 교육,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메모허용 직무교육, 임의조사 관련 교육, 화장실 차폐시설 확인, 외국인 접견·교통권 보장, 외국인 보호시설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학대 및 폭행금지 관련 점검, 장애인 피의자 및 피해자 조사시 주의 및 필요사항 교육 등 관련 다양한 사례 들을 전파하고 관련법을 함께 검토하며 필요사항을 훈련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맞는 교육과 연수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¹⁾하고 공동으로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

1) Monisha Bajaj, Nancy Flowers, Human Rights Educ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7. p.69

다. 인권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교육모델이 검토되고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며 일상적 인권교육은 인권 침해 상황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과 한국의 구조적, 문화적, 관계적 특수한 상황을 검토하여 적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사례교육과 전파, 법교육과 관련 직무교육, 자세와 태도 교정 및 연수훈련, 경찰과 검찰의 선발과정과 평가에서의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관련 사항 반영, 경찰직원과 검찰직원의 설문조사와 시민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경찰과 검찰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검토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헌법」재판소·법원·검찰·경찰·시민단체 등 인권연대가 가능한 기관과 단체의 인권 보호 공동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마련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인권 보호와 관련한 발전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 해외기관들과의 공동평가와 반영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4. 수사기관의 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우선 수사기관의 인권영향평가제도를 개관하였다. 수사기관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영국, 스코틀랜드, 국제사면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부, 유엔인권사무소 등 다양한 층위의 사례를 포괄하였다.

다음으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개관하였다.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논의 경과 및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도입된 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찰 인권영향평가지표 체계 및 항목, 경찰 인권수사매뉴얼, 그리고 경찰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찰 인권영향평가 체계와 항목을 분석한 결과 법 중심적 접근방식을 견지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 목적과 효과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한계와 수사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경찰 인권수사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항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의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구성하기 위해 유엔의 인권기반적 접근원칙(참여, 책무성, 비차별, 권한강화, 인권 기준과의 연계)을 대원칙의 틀로 삼고,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4대 기본원칙,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그리고 역량의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하였다.

경찰의 수사과정에 초점을 맞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수사의 단계적 과정(내사단계, 수사의 실행단계, 종결단계)을 고려하였다. 내사단계와 수사의 실행단계의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으며, 수사의 실행단계에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빈번히 지적되는 불심검문, 체포·구속 및 조사(신문)의 3가지 수사 유형에 중점을 두어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제안된 경찰 인권영향평가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수사과정에 중점을 둔 인권영향평가 추진체계를 제안하며, 경찰 인권영향평가의 바람직한 주체와 실시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를 개관하였다. 영향평가 관련 법제로서 유사 영향평가 제도와 검찰의 인권관련 업무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수사검사의 인권영향평가 요청, 인권 보호관(담당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사항) 및 검찰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체크리스트(수사검사용)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지현. “여성경찰관의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유형과 영향요인”. 『한국경찰연구』 16(3) (2017): 3-28면.
- 경찰개혁위원회·경찰청경찰개혁TF.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1년의 발자취-경찰개혁 위원회 권고안 모음』. 경찰청, 2018.
- 경찰청. ‘17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2017.
- 경찰청. 2017년 주요업무계획. 2017.
- 경찰청. 수사권 가진 경찰의 인권 침해. 사전 예방으로 해결 한다,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20452&menuNo=200488>. 2018.11.07 방문.
- 곽영길.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한국경찰 학회보』 51 (2015): 3-36면.
- 구정우·김선웅·김두년·정진원.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연구. 경찰청. 2017.
- 구정우·서창록·유영수·김영완·신인철·김두년.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15.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2018년 주요 인권 현안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tpage=2&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2490>. 2018.11.07. 방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 국제개발협력 ? 유엔과 개발원조기관의 정책 소개. 한국인권재단(번역). 2016.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2012. pp. 325-326.
- 권보은.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17.

- 권순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법정책과 대법원의 해석 방향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25(1) (2018): 205-228면.
- 권양섭.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원광법학』 34(2) (2018): 51-71면.
- 김구열·김민후·이승훈·이종훈.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 제기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 실태 보고”. 『공익과 인권』 15 (2015): 107-168면.
- 김길영·김효진.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16(2) (2017): 3-28면.
- 김동률·박노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입법·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 (2018): 231-260면.
- 김명대·박호현. “경찰의 영장청구권 효율화 방안-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9(1) (2018): 359-381면.
- 김무형. “독일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12(1) (2018): 127-153면.
- 김미라. “긴급체포요건에 관한 검토”. 『東亞法學』 75 (2017): 87-117면.
- 김상겸. “검사의 영장청구에 관한 「헌법」적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7 (2017): 1-32면.
- 김상운. 수사 경찰의 인권 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12. 8(4): 151-167.
- 김순석.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67 (2017): 33-64면.
- 김영중. “형사절차와 인권 보장: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2(2) (2014): 81-107면.
- 김재덕.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法學論集』 20(1) (2015): 155-172면.
- 김재민.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의식에 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31(2) (2017): 29-62면.
- 김창윤.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0(1) (2014): 103-121면.
- 김하중. “우리나라 기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지』 443) (2014): 49-71면.
- 김한균. “유엔 정례인권검토제도(UPR)와 형사사법개혁의 인권지향적 체계화”. 『형사법의 신동향』 56 (2017): 203-234면.

- 김헌진·박종렬.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연구”. 『법률실무연구』 6(1) (2018): 265-282면.
- 김현수·김학범.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6(4) (2017): 3-24면.
- 남재성. “경찰공무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경찰 인권교육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3(2) (2014): 55-78면.
- 노명선. 『검찰 인권지수 개발』. 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3.
- 노호래. “수산 및 해양 분야 외국인 노동자 현황 분석과 해양경찰의 정책방안”. 『한국경찰학회보』 67 (2017): 85-112면.
- 명도현·박호현. “수사기관의 내사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8(2) (2014): 99-127면.
- 문성원. “경찰의 범죄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절차준수 제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6. 05. 04.자 15진정0892900 결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6 (2016): 285-292면.
- 문재완.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0(3) (2014): 1-27면.
- 민만기.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및 허용 가능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53 (2016): 214-264면.
- 민병로.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성과와 한계”. 『민주주의와 인권』 17(2) (2017): 59-86면.
- 민병로·김남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16(2) (2016): 61-100면.
- 민형동. “형사법 규정에 관한 「헌법」개정 방향: 세계 주요국 「헌법」의 실증적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66 (2017): 3-35면.
- 박민우.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의 해석과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저스티스』 161 (2017): 200-229면.
- 박영규. “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8(2) (2014): 163-188면.
- 박현준. “경찰행정조사에서의 인권 보장”. 『법학연구』 65 (2017): 227-244면.
- 박호현·김명대·김종호. “복지경찰에 관한 논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4) (2017): 73-94면.
- 박호현·김종호·백일홍. “형사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검찰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0(2) (2016): 119-152면.
- 성문규. “「헌법」상 영장신청권과 인권과의 무관계성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162

(2017): 5-30면.

성북 법무 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http://law.seongbuk.go.kr/lims/front/law.html?pAct=view&pPromulgationNo=2184>.
2018.11.07 방문.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p. 245.

신은식·신애리.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4(4) (2015): 183-212면.

신주호. “인권 보장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재정립 방안”. 『홍익법학』 18(3) (2017): 151-190면.

신태훈.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형사법의 신동향』 57 (2017): 33-128면.

안은자·조원일. “장애인학대사건을 통해 본 법원 및 검찰의 장애인 - 경기도장애인인권 센터의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9(3) (2017): 433-453면.

오경식.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제도에서의 인권 보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0 (2016): 1-27면.

윤동호.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9(4) (2018): 169-192면.

윤동호.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에서 영장청구권 독립론으로”. 『法學論叢』 23(3) (2016): 93-113면.

윤두섭, 이승종.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4.

윤지영·김한균·승재현·강태경.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이경렬. “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함의”. 『형사법의 신동향』 56 (2017): 1-39면.

이상민.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수집전략”. 『기록학연구』 48) (2016): 5-44면.

이영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법학논고』 47 (2014): 261-282면.

이영우·박종렬·견승엽. “인권 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62 (2016): 23-46면.

- 이재호. “경찰문화와 인권 보호의 상관성”. 『치안정책연구』 28(1) (2014): 281-319면.
- 이주일. “범죄피해자 인권과 치료적 사법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9(3) (2018): 757-769면.
- 이준일·김지혜·이승택·박진아.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 경찰청. 2015.
- 장일식.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를 위한 경찰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1 (2018): 109-134면.
- 전윤경.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과 그 시사점(1) -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0 (2018): 101-147면.
- 전찬희·이병근. “수사·기소 시스템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 『법률실무연구』 6(2) (2018): 55-84면.
- 전찬희·이병근. “수사·기소 시스템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 『법률실무연구』 6(2) (2018): 55-84면.
- 정신교. “불심검문과 인권 보호의 상관성”. 『한국치안행정논집』 12(1) (2015): 101-118면.
- 정연균·박용수. “수사자료표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65 (2017): 197-218면.
- 정우성·차훈진.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인권의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4) (2017): 190-208면.
- 정웅석. “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 부여시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59 (2018): 1-85면.
- 정웅석.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2) (2017): 1-37면.
- 정육상·조성제.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개선방안 - 중독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대회』 2014(12) (2014): 1-15면.
- 조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저스투스. 2017. pp. 86-105.
- 조만형. “수사기관간 수사권의 합리적 균형관계 모색”. 『법학연구』 67 (2017): 289-323면.
- 조성제. “의무경찰 징계영창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을 중심으로 -”. 『法學研究』 25(1) (2017): 103-125면.
- 주재웅.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실태 및 효과성 분석”. 『법률실무연구』 2(2) (2014):

211-275면.

최대현. “수사사무환경이 시민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치안정책연구』 30(2) (2016): 1-38면.

최대현. “범죄수사를 위한 진술과정의 영상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연구”. 『경찰법연구』 14(1) (2016): 117-135면.

최선우. “경찰공무원의 독직폭행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6(4) (2017): 331-360면.

최영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少年保護研究』 24 (2014): 331-360면.

최용석.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검찰 · 경찰 수사권한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8(2) (2015): 122-154면.

최호진.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 『비교형사법연구』 19(1) (2017): 203-231면.

한국인권재단. 인권기반 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2016

한연구·이원상. “실무적 관점에서의 경죄 신속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소고”. 『法曹』 66(6) (2017): 145-177면.

한영수.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461 (2016): 107-131면.

홍관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 법학논총, 2018. 38(1), 591-640.

황규진. “집회·시위 해산 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 경찰업무기준론의 관점에서 -”. 『경찰학논총』 11(3) (2016): 261-289면.

황문규.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法學論叢』 39 (2017): 293-324면.

황문규.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판결 2011도3682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14. p.187-218.

황순평. “준현행범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적 검토”. 『치안정책연구』 30(2) (2016): 183-214면.

휴먼시티 수원. 인권영향평가. <http://www.suwon.go.kr/sw-www/www02/www02-11/www02-11-11.jsp>. 2018.11.07 방문.

2) 언론보도

- 경향사설, “경찰 인권 침해 과거사 조사, 경찰개혁의 출발점 되기를”, 〈경향신문〉 2017. 7. 1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2128005&code=990101, 최종접속일 2018. 11. 4.).
- 경향사설, “수사권 달라는 경찰, ‘인권 경찰’ 준비는 돼 있나”, 〈경향신문〉 2017. 5. 28.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82028015&code=990101, 최종접속일 2018. 11. 5.).
- 경향사설, “여성 노동자 ‘알몸 신체검사’ 교도소의 인권 침해 아닌가”, 〈경향신문〉 2016. 5. 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92120005&code=990101, 최종접속일 2018. 11. 5.).
- 경향사설, “인권 강연 आयु하는 경찰 아직 정신 못차렸다”, 〈경향신문〉 2010. 7. 15.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52305195&code=990101, 최종접속일 2018. 11. 5.).
- 경향사설, “총리 후배 공안검사 출신이 인권 보호관이라니”, 〈경향신문〉 2016. 7. 21.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12104005&code=990101, 최종접속일 2018. 11. 5.).
- 곽희양, “과거사 단체들 ‘검찰, 피해자 도운 인권변호사 표적수사 중단하라’”, 〈경향신문〉 2015. 1. 20.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01843351&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5.).
- 곽희양, “참고인 조사 후 40대 여성 자살...변협 “인권 침해 의심” 검찰 “사실 왜곡””, 〈경향신문〉 2015. 9. 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8222439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5.).
- 구교형, “달라진 검찰...인권 침해 사건 직접 재심 청구해 ‘무죄 구형’”, 〈경향신문〉 2017. 9. 1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7221900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4.).
- 구길용, “광주시 광역지자체 첫 인권영향평가 도입한다”, 〈뉴시스〉 2017.10.20.자 기사 (http://www.news1.com/view/?id=NISX20171020_0000123978, 최종접속일 2018.11.10.).
- 김경학, “『언론자유·인권 옥죄는 박근혜 정부』 ‘피의자 자살’도 급증...“검찰의 무리한 수사 탓””, 〈한겨레〉 2015. 9. 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

- han_art_view.html?artid=20150907000000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5.).
- 김기성, “실제 성폭행 고소장을 견본으로…인권 팽개친 경찰”, 〈한겨레〉 2011. 2. 16.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3621.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김남일, “검찰 수사권 강화’ 법개정 ‘가속’ 수사효율-인권 침해 논쟁 증폭”, 〈한겨레〉 2010. 10. 6.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2422.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김미향 “‘인권탄압’ 대공본실 없애됐더니…대규모 통합청사 짓는 경찰”, 〈한겨레〉 2018. 5. 14.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439.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 김미향, “국내외 인권단체들, 경찰·시위대 폭력 감시”, 〈한겨레〉 2015. 12. 4.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466.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김민경, “검찰, 인권 침해 사건 재심 직접 청구…뒤늦은 과거사 청산 시작”, 〈한겨레〉 2017. 9. 17.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271.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 김수경, “법원 판결까지 뒤엎으라는 경찰 인권조사위”, 〈조선일보〉 2018. 8. 29.자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012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최종접속일 2018. 11. 4.).
- 김원진·허남설, “경찰인권센터, 경호원 먹살 잡은 한선교 의원 고발”, 〈경향신문〉 2016. 9. 5.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5222100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김윤수·조동주, “검찰 ‘인권 보호 위해 檢 수사지휘 필요’, 경찰 ‘서면 수사지휘 확대’로 책임 강화”, 〈동아일보〉 2018. 6. 25.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80625/90739579/1>, 최종접속일 2018. 11. 04.).
- 김재중, “대테러 인권 보호관에 공안 검사 출신 임명”, 〈경향신문〉 2016. 7. 21.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12334005&code=91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김지원, “국제감시단 “한국 경찰, 민중대회 물대포·차벽은 인권 침해”, 〈경향신문〉 2015. 12. 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9220053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김지혜, “영장청구권 독점, 검찰 비대화” “인권 등 기본권 보호 위해 필요”, 〈경향신문〉 2018. 2. 20.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0222101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4.).
- 김진우, “경찰청 “한국엔 과잉진압 없다”… 미 인권 질의에 3년간 거짓답변”, 〈한겨레〉 2013. 10. 31.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2247295&code=940202, 최종접속일 2018. 11. 5.).
- 김진철, “첫 ‘대테러 인권 보호관’에 황 총리 부하 공안검사 출신 이효원 서울대 교수”, 〈한겨레〉 2016. 7. 21.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3416.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김형규, “『‘국민사찰법’ 공포』 환경단체 대표·민주노총 간부·인권재단 변호사…국정원·경찰 등 수사기관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 〈경향신문〉 2016. 3. 4.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4225933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김혜진, “선언 말고 진짜 ‘인권 경찰’”, 〈한겨레〉 2017. 7. 13.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732.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 노현웅, “인권논란 뭉개고… ‘검찰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한겨레〉 2010. 12. 22.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5032.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동아사설, “‘버려야 할 구악(舊惡)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동아일보〉 2011. 5. 28.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10528/37599026/1>, 최종접속일 2018. 11. 5.).
- 류인하, “‘반값 등록금 시위’ 연행 대학생…경찰, 강압수사·인권 침해 논란”, 〈경향신문〉 2011. 6. 14.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142147085&code=940401, 최종접속일 2018. 11. 5.).
- 류인하, “경찰청, 인권유린 현장에서 ‘인권영화제’”, 〈경향신문〉 2012. 8. 2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9215530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류인하, “양천서 인권강연’에 고개 떨군 경찰”, 〈경향신문〉 2010. 7. 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7181004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문경란, “평화시위의 동반자, 인권 경찰”, 〈경향신문〉 2017. 9. 1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22056035&code=990308, 최종접속일 2018. 11. 4.).
- 박수지, ““‘인권 경찰’ 되려거든 사과부터 하라””, 〈한겨레〉 2017. 6. 1.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142.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 박수지, “민중총궐기때 경찰 ‘기승전 인권 침해’”, 〈한겨레〉 2015. 11. 20.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18418.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박순봉, ““성소수자들 사회적 고통 여전” 홍석천, 경찰관들에 인권 강의”, 〈경향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02101395&code=10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박유리, “경찰 ‘수갑·경찰봉 적극 사용’ 지시…민변 ‘인권 침해 소지’ 반발”, 〈한겨레〉 2013. 11. 10.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0550.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박은하, “경찰, 다시 피의자 수갑 뒤로 채우기… “인권 뒷걸음질””, 〈경향신문〉 2014. 6. 1.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12154225&code=940202, 최종접속일 2018. 11. 5.).
- 박초롱, “서울시, 환경·교통·성별 이어 ‘인권영향평가’ 도입”, 〈연합뉴스〉 2018.02.14.자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80213194600004?input=1195m>, 최종접속일 2018.11.10.).
- 박태우, ““인권 논란’ 채증사진, 경찰 눈엔 예술?”, 〈한겨레〉 2011. 9. 2.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680.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박태우, “인권위 “기자회견 방해한 경찰, 인권 침해””, 〈한겨레〉 2016. 1. 26.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870.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박홍두, ““경찰의 세월호 유족 미행·채증 행위’ 조사한다더니… 경찰청 인권위원회,

- 한 달 넘도록 회의만”, 〈경향신문〉 2014. 6. 20.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00600005&code=940202, 최종접속일 2018. 11. 5.).
- 박홍두, “경찰관 인권 침해 신고 건수, 5년간 7000건 육박”, 〈경향신문〉 2013. 9. 22.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9220600005, 최종접속일 2018. 11. 5.).
- 서영지, “경찰이 인권 침해·과실…6년간 국가배상 36억”, 〈한겨레〉 2014. 8. 10.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8972.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선명수, “강제철거 용역 폭력 방관한 경찰에 인권위 “주민 인권 침해…지침 마련을””, 〈경향신문〉 2018. 3. 2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9215400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 선명수, “경찰 간부 임용식서 ‘인권 경찰’ 첫 다짐”, 〈경향신문〉 2018. 3. 13.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3230201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 손준현, “부당구금·욕설·물세례…인권 위기는 경찰”, 〈한겨레〉 2010. 7. 4.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28797.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손준현, “특하면 수갑채우는 경찰…인권위서 제동”, 〈한겨레〉 2010. 6. 13.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2544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송호균, “‘재난과 인권’ 공부하는 경찰”, 〈한겨레〉 2014. 6. 24.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392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신광영·주애진, “‘警 “벤츠검사, 경찰이 수사해야”… 檢 “검사 인권 침해 소지”’, 〈동아일보〉 2011. 11. 30.자 기사 (<http://news.donga.com/Issue/List/03060000010005/3/03060000010005/20111130/42242508/1>, 최종접속일 2018. 11. 5.).
- 신민기, ““이 여자가 성폭행당할 뻔한 여성” 서울경찰청의 ‘인권불감증’”, 〈동아일보〉 2011. 2. 22.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10222/35040348/1>, 최종접속일 2018. 11. 5.).
- 심동준, “12년간 운영됐는데 국민들은 모르는 ‘경찰인권센터’”, 〈뉴시스〉 2017. 7. 2.자 기사(http://www.news1.com/view/?id=NISX20170630_0000027980, 최종접속일 2018.6.25.).

- 안관옥, ““인권 경찰” 표상 고 안병하 경무관 흉상 제막”, 〈한겨레〉 2017. 11. 22.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0196.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 오경식, “검찰개혁의 본질은 공정성과 인권 보장이다”, 〈경향신문〉 2017. 4. 1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72042035&code=990304, 최종접속일 2018. 11. 5.).
- 오창익, “검사들만 받는 아주 특별한 대우”, 〈경향신문〉 2018. 5. 1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72106005&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 오창익, “검찰개혁, 벌써부터 포기하는 건가”, 〈경향신문〉 2018. 1. 18.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82111015&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 오창익, “경찰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재배치가 핵심”, 〈경향신문〉 2017. 6. 1.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12120075&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 오창익, “권력 쪼개기, 검찰개혁의 핵심”, 〈경향신문〉 2016. 7. 20.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02223015&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오창익, “물 빠지는 삼류 제복과 강신명 경찰청장”, 〈경향신문〉 2016. 6. 2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92108015&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오창익, “생리휴가도 쓰지 못하는 경찰관”, 〈경향신문〉 2017. 7. 2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71033001&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 오창익, “여경 죽음 내몬 경찰의 감찰”, 〈경향신문〉 2017. 11. 23.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1232044005, 최종접속일 2018. 11. 4.).
- 오창익, “허울뿐인 경찰청 정규직”, 〈경향신문〉 2016. 2. 3.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32109415&code=99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유근형, “靑 “경찰, 수사권 조정 원하면 인권 보호부터””, 〈동아일보〉 2017. 5. 26.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70526/84571995/1>, 최종접속일 2018. 11. 5.).
- 이가영, “의경 2023년 완전 폐지…경찰관 더 뽑는다”, 〈중앙일보〉, 2017. 5. 30.자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1619465>, 최종접속일 2018. 4. 5.).
- 이문영·송채경화·이승준·박태우, ““검찰권력 분산이 인권 측면선 옳다””, 〈한겨레〉 2011. 6. 30.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5273.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이승준, “경찰“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적극 조치”…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낙인, 인권 침해””, 〈한겨레〉 2016. 5. 23.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508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이정국, ““2013년 여성인권 걸림돌’ 판검사·경찰 8명”, 〈한겨레〉 2014. 1. 16.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20150.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이정하·김미향, “인권감사관제·자치경찰제 등 보안경찰 다양한 견제방안 떠올라”, 〈한겨레〉 2018. 6. 5.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769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04.).
- 임아영, ““경찰의 1인시위 제지는 인권 침해””, 〈경향신문〉 2010. 11. 1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9212713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장수경, ““허리 비틀면 성관계 못 피하나” 어떤 검사는 인권 걸림돌 ”, 〈한겨레〉 2018. 1. 22.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886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 정희완, “검·경 수사권 조정 ‘숙원’ 달렸다…경찰 ‘인권 친화’ 대책 발빠른 대응”, 〈경향신문〉 2017. 5. 25.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5221601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5.).
- 정희완, “경찰, ‘인권 침해’ 도려내 수사권 조정서 우위 ‘포석’”, 〈경향신문〉 2017. 7. 1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1704001&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 정희완, “경찰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건’ 파헤친다”, 〈경향신문〉 2017. 8. 25.자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215400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4.).
- 정희완, “누가 인권 침해 가장 많이 하나… “경찰·검찰””, 〈경향신문〉 2011. 12. 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7214852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정희완, “백남기 농민 사건 등 경찰 과거 인권 침해 민간 참여 진상조사”, 〈경향신문〉 2017. 7. 1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225300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 정희완, “청 ‘인권 경찰’ 주문에…경찰, 집회·시위 현장 ‘채증 기준’ 개정 검토”, 〈경향신문〉 2017. 5. 30.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30060002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5.).
- 정희완·이효상, “검찰, 민변 7명 징계 요청… 민변 “인권 변호에 대한 탄압””, 〈한겨레〉 2014. 11. 5.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52153055&code=940301, 최종접속일 2018. 11. 5.).
- 정희완·허진무, ““과거사 철저히 반성한 ‘인권 경찰’ 원한다””, 〈경향신문〉 2017. 6. 1.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12152005&code=940100, 최종접속일 2018. 11. 4.).
- 최슬기, “경찰, 청도송전탑 대치 현장 ‘인권 침해’ 심각”, 〈경향신문〉 2014. 8. 7.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72137065&code=940202, 최종접속일 2018. 11. 5.).
- 최우리, ““경찰력 남용 자제” 인권위원장 성명, 상임위원 일부 “집회 불법” 반대로 못내”, 〈한겨레〉 2015. 4. 27.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8579.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최우리, ““몸자보 저지, 인권 침해 아니다” 경찰 손들어준 인권위”, 〈한겨레〉 2015. 6. 23.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97209.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최우리, ““악성 민원인에게도 인권이 있냐”던 경찰관들 “충경 이상 간부들이 인권교육 받아야””, 〈한겨레〉 2015. 10. 9.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12219.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한겨레사설, “인권경시 실적주의가 경찰 일탈 불렀다”, 〈한겨레〉 2010. 6. 29.자 기사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28107.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한겨레사설, “‘인권 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 〈한겨레〉 2017. 5. 30.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96866.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한겨레사설, “인권 침해 소지 높은 경찰의 마구잡이 영상 채증”, 〈한겨레〉 2011. 7. 19.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88077.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한겨레사설, “정신질환자 인권 무시하는 경찰과 복지부”, 〈한겨레〉 2016. 6. 27.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49910.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허재현, “경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출범…‘백남기 사건’ 조사”, 〈한겨레〉 2017. 8. 25.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301.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 허재현, “물대포 이름만 바꾼다고 ‘인권 경찰’ 되나”, 〈한겨레〉 2017. 6. 6.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723.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 현소은, “피고인 인권 외면한, 편견 가득한 검찰의 ‘입’”, 〈한겨레〉 2017. 7. 5.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1647.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 현일훈·박사라, “‘심야조사는 인권 침해 … 검찰 조사 밤 11시 이후 금지’”, 〈중앙일보〉 2017. 12. 27.자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2182661>, 최종접속일 2018. 11. 4.).
- 홍석재, “법무·검찰개혁위 “인권 침해 조사할 검찰 과거사위 설치하라””, 〈경향신문〉 2017. 9. 29.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3147.html, 최종접속일 2018. 11. 4.).
- 홍석재, “인권방치 ‘실적주의’ 비판에도 경찰청장 ‘날개’”, 〈한겨레〉 2010. 8. 9.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4233.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 홍석재·황춘화·손준현, “인권 침해 개선권고 무시 ‘인권 위에 경찰’”, 〈한겨레〉 2010.

6. 29.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084.html, 최종접속일 2018. 11. 5.).

2. 외국문헌

Amnesty International. 10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8.

Association of Police Authorities. Human Rights Guidance for Police Authorities: Monitoring Compliance with the Human Rights Act 1998. 2009.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Assessing impact and the Public Sector Equality Duty. 2016.

Kath Bridger. Building capacity for equality impact assessment in colleges. Equality Challenge Unit. 2013.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2003.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 Trainer's Guide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 2002.

OHCHR.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2005.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EQHRIA Home - SHRC - Equality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ttp://eqhria.scottishhumanrights.com>. accessed Oct 02, 2018.

Scottish police authority. Equality an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EqHRIA)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2018.

Scottish police authority. The EqHRIA Form 060-008. 2018.

Sparrow, Paul R. Too good to be true, People management, Dec. 5. 1996. pp. 22-25.

UN. Statement of Commo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gramming. 2003.

Abstract

Comprehensive Evalu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I) : Focused o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Gahng, Taegyung · Kim, Han-kyun · Kim, Kyoung Chan
· Seo, Seonyoung · Kim, Donghyun · Kim, Doona · Kim, Jae Wang
· Ryu, Minhee · Park, Hanhee · Cho, Hyein · Choi, Hyun Jung · Han, Garam
· Koo, Jeong-Woo · Kim, Doo Nyeon · Chung, Jin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of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 during prosecutors' and police's activities as follows. First, we analyze and classify discussions on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of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the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prosecution reform committee and the police reform committee, we identify the insufficient component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Second, the results and significance of policy tasks related to strengthening prosecutors' and police's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in the National Action Plans on Human Rights are evaluated. Third, we analyze and typif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ases on human rights violations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order to identify areas where prosecutors and police need to strengthen their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Fourth, we analyze the system and item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dex for the police and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actice for the police, and evaluate the pros and cons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Furthermore, we present ideas on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the prosecution to be introduced.

별첨자료

[별첨 1] 퀴어퍼레이드 금지통고 사건

1. 일시·장소: 2015. 5. 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 사실관계

퀴어문화축제(이하 '축제')는 2000. 8. 1회를 시작으로 10년이 넘게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혐오에 맞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문화행사이다. 축제는 매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15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2015. 6. 13. 또는 14. 대학로에서 제16회 축제를 하기로 하고 서울혜화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축제를 막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 허위로 선 집회신고를 함에 따라 조직위는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조직위는 2015. 6. 28. 서울광장에서 제 16회 축제를 하는 것을 결정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광장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퍼레이드 행진을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려 하였다. 그런데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오는 '15.6.28.자 집회신고를 위해 15.5.29.00:00에 남대문 경찰서를 내방하시는 민원인들께서는 경찰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 통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하고 있는 순번에 의해 2015.6.28.자 집회신고를 수리하겠습니다"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도 없는 이례적인 신고방식을 고지하였다.

조직위는 위 공지에 따라 경찰서 우측 경사로에서 대기를 하다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6. 28. 00:00부터 20:30까지 서울광장부터 청계남로까지 행진하여 다시 돌아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2015. 6. 28. 00:01부터 23:59까지 위 축제 행진구간과 겹치는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5. 30. 조직위에게 ① 신청인이 신고한 집회와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고 위 두 집회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어 위 두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경우 서로 방해가 될 우려가 있고, ② 위 행진 도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여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²⁾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

3. 후속 조치와 사법기관 대응

조직위는 축제에 대한 집회신고는 2015. 5. 29. 00:00시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서 반대집회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며, 반대집회는 축제를 봉쇄하려는 허위 또는 가장집회 신고일 가능성이 높은 점, 축제 행진은 이미 6년 동안 문제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2015. 6. 2.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고서 접수증에 따라 조직위의 집회신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³⁾임에도, 축제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경찰이 이와 관련하여 조직위와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등을 협의하여 집회 허용 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없다 판단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로 인하여 조직위는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할 수 없어 회복불가능한 손해발생 및 긴급한 필요성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개정되고 2016. 1. 27.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 8733호)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결정.

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지통고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⁴⁾하였다.

이후 6. 28. 제15회 축제는 예정대로 개최되어 신고된 경로대로 행진이 진행되었다.

4. 평가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이후 매해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규모가 성장하여 왔으며 2015년 당시 이미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2014년부터 일부 극우 개신교 등 성소수자 혐오 단체들은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며 허위, 가장 신고 행진 방해 등으로 축제 개최를 막으려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경찰의 이 사건 금지통고는 명목상으로는 중복집회로 인한 충돌가능성, 교통불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그 내면에 있는 논리는 성소수자 혐오에 대해 이를 마치 정당한 의견인양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 축제를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소수자 차별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실시된 바와 같이 금지통고 자체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법리에 어긋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5.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 제12조

6. 카테고리

- 집회 및 시위

4) 서울행정법원 2015. 6. 16.자 2015아10859 결정.

7.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6. 16.자 2015아10859 결정.
- 2015아10859 결정 관련 사건기록.
- 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2015), 60-61면.

[별첨 2] 대한문 화단 앞 집회 방해 사건

1. 일시·장소: 2013. 7. 25., 서울 대한문 부근

2. 사실관계

- 2013. 7. 25. 집회 일정은 서강대 이00 교수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강의를 하고, 박0 가수가 문화공연을 하고, 민변 이00 변호사가 한국 근현대사의 집회 자유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하여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 2013. 7. 25. 17:00 집회가 시작되기 전, 이미 이 사건 집회 장소 바로 앞 노란색 장애인 점자블록 및 화단에 가까운 쪽인 집회 장소에 노란색 플라스틱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 집회가 시작되면서 경찰병력이 1열 화단에 가까운 쪽 질서유지선과 화단 사이로 배치되었다.
- 사회자인 송00 변호사의 발언 도중, 집회참석자 중의 한명으로 보이는 시민이 피켓을 들고 질서유지선 밖에 나와 섰다. 이에 남대문경찰서 최00 경비과장(이하 '최00 경비과장'이라고만 함)이 확성기로 질서유지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방송을 하고, 이에 송영섭 변호사가 집회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집회참석자 두 사람의 발언이 끝나고, 송00 변호사가 집회에 방해가 되고 있는 집회 장소 앞, 뒤에 설치되어 있는 질서유지선 및 집회 장소 내부의 경찰병력을 철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서강대 이00 교수가 집회의 자유 및 집회방해 행위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 이00 교수의 강연이 끝나고, 재차 송영섭 변호사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언급하며 경찰병력 및 질서유지선을 철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집회참석자들도 구호를 외치며 경찰 철수요청을 하였다.
- 박0 가수가 노래를 시작할 즈음, 집회 참석자 두 명이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장애인 점자블록 앞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서있었다. 이에 재차 최00 경비과장이 '점자블록을 절대로 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집회주최 측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 장소 밖에 있는 것은 위법함'을 경고하는 방송을 하였다.

- 이후 최00 경비과장과 집회참석자들과 언쟁이 시작되었다. 집회참석자 측은 '대한문 화단 옆 인도 부분에서는 집회가 주최될 수 없다는 교통조건 통고에 대해 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같은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결정이 있으며, 집회신고서에 화단 경계로부터 노란색 점자블록 이전까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경찰병력 진주와 질서유지선 설치는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최00 경비과장은 '집회신고서에 1.5m로 제한이 되어 있어 그 공간을 보장했으므로 집회방해 행위는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약 10여 분간 다툼 발생함).
- 최00 경비과장을 둘러싸고 집회참석자들이 집회방해 행위를 하는 최00 경비과장에 대한 현행법 체포 여부가 다투어지고, 최00 경비과장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송00 변호사가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는 뜻을 고지하고 최00 경비과장의 팔을 잡아당겨 이동하자, 경찰병력이 출동하여 최00 경비과장과 집회참석자를 분리하였다.
-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경찰 측과 집회참석자 사이를 중재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다툼이 발생하였다. 집회참석자들은 최00 경비과장을 체포하려 했으며 최00 경비과장이 도주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 최00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 안으로 들어간 후 썬방 간의 다툼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였다. 집회참석자 3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밖에 서있고, 이00 변호사가 집회방해 행위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였다. 민변 노동위원회 권00 변호사가 집회 현장에 도착하고, 재차 최00 경비과장이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질서유지선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불법'임을 경고하는 방송을 하였다.
- 권00 변호사가 '이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장소이며, 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 및 질서유지선이 집회 장소 내외에 존재하는 것은 집회방해 행위'임을 주장하며, 수회에 걸쳐 질서유지선 및 경찰병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정당방위로 실력행사를 할 것을 경고하였다.
- 경찰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집회참석자들이 집회 장소 내외의 질서유지선을 철거하고 경찰병력을 화단쪽으로 밀어냈다.
 - 이에 최00 경비과장이 「집시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자진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방송을 하였다. 경찰이 카메라 및 캠코더를 이용하여 채증을 하자, 이에 집회참석자들이 항의하였다. 질서유지선이 치워지고 난 다음, 권00 변호사를 제외한 집회참석자들은 모두 신고된 집회 장소 내에 있었고, 경찰병력도 여전히 집회 장소 내부에 존재하였다.
 - 권00 변호사의 발언 도중 경찰은“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불법을 하고 있고, 이에 채증해서 법적 처리하고 이에 대항하여 경찰에게 폭행하면 현장 검거토록 하겠다”라는 경고를 하였다.
 - 이에 권00 변호사는 여전히 집회 장소 내에 경찰병력이 진주해 있는 것은 집회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퇴거할 것을 5회에 걸쳐 요청하였다.
 - 권00 변호사가 10에서 1까지 세며, 정당방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였다. 숫자를 다 세자 정당방위임을 고지하며 경찰병력을 밀어낼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경찰 측에서 “경찰 미는 사람 모두 검거해! 열명이든 스무명이든 모두 검거하세요”라고 방송을 하며 집회 장소 내로 진입하여 권00, 류00 변호사, 그리고 민주노총 국장인 박00 3명을 검거하였다.

3. 후속 조치와 사법기관 대응

- 이 사건 이후 서울지방법원민사부는 진상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체포된 권00, 류00, 박00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1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위 변호사 등이 국가, 종로경찰서장, 경비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300만원 및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 위 변호사 등이 최00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방해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결정하였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된 이후 위 변호사 등은 다시 재고소를 하였다.

4. 평가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보고서, 위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질서유지선 설정이란 명목으로 집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고,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 자체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며, 경찰의 권00 변호사 등에 대한 체포는 현행법 체포의 요건을 결한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하고, 대한문 앞 화단 설치 행위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5. 관련 법령

「헌법」 제21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및시위에대한 방해금지), 제22조(벌칙)

6. 카테고리

- 집회, 경비

7. 출처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대한문 앞 집회방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2013.

[별첨 3] 용산 화재 참사 철거민 검거 과정에서의 경찰 폭행

1. 일시·장소: 2009.1.20. 용산 화재 참사 현장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남일당 빌딩

2. 사실관계: 경찰이 본 사건 발생 후 철거민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폭언, 폭행하였음.

검거과정에서 발생한 농성자에 대한 경찰의 폭행 및 피해⁵⁾

순번	성명 (연령)	소속	피해장소 및 경위	피해정도	후송병원
1	이○○ (43)	김포신곡6지구, 전철연	망루 내에서 싸울 의사가 없다고 손을 들었는데 경찰특공대가 발로 걷어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폭행당함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 진단 약 4주	순천향병원
2	김○○ (51)	남양주 지금동 거대책위원회 주거위원장	망루4층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을 당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부축을 받고 걸어 가던 중 성명불상의 경찰이 “너 이 새끼 잘 걸렸어”라며 뛰어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갈비뼈 안에 피멍이 들었음.	1. 좌측 종골분쇄 관절내 골절 2. 제1요추 압박골절 약 7주 3. 경찰폭행 : 염좌	순천향병원
3	천○○ (47)	전철연 상도4동 11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차진입시 망루에서 경찰특공대로부터 쇠파이프로 좌측얼굴을 맞고 정신을 잃음, 쇠파이프로 우측 엉덩이부분을 맞아 자국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부었음.	폐쇄성 좌측 안와골 기저부 골절, 약6주	순천향병원
4	김○○ (53)	용산4구역 상가공사 세입자대책 위원회 홍보부장	1차 진입 때 망루 3층에서 경찰특공대에 경찰봉으로 머리를 맞아 실신했고, 무릎관절이 아파서 일어나보니 특공대가 계속 폭행하여 왼쪽 허리와 다리 심하게 폭행당함.	왼쪽 다리 및 허리 부상, 진단미상	순천향병원
5	박○○ (40)	용산4구역 상가공사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회원, 전철연	망루2층에서 검거과정에서 경찰봉으로 등부위 3회 맞음	상해진단 약 2주	

5)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진상조사위원회, 2018), [표4] 54면.

3. 후속 조치와 사법기관 대응

- 2018.8.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결정 중 이 부분에 대하여 “현행법체포 등 직무를 수행하는 때라도 폭언이나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적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⁶⁾

4. 평가

-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하고, 체포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하여함. 따라서 현행법체포 등 직무를 수행하는 때라도 폭언이나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적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법함.⁷⁾

5. 관련 법령

-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 보호의 원칙⁸⁾, 제8조 폭행 및 가혹행위 금지⁹⁾ 및 제11조 직무수단의 한계¹⁰⁾
-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6. 카테고리

-
- 6)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018), 32면.
- 7)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018), 32면.
- 8)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 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 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9)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 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 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체포과정에서의 부상
-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언어 폭력, 모욕)

7. 출처

-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 2018.

[별첨 4] 용산 참사 철거민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대기

1. 일시·장소: 2009.1.20. - 2009.3.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2. 사실관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장과 수사참여 검사들이 철거민들에 대하여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다음과 같이 인권 침해 행위를 하였음.

1) 심야조사 관련

- 구속된 철거민 피해자 중 조OO, 김OO, 김OO, 김OO, 김OO, 김OO, 은 2009.1.20. 7:30 경 남일당 농성현장에서 체포되어 용산 및 동작경찰서 등에서 기초조사를 받다가 17:00 경 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신병이 인계되었음. 검사 정OO은 피해자 김OO을 같은날 17:14경부터 그 다음날 00:15경까지, 검사 이OO는 피해자 김OO을 같은날 20:05경부터 그 다음날 02:30 까지, 검사 박OO은 피해자 김OO을 같은 날 17:10경부터 그 다음날 01:10경까지 각 심야시간대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으나, 위 검사 이OO이 피해자 김OO에 대해서만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검사들은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음.
- 이후 위 피해자들은 같은 달 21. 새벽부터는 최초 체포되어 유치되었던 서울시내 일원 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다가 재차 소환되어 같은 날 09:10경부터 순차적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같은 날 16:55경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같은 달 22 20:35경 출감되어 같은 날 21:20 경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009.1.20. 사건현장에서 체포되어 불구속 기소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포 당일 자정무렵인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들 중 피해자 이OO의 경우에는 검사 변OO이 같은날 19:46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조사하면서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배OO

의 경우에도 검사 김OO이 같은날 17:57경부터 다음 날 00:53경까지 조사하면서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이후 새벽시간에 위 피해자들은 최초 체포되어 유치되었던 각 경찰서로 유치되었다가 재차 검찰청에 소환되어 2009.1.21.15:00 경까지 조사를 받다가 서울서초경찰서에 유치되었고, 같은 달 22. 오전에 관련 혐의가 경미하므로 불구속 지휘를 받아 석방되었음.

-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구속된 피해자 김OO와 김OO에 대하여 2009.2.8.기소하기까지 소환 당일 야간시간 대인 22:00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3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특히 검사 김OO는 피해자 김OO에 대해 2009.1.23. 22:05경부터 그 다음날 00:15경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음.¹¹⁾

2) 장시간 조사대기(일명 ‘불러뽕’)에 대하여

- 서울구치소는 통상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 구치소를 출발(오전 출발 09:00 도착 09:40, 오후 출발 13:00 도착 13:40)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구치감 거실에 피의자를 대기시키고, 검사의 조사 소환 연락이 오면 해당 검사실로 호송하여 입회하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구치감 거실로 환소하여 대기하다가 소환검사실로부터 조사종료 통보를 받고 피의자들을 구치소로 귀소함.
- 피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2009.1.21. 발부된 이후, 검사 강OO가 피해자 김OO을 같은 달 23.09:00경 소환하여 같은 날 19:00 조사할 때까지 서울구치소로의 이동시간을 제외한 약 9시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킨 사실, 검사 김 OO이 피해자 조OO를 같은 날 13:00경 소환하여 같은날 19:40경 조사할 때까지 약 7시간 40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킨 사실. 그리고 검사 조OO이 피해자 김OO을 같은날 9:00경 소환하였으나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인 26. 00:05 경 까지 약 14시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키다가 구치소로 돌려보낸 사실, 피해자 김OO의 경우에도 같은 날 13:00경 소환하였으나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날 17:30까지 약 5시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키다가 구치소로 돌려보낸

11) 국가인권위원회 2010.1.11.자 09-진인-215 결정 7-10면.

사실이 있음.

- 검사 조OO은 2009.1.24. 09:00경 피해자 조OO, 김OO을 소환하고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검사 김OO이 함께 소환된 피해자 김OO에 대해 같은 날 23:10 까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구치감에 대기시키다가 그 다음 날인 25. 00:30경 함께 구치소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9.1.25.09:00경 피해자 김OO, 김OO, 김OO, 김OO를 소환하고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구치감에 마냥 대기시키고, 검사 김OO은 같은 시간에 소환된 피해자 조OO에 대해 같은 날 16:30경 조사를 개시하여 같은 날 18:15 경 조사를 마치고도 구치감에 장시간 대기시키다가 위 피해자들과 함께 그 다음 날인 26. 00:05경 구치소에 돌아가도록 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09.2.3.부터 2.8.까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모두 소환하여 놓고도 일부 피해자만 조사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대기시키다 그냥 구치소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음.
- 2009.1.28. 체포된 피해자 이OO의 경우에도 검사 조OO은 2009.2.4. 09:00 경 소환하여 같은 날 17:40 경 조사할 때까지 약 9시간 40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킨 사실, 또한 같은 달 5.과 6. 연속하여 09:00 경 소환하여 놓고도 아무런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구치감에 마냥 대기시키다가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구치소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음.¹²⁾

3. 후속 조치와 사법기관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리한 심야조사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시간 대기하게 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주의조치 할 것과, 소속 수사검사들에 대해 심야조사 등 피의자 소환조사이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음.¹³⁾

12) 국가인권위원회 2010.1.11.자 09-진인-215 결정 7-10면.

13) 국가인권위원회 2010.1.11.자 09-진인-215 결정 12-16면.

4. 평가

- 본 사건의 검사들은 일부 철거민들에 대해서만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았을 뿐, 이외 다수의 철거민들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인권 보호관의 허가절차를 받지 않았으며, 특히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를 했어야 할 만큼 조사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무리하게 심야조사를 진행했음. 또한, 본 사건의 검사들은 2009. 1. 20. 수사개시 시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같은 해 3. 11. 구속 기소하기까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하여 구치감에 출석시켜 놓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많게는 14시간, 적게는 5시간 동안 총 2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기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았음. 이는 구속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임.¹⁴⁾

5. 관련 법령

-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39조,¹⁵⁾ 제40조,¹⁶⁾
-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¹⁷⁾

14) 국가인권위원회 2010.1.11.자 09-진인-215 결정 12-16면.

15)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39조(구속피의자 등의 조사)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 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구속피의자 등을 불필요하게 소환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속피의자 등과 대질조사를 하여야 할 사람이 있거나 자료를 보면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사받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나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속피의자 등을 소환한다.
3. 소환한 구속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구치감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준다.
4.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이감 조사는 대질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공조수사를 활용한다.

16)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심야조사 금지) ①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을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 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 「헌법」 제10조¹⁸⁾에서 보장하고 있는 철거민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수면권 및 휴식권).¹⁹⁾

6. 카테고리

- 수사: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대기

7.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0.1.11.자 09-진인-215 결정[용산 철거민 사망 관련 과잉진압 및 부당수사 등에 의한 인권 침해].

17)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8)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9) 국가인권위원회 2010.1.11.자 09-진인-215 결정 15면.

[별첨 5] 용산 철거민등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진압

1. 일시·장소: 2009.1.20. 용산 화재 참사 현장[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남일당 빌딩]

2. 사실관계²⁰⁾

- 2009.1.19.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졌음.
- 경찰은 2009.1.19.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하자 조기 진압과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음. 이어 서울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거쳐 남일당 빌딩 진압작전 계획서가 작성돼 당일 오후 11시께 최종 승인되었음.
- 작전계획서에는 망루에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이 많고 농성자들이 분신·투신·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이 언급되었음. 이런 판단에 따라 대형 크레인 2대와 컨테이너, 에어매트, 소방차 등 152개 장비가 계획서에 적시되었음.
-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은 1대뿐이었고, 에어매트는 설치되지 않았음. 소방차는 일반 화재 진압에 쓰이는 펌프차 2대만 투입됐고, 유류로 인한 화재 진압용 화학소방차는 계획서에 포함되지도 않았음.
- 특공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사전 예행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었음. 특공대 제대장은 작전 연기를 상부에 건의했으나 묵살 당했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30분 경 작전이 개시되었음.
- 특공대가 옥상에 1차 진입하고,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저항하는 과정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하였음. 경찰 측 컨테이너가 망루를 충돌해 망루가 무너지자 안에 있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흘러내려 망루와 옥상에 들어찼음.
- 경찰이 제2차 진입을 시도할 당시에는 이미 많은 농성자가 체포된 이후였고 수명의 농성자만이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망루 4층에 남아 있었음. 경찰은

20)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018) 7-32면. 요약.

이미 제1차 진입 시에 제1차 화재가 발생한 점과 망루 내·외에 다량의 시너가 뿌려졌고 망루 내부에는 가연성 유증기가 가득 차서 아주 작은 화원이라도 생길 경우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작전의 변경, 망루 내부 상황의 파악, 망루 내부에 있는 농성자들에 대한 설득, 위험원 제거를 위한 현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곧바로 제2차 진입을 시도하였음. 이후 참사로 이어진 2차 화재가 발생하였음.

3. 후속 조치와 사법기관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은 철거민 사망자의 유족들이 이를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였음.²¹⁾
-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와 직접 참여한 경찰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재정신청 기각되었음.
- 철거민들에 대한 형사 소송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던 중 피고인 등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일부 농성자 및 진압작전 중이던 일부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의 위 농성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철거민)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을 인정하였음.²²⁾
- 2018.8.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결정 중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청 진입작전계획서 상의 안전 조치조차도 준비되지 않아 진압작전의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진압작전은 개시되었던 점, 진압작전 수행과정에서 경찰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조치의 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직 ‘농성자 검거’를 목적으로 진압작전이 강행되었던 점, 1차 진입 후 유증기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고도화된 상황 등이 경찰지휘부

21) 국가인권위원회 2010.1.11.자 09-진인-215 결정.

22)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에 순차적으로 보고되었던 점을 보면 당시 경찰지휘부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²³⁾

4. 평가

경찰은 농성을 진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태양 및 위험물질 보유여부, 농성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에 비추어 농성진압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또는 진압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해야 함. 즉,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농성진압을 하여 진압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피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²⁴⁾²⁵⁾

5. 관련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경찰비례의 원칙

6. 카테고리

- 경비, 농성 진압

23)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진상조사위원회, 2018), 7-32면.

24)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진상조사위원회, 2018), 7-32면.

25) 국가인권위원회 2010.2.9.자 보도자료,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인권위, 서울고등법원에 의견 제출, 2면.

7.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0.1.11.자 09-진인-215 결정.
-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 2018.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7621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 2010.2.9.자 보도자료,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고등법원에 의견 제출, 2면.

[별첨 6] 기자회견 참여자 체포과정 중 폭행

1. 일시·장소: 2009.5.14. OO지방검찰청 서문 앞

2. 사실관계

- 용산범대위 회원 등 40여명이 2009.5.14. 11:30경 OO중앙지방검찰청 서문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대치하다가 12:35경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음. 이에 경찰은 위 기자회견은 금지 통고된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이후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실시함.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제창을 하며 기자회견을 계속 하였음. 이에 경찰은 최종 체포명령을 받은 위 참가자 중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경찰서로 연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귀가하려는 참가자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참가자들을 4인 1조로 팔을 꺾고 사지를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근에 세워둔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음.
- 변호사인 참가자가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고 위 체포행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해당 참가자의 왼쪽 팔을 뒤로 돌려 꺾고 목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허리띠를 움켜잡았고, 옆에 있던 경찰은 위 참가자의 양복 옷깃을 잡아 조여 올리고, 또 다른 경찰은 좌측 허리와 어깨를 붙잡은 상태에서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음.²⁶⁾

3. 후속 조치와 사법기관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금지통고를 하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금지통고를 한 A경찰서장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장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주의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음.²⁷⁾

26) 국가인권위원회 2010.4.12.자 09-진인-1945 결정.

4. 평가

집회금지통고의 핵심적 기준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에는 집회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공공위협에 대한 현존성을 심사해야 함에도, 소속단체 등의 과거전력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또한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체포 이유에 대해 구두로 항의했을 뿐이며, 여타 위험물품을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불만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진압경찰관들이 해당 기자회견 참가자의 목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저항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감내하기 힘든 신체적 고통과 인격적 수치심을 준 것이며, 필요 최소한도내에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체포행위에 해당함.²⁸⁾

5. 관련 법령

- 「헌법」 제10조 인격권,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6. 카테고리

- 체포
-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언어 폭력, 모욕)

7.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0.4.12.자 09-진인-1945 결정.

27) 국가인권위원회 2010.4.12.자 09-진인-1945 결정.

28) 국가인권위원회 2010.4.12.자 09-진인-1945 결정.

[별첨 7] 속옷탈의 및 실명공개에 의한 인권 침해

1. 일시·장소: 2011. 6. 10. 23:00경

2. 사실관계

- 진정인은 2011. 6. 10. 20:45경부터 22:45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 소 앞 사거리에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 반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1. 6. 10. 23:30 서울 광진경찰서에 인치되었음. 피진정인은 2011. 6. 11. 진정인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탈의상태로 조사를 받았음. 피진정인은 당시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등 관련규정에 의거 브래지어가 위험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진정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본인 스스로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함.²⁹⁾

3. 후속 조치와 사법기관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설시.

통상적으로 브래지어 탈의는 여성유치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브래지어가 직접적으로 자해 및 자살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경험적으로 낮다는 점 등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29)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18.자 11-진정-0341500 결정[속옷탈의 및 실명공개에 의한 인권 침해].

내 여성 수용자들은 브라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유독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수용자들을 달리 처우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헌법」 제10조 인격권 침해로 판단. 「경찰업무편람」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하더라도 현저한 자살위험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위규정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등을 근거로도 긴급히 브라지어 탈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라지어를 삭제하도록 결정. 편람에 근거한 조치이므로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음.³⁰⁾

4. 평가

- 피진정인의 브라지어 탈의 요청과 「경찰 업무편람」상 규정은 실제 자해 및 자살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경험적으로 낮고,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와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인격권을 침해하였음.

5. 관련 법령

- 「헌법」 제10조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 「경찰업무편람」

6. 카테고리

- 수용시설 인권 침해, 여성 수용자

7.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18.자 11-진정-0341500 결정[속옷탈의 및 실명공개에 의한 인권 침해].

30)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18.자 11-진정-0341500 결정[속옷탈의 및 실명공개에 의한 인권 침해].

[별첨 8] 지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는 진술거부권 고지

1. 일시·장소: 2011. 4.경, 경찰서, 검찰청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3.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일반건조물방화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되었음.
- 피고인은 전체지능 IQ 69로서 경도의 지적장애(9~12세 정도)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임.
-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와 쉬운 한글 단어의 독해가 가능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법적 용어, 어려운 단어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란에,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어요", "예", "네"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양식에는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사법경찰관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출력하였음에도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었음.
-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조사과정 확인서에는 조서열람 종료 시각, 조서의 내용에 대한 의견진술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었음.
- 사법경찰관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기재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이어지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거의 빠짐없이 답변하였음.
- 검찰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고지 등 확인'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검사가 읽어주었음.

- 피고인은 각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내지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음.
-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사가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하는 분이 피고인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 안 해도 괜찮다면서 설명해 주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재판장 신문시에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재차 이를 신문하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함.
- 통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자, 피고인은한 글자씩 띄엄띄엄 읽었을 뿐 그 단어 내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였음.
- 검찰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고지 등 확인’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검사가 읽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적수준 및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서 진술 거부권 고지 여부 확인에 대한 답변에 “예”라고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예”라고 기재하라는 안내에 따라 그렇게 기재한 것인지 불분명하였음.³¹⁾

3. 후속조치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함.

4. 평가

- 통상 지적장애를 지니지 않은 피의자들에게는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읽게 한 후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확인란에 답변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이유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의 존재 및 그 의미에 관하여 알게 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고합519 판결.

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에 있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피고인과 같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하여 직접 또는 변호인 내지 조력자의 도움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피고인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실질적으로 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 지적장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힘.

5. 관련 법령, 인권기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6. 카테고리

- 진술거부권 미고지
- 장애

7.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고합519 판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65-01

연구총서 18-CB-0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Ⅰ)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발 행 | 2018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5,000원

인 쇄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02) 2272-0307

I S B N | 979-11-89908-05-8 93360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